

軍 史

第 29 號



國防軍史研究所

軍史

第 29 號

1994

目 次

歷代軍事史

- 百濟 近肖古王代の 北境 ……… 金 起 燮(1)
- 申崇謙과 公山桐薇 戰鬪 ……… 閔 丙 河(45)
- 淸日戰爭은 왜 韓半島에서 일어나야 했는가
…………… 梁 泰 鎮(81)

歷史的 敎訓을 통한 韓國의 戰爭指導 方案

- 韓國의 安保環境下의 戰爭指導 考察
…………… 李 基 鐸(158)
- 韓國의 危機管理와 戰爭指導體制 發展方向
…………… 全 庚 萬(191)
- 總力戰 對備을 위한 國家動員態勢 發展方向
…………… 張 炳 玉(224)





安市城戰圖 記錄畫 (戰爭紀念館 所藏)

- 韓國戰爭時 勞務動員과 運營에 관한 研究
..... 梁 寧 祚(125)
- 周邊國 社會科 教科書 比較檢討
..... 李 在 範(254)
- 現代 陸軍服飾의 變遷에 관한 研究
..... 金 正 子(286)
- 21世紀를 向한 軍事指導者의 戰略과 리더십
..... 李 代 雄(326)

榮
報

- 新刊紹介 (370)
- 「軍史」誌 投稿 案内 (372)

百濟 近肖古王代の 北境

金 起 燮
(京畿大 講師)

1. 머 리 말
2. 濟紀의 北方관련 地名 分析
3. 近肖古王代の 北方經營
4. 領域確定과 ‘始有書記’
5. 맺 음 말

1. 머 리 말

『三國史記』 「百濟本紀」(이하 ‘濟紀’로 약칭함)를 통틀어 백제의 영역을 명확하게 논하고 있는 곳은 溫祚王 13년 8월조의 “사신을 馬韓에 보내 遷都를 알리고 드디어 疆場을 정하였는데, 북쪽으로는 涓河에 이르고, 남쪽은 熊川에 한하며, 서쪽은 바다에 달하고, 동쪽으로는 走壤에 이르렀다”라는 대목뿐이다. 그런데 이 기사에

2 軍 史

대한 해석 문제, 즉 百濟의 건국시조인 溫祚王代의 것으로 보아도 좋으나 하는 문제가 지금껏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시켰으며, 아직도 미해결의 숙제로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거론된 溟河·熊川·走壤이 각각 어디에 비정되어야 하는지도 아직 시원하게 해결되지는 않았다. 학자에 따라서 각각 禮成江·安城川·春川으로 보는 견해¹⁾가 있는가 하면, 禮成江·錦江·春川에 비정하는 견해,²⁾ 大同江·錦江·春川으로 보는 견해³⁾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溟河를 臨津江에 비정하기도 하여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결국 『三國史記』(이하 ‘史記’로 약칭함)는 百濟의 영역에 관한 한 우리에게 명쾌한 정보를 하나도 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3세기 전반기의 한반도 정세를 전하는 『三國志』「韓傳」에서는 馬韓을 “大國萬餘家, 小國數千家” 규모의 國邑 50여 개로 구성된 일종의 연맹체로 묘사하고 있다. 도합 54개 국의 국명을 일일이 소개하던 중 8번째에 伯濟國이 등장하는바, 이것이 百濟와 동일한 존재임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百濟가 적어도 3세기 전반기까지는 萬餘家 혹은 數萬餘家 정도의 규모밖에 일구지 못했다고 추정하여도 크게 잘못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韓傳」에枚擧된 54개 국읍 가운데 이미 百濟에 흡수되었을지도 모르는 국읍을 상정한다 해도, 陳壽나 중국인들의 눈에 여타의 나라들과 현저하게 구별될 정도가 아니었다면, 영역 국가의 단계에 들어가지

1) 李丙熹, 『韓國史 古代篇』(乙酉文化社, 1959), p. 356.

2)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下)〉(『韓國學報』 3, 1976), pp. 118~130.

다만, 그는 錦江을 安城川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3) 都守熙, 〈百濟地名研究〉(『百濟研究』 11, 1980), pp. 42~49.

4) 酒井改藏, 〈三國史記の地名考〉(『朝鮮學報』 54, 1970), p. 46.

는 못했던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일단 3세기 전반기 百濟의 세력범위를 막연히 漢江下流域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까지라고 상정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북쪽에 위치한 소국 가운데 하나인 牟水國(지금의 경기도 楊州)을 포함하지 않는 정도의 범위일 것이다.

『三國志』 이후 중국의 이른바 正史는 한동안 백제에 대한 소개를 따로 하지 않았다. 百濟의 영역을 살필 수 있을 정도의 근거를 제공하는 자료도 물론 찾을 길이 없다. 5세기 말엽에 편찬된 『宋書』는 물론이요, 이후의 『南齊書』, 『魏書』, 『梁書』 등은 百濟의 영역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7세기 전반기에 편찬된 『周書』는 「異域傳」 百濟條에서 “그 나라 땅의 경계는 동쪽으로 新羅에 닿고, 북쪽으로는 高句麗와 접하며, 서쪽과 남쪽으로는 모두 큰 바다에 이르는데 東西 450리, 南北 9백여리이다”라고 설명하였으나, 그 시점이 加耶 멸망 후의 三國鼎立期여서 한성시대 百濟의 영역 고찰 자료로서는 부적합하다. 결국, 中國의 正史를 통해 한성시대 百濟의 영역을 고찰하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자료의 빈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百濟의 近肖古王을 高句麗의 廣開土王, 신라의 眞興王에 견줄 만한 拓境의 君主⁵⁾로 생각하게 된 이유는 史記가 짚막하게 전하는 對高句麗戰의 승리 기사, 『日本書紀』의 對南方 정벌기사 등에 있다. 近肖古王代에 百濟가 수차례의 對高句麗 전투에서 모두 승리했을 뿐 아니라, 高句麗의 南進基地인 平壤城을 공격하여 故國原王을 戰死시키는 大戰

5) 李丙燾, 〈近肖古王拓境考〉(『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85), p. 507.

4 軍 史

果를 이룩한 것은 史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近肖古王의 업적이다. 한편 우리 학계 대다수의 연구자는 『日本書紀』神功紀 49년 春 3월조의 이른바 加羅 7國 平定記事를 百濟 近肖古王의 對 남방 경략 사실에 대한 일본측의 왜곡 기술로 이해하고 있거니와,⁶⁾ 이에 따른다면 近肖古王은 일거에 남쪽의 馬韓 모두를 아우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위의 두 史書가 전하는 近肖古王의 拓境偉業이 사실 그대로인지는 앞으로 차근차근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당시의 영역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拓境의 君主라는 近肖古王의 위업이 어찌하여 濟紀에 그렇듯 소략하게 정리되었는지 등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일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그 첫 작업으로 濟紀 분석을 통해 近肖古王代의 北境을 추론하려고 한다.

2. 濟紀의 北方관련 地名 分析

百濟의 영역에 관한 한, 濟紀 이용의 최대 걸림돌은 史記의 撰者가 三國의 鼎立이라는 후대의 구도에 너무도 집착하여 초기의 기사까지도 모두 이들과 연관지으려 하였다는 점이다. 「韓傳」단계 70여 개 小國의 소외, 加耶史의 不在, 삼국간의 때 이른 접촉 등은 바로 그에 대한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구도하에서 성

6) 李丙燾, 위의 논문, pp. 511~514.

千寬宇, 〈復元 加耶史〉(『加耶史研究』, 一潮閣, 1991), pp. 23~26.

全榮來, 〈百濟南方境域의 變遷〉(『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1985), pp. 141~144.

립된 濟紀의 초기 기사가 時期面에서 객관성을 유지하였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濟紀에 의거하는 한 漢城時代 百濟의 영역 확장 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일이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한편, 이처럼 시간적으로 불합리한 濟紀의 기사가 과연 내용면에서도 그러한지는 아직 판단할 자료가 없다. 그러나 濟紀에 소개된 대부분의 북방관련 기사들은 내용상의 조작 가능성을 논하기에는 그 결과 얻어질 효과가 외면에 드러나지 않는 매우 단편적이고도 소박한 내용뿐이다.

그런데 매우 다행스럽게도 近肖古王代 이후의 기사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듯하여 近肖古王代の 北境 고찰에 다소의 위안이 되고 있다. 필자는 의문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 近肖古王代の 소략한 기사를 기준삼은 다음, 그 이전의 기사를 일단 시기 구분없이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겠다. 그것은 近肖古王代부터 사료의 신빙성이 높아짐을 감안할 때, 적어도 그 이전의 기사 가운데 지명기사만큼은 近肖古王代 이후의 사실을 소급 적용할 만큼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소박한 가설을 세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낙랑·말갈과의 계속된 상쟁에도 불구하고 건국 이후 近肖古王代까지 백제의 영역은 때때로 약간의 위축은 있었을지언정 전반적으로 확대일로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漢城時代 百濟의 對북방관련 지명은 濟紀의 14개 本紀에서 추출할 수 있다. 漢城時代의 왕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모두 21명인데, 이 중 14명이 북방관련 기사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같은 시기 남방관련 기사를 남기는 인물이 모두 5명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대단히 많은 분량임을 알 수 있다.

6 軍 史

더욱이 예의 21명 가운데 沙伴王, 契王, 枕流王, 久爾辛王 등은 재위기간이 매우 짧을 뿐 아니라 濟紀에 기사가 극히 빈약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漢城時代 내내 濟紀의 주된 관심은 백제의 북방에 쏠려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하겠다.

濟紀의 漢城時代 북방관련 기사에서 지명만을 추출한 다음 관련 세력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관련기사 내용 소개는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 (A) 靺鞨관련 지명: 大斧峴, 昆彌川, 青木山, 烽峴, 瓶山柵(2), 七重河, 斧峴, 述川城, 斧峴城, 馬首山, 高木城, 馬首城, 牛谷城, 牛谷(2), 沙道城(2), 石門城, 述川, 赤峴城(2), 關彌嶺
- (B) 樂浪관련 지명: 馬首城, 瓶山柵, 禿山, 狗川柵, 牛頭山城, 臼谷
- (C) 高句麗관련 지명: 阿旦城, 蛇城, 雉壤, 淚河, 平壤城(2), 水谷城(3), 半乞壤, 都坤城, 石峴城(2), 關彌城(2), 淚水, 青木嶺
- (D) 기타 지명: 淚河, 石頭城, 高木城, 牛谷城, 淚水, 帶水, 斧壤, 赤峴城, 沙道城, 青木嶺, 禿山, 八坤城, 雙峴城, 沙口城

(A), (B), (C)는 관련 세력에 따라 달라지는 濟紀의 地名을 그대로 적출한 것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重出 횟수이다. 관련 세력이 다를 경우 같은 지명이라도 따로 기입하였으므로, 세력을 무시하고 지명만을 따로 추출하게 되면 중출 횟수는 다소 늘어날 수 있다. 북방관련 기사임에는 분명하나 단순히 北界의 指標로서 이용되었다든지 築城·修城, 그리고 百濟측의 巡狩와 관련된 지명은 중출 횟수를 생략한 채 (D)의 「기타 지명」으로 분류하였다.

(A) 靺鞨關聯 地名

위의 지명 가운데 斧峴과 斧峴城, 馬首山과 馬首城, 述川城과

述川, 牛谷城과 牛谷의 친밀성이 인정되므로 이들 가운데 하나를 제외한 다음 나머지 16개의 지명을 다음과 같이 비정하여 보았다.⁷⁾

大斧峴, 斧峴城: 溫祚王 43년 南沃沮의 仇頗解 등이 歸依한 장소인 斧壤과 인접한 지역으로 생각되는데, 斧壤은 오늘날의 平康에 비정되므로⁸⁾ 大丘縣·부현성도 그에서 멀지 않은 지점일 것이다.

昆彌川: 백제가 곤미천에서 말갈과 싸우다 패하자 靑木山에 의지하여 自保하였다는 溫祚王 10년조로 보아, 靑木山の 북방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뒤에서 보듯이 靑木山이 開城방면에 비정되므로, 곤미천은 일단 禮成江에 비정될 수 있겠다.⁹⁾

靑木山: 보통 開城의 松岳山¹⁰⁾ 혹은 그 북방의 靑石洞¹¹⁾에 비정된다. 靑石洞이 역사적인 南北交通路였으며, 옛 關防施設이 있다는 설명¹²⁾에 따라 일단 靑石洞說을 따른다.

七重河: 경기도 坡州 積城面의 옛 이름이 七重縣인바,¹³⁾ 七重縣과 七重河의 친근성이 인정되므로, 지금 積城 일대를 지나는 臨津江에 비정할 수 있다.

烽 峴: 溫祚王 10년조의 기사로 보아 昆彌川, 靑木山 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생각되나, 정확한 지점은 알 수 없다.

7) 이후의 각종 지명 비정에는 李丙燾, 〈近肖古王拓境考〉 및 『國譯 三國史記』(乙酉文化社, 1977);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下)〉; 酒井改藏, 〈三國史記の地名考〉 및 〈好太王碑面の地名について〉 등을 참고하였음.

8) 『東國輿地勝覽』江原道 平康縣 建置沿革.

9) 朴時亨(金浩天譯), 『廣開土王陵碑』(東京 そしえて, 1985), pp. 207~208. 千寬宇, 앞의 논문. p. 120.

10) 『東國輿地勝覽』「開城府」上 山川.

11) 安鼎福, 『東史綱目』溫祚 10년조.

12) 朴時亨, 앞의 책, p. 208

13) 『三國史記』「地理志」2 來蘇郡. 『東國輿地勝覽』京畿道 積城縣 建置沿革.

瓶山柵：溫祚王 8년 7월조, 다루왕 7년 9~10월조로 보아 馬首城의 인근 지역임을 알 수 있는데, 뒤에서 보듯이 馬首城이 지금의 抱川지방에 비정되므로, 瓶山柵도 그 일대에 비정할 수 있겠다.

述川城：보통은 史記「地理志」(2)에 따라 경기도 驪州에 비정한다. 그러나 驪州說을 따를 경우, 靺鞨의 百濟 침습지역 가운데 유독 술천성만 동떨어져 있음은 어쩐지 어색하다. 濟紀에 의하면 靺鞨은 百濟의 북쪽에 위치한다¹⁴⁾ 하였으므로, 風納里土城·夢村土城을 중심으로 한 百濟의 수도를 기준으로 할 때, 술천성은 그 북방에 있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驪州는 서울의 東南方に 위치할 뿐 아니라 그 거리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를 지금의 京畿道 坡州郡 州內面에 비정한다. 이곳은 고구려의 述彌忽縣이 있었던 곳이다. 彌는 貫와 마찬가지로 川, 水를 뜻하기도 하므로, 述彌忽은 述川城과 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高木城：보통 경기도 漣川의 옛 이름 功木達과 관련시켜 풀이한다.

馬首城：鐵原 金化에 비정하는 견해(李丙熹)와 抱川에 비정하는 견해(酒井改藏)로 나뉘어 있는데, 抱川의 옛 이름 馬忽이 마수성과 통할 여지가 다분하므로, 일단 抱川說에 공감한다.

14) “東有樂浪 北有靺鞨”(濟紀 溫祚王 13년조)

李丙熹의 考證이라 방향이 잘못 倒置된 것으로 인식하여 보통 ‘北有樂浪 東有靺鞨’로 수정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濟紀 전편에 흐르는 분위기와 내용으로는 오히려 말갈이 백제의 북쪽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단순히 위의 기사만 조정하여서는 안 된다. 말갈의 위치 문제는 말갈의 성격과 관련지어 다시 생각하여야 하는바, 필자는 얼마전 濟紀 初頭の 靺鞨이 백제의 북방에 위치한 小國群을 구별없이 지칭한 것이며, 後代의 靺鞨과는 다른 존재라고 주장한 바 있다. 金起燮, 〈『三國史記』「百濟本紀」에 보이는 靺鞨과 樂浪의 位置에 대한 再檢討〉(『清溪史學』 8, 1991) 참조.

牛谷城：향복한 馬韓의 城民을 漢山北으로 이주시켰다는 溫祚王 27년조의 기사를 참고할 때, 溫祚王 34년 馬韓舊將 周勤의 반란 근거지인 우곡성은 백제 북방에 위치한 城일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多婁王 29년 우곡성을 쌓은 목적이 靺鞨 對備에 있었고, 또 己婁王 32년과 구수왕 16년에 靺鞨이 牛谷을 침습하였다는 기사로 보건대, 牛谷에 쌓은 牛谷城은 百濟의 국경 근방에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高句麗 牛岑城과의 친밀성이 인정된다면 황해도 金川근방이 될 것이다.¹⁵⁾

沙道城：肖古王 45년조, 仇首王 3~4년조로 보아 백제의 동북방에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만일 腆支王 13년조의 沙口城, 廣開土王陵碑의 沙水城과 친근성이 인정된다면 抱川방면일 가능성이 높다.

石門城：시대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史記「金庾信傳」(下)의 “…唐軍與靺鞨營於石門之野 王遣將軍義福·春長等禦之 營於帶方之野…”라는 기사 가운데 ‘石門之野’를 참고할 경우, 石門城과 石門

15) 온조왕 34년(16)조의 牛谷城은 사실 다루왕 29년(56)에야 築城記事가 등장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어색하기 짝이 없다. 어쩌서 濟紀가 아직 쌓지도 않은 城을 미리 반란 근거지로 거명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단순히 濟紀 撰者の 錯誤라고 하기에는 溫祚王紀의 對馬韓 기사가 너무도 정연하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다루왕 29년조의 牛谷城 축조기기도 불합리한 면을 보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기루왕 32년조와 구수왕 16년조에는 각각 靺鞨이 牛谷에서 民戶를 약탈한 대목이 있거니와, 이처럼 말갈의 계속된 침입에 대항하여 築城한 것이 바로 牛谷城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말갈의 약탈에 대해 중앙에서 정병 3백을 보내 막게 하였을 정도라면(구수왕 16년조), 적어도 지역 방위의 기초 단위인 軍城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말갈에 대비하여 쌓았다는 多婁王代の 牛谷城 기사는 仇首王紀 이후에 위치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之野는 동일 지역일 가능성이 농후하며, 또 ‘帶方之野’와도 가까운 지역임이 분명하므로, 帶方の 郡縣址가 분포한 黃海道 鳳山, 平山 인근에 비정될 수 있겠다.

赤峴城：肖古王 45년조, 仇首王 3~4년조의 내용으로 보아 沙道城의 南方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軍城으로 생각된다.

關彌嶺：辰斯王 8년조, 아신왕 2년조의 關彌城과 함께 앞서 본 昆彌川과의 친밀성이 인정되므로, 禮成江 河口 南岸에 비정되어 무방한 듯하다.¹⁶⁾

이상 靺鞨관련 지명은 대체로 百濟의 북방에 위치하며, 또한 百濟의 北境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이 주목된다. 대략적인 윤곽을 그려본다면 延白, 平山, 金川, 漣川, 抱川 등지를 잇는 선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오늘날의 경기권에 해당한다.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두지만, 溫祚王 13년조의 “東有樂浪 北有靺鞨”은 濟紀 全篇을 통해 일관되게 나타나는 方位觀이며, 결코 錯覺이나 誤記의 결과가 아니다. 우리가 선입견을 버리고 濟紀를 검토하게 되면, 濟紀의 靺鞨이 眞靺鞨인지 아니면 僞靺鞨인지와는 상관없이, 靺鞨은 분명 百濟의 북방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濟紀에 등장하는 靺鞨과 樂浪의 성격을 먼저 규정한 다음 그들의 위치를 논하기보다, 먼저 靺鞨의 위치를 구한 다음 그들의 실체를 문제삼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16) 朴時亨, 앞의 책, p. 209.

(B) 樂浪關聯 地名

濟紀의 樂浪관련 지명 가운데 馬首城과 瓶山柵은 이미 靺鞨관련 기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京畿道 抱川방면에 비정된다. 溫祚王 8년 7월조, 11년 4월조의 기사는 靺鞨과 樂浪이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이 위치하였음을 알려주는 자료가 되거니와, 이를 통해 濟紀의 樂浪이 抱川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였음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靺鞨은 어느 한 집단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百濟 북방의 어떤 집단들을 구별없이 지칭한 것에 불과하며, 또한 樂浪과 竝稱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樂浪郡이 아직 존재할 시점의 세력이었다.

여기에서 문제삼는 濟紀의 樂浪이 과연 大同江流域에 있었을 漢의 樂浪郡인지는 분명치 않다. 濟紀에는 對樂浪 기사가 오직 溫祚王·古爾王·責稽王·汾西王代에만 보인다. 그런데 濟紀의 기사를 자세히 보면 溫祚王代の 樂浪과 古爾·責稽·汾西王代の 樂浪이 그 성격상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溫祚王代の 樂浪은 “東有樂浪”(13년조), “樂浪牛頭山城”(18년조)에서 시사받을 수 있듯이 春川방면의 어떤 집단을 말하는 듯하고, 古爾王代 이하의 樂浪은 “魏幽州刺史毋丘儉與樂浪太守劉茂朔方太守王遵伐高句麗 王乘虛遣左將眞忠 襲取樂浪邊民 茂聞之怒 王恐見侵討還其民口”(고이왕 13년)와 “高句麗伐帶方 帶方請救於我…帶方我舅甥之國…遂出師救之”(책계왕 원년), “潛師襲取樂浪西縣”(분서왕 7년) 등으로 볼 때 오늘날 平南·黃海道방면에 비정되는 漢郡縣을 지칭한 것임이 분명해 보이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필자는 이른바 古爾系가 溫祚—肖古系와는 구별되는 존재, 곧 濟紀에

靺鞨로 정리된 伯濟 북방의 一小國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한 바 있다.¹⁷⁾ 한 가지 特記할 점은 溫祚王代에는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한 데 반해, 古爾系의 樂浪記事는 막연히 ‘邊民’, ‘西縣’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溫祚王代の 樂浪과 고이계 기사의 樂浪이 각기 다른 집단을 지칭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앞서 소개한 지명을 살펴보면, 그 모두가 溫祚王代の 것임이 주목된다. 따라서 일단 대동강유역의 樂浪과는 다른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지명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禿山柵：그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城主가 무리 300명을 이끌고 신라로 도망하였다는 近肖古王 28년조의 기사를 참조하면, 高句麗보다는 新羅에 가까운 쪽, 곧 百濟의 東部 내지 東南部に 비정할 수 있다.

狗川柵：溫祚王 11년 7월조에서 禿山柵과 併記된 것으로 보아 인근지역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백제의 東部に 비정할 수 있으나, 자세한 위치는 알 수 없다.

牛頭山城：李丙燾는 黃海道 牛峰에 비정하였는데,¹⁸⁾ 이는 大同江유역의 樂浪軍을 염두에 둔 결과에 불과하므로 취하지 않는다. ‘東有樂浪’이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면, 史記「地理志」에 牛頭州로 소개된 지금의 春川이 옳은 듯하다.¹⁹⁾

臼 谷：丁若鏞은 춘천 南界의 水村인 方牙兀에 비정하였으며,²⁰⁾

17) 金起燮, 〈漢城時代 百濟의 王系에 대하여〉(『韓國史研究』 83, 1993), pp. 26~27.

18) 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p. 356.

19) 千寬宇, 앞의 논문, p. 118.

20) 『與猶堂全書』 第6集「地理集」〈疆域考〉樂浪別考.

千寬字는 『大東輿地圖』에 그려진 楊州·加平 경계의 臼谷驛에 비정하였다.²¹⁾ 거리상으로는 兩者間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王都 漢城을 기준으로 할 때 동쪽 내지 동북쪽에 해당하여 百濟의 北境이 될 수 없는 지점인 것만은 동일하다.

이상과 같이 濟紀, 특히 溫祚王代の 對樂浪기사는 백제의 北境과는 거의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百濟의 동방정책과 관련된 자료로 생각된다. 이럴 경우 溫祚王紀의 樂浪이 漢四郡 가운데 하나인 大同江유역의 樂浪郡과 별개의 집단임을 말할 나위도 없다. 다시 한 번 확인하지만, 濟紀 초기에 등장하는 靺鞨과 樂浪은 여타의 기록에서 확인되는 同名의 세력집단과는 다른 일종의 類似集團, 名稱附會集團에 불과한 것이다.

(C) 高句麗關聯 地名

濟紀에서 高句麗관련 기사는 責稽王 원년조부터 등장한다. 그러나 나중에 말한 바와 같이 이 기사는 紀年 등에 약간의 문제가 있으므로 그대로 믿기 곤란하다. 따라서 사료의 신빙성을 전제한 후 현재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기사는 아마도 근초고왕 24년(369)조의 對高句麗 雉壤戰鬪일 것이다. 기사의 내용으로 보건대 백제는 이때 이미 雉壤 이북지역에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둔 상태였다. 그런 다음 近肖古王 26년에 浪河를 지나 高句麗의 平壤城을 공격함으로써 故國原王을 전사시키는 대전과를 이끌어 낸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近肖古王대의 百濟 영역은 확 대일로에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對高句麗戰의 우위를 바탕으로

21) 千寬字, 위의 논문, p. 118.

한 百濟의 북방경영도 近仇首王代를 끝으로 급격히 마약해져 辰斯王·阿莘王代에는 오히려 高句麗의 강력한 공격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급기야 高句麗에 대해 ‘自誓從今以後永爲奴客’(廣開土王陵碑)하는 회복불능의 약세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약세가 계속되던 가운데 蓋鹵王代에 이르러서는 결국 漢城陷落과 王室의 沒殺이라는 未曾有의 國恥를 당하게 되었고, 이로써 한성시대가 종막을 고하게 되었음은 주지하는바와 같다. 따라서 본고가 목적하는바 근초고왕대의 北境이란 실은 百濟의 북방경영의 最大値라고 할 수 있다.

濟紀에 등장하는 순서에 따라 對高句麗 전투기사의 지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阿旦城 : 責稽王 원년조의 아단성은 개로왕 21년 한성이 함락된 후 蓋鹵王이 高句麗군에게 縛送되어 죽음을 당한 장소인 阿且城과 함께 지금의 서울시 城東區 廣場洞에 위치한 阿且山城에 비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인식하에서는 廣開土王陵碑에 百濟征討地의 하나로 기록된 阿旦城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 百濟의 漢城이 오늘날의 風納里土城과 夢村土城에 비정됨을 감안할 때,²²⁾ 阿旦城이 오늘날의 阿且山城이라면 高句麗는 百濟 都城의 코 앞에 진지를 구축한 것이 되며, 또 百濟의 蓋鹵王은 高句麗의 군대를 목전에 둔 지극히 불안한 상태에서 대단위 토목공사를 벌였을 뿐 아니라 매우 강경한 어조로 高句麗를 비방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廣開土王이 百濟를 공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나서는 정토한 지역을 대

22) 金起燮, 〈百濟前期都城에 관한 一考察〉(『清溪史學』 7, 1990) 참조.

부분 百濟에게 돌려주었다는 견해가 등장하였던 것인데, 만약 돌려주었다면 과연 그렇듯 장황하게 城名을 기입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점과 ‘攻取’라는 표현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취하지 않겠다. 서기 396년 무렵 百濟는 북방의 많은 지역을 高句麗에 빼앗겼다. 濟紀 阿莘王 7년조의 기사로 보아 廣開土王의 대대적인 남침 이후 百濟의 北界는 아마도 北漢山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점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高句麗의 侵寇와 관련된 책계왕 원년조의 阿旦城과 광개토왕릉비의 阿旦城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찾아야 한다. 阿旦城=阿且山城說을 부정한 李道學은 광개토왕릉비의 아단성을 高句麗의 乙阿旦縣, 곧 남한강 상류의 충북 丹陽郡 永春面에 소재한 溫達山城에 비정하기도 하였다.²³⁾ 그러나 다시 한 번 책계왕 원년조 등의 阿旦城을 상기할 경우, 南漢江 上流域의 溫達山城은 高句麗의 침입에 대비한 百濟의 城으로서 너무도 궁벽진 곳에 위치한 것이 된다. 阿旦城은 아무래도 百濟의 都城과 高句麗의 南進基地인 平壤城 사이에 위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전제하에 史記를 보게 되면, 羅紀 文武王 15년조에 “靺鞨이 阿達城에 들어와 약탈하므로 城主인 素那가 맞아 싸우다 전사하였다. 唐兵이 契丹·靺鞨兵과 함께 七重城을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靺鞨이 또 赤木城을 에워싸고 멀하니…. 唐兵이 또 石峴城을 에워싸고 빼앗으니…” 등등의 기사가 주목된다. 즉, 이때의 阿達城은 앞서의 阿旦城과 동일 지명으로 판단되는바,²⁴⁾

23) 李道學, 〈永樂 6年 廣開土王의 南征과 國原城〉(『孫寶基博士停年記念 韓國史學論叢』, 1988), pp. 98~100.

24) 津田左右吉, 〈好太王征服地域考〉(『朝鮮歷史地理』 제1권, 1913), p. 69.

당시 羅·唐의 交戰地로 볼 때²⁵⁾ 七重城에 근접한 임진강 북쪽에 비정될 수 있겠다.²⁶⁾

蛇 城：개로왕 21년조에 강독의 시발점으로 호명된 蛇城과 같은 곳이라면, 李丙燾의 지적에 따라 서울 松坡區의 風納里土城에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²⁷⁾ 그러나 責稽王 원년조의 蛇城은 마치 邊方의 城을 지칭한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서 속단을 금한다. 하긴 문제는 그 뿐이 아니다. 앞의 阿旦城에서와 마찬가지로 責稽王 원년(286)이라면 高句麗가 百濟를 침공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濟紀에 阿旦城·蛇城修築記事가 게재된 것은 적이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李丙燾는 이 기사를 樂浪이 멸망한 다음 해, 곧 比流王 11년(314)조로 移置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²⁸⁾ 그러나 帶方郡 북방의 高句麗에 대한 百濟의 대비책이 기껏해야 국경 수백리 남쪽의 王都를 살피는 것이

25) 津田左右吉, 〈唐羅交戰地理考〉(『朝鮮歷史地理』 제1권, 1913), p. 310.

26) 책계왕 원년(286)이라면 백제의 북방에 아직 樂浪郡, 帶方郡이 건재한 시기이다. 더군다나 그 북방의 고구려는 魏의 침입(244~245)이 남긴 거대한 상처를 아직도 다 치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왕실 내부에 크고 작은 謀叛事件이 잇달아 일어나고 慕容氏의 침입이 거세지는 등 국내·외의 정세가 다소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았던 시기이다. 따라서 고구려가 대동강유역의 樂浪軍을 지나 직접 대방군을 공격한다거나 그 남쪽의 백제와 접할 수 없었음은 자명하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濟紀는 책계왕 원년조에서 백제가 高句麗의 侵寇를 대비하여 阿旦城과 蛇城을 수리하였다고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실재가 의심스러운 어색한 기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는 기사의 조작 가능성을 상정하기보다 對象이나 時期를 조정하는 편을 먼저 고려해야 하리라고 본다. 그것은 본 기사의 성격과 이후의 阿旦城관련 자료로 보건대 아단성의 실재는 물론 백제 軍城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7) 李丙燾, 〈風納里土城과 百濟時代의 蛇城〉(『韓國古代史研究』, 1985)

28) 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p. 371.

있다는 설명에는 여전히 어색한 감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責稽王 원년조의 蛇城 또한 阿旦城과 마찬가지로 臨津江流域에 위치한 城일 가능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필자는 최근 古爾王-責稽王-汾西王-契王의 이른바 古爾系를 한강유역에 위치한 溫祚-肖古系와는 별개의 집단으로 상정한 다음, 이들이야말로 「韓傳」단계의 馬韓 54개 국 중 하나이자 濟紀에 靺鞨로 정리된 집단 가운데 하나로서 오늘날 開豐·坡州·金浦 근방에 위치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²⁹⁾ 만약 필자의 추정에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責稽王 원년조의 기사는 그러한 각도에서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雉 壤 : 高句麗의 刀臘縣 혹은 雉巖城이 있던 白川에 비정할 수 있다.³⁰⁾ 近肖古王 24년(369) 9월에 高句麗가 2萬軍으로 百濟를 침탈하다가 이곳에서 近仇首의 군대와 격전하였다고 하니, 百濟의 국경은 적어도 雉壤以北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溟 河 : 百濟 영역의 북쪽 한계선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지만, 위치 비정은 결코 쉽지 않다. 濟紀의 溟河에 대해 학계에는 현재 大同江說, 禮成江說, 臨津江說 등이 개진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禮成江說이 가장 유력하다. 그러나 예성강은 대동강이나 임진강처럼 西流하는 江이 아니라 南流하는 江이기 때문에 溫祚王紀 13년조에서 보듯이 北界의 指標로 사용될 수 있는지가 의문일 뿐 아니라, 溫祚王 즉위년조 分註에 소개된 백제의 건국 설화에서처럼 帶水와 쉽게 並稱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그럼에도

29) 金起燮, 〈漢城時代 百濟의 王系에 대하여〉, pp. 22~23.

30) 李丙燾, 〈近肖古王拓境考〉, p. 509.

불구하고 일단의 연구자들이 濟紀의 涒河를 禮成江에 비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平山을 지나는 禮成江의 한 부분이 猪灘 一名 涒江으로 불렸기 때문이다.³¹⁾ 더욱이 統一新羅期에는 평산일대에 涒江鎭이 설치된 바 있으며, 禮成江 주변과 以西地域에 涒江道와 涒西道가 설치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濟紀의 涒河 또한 禮成江일 확률은 보다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禮成江의 古名이 猪灘으로 표기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涒江은 신라의 北境과 관련하여 禮成江이 후대에 얻은 명칭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猪灘의 일명인 涒江이 濟紀의 涒河 내지 涒水와 같은 곳인지도 불분명하거나와 濟紀 내에서 混用되는 듯이 보이는 涒水와 涒河가 같은 곳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역사상 등장하는 涒水の 위치 문제를 재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涒水라면 『史記』 「朝鮮傳」의 涒水, 곧 古朝鮮과 漢의 경계가 되었던 곳을 떠올리게 된다. 이때의 涒水에 대해서는 濊河, 大凌河, 遼河 등 中國 東北地方의 하천과 鴨綠江, 淸川江, 大同江 등 韓半島系 하천에 비정하는 견해들이 제각각 제기되어 있다. 이렇듯 諸說이 분분한 이유는 『史記』를 註釋한 中國史家들의 涒水에 대한 설명이 오히려 혼돈을 야기한 탓도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유력시되는 위의 한반도계 하천들이 일시 적이나마 涒水로 불린 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津田左右吉에 의하면, 漢代부터 晉初까지 樂浪軍이 존재할 때에는 涒水가 압록강을 지칭하였으나, 樂浪軍과 遼東軍이 멸망하고 高句麗가 그 지역을 장악하고부터는 점차 오해가 발생하여 南北朝時代에는 涒水가

31) 『東國輿地勝覽』 黃海道 平山都護府 山川.

대동강을 지칭하게 되었다고 한다.³²⁾ 漢代의 溟水가 과연 압록강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한가지 충분히 인정되는 바는 溟水の 위치가 시대에 따라 변했을 가능성이다. 그런데 그 명칭에서도 시사받을 수 있듯이 溟水는 中國측의 용어이다. 물론 古朝鮮 등 토착민들의 발음을 중국의 史家가 轉寫한 것일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여하튼 溟水가 일단 『史記』 등의 中國史書에 게재되고부터는 그 典據를 중국측에서 찾아야 하는 河川名이 되고 만 것이다.³³⁾ 여기에서 우리는 中國의 古書에 등장하는 溟水를 百濟측이 自國의 北境에 적용하였을 개연성을 생각하게 된다.³⁴⁾ 樂浪·帶方의 유민이 어느 정도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렇다면 溟水の 위치는 현재로서는 독립적으로 고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다른 기사·지명과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해야겠다. 다만 한가지, 溟河와 溟水가 같은 곳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濟紀 본문을 기준으로 할 때 溟河는 溫祚王 13년과 38년조, 近肖古王 26년조에서 확인되며, 溟水는 溫祚王 37년조,³⁵⁾ 阿莘王 4년조, 聖王 원년조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반면 麗紀에는 廣開土王 4년조(永樂 5년) 등에서 溟水만 발견된다. 성급한 판단일 수 있지만, 溟水와 溟河가 지리적으로 달랐는지는 현재로서는 판별이 불가능할 만큼 자료가 영성하다 하겠

32) 津田左右吉, 〈溟水考〉(『朝鮮歷史地理』 제1권, 1913), pp. 21~23.

33) 古代 中國인이 우리측의 地名을 대부분 音寫한 사실에 대해서는 都守熙, 『百濟語研究(Ⅰ)』(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7), pp. 159~161 참조.

34) 津田左右吉, 앞의 논문, pp. 24~25.

35) 帶水와 함께 거명되었다는 점에서 온조왕 즉위년조의 分註에 소개된 第2의 建國說話와 같은 표현이다.

으나, 涇河와 涇水의 史料가 달랐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 溫祚王代의 涇河는 領域限界線, 巡狩地域 등을 나타내는 명칭에 불과하며, 近肖古王代의 涇河戰鬪는 麗紀에 언급조차 되지 않은 기사이다. 다시 말하면, 濟紀의 涇河기사는 百濟 내부의 사정을 표현한 濟紀만의 기사라는 것이다. 그런데 涇水는 溫祚王代의 기사가 帶水와 병칭되는 매우 고전적 표현인 반면, 阿莘王·聖王代의 기사는 麗紀의 참고자료로 활용된 흔적이 있다. 특히 聖王代의 涇水기사를 감안하면 濟紀의 ‘涇水’는 중국측 자료를 참고한 듯한 느낌이 드는 등 작위적인 성격이 강한 기사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아무래도 涇河이다. 溫祚王紀에 北界의 指標로 소개되었을 뿐 아니라 近肖古王紀의 기사로 보더라도 百濟의 北境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涇河의 위치에 대해 近肖古王 26년조 기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전한다. 百濟가 高句麗의 남침을 패하에서 격퇴한 뒤 平壤城을 공격한 것이다. 이때의 平壤城이 지금의 평양을 칭하는 것이라면, 涇河는 분명 大同江 水系³⁶⁾에 비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阿莘王 4년조에서 보듯이 이미 關彌城 등을 빼앗긴 百濟가 高句麗를 공격할 때 廣開土王이 背水의 陣을 친 곳으로 소개된 涇水는 禮成江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일단 涇河와 涇水の 근거 사료와 실제 위치가 모두 달랐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涇河와 涇水가 같은 곳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涇河 혹은 涇水라는

36) 필자는 戴寧江, 瑞興江, 黃州川 등 대동강 본류에 유입되는 인근의 大·小 하천까지를 포함하여 ‘大同江 水系’라는 명칭을 사용하겠으며, 특히 위의 세 하천은 따로 ‘大同江 南部 水系’라고 통칭함으로써 餘他の 支流와 구분하겠다.

하천명이 百濟 내부에서도 시대에 따라 유동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平壤城: 기록에 의하면, 역사상 平壤으로 불린 곳은 대동강 연안의 평양시와 한강유역의 서울시 북부지역에 한정된다.³⁷⁾ 前者가 평양으로 불린 것은 史에 분명하고 또 고구려의 後期 首都가 되었던 곳이므로 따로 설명이 필요치 않다. 後者는 史記「地理志」(2)에 “高句麗의 北漢山郡으로 平壤이라고도 한다”는 설명으로 보아 高句麗가 한강유역을 차지한 이후에 생긴 명칭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평양은 高句麗의 남하와 함께 파생된 傳統 地名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後者는 대략 長壽王代 이후에야 평양이라는 명칭을 얻은 것이므로, 近肖古王 26년조, 近仇首王 3년조의 평양성과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한편, 기록은 없지만, 平北 江界라든가 황해도 載寧지역을 平壤 내지 南平壤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 李丙燾는 麗紀 東川王 21년(247)조의 “築平壤城 移民及廟社”와 故國原王 13년(343)조의 “移居平壤東黃城”이 평양에 樂浪郡이 아직 건재할 때이거나 高句麗가 國內城에 定都한 무렵의 기사라는 점을 들어 국내성 東岸의 平北 江界지역이 한 때 平壤城 혹은 平壤 東黃城 등으로 불리며 高句麗의 別都로서 기능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³⁸⁾ 그러나 그의 추정은 ‘國內城의 對岸=平壤東黃城?’이 최대의 이유가 되었던 만큼, 다소 막

37) 平壤이 ‘퍼라’의 假音이며, 역사상 많은 ‘平壤’이 전래되어 왔음은 이미 申采浩에 의해 지적된 바인데, 本稿에서는 한반도내를 대상으로 史記「地理志」에 확연히 소개된 평양만을 거론하였다. 申采浩, 〈平壤淚水考〉(『韓國史研究草』, 乙酉文化社, 1974), pp. 61~92 참조.

38) 李丙燾, 〈高句麗東黃城考〉(『韓國古代史研究』, 1985)

연한 감이 있다. 따라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는 최근 徐永大,³⁹⁾ 孔錫龜⁴⁰⁾ 등에 의해 보강되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강계 부근의 禿魯江邊에 다수의 積石塚이 조영된 사실, 東川王代와 故國原王代 초기에는 평양지방에 樂浪郡 잔존세력이 遺存하였던 사실 등을 예로 들면서 故國原王 13년조의 ‘平壤’과 41년조의 ‘平壤城’을 구분하여 前者는 江界, 後者는 지금의 平壤에 비정하였다. 이 같은 추정에 대해 필자로서는 현재 시비를 가릴 만한 적절한 기준을 찾지 못하였지만, 禿魯江이 國內城 인근의 하천이라는 점과 故國原王代の 평양에 대한 구분이 다분히 작의적이라는 점에서 의문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여하튼 故國原王 13년조의 평양이 설혹 강계 근방에 비정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미리 구분하였듯이 故國原王 41년조의 평양성은 오늘날의 평양에 비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近肖古·近仇首王이 침입한 평양성과 강계는 무관한 지명이 된다. 이에 비해 최근 손영종이 黃海道 載寧郡내의 長壽山城과 그 남쪽의 도시유적을 高句麗의 南平壤城 및 南平壤으로 지목한 것은 주목되는 바 적지 않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⁴¹⁾ 371년 百濟가 공격한 평양성은 지금의 평양시가 아니라 長壽山城 등의 南平壤城인바, 첫째로 安岳 3號墳과 같은 高句麗의 왕릉급 고분들이 4세기 중엽에 안악지방에 건설되었다는 것은 이 지역이 高句麗의 공고한 후방이었음을 말해주는 증좌이며, 둘째로 禮成江 근처에서 전투를 벌이던 百濟가 공격할 수 있었던 평양성은 지리

39) 徐永大, 〈高句麗 平壤遷都의 動機〉(『韓國文化』 2, 1981), pp. 87~96 참조.

40) 孔錫龜, 『高句麗의 領域擴張에 대한 研究—四世紀를 中心으로』(충남대 박사학위논문, 1991), pp. 117~123 참조.

41) 손영종, 『고구려사』(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pp. 174~187 참조.

상으로 遂安-瑞興-載寧線을 넘을 수 없으므로, 자연히 近肖古王이 공격한 평양성은 재령지방에 비정된다는 것이다. 그가 주목한 장수산성과 그 남쪽의 도시유적은 北流하는 재령강의 서쪽 인근에 위치하는데, 장수산성은 장수산(해발 745m)의 7개 봉우리를 이용하여 서쪽의 內城과 동쪽의 外城으로 나뉘는 둘레 10km 크기의 대규모 성곽이며, 남쪽의 도시유적은 하천을 끼고 대략 10km² 미만 지역에 각종 기와집, 돌·흙담, 도랑시설을 구획한 대규모 도시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도시유적 부근에는 石室墳 등 1,000여 기의 고분이 각기 무리를 이루며 분포한다 하니, 손영종의 載寧=南平壤說은 나름의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다만 한 가지 약점은 문헌에서는 載寧을 (南)平壤으로 비정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인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 않다. 즉, 『東國輿地勝覽』 등에 의하면 載寧이 漢城으로도 불리워졌는바, ‘北漢山郡=平壤’을 감안할 때, ‘漢城=平壤’이라는 圖式조차 허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載寧=南平壤說은 많은 매력을 갖고 있어, 近肖古王 26년조, 近仇首王 3년조의 平壤城 해석에 난점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매력에도 불구하고 載寧=南平壤說이 풀어야 할 의문은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만일 安岳 3號墳의 피장자가 美川王이나 故國原王이라면 당시의 안악지방을 ‘高句麗의 공고한 후방’으로 인정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冬壽墓說이 갖는 강점도 많아, 안악지방 고분군의 성격을 근거로 삼기에는 이른 듯하다.⁴²⁾

:

42) 안악 3호분의 피장자에 대한 연구사적 정리는 姜仁求, 〈安岳3號墳의 主人公에 대한 論議〉(『北韓의 韓國學研究 成果分析』, 정신문화연구원, 1991)

더욱이 손영종이 두번째 근거로 삼은 것은 高句麗-百濟의 경계가 예성강이었다는 학계의 통념인데, 이는 앞의 「淚河」項에서 보았듯이 매우 불안한 추정에 불과하여서, 출발 자체가 일단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그가 인정하였듯이 載寧은 高句麗 말기의 漢城인바, 지금의 서울지방에 있던 百濟 이래의 漢城(北漢山郡)이 후퇴한 지명일 확률이 높다. 그는 載寧에 있던 南平壤이 高句麗의 南進과 함께 百濟의 漢城으로 옮겨갔다고 하였으나,⁴³⁾ 이는 어떠한 증거 자료도 제시할 수 없는 단순한 추정에 불과할 뿐이다. 高句麗의 후기 수도가 平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劔牟岑이 安勝과 함께 부흥활동을 벌인 載寧은 평양 혹은 남평양으로 불리지 않고 漢城으로 불리었다. 만일 長壽王 15년(427)의 平壤遷都가 지금의 평양에 대한 최초의 천도였다면, 그 이전에 南平壤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제약이다.⁴⁴⁾ 장수산성과 도시유

가 참고된다. 故國原王陵說에 동조한 위의 논문에서는 남·북한과 일본, 중국 등 관련 학계의 학설을 대부분 소개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북한은 王陵說, 나머지 학계는 대체로 冬壽墓說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孔錫龜는 현재의 평양지방조차도 고국원왕 13년(343) 이후에야 비로소 고구려가 직접 경영을 추진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물론 안악 3호분을 冬壽墓說의 입장에서 파악한 결과인데, 그는 이 밖에도 平壤·安岳·信川 등지의 각종 塼築墳과 石室墳에서 발견된 銘文을 근거로 삼아, 樂浪·帶方郡의 멸망 후에도 4세기 중반까지 이들 지역에는 여전히 중국화된 토착민 혹은 이주한 중국인들이 독자의 정치력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孔錫龜, 위의 논문 참조.

43) 손영종, 위의 책, p. 178.

44) 다만, 廣開土王陵碑의 永樂 9년(399)조 “王巡下平壤”에서 下平壤이 지명일 수 있다면, 광개토왕 무렵의 南進과 함께 南平壤(下平壤)이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이 같은 시각에서는 載寧=南平壤說이 지니는 매력의 무게도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근초고왕대를 벗어난 시점일 뿐이다.

적도 비록 4세기 이후의 高句麗 유적이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은 5~7세기에 해당된다고 한다. 그래서 손영종도 “이곳이 4세기 초엽, 늦어도 중엽부터는 고구려 남방의 큰 지방중심지로 건설되기 시작하였으며, 나중에는 별도의 하나로서 일정한 도시건설계획 밑에 건설되었다”⁴⁵⁾는 다소 애매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안악 3호분의 高句麗 왕릉 가능성을 인정할지라도, 현재로서는 장수산성을 高句麗의 남평양, 혹은 371년에 百濟 近肖古王이 공격한 高句麗의 평양성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그것은 雉壤戰鬪에서 패한 高句麗軍이 ‘水谷城之西北’으로 도망하였다는 近仇首王 즉위년조의 기사를 참고할 때 보다 분명해진다. 즉, 뒤에서 보듯이 이때의 수곡성이 지금의 新溪지역임은 史上에 분명한바, 장수산성이 高句麗軍의 전진기지인 평양성이었다면 高句麗軍에 대한 百濟의 추격 한계점이 ‘水谷城之西北’으로 표기될 일은 만무한 것이다. 이 같은 이해 속에서 필자는 일단 近肖古王 26년조, 近仇首王 3년조의 평양성을 지금의 평양시에 비정한다.

水谷城 : 近肖古王 30년조에 “北邊의 水谷城”이라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近仇首王 즉위년조에는 近仇首가 太子일 때 半乞壤에서 高句麗의 침략군을 물리치고 水谷城의 서북쪽까지 쫓았다는 기사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水谷城이 백제의 北境에서 가까운 곳임을 알 수 있다. 또 阿莘王 3년에도 水谷城에서의 전투기사가 있는데, 이때는 이미 水谷城을 高句麗에 빼앗긴 뒤였던 듯하다. 史記「地理志」(2)에서는 永豐郡의 領縣인 俠溪縣이 본래 高句麗의 水谷城縣이었다 한다. 『東國輿地勝覽』黃海道 新溪縣 古蹟條

45) 손영종, 위의 책, p. 182.

에도 같은 말이 소개되어 있다.

半乞壤：近仇首王之 즉위년조에 단 한 번 등장하는 지명인데, 아마도 水谷城의 서남방에 있었던 듯하다. 李丙燾에 의하면 ‘밖을 내’를 音寫한 것으로 雉壤과 異名同處이니, 지금의 白川에 비정된다고 한다.⁴⁶⁾

都坤城：辰斯王 2년조의 靑木嶺이 開城 북방에 비정될 수 있다면, 진사왕 6년조의 都坤城은 지금의 황해도 방면일 가능성이 높으나, 정확한 위치는 미정이다.

石峴城：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羅紀 文武王 15년조의 “唐兵이 契丹·靺鞨兵과 함께 七重城을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靺鞨이 또 赤木城을 에워싸고 滅하니… 唐兵이 또 石峴城을 에워싸고 빼앗으니…”라는 기사를 참고하면 七重城 등과 비슷한 緯度에 위치한 지역의 軍城으로 볼 수 있다. 또한 阿莘王 2년조 기사에 따르면 關彌城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서해안에서 멀지 않은 지역, 곧 開豐 등지에 비정될 수 있겠다.

關彌城：高句麗 廣開土王之 百濟 정벌과 관련하여 초미의 관심을 모으는 城으로서, 廣開土王陵碑의 關彌城과 동일시되고 있다.⁴⁷⁾ (A)에서 본 關彌嶺과의 친연성이 인정된다면, 예성강 부근의 城으로 보아 무방하겠다.

靑木嶺：(A)에서 본 靑木山과의 친연성이 인정되므로 開城 북

46) 李丙燾, 〈近肖古王拓境考〉, p. 509.

47) 關彌城의 위치에 대해 지금까지 학계에는 喬桐島說, 江華島說, 禮成江河口의 姑味浦說, 金川 助邑浦說, 坡州 烏頭山城說 등이 개진되어 있다. 尹日寧, 〈關彌城位置考〉(『北岳史論』 2, 1990) 참조.

부의 靑石洞 근방에 비정할 수 있겠다.

위에서 분석한 지명 가운데 都坤城 이하는 진사왕 이후의 기사이므로 근초고왕대의 영역에 관해 직접적 도움은 되지 못한다. 고구려는 고국원왕이 전사한 이후 小獸林王代(371~384)를 거치면서 체제를 정비하는 등 국가의 면모를 일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故國壤王, 廣開土王, 長壽王, 文咨明王으로 이어지는 고구려 最大の 盛期를 맞이하게 된다. 반면 백제는 근구수왕(375~384) 말년부터 점차 기세가 꺾이기 시작하여 枕流王이 재위 2년 만에 薨去하고 진사왕이 왕위를 찬탈하였다가 재위 8년에 政變으로 客死하는 등 국내 정세가 자못 불안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급기야 아신왕대에는 太子腆支를 倭國에 볼모로 보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고구려의 일방적인 공세에 줄곧 시달렸다. 따라서 北境에 관한 한 근초고왕대는 백제 최대의 관도를 자랑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터인데, 그것은 太子 近仇首가 敗退하는 高句麗軍을 쫓아 北上한 다음 “今日之後 曷克再至於此乎”⁴⁸⁾하였던 데에서도 비교적 분명하다.

(D) 其他 地名

주변 세력과의 交戰地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築城·巡狩記事에 등장하는 지명만을 추출하였는데, 무엇보다 백제의 확실한 영토라는 점에서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 10여 개의 지명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 있으므로, 나머지 5개의 지명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았다.

48) 濟紀 近仇首王 即位年條.

石頭城：溫祚王 22년 高木城과 함께 축조되었다고 하는데, 高木城은 보통 漣川에 비정되고 있으므로, 석두성 또한 주변지역에 비정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앞서 (C)에서 살펴본 石峴城과 근접한 城임을 알 수 있다.

斧壤：史記「地理志」(2) 漢州 富平郡條와 『東國輿地勝覽』 江原道 平康縣 建置沿革條 등에 의하면 平康縣이 곧 高句麗의 斧壤縣이라 한다.

八坤城：位置 不明. 다만 辰斯王 2년조로 보아 靑木嶺의 서북방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雙峴城：서해안 근처의 軍城으로 생각되나, 위치는 未詳.

沙口城：廣開土王陵碑의 沙水城과 인접한 城으로 생각되는데, 이 2城은 모두 지금의 楊州 북부에 설치되었던 高句麗의 內乙買縣에서 과히 멀지 않았다고 생각되므로, 楊州 북부지역에 비정될 수 있겠다.

百濟가 靑木嶺－八坤城－西海를 잇는 關防을 설치한 辰斯王 2년(386)은 高句麗가 왕자 談德(광개토왕)을 태자에 임명하고 남쪽으로 百濟를 침벌한 故國讓王 3년이다. 전년에 이미 後燕을 공격하여 요동·현도를 함락시키기도 하였던 고구려의 군사력에 대해 百濟는 심히 위협을 느꼈을 것이며, 그 결과가 아마도 關防設置로 나타났을 터이다. 그리고 近肖古王代の 지명과 비교할 때 辰斯王代の 지명은 상대적으로 남방의 것임이 분명하므로, 百濟의 北境 또한 그 사이 南下하였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여기의 八坤城 등은 그러한 각도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3. 近肖古王代の 北方經營

앞에서 단편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近肖古王 24년경 百濟는 이미 雉壤을 확보한 상태였다. 그렇다면 당시 百濟의 北界는 雉壤이북의 어느 지점이었을 터인바, 이는 오늘날의 예성강 서부지역, 황해도 일부가 백제의 영역이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近仇首王 즉위년조에 의하면 왕이 태자일 적에 이미 백제는 예성강 상류역의 水谷城을 확보한 상태였다. 近仇首王이 과연 언제 태자에 책립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근초고왕 24년 이전인 것만은 분명하므로, 태자 근구수가 수곡성의 서북쪽까지 고구려군을 추격한 사건도 아마 이 무렵의 일이라 짐작된다. 더욱이 고구려왕 斯由(故國原王)가 직접 南侵하였다는 점에서도 두 기사는 완전히 일치한다.⁴⁹⁾ 그렇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근초고왕 24년경 백제가 예성강 상·하류역을 거의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아도 무방하겠다.

이 같은 전제하에 近肖古王 24년조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된다. 고구려가 군사 2만으로 백제를 공격하여 半乞壤, 곧 雉壤에 주둔하면서 주변의 民家를 侵奪하므로 백제가 급히 구원군을 보내 이를 격퇴하는 동시에 북방으로 진격하였는바, 그 북방 한계 지점이 바로 水谷城의 서북쪽이었다. 여기서 마땅히 주목

49) 李丙燾에 따르면 근초고왕 24년과 근구수왕 즉위년조는 동일한 사건을 혹은 간략하게 혹은 상세하게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李丙燾, 〈近肖古王拓境考〉, p. 509.

해야 할 점은 예성강 상류의 수곡성이 이미 백제의 軍城이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고구려군이 백제의 군성이 있는 쪽으로 후퇴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물론 雉壤(白川)이 예성강의 서쪽 지역인 반면, 水谷城(新溪)은 예성강의 동쪽 연안에 위치한다. 또한 근구수왕 즉위년조의 ‘水谷城之西北’은 얼핏 보기에 마치 수곡성 근처의 지점인 듯 오인될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전체 2만의 병사가운데 5천여 명이나 백제에게 사로잡힐 정도로 타격을 받은 고구려군이 退路마저도 백제의 군성이 있는 예성강 연안으로 선택할 만큼 무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그 길은 고구려의 前進基地가 설치되었을 平壤으로 향하는 길목도 아니지 않은가? 여기에서 우리는 고구려군의 退路가 예성강유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직감하게 된다. 그리고 예의 ‘水谷城之西北’에 대해서도, 당시 “나중에 누가 다시 여기에 이를 수 있을까” 하고 만족감에 가득찬 자랑을 늘어놓을 정도로 北進하였던 백제 근구수왕의 위업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명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인 방법이었음을 생각할 때, 水谷城이 백제의 最北方 軍城이었던 만큼 地理的 遠近을 떠나서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백제군의 최북방 진격지, 곧 수곡성 서북쪽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을 말한 것일까? 단순하게 생각하여, 우선 위도상으로 오늘날의 新溪보다 북방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성강유역에서 적지않이 벗어난 지점이어야 한다. 또 고국원왕의 남하 전진기지인 평양으로 돌아가는 길목일 확률이 무엇보다 높다. 이렇게 따지면 황해도 鳳山, 瑞興 등지가 가장 유력하다. 서흥

의 대현산성은 황주·재령·평산·신제를 잇는 지리적 요충에 자리 잡은 둘레 약 7km의 대규모 산성이며, 봉산의 휴류산성, 태봉산성 또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4세기대의 고구려 산성이다.⁵⁰⁾ 당시 敗退하던 고구려군이 딱히 위의 山城들을 통과하였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처럼 4세기대의 고구려 산성들이 길목을 지키는 서흥, 봉산 등지가 백제의 군성이 위치한 예성강 상류역보다는 선호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근초고왕 26년(371), 백제는 왕과 태자가 정병 3만을 이끌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이때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맞아 싸우다가 전사하였음은 다 아는 바와 같은데, 아무리 3萬의 大軍이라 하더라도 백제가 고구려의 남진기지인 평양을 직접 공격할 정도이고 보면, 당시 백제의 北境이 禮成江線이어서는 평양 공격 자체가 설명이 곤란해진다. 만약 백제의 북경이 예성강선이었다는 학계의 통념을 최대한 수용하여 백제군의 북진 근거지를 예성강 상류역의 수곡성 일대로 추정하더라도 鳳山, 瑞興, 黃州 등지가 敵陣인 상태에서의 평양성 공격은 위험천만의 작전이 아닐 수 없다. 똑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일지라도 고구려의 雉壤공격과 백제의 平壤공격은 水軍, 곧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天壤之差이다.

근초고왕은 평양성 공격에 바로 앞서 來侵하는 고구려군을 溟河에서 伏兵으로 격퇴하는 전과를 올렸는데, 여기의 패하는 아마도 고구려와 백제의 경계를 이루는 하천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溟河戰에서의 승리와 그 해 겨울의 평양성 공격은 밀접한 연관을

50) 손영종, 위의 책, pp. 184~185 참조.

맺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濟紀 내의 여타 기사에 등장하는 涇河 혹은 涇水의 위치가 어디였는지와는 상관없이 근초고왕 26년조의 涇河만큼은 평양성전투를 기준삼아 비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같은 전제하에 漢城 이북과 平壤 이남의 하천들을 검토하면, 예성강은 평양성을 공격하기에는 지리적으로 부적당하다는 사실이 보다 분명해진다. 상류역인 水谷城에서의 평양성 공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험 천만의 작전이며, 중·하류지역으로부터의 평양성 공격 또한 같은 이유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평양성 바로 코 앞의 대동강을 패하로 보는 것도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평양성 공격 이전에 황해도 북부지역에서의 전투기사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점에서도 그러하지만, 무엇보다 불과 2년전에 수곡성 서북지역을 최대의 관도로 자랑할 만큼 당시 백제의 北界가 평양성에 근접하지 못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예성강은 물론이고 평양을 지나는 대동강마저도 근초고왕 26년조의 패하가 아니라면, 당시의 패하 비정은 과연 불가능해지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패하 비정의 열쇠가 ‘水谷城之西北’에 있다고 본다. 근초고왕 24년경 수곡성이 최북단의 백제 군성임을 감안할 때, 근초고왕 26년조의 패하는 수곡성과 비슷한 위도상의 하천이어야 하며, 또한 평양성의 정남방을 가로지르는 하천이어야 한다. 문제를 이렇게 이해할 경우, 크게 보아 大同江 水系이면서도 평양 방면의 대동강과는 백여 리 이상의 거리차를 보이는 載寧江 水系가 주목된다. 재령강은 瑞興江 등 황해도의 중부지역을 가로지르는 몇몇 하천들을 鳳山 등지에서 수합한 다음 北流하여 黃州 근방에서 黃州川과 함께 대동강 하류에 유입

되는 하천이다. 또한 그 북방의 황주천은 대략 瑞興 북부지역을 西流하여 황해도 황주에서 대동강에 합류하는 小河川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濟紀의 溟河가 오늘날의 대동강이나 예성강에만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유동적일 수 있는 하천명이며, 또 근초고왕대의 北界가 예성강을 넘어섰으되 평양 일대에는 미치지 못했음이 분명한 이상, 위의 載寧江 水系는 꽤나 비정 대상으로 마땅히 주목되어야 한다.(<그림 1> 참조)

우리는 앞에서 백제의 對말갈 전투 지명이 오늘날의 延白, 平山, 金川 등지에까지 비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때의 말갈이 과연 언제 어떻게 활동하던 세력이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이 또한 백제의 北界를 알려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접근하면, 백제의 北界가 가장 北上한 시기였던 근초고왕대에는 이들 지역이 모두 백제의 영역으로 편입되었어야 한다. 더욱이 濟紀 초기의 말갈은 樂浪·帶方郡이 존재할 당시의 세력이 아닌가? 그렇다면 근초고왕 26년경 백제는 이미 滅惡山脈을 넘어 北進하였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고구려는 美川王 14년(313)에 낙랑군을 멸망시켰으며, 다음 해에 대방군을 침략하였다. 바야흐로 고구려의 남하가 본격화의 조짐을 띠기 시작한 것이다. 이 무렵의 백제는 비류왕 10년과 11년에 해당하는데, 주변 정세가 이렇듯 급박하게 진행되는 데도 濟紀는 한가롭게 국내의 크고 작은 일상사에만 기사를 할애하고 있어 麗紀와 대조를 이룬다. 하긴 濟紀가 이때만 그런 것은 아니다. 比流王紀 내내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함구하고 있다. 많은 사건이 누락되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의

고찰 결과에 따르면⁵¹⁾ 伯濟는 비류왕대에 북방의 古爾系를 통합하였다. 그리고 고이제는 통합되기 전에 서북방의 낙랑·대방군과 상당히 우호적이고도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통합된 뒤에는 漢文化를 백제에 內在化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백제가 과연 고구려의 본격적인 낙랑·대방지역 공격을 좌시하고만 있었을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례는 위의 물음에 대한 직·간접적인 해답이 될 것이다.

고구려는 고국원왕 25년(355)에 前燕으로부터 樂浪公高句麗王에 冊封되었다.⁵²⁾ 고구려의 前燕에 대한 修貢受爵 동기가 341년의⁵³⁾ 大戰亂에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거니와,⁵⁴⁾ 필자가 중시하는 대목은 고국원왕이 다름아닌 ‘樂浪公’에 책봉되었다는 사실이다. 고국원왕의 아버지 미천왕이 바로 樂浪郡 併呑의 주역이었음을 감안하면, 아무리 이 시기의 책봉이 형식적이었다고는 하나, 前燕의 고국원왕에 대한 ‘樂浪公’ 책봉은 나름의 이유가 충분하다고 볼 만하다. 즉, 책봉된 고구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前燕은 고구려의 옛 낙랑군 지역 領有라는 현실에 대한 일종의 전통·형식적 추인을 실행하였던 것이다. 여하튼 고구려의 이 같은 책봉 사실은 對백제 외교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였을 터임이 어렵지 않게 짐작된다.

51) 金起燮, 〈漢城時代 百濟의 王系에 대하여〉 참조.

52) 『晉書』 「載記」10 慕容儁; 麗紀 故國原王 25년조.

53) 『晉書』와 『魏書』는 慕容皝의 고구려 丸都 침입을 341년이라 하였으며, 『資治通鑑』과 『三國史記』는 342년이라 하였다. 필자로서는 현재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지만, 일단 慕容皝載記가 있는 『晉書』 등의 기록을 취한다.

54) 이에 대해서는 江畑武, 〈4~6세기의 조선 삼국과 일본〉(『고대 한일관계사의 이해-倭』, 이론과 실천, 1994) 참조.

이후 고구려는 前燕과의 관계를 끊게 되며, 따라서 책봉도 없었다. 고구려가 다시 책봉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광개토왕 5년(395)이며, 대상은 後燕이었다. 이때 광개토왕은 遼東帶方二國王에 책봉되었다.⁵⁵⁾ 주지하는 바와 같이 광개토왕은 아버지 고국양왕을 이어 왕위에 오른 직후부터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한 高句麗史의 英傑이다. 그가 재위기간 내내 對백제 전투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였음은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거니와, 책봉 전후만 하더라도, 395년 8월에 백제와 싸워 8천여 명을 虜獲하였으며, 다음 해에는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백제의 상당지역을 攻取하고 백제 아신왕의 屈從을 받아내었음은 앞에서 이미 간단하게 살펴본 바 있다. 이때 고구려의 南境이 과연 어디였는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이른바 帶方國王을 칭하기에 손색이 없었을 것임은 넉넉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광개토왕대의 책봉 성격에 대한 문제와는 별개로, 책봉 지역에 대한 현실적 배려가 어느 정도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하겠다.⁵⁶⁾

그렇다면 근초고왕이 재위 27년(372)에 東晉으로부터 받은 鎮東將軍領樂浪太守도 당연히 위와 같은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⁵⁷⁾ 비록 東晉이 낙랑지역에 대해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었고, 따라서 ‘領樂浪太守’가 그야말로 虛名이라 할지라도, 바로 전해에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백제에게 ‘領樂浪太守’라는 칭호를 준 것은 東晉으로서는 어찌보면 지극

55) 『梁書』「諸夷傳」高句麗.

56) 江畑武, 앞의 논문, pp. 367~368 참조.

57) 『晉書』「簡文帝紀」咸安 2년조.

히 당연한 일이었다. 이는 진사왕이 재위 2년(386)에 받은 爵號와 비교할 때, 보다 확연해진다. 辰斯王(餘暉)은 386년에 東晉으로부터 使持節都督鎮東將軍百濟王에 被封되었다.⁵⁸⁾ 授爵者가 똑같은 東晉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10여 년 만에 樂浪太守職이 삭제된 것이다. 만일 ‘樂浪太守’라는 칭호가 형식만 갖추는 虛號였다면, 이 같은 변화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진사왕 2년의 樂浪太守職 삭제가 이미 근구수왕 말년부터 진행되어 온 백제의 세력 약화와 밀접히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백제가 잃어버린 ‘樂浪太守’職은 얼마 후 고구려의 ‘樂浪公’ 제수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고구려는 장수왕 원년(413)에 東晉으로부터 使持節都督營州諸軍事征東將軍高句驪王樂浪公에 책봉되었으며,⁵⁹⁾ 東晉이 멸망한 뒤에는 장수왕 8년(420)에 宋으로부터 使持節都督營州諸軍事征東大將軍高句驪王樂浪公에 제수되었다.⁶⁰⁾ 이에 비해 백제는 전지왕 12년(416)에 東晉에게서 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鎮東將軍百濟王, 그리고 同王 16년, 곧 구이신왕 원년(420)에는 宋으로부터 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鎮東大將軍百濟王에 제수되었을 뿐이다.⁶¹⁾ 이처럼 중국측의 책봉 칭호에 의거하는 한, 적어도 4~5세기 초 낙랑지역에서의 고구려·백제 대립은 고구려측의 전반적인 우세 속에 근초고왕대 백제의 일시적 우위라는 시대 상황을 다소나마 분명하게 추출할 수 있는 것이다.

근초고왕대의 세력·영역 확장과 관련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

58) 『晉書』「孝武帝紀」大元 11년 4월조.

59) 『宋書』「夷蠻傳」高句驪國.

60) 『宋書』「武帝本紀」永初 원년 7월조.

61) 『宋書』「夷蠻傳」百濟國.

야 하는 것이 바로 백제의 遼西經略說이다. 백제가 遼西地方에 진출하였다고 믿는 연구자의 대부분은 그 진출 시기를 370년대 전후로 보고 있거니와,⁶²⁾ 이는 다름아닌 근초고왕의 재위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遼西進出說의 주된 근거 사료라 할 수 있는 『宋書』 「夷蠻傳」 百濟國條와 『梁書』 「諸夷傳」 百濟條에 의하면 ‘晉代에 고구려가 遼東을 攻取하자 백제도 遼西를 攻取하여 다스렸다’고 하는데, 이때의 ‘百濟’가 梁의 元帝(552~554) 蕭繹이 荊州刺史로 재임하던 중(526~536) 작성하였다는 「職貢圖」에는 ‘樂浪’으로 표기되어 있어 遼西進出說 비판의 중요 자료가 되고 있기도 하다. 현재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필 만한 여유가 없으므로 세세한 언급은 피하겠지만, 백제의 北境과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樂浪’과 ‘百濟’가 혼동을 일으킬 만큼 매우 밀접한 사이였을 가능성이 위의 자료를 통해 감지된다는 사실이다.

서기 전 108년에 설치된 대동강 연안의 樂浪郡은 서기 313년 고구려의 공격으로 일단 멸망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 낙랑군이 완전 소멸한 것은 아니다. 고구려의 대대적인 침공을 앞두고 樂浪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1千餘家가 이미 張統의 인솔하에 大凌河방면으로 옮겨갔으며, 이에 따라 慕容氏 治下의 새로운 낙랑군이 요서지방에 탄생하였기 때문이다.⁶³⁾ 이 요서지방의 낙랑군은 5세기 전반에 다시 일부가 河北省 天津방면으로 강제 이주되는 등 점차

62) 백제 遼西進出說의 연구사적 정리 및 내용·문제점에 대해서는 姜鍾薰, 〈백제 대륙진출설의 제문제〉(『韓國古代史論叢』 4, 1992)가 참고된다.

63) 『資治通鑑』 「晉紀」 10 愍帝 建興 원년 4월조.

감소 추세에 있다가 6세기 말경에야 완전 폐지되었다고 한다.⁶⁴⁾

樂浪郡이 4세기 이래 요서지방에 존재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晉末에 樂浪이 遼西 晉平縣을 소유하였다’는 「職貢圖」의 설명은 어느 정도 신빙성을 확보한 셈이다. 그리고 「職貢圖」의 기사가 사실에 가까운 것이라면, 내용은 유사하되 주체만 다른 『宋書』·『梁書』의 기록은 착오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⁶⁵⁾ 그러나 백제에 대해 설명하던 중 느닷없이 樂浪의 행적을 거론한 「職貢圖」의 기사는 무언가 어색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또한 『晉書』 「慕容皝載記」라든가 『資治通鑑』 「晉紀」(穆帝 永和 2년조)를 보더라도 『宋書』·『梁書』의 단순한 착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따라서 「職貢圖」의 ‘樂浪’이 ‘百濟’의 잘못이 아닌 한, 이 둘을 따로 떼어 생각하기보다는 낙랑과 백제 사이에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이른바 연결고리의 핵심은 대동강유역 낙랑군의 멸망과 大凌河 방면 낙랑군의 신설에 있다고 본다. 단순한 추정에 불과하지만, 313년 대동강유역의 낙랑군이 고구려의 공격으로 무너진 이후 상당수의 유민세력은 백제에 흡수되었을 터이다. 이는 수대에 걸친 백제와 대방군의 친밀성이라든가 『南齊書』 「百濟傳」에 백제측 사신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의 姓이 대부분 中國式인 데에서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⁶⁶⁾ 그렇다면 한반도에 잔존한 유민들과

64) 樂浪·帶方郡의 置廢에 대해서는 千寬宇, 〈灤河 下流의 朝鮮—中國 東方州郡의 置廢와 관련하여〉(『史叢』 21·22, 1977) 참조.

65) 俞元載, 〈百濟略有遼西記事의 分析〉(『百濟研究』 20, 1989), pp. 110~111.

66) 姜鍾蕪, 앞의 논문, p. 418 참조.

大凌河방면으로 이주한 樂浪郡民 사이에 일종의 연대감이 상당기간 유존했을 터인바, 바로 이러한 심리적·혈연적 연대감을 백제측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았을까? 더욱이 「職貢圖」에서 지적인 ‘晉末’이 東晉의 簡文帝(371~372), 孝武帝(373~396), 安帝(397~418) 무렵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고 東晉으로부터 ‘領樂浪太守’에 제수된 것도 이 시기이므로, 그 같은 각도에서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이 문제에 대한 詳論은 후일을 기약하지만, 만약 『宋書』 등이 전하는 百濟의 遼西進出이 樂浪의 移置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이라면, 그것은 ‘근초고왕대의 大同江 南部 水系 확보’라든가 ‘樂浪故地 領有’를 방증하는 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다.

4. 領域確定과 ‘始有書記’

지금까지 필자가 논한 ‘近肖古王代 大同江 水系 進出’이 얼마간의 타당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온조왕대의 영역 확정 기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濟紀 온조왕 13년조의 영역 확정 기사는 근초고왕 26년조와 마찬가지로 溟河를 北界로 지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濟紀에 따르면, 온조왕대의 영역은 근초고왕대의 영역과 별반 차이가 없다. 온조왕대에는 영토가 ‘北至溟河’였으며, 근초고왕대에도 또한 패하가 당시의 변경이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溫祚王紀의 溟河와 近肖古王紀의 溟河가 同名異處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濟紀에서 단지 3회만 거론된 涓河가 모두 溫祚王紀와 近肖古王紀의 것이며, 또한 여타의 王紀에 등장하는 涓水와는 용어상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그럴 가능성은 현저하게 희박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낙랑·말갈의 침입을 견디지 못하여 遷都를 단행할 정도로 苦戰한 온조왕대의 北界와 낙랑이 멸망한 뒤 고구려에 연전연승하며 영역 확장을 모색하였던 근초고왕대의 北界가 거의 같은 지역으로 묘사된 濟紀의 기사에 대해 일단 깊은 의구심을 표명할 수 있겠다.

濟紀의 이 같은 구도는 자체의 모순을 확연히 드러내는 것 이상의 아무런 의미도 없다. 溫祚王紀에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우리는 대체로 두 가지 방향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완전 造作, 아니면 後代 史實의 遡及附會. 만약 온조왕대의 涓河관련 기사가 사실성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완전 조작에 불과하다면 더 이상의 논의는 필요치 않다. 그러나 溫祚王紀의 涓河는 영역 확정이라든가 巡狩에 관한 것이다. 영역 확정 기사는 다소의 의혹을 허용한다 할지라도 순수기사의 조작은 사실상 불필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後者, 곧 後代 史實의 遡及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해야 하겠는데, 涓河의 出現處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後代’란 다름아닌 近肖古王代가 되어야 마땅하다.

근초고왕은 외교·문화면에서 거대한 足跡을 남긴 왕이다. 372년 東晉과 冊封關係를 맺음으로써 본격적인 對중국 교류의 서장을 열었으며,⁶⁷⁾ 博士 高興을 등용하여 ‘書記’를 갖추 만큼 고급

67) 李基東에 의하면 백제는 이미 고이왕대부터 중국과 교류하였다고 한다.
李基東, 〈馬韓領域에서의 百濟의 成長〉(『馬韓·百濟文化』 10, 1987), p. 60.

문화를 향유한 백제사의 英傑이었다. 樂浪·帶方郡이 東方 諸族의 문화 욕구를 교묘히 이용함으로써 그들을 통제한 先進 中國의 郡縣이었음을 상기한다면, 東晉과의 교류를 통해 ‘領樂浪太守’에 책봉된 근초고왕대의 높은 문화 수준은 짐작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근초고왕대의 ‘始有書記’도 아마 이 같은 각도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濟紀는 이 같은 근초고왕에 대해 너무도 소략한 기사만을 배분하고 있다. 이는 溫祚王紀 등 초기의 비교적 상세한 기술 태도와는 현저하게 다른 면모라 하겠다. 이럴 경우 근초고왕대의 상당수 事跡이 逸失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론이라 한다면, 몇몇 기사의 소급 가능성 또한 자연스럽게 인정될 수 있다.

濟紀는 근초고왕 30년에 왕이 ‘돌아갔음(薨)’을 알린 다음, 古記를 인용하여 “백제는 개국한 이래 문자로 일(事)을 기록한 적이 없었는데, 이때에야 博士 高興을 얻어 비로소 書記가 있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예의 書記를 史書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가리기 힘들지만, 행여 史書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초고왕대에 어떠한 형태로든 과거 내지 현재의 국가적 상황을 정리하였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문제를 이렇게 이해할 때, 여기서 다시 논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濟紀 온조왕 13년조의 이른바 ‘강역 확정’ 기사이다. 주지하다시피 강역 확정은 국가의 체제가 정비되었음은 물론, 강역에 대한 제반사항이 어느 정도 문

그러나 이때는 史書에 단지 馬韓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遣使國이 구체적으로 거명되지 않을 만큼 허다한 小國의 連合朝獻의 性格이 강하므로, 백제의 對중국 교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에는 미흡한 감이 있다.

서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필자는 앞에서 온조왕대의 강역 확정 기사가 후대 사실의 소급일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만약 온조왕대 13년조 기사의 진정한 근원지를 濟紀 내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단연코 “始有書記”라고 한 근초고왕대일 개연성이 가장 높다고 하겠다.

요컨대, 근초고왕대에 백제는 自國의 영역을 확정, 文書化하였는바, 이를 후대의 백제계 역사서들이 해당지역에 대한 백제의 영유권이 뿌리깊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始祖의 권위를 높일 목적으로 온조왕대에 일괄 정리한 것이 아닌가 한다.

5. 맺 음 말

分斷 등으로 인해 고고 자료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현재, 漢城時代 百濟의 北境 연구는 오로지 濟紀 이용 방법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분야에 못지않게 濟紀 초기 기사의 신빙성 여부가 해석의 관건으로 작용하는 듯하다. 처음에 필자는 이 같은 제약을 최대한 피해 가려고 비교적 논란이 적은 부분, 곧 근초고왕대의 北境문제를 택하였던 것인데, 濟紀는 오히려 필자를 위의 논점과 정면 충돌하게 하였다. 성급한 필자로서는 그만큼 억측을 감행할 여지가 많아진 것이다. 장황하였던 지금까지의 역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역에 관한 한, 濟紀의 초기 기사는 시간적으로 매우 혼돈되어 있다. 반면, 내용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 아니,

오히려 관련 기사의 성격상 믿을 만하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일단 한성시대의 북방관련 지명기사를 모두 추출해 낸 다음, 그것을 나름대로 위치 비정해 보았다. 그 결과, 백제의 최북방 영역관련 지명은 禮成江線을 넘어서 황해도 중·북부지역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溟河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백제사상 북방으로 최대의 판도를 구가한 이는 근초고왕이다. 그렇다면 위의 지명 비정 결과는 일단 근초고왕대의 판도와 동일시될 수 있다. 근초고왕 26년(371) 당시 백제는 황해도의 중·남·동부지역 대부분을 영역화하였을 것이다. 大同江 南部 水系에 속할 溟河가 北境의 기준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또 같은 해에 백제의 평양성 공격이 감행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더욱이 왕이 재위 27년에 東晉으로부터 받은 ‘領樂浪太守’는 그 당시의 책봉이 아무리 형식적인 것이었다 해도, 前後의 授爵과정으로 보아 백제의 영토가 낙랑지역과 전혀 무관하여서는 칭호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불가능하다. 또한 이른바 遼西進出說의 최대 논점이자 중국측의 對東方 冊封策에 즐겨 이용된 ‘樂浪’이 근초고왕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사실 자체가 근초고왕대 대동강유역 진출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濟紀 온조왕 13년조의 영역 확정 기사는 후대 사실의 소급이 비교적 분명한 대목이다. 따라서 이를 시기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필자는 근초고왕대의 사실일 개연성이 가장 크다고 보았다. 北界의 指標를 兩紀 모두 溟河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데다가, 영역 확정이야말로 ‘書記’와 같은 공식 기록

류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필자의 추정이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온조왕 13년조의 餘他 방면, 곧 동쪽의 走壤, 남쪽의 熊川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명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한정된 지면이기에 본고에서는 근초고왕대의 北境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으나, 조만간 南方境域 등에 대해서도 필자의 생각을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안다.

先輩諸賢의 叱正을 기다린다.

申崇謙과 公山桐藪 戰鬪

閔 丙 河

(成均館大學校 名譽教授)

1. 序 言
2. 公山桐藪戰鬪
3. 申崇謙의 遺趾
4. 結 語

1. 序 言

壯節公 申崇謙은 高麗太祖 王建을 추대하여 高麗를 창건케 한 핵심 인물이며, 太祖 10년(927)에는 後百濟의 甄萱과의 公山桐藪 戰鬪에서 太祖를 대신하여 殉節함으로써 太祖를 死境에서 구출하였음은 물론, 太祖로 하여금 民族 再統一의 偉業을 성취케 하는 데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인물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申崇謙에 대하여 再照明을 기도하는 것이 本稿의 목적이며, 아울러 그가 太祖로 하여금 民族 再統一을 성취케 하는 데

에 미친 영향을 밝혀 보려는 것이 또한 本稿의 목적인 것이다. 그리하여 本稿의 차례를 첫째, 公山桐蔭戰鬥 둘째, 申崇謙의 遺趾로 나누어 설정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2. 公山桐蔭戰鬥

公山桐蔭는 慶北 達城郡 公山面 智妙洞(지금 大邱直轄市 東區 智妙洞) 桐華寺 부근으로 公山은 지금의 八公山이 되나, 高麗가 民族 再統一 과정에서 겪은 公山桐蔭戰鬥는 그 의의가 매우 큰 것이었다.

高麗가 건국되고 나서 가장 중요한 當面課題는 民族의 再統一이었다. 新羅末期의 혼란한 정세는 豪族의 대두를 가져오게 하였고, 마침내 新羅는 弓裔의 泰封과 甄萱의 後百濟와 함께 三國鼎立狀態를 자아내 民族의 再分裂을 가져오게 하였다. 泰封의 뒤를 이은 高麗는 群小豪族에 대한 懷柔包攝策과 함께 新羅 및 後百濟에 대하여 宥和策을 썼다. 그리하여 新羅와는 親和關係가 유지되었으나 後百濟와는 그러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新羅는 내부적 동요와 외부적인 後百濟의 압력을 高麗에 의지하여 해결하려 하였고, 後百濟는 高麗의 成長이 두려웠는 데다가 高麗가 新羅의 후견자적 역할을 하였던 것이 보다 큰 원인이었다 하겠다.

高麗가 건국되자 太祖 원년(918)에 後百濟는 一吉凜 閔邵을 보내어 太祖의 즉위를 賀禮하였고, 太祖 3년에는 阿餐 功達을 보내어 孔雀扇과 地理山の 竹箭을 바치는 등 매우 우호적이었다. 그리고 新羅는 太祖 3년에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어 交聘하였다. 이렇게 後

百濟는 新羅에 앞서 사신을 보내고 禮物을 보내는 등 호의를 베풀었으나, 太祖 3년에 後百濟가 新羅를 침공하여 大良(陝川), 仇史(慶山)의 2郡을 빼앗고 進禮郡(淸道)에 이르자, 新羅는 阿餐 金律을 高麗에 보내어 구원을 청하므로 高麗는 군사를 보내어 新羅를 돕자 甄萱이 이를 듣고 물러났으나, 이것을 계기로 高麗와 後百濟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太祖 7년(924)에 甄萱이 아들 須彌康과 良劍을 보내어 曹物郡(金泉郡)을 공격하므로 太祖는 將軍 哀宣과 王忠으로 하여금 가서 치게 하였는데, 哀宣이 전사하였으나, 郡人이 城을 굳게 지키어 須彌康 등을 물러나게 하였다. 이 戰鬪에서 甄萱이 무엇을 느꼈는지 한 달 뒤에 사신을 高麗에 보내고 驄馬 1필을 바쳤다.

그러나 이듬해인 太祖 8년에 甄萱이 3천 騎를 이끌고 曹物郡에 다시 침입하였다. 이에 太祖는 親히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싸웠는데, 이때 征西大將軍 庾黔弼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회동하자 甄萱이 두려워하여 和를 청하고 外甥 眞虎를 人質로 삼았으며, 太祖도 또한 堂弟 王信을 人質로 교환하고 甄萱의 나이 10년이 위였으므로 太祖가 그를 높이어 尙父라 칭하였다.¹⁾

1) 이 사실은 《高麗史》世家에 의하여 정리한 것이나 《三國史記》甄萱傳에 의하면 이와는 반대로 太祖가 먼저 和를 청하고 質子를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三國史記》甄萱傳이나 《高麗史》世家에 보이는 太祖 11년에 太祖가 甄萱에게 보낸 答書에 「乙酉年(太祖8)에…… 足下가 처음 敵을 가볍게 생각하고 바로 前進하여 오매 그것은 蟻蟻이 수레바퀴의 앞을 막는 것과 같더니 마침내 그 어려움을 알고 용감하게 물러감이 마치 모기새끼가 산을 진 것과 같았도다(蚊子之負山). 공손히 두 손을 모아 陳辭하고 하늘을 가리켜서 맹서하기를 ‘오늘부터 길이 친화하겠으며 만약

이렇게 어렵게 성립된 두 나라 사이의 和親은 불과 6개월 만에 깨지고 말았다. 즉 太祖 9년(926)에 甄萱의 質子가 병사하자 甄萱은 高麗가 그를 죽였다고 하여 高麗의 質子 王信을 죽이고 熊津(公州)에 進軍하여 高麗를 침범할 태세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太祖는 이듬해 친히 龍州(醴泉 龍宮)를 쳐서 항복시켰는데, 이때 新羅가 군사를 보내어 高麗를 도운 것이 주목을 끈다. 그리고 太祖는 다시 運州(洪城)를 쳐서 함락시키고 近嵩城(聞慶 近嵩里)을 함락시켰으며, 海軍將軍 英昌과 能式 등으로 하여금 軍士를 이끌고 멀리 康州(晉州)를 치게 하여 그 管內의 轉伊山·老浦·平西山·突山 등 4鄉을 항복시키고 돌아왔는데, 이것은 南海方面의 土豪勢力을 위협하려는 의도에서 결행된 것이었으며, 뒤이어 太祖는 친히 高思葛伊城(聞慶)을 巡幸하여 城主 興達의 歸附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地方의 後百濟 所管의 諸城主가 모두 降附하였으며, 또 元甫 佐忠과 金樂 등을 보내어 大良城(陝川)을 攻破하고 將軍 鄒許祖 등 30여 명을 포로로 하였다.

이상이 公山桐藪戰鬪가 있기 직전까지의 高麗와 後百濟 사이에 벌어진 대강의 상황인 것이다. 그 개황인즉 高麗는 날로 위력을 떨쳐 新羅의 城主(土豪勢力)들의 귀순을 받아들이는 한편, 後百濟의 城主들의 降附 또는 귀순을 받아들여 그 세력은 확장일로에 있었다. 그러나 後百濟는 이것과는 반대로 高麗의 침공을 받아 그

이 맹약을 어기면 神罰을 받을 것이라'고 하기에 나도 또한 싸우지 않는 武威를 尊尙하고 죽이지 않는 仁慈를 기하여 드디어 重圍를 풀어서 괴곤한 병졸을 쉬게 하고 質子마저 사양하지 않았던 것은 다만 백성들에게 큰 德을 베푸는 것이라 하겠다」라 한 것을 보면 甄萱이 먼저 和를 청한 것이 사실인 것 같다.

지배하의 城主들이 高麗에 투항하기도 하고 자진하여 귀순하기도 하여 그 세력은 날로 위축되어 갔으며, 한편 新羅도 그 지배하의 城主들이 꼬리를 물고 高麗에 귀순하여 큰 위협이 되었지만 우선 後百濟의 침공을 막기 위하여는 高麗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新羅의 실정이었다.

高麗의 팽창에 큰 위협을 느낀 後百濟의 甄萱은 高麗와의 연계 관계를 끊게 하기 위하여 新羅를 침공하였다. 즉 太祖 10년(927) 9월에 甄萱이 高麗 지배하에 있던 近崙城(聞慶)을 공격하여 불사르고 더 나아가 新羅의 高鬱府(永川)를 습격하였다. 이에 新羅는 高麗에 급히 구원을 청하였고, 太祖는 侍中 公萱 등으로 하여금 군사 1만을 거느리고 가서 新羅를 구원케 하였다. 그러나 高麗의 군사가 아직 도착하기 전에 甄萱은 新羅都城 慶州에 쳐들어 갔다. 그리하여 妃嬪·宗戚등과 함께 鮑石亭에서 酒宴을 베풀고 있다가 도망한 新羅王 景哀王을 城南의 離宮에서 잡아 自盡케 하고 王族 金傅(敬順王)를 세워 왕을 삼았다. 그리고 王弟 孝廉과 宰臣, 英景 등을 포로로 하고 子女·百工·武器·珍寶 등을 약탈하여 돌아갔다.

太祖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사신을 新羅에 보내어 弔祭하고 친히 精騎 5천을 거느리고 凱旋 中이던 甄萱을 公山桐藪에서 맞아 크게 싸웠다. 그러나 戰勢가 불리하여 太祖가 甄萱의 군사에게 포위를 당하여 그 형세가 매우 위급하여 大將 申崇謙과 元甫, 金樂이 힘써 싸우다가 전사하고 諸軍이 패배하였으며 太祖는 겨우 單身으로 몸을 피하는 데 성공하였다.

〈申壯節公行狀〉이나 〈申壯節公遺事〉에 의하면 公山桐藪戰鬪에서 太祖가 적에게 포위되어 사태가 매우 위급하여지자 太祖의 일

굴과 비슷한 大將 申崇謙은 太祖를 대신하여 죽을 것을 자청하여 太祖를 礙藪(符仁寺)에 숨게 하고 그 자신은 御車를 갈아타고 金樂과 함께 힘껏 싸우다가 전사하였는데, 甄萱의 군사가 그를 太祖로 여기고 그 머리를 잘라서 창에 꿰어 달아냈고, 그것으로 포위가 풀리자 太祖가 單身으로 몸을 피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太祖가 本陣에 돌아와서 전사한 申崇謙의 屍身을 찾았으나 머리가 없어 그를 분간할 수 없다가 大將 庾黔弼 등이 말하기를 「申將軍의 원발 아래에 사마귀의 무늬가 있는데 北斗七星과 같다」라 하므로 이로써 증험하여 마침내 찾아냈으며, 이에 木工에게 명하여 顔面을 새겨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은 마치 生時의 모습과 같았고 朝服을 갖추어 자리에 앉게 하여 太祖가 친히 祭禮를 행하고 光海州 昭陽江 悲方洞에 禮葬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申壯節公行狀〉이나 〈申壯節公遺事〉에서 보이는 내용은 申崇謙에 대한 《高麗史》의 기록을 보완하여 주는 것으로, 그 보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 보완 내용은 申崇謙이 위기에 처한 太祖를 피신시키고 代死한 것과 그가 전사하자 屍身을 거두어 禮葬한 것에 대한 경과 설명인 것이나, 이러한 경과 설명은 바람직스럽다 할 것이며, 또한 이 경과 설명은 사건의 전후 상황으로 보아 모순된 점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그렇고 이 公山桐藪戰鬪는 太祖로서 크나큰 敎訓과 體驗이 되었다. 太祖 自身이 死境을 체험함에서 얻은 교훈은 매우 컸을 것이고, 申崇謙과 金樂과 같은 忠節이 있다는 데 대하여 太祖로서 느끼는 바 컸을 것으로, 이와 같은 敎訓과 體驗은 太祖로

하여금 國家經營에 대한 자신과 포부를 한층 드높이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太祖는 國家經營에 보다 적극성을 띠게 되어 後百濟의 甄萱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는 한편, 新羅에 대한 親和策을 강화하고 西京에 자주 幸行하여 北方經略에 주력하며 邊境地方에 築城事業을 활발히 전개하여 國防力 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新羅 및 後百濟 지배하의 城主(土豪)의 投化를 적극 수용하여 領域擴張에 박차를 가하였다. 한편 契丹에 사신을 보내며 中國五代의 後唐에 자주 사신을 보내어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 데 노력하였다.

後百濟의 甄萱는 公山桐藪戰鬪가 있는 직후 高麗太祖에게 書信을 보내 왔는데, 그 개요인즉 자기가 新羅王都를 침범한 것은 新羅를 재건하기 위한 것이나 太祖는 流言만 듣고 侵擾를 마음대로 한다 하고, 자기가 목적하는 바는 자기의 활을 平壤의 門樓에 걸고 자기의 말(馬)로 하여금 大同江의 물을 마시게 하고자 하나, 中國의 吳越國主가 使書를 보내어 우리 두 쪽(後百濟와 高麗)의 和親을 간절히 권하므로 그 뜻을 받들어 同書를 膽寫하여 보내니 留意하라는 것이다.²⁾

이에 대하여 高麗太祖는 뒤이어 答書를 보냈는데, 그 개요인즉 앞서 乙酉年(太祖8, 925)에 甄萱이 交戰하다가 물러가 和盟을 청하므로 質子를 교환하였으나 얼마 안 되어 和盟을 어기었다 꾸짖고, 君王(新羅의 景哀王)을 죽이고 宮闕을 불지르고 卿士人民을 짓밟고 美姬와 珍寶를 약탈하여 감은 그 元惡함이 桀·紂보다 더하고 그 無慈悲함이 梟獍보다 심하다고 꾸짖고, 만일 吳越國主의 충

2) 《三國史記》 권50 列傳10 甄萱條, 《高麗史》 권1 世家1 太祖 10년 12월條.

고대로 凶器를 버린다면 海東의 끊어진 王統을 이을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후회 막급할 것이라는 것이다.³⁾

이러한 공격적이고 과시적인 送答書로 兩者 사이의 관계가 호전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兩者 사이의 攻防戰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어 갔는데, 太祖 11년(928)에 太祖가 친히 三年山城(報恩)을 치다가 이기지 못하고 靑州(靑州)로 물러났는데, 이때 甄萱이 군사를 보내어 靑州를 침범하므로 庚黔弼이 湯井郡(溫陽)에서 급히 와서 싸워 적을 물리쳤다. 한편 甄萱의 공세도 활발하여 太祖 11년에 甄萱이 康州(晉州)를 襲取하고 烏於谷(일명 岳谷, 義興)을 점령하여 高麗와 新羅의 通交路인 竹嶺路를 차단하며, 이듬해에는 義城府를 공격하여 城主 洪述을 전사케 하고, 또 順州(安東 豐山面)를 공격하여 城主 元逢을 도망케 하였다. 그러나 太祖 12년에 甄萱이 加恩縣(聞慶 加恩面)을 공격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고, 그해 古昌郡(安東)을 포위하여 기세를 떨치다가 이듬해 그 부근 瓶山에서 太祖에게 大敗를 당하여 竹嶺路 차단의 의도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한편 太祖는 古昌郡 瓶山에서 甄萱을 大敗시키고 나서 古昌郡을 安東府로 승격시키고 뒤이어 大木郡(天安 木川面)에 행차하여 東西의 兜率(天安)을 합하여 天安府로 승격시키고 都督을 두어 後百濟를 經略하는 요충지로 삼았다. 그러나 甄萱의 공세도 만만치 않아 太祖 15년(932)에는 甄萱이 一吉胤 相貴를 보내어 水軍으로 開城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禮成江을 침범하여 鹽州(延安), 白州(白川), 貞州(豐德)의 海船 100척을 불사르고 猪山島의 牧馬

3) 《三國史記》 권50 列傳10 甄萱條, 《高麗史》 권1 世家1 太祖 11년 正月條.

300필을 약탈하여 갔으며, 뒤이어 甄萱의 海軍將 尙哀 등이 大牛島를 공략하므로 太祖가 萬歲 등으로 하여금 이를 치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특히 甄萱의 長子 神劍은 新羅首都 慶州 근처의 檣山城·阿弗鎮 등지에 이르러 人物을 劫掠하였다.

이에 太祖는 그 16년(933)에 征南大將軍으로 義城府에 鎮守하던 庾黔弼에게 명하여 百濟統軍 神劍을 치게 하여 그를 槎灘에서 물리쳐 慶州 北邊에 준동하던 後百濟 勢力을 봉쇄하였다. 그리고 太祖는 後百濟의 北界 要地인 一牟山城(文義)을 2차에 걸쳐 공격하여 마침내 그를 점령하였다. 뒤이어 太祖는 그 17년에 친히 運州(洪城)를 정벌하여 甄萱과 싸워 그를 크게 패배시켰으며, 이것으로 熊津(公州) 이북의 30餘 城이 자진하여 高麗에 투항하였다. 熊津은 弓裔 末년에 馬軍大將軍 伊訢巖이 襲取하여 鎮守하였는데, 太祖가 즉위하자 그는 이를 버리고 돌아옴으로써 後百濟가 다시 점유하게 된 것을 太祖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으로, 太祖의 이 熊津의 회복은 高麗로서는 그 의의가 매우 큰 것이었고, 後百濟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한편 太祖는 後百濟와 攻防戰을 반복하면서 新羅와의 親和策을 더욱 강화하였다. 太祖 14년(931)에 新羅王이 사신 大守 謙用을 高麗에 보내어 太祖의 相見을 청하자, 太祖는 이에 응하여 50餘騎를 거느리고 新羅를 방문하였는데, 이때 百官이 郊外에까지 나와 맞았고 王(敬順王)은 宮門 밖에까지 나와 맞았으며, 臨海殿에서 宴會를 베풀어 술이 한참 돌 무렵에 新羅王이 「우리는 하늘의 버림을 받아 甄萱이 유린한 바 되니 통곡하기 끝이 없나이다」라 하며 눈물을 흘리자 좌우의 신하들도 울지 않는 자가 없었고, 太

太祖도 또한 눈물을 흘리며 그를 위로하였다는 것이다.

太祖는 新羅를 방문한 지 3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이와 같은太祖의 新羅 방문은 親和策의 강화에 있었던 것은 두말 할 것도 없고, 新羅의 君臣에게 큰 감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一般市民에게도 환희를 느끼게 하여太祖가 慶州를 출발하자 都城의 사람과 士女들이 「옛적에 甄氏(甄萱)가 왔을 때는 늑대나 호랑이를 만난 것 같더니 지금 王公(王建)이 오고 보니 父母를 뵈는 것과 같다」라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太祖의 新羅에 대한 親和策은 新羅에게 크나큰 감동을 주었던 것으로,太祖 16년(933)에 高麗의 征南大將軍 庾黔弼이 新羅都城 慶州를 위협하던 百濟統軍 神劍을 槎灘에서 물리치고 나서 新羅에 이르자 老幼가 城을 나와 환영하고 눈물을 흘리며 「오늘날 大匡(庾黔弼)을 뵈줄 몰랐습니다. 大匡이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魚肉이 되었을 것입니다」라 하였다는 것을 보아서도太祖의 親和策이 가져온 新羅의 高麗에 대한 감동을 족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또太祖는 北方經略에 힘써 西京의 행차가 잦았고 北邊의 築城事業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公山桐藪戰鬪 후만 하더라도太祖는 그 12년(929)에 西京에 행차하고 州鎭을 歷巡하였고, 그 이듬해인太祖 13년에는 5월에 西京에 행차하였으나, 12월에도 西京에 행차하고 學校를 創置하여 人材養成에 대한 의욕을 과시하였으며, 그 17년에도 西京에 행차하고 北鎭을 순찰하였다. 그리고 公山桐藪戰鬪 후의 築城事業만 하더라도太祖 11년(928)에 大相 廉卿과 能康을 安北府(安州)에 보내어 城을 쌓고 元尹 朴權을 鎭頭로 삼아 開定軍 700인을 거느리고 이를 지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해

太祖가 北界를 巡幸하여 鎮國城을 옮겨 쌓고 이름을 通德鎮(平南 肅川)이라 하였고, 그 이듬해에는 大相 廉相으로 하여금 安定鎮(平南 順安)에 城을 쌓게 하고 또 永淸縣(平南 永柔)에 城을 쌓았으며, 뒤이어 安水鎮(平南 价川)·興德鎮(平南 殷山)에 각각 城을 쌓았고, 太祖 13년에는 安北府(安州)·朝陽鎮(平南 价川)·連州(平南 价川)에 城을 쌓았는데 安北府의 築城은 앞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보아 増改築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14년에는 剛德鎮(平南 成川)을 설치하고, 그 17년에는 大相 廉相으로 하여금 通海鎮(平南 永柔)에 성을 쌓게 하였다.

이렇게 太祖는 公山桐藪戰鬪 이후에 西京의 幸行과 北邊의 巡幸 및 北邊의 築城事業을 加一層 추진시킨 것은 北方經略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國家經營에 있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太祖의 地方巡幸 및 築城事業은 北邊 뿐만 아니라 南方에 대하여도 활발한 것이 있었다. 公山桐藪戰鬪 이후의 사실로 太祖 11년(928)에 湯井郡(溫陽)에 행차하였고, 運州(洪城) 玉山에 城을 쌓아 後百濟에 대비하였으며, 그 이듬해에는 基州(豐基)에 행차하여 州鎮을 巡視하였고, 뒤이어 剛州(榮州)에 행차하였으며, 太祖 13년에는 昵於鎮(慶州 근처)에 행차하여 城을 쌓고 그 이름을 神光鎮이라 고치는 등 慶州 근처까지 新羅의 土豪에 대한 회유 포섭의 손을 뻗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해 大木郡(木川)에 행차하여 東西兜率(天安)을 합하여 天安府라 하고 都督을 두어 後百濟를 견제하는 前哨基地로 삼는 한편, 靑州(靑州)에 행차하여 羅城을 쌓았으며, 그 17년에는 禮山鎮(禮山)에 행차하여 公卿將相으로 國祿을 먹는 자는 祿邑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祿邑으로부터 家臣의 聚斂을 없이

할 것과 官吏로서 백성들의 論訴를 私情에 끌려 숨기거나 두호함으로써 원망과 비방하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할 것을 훈계하고 貴賤을 막론하고 賞罰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다짐하는 등의 詔를 내리어 吏治를 쇄신케 하였는데, 이러한 吏治의 쇄신책은 민심의 수습책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이러한 太祖의 民心收拾策은 크게 주효하여 後百濟 및 新羅 지배하의 많은 城主(土豪)들이 계속 高麗에 歸附하는 사태를 자아냈다. 公山桐藪戰鬪 직후만 하더라도 앞서 太祖 5년에 長子 守元을 보내어 귀부하였던 溟州(江陵)의 大土豪 順式이 몸소 귀부함으로써 그에게 王姓을 하사하고 大匡에 임명한 것을 비롯하여 太祖 13년에는 載巖城(慶北 眞寶) 將軍(城主) 善弼이 귀부함으로써 그를 厚禮하고 나이가 많아 尙父를 삼았고, 뒤이어 古昌郡을 승격시켜 安東府로 삼자 永安(永川), 河曲(河陽), 直明(安東), 松生(靑松) 등 30여의 郡縣이 차례로 귀부하였으며, 같은해 北彌秩夫(迎日 興海面)와 南彌秩夫의 城主가 귀부하였다. 그리고 太祖 17년에는 太祖가 친히 運州(洪城)를 정벌하여 甄萱의 군사를 대패시키자 熊津(公州) 이북의 30여 城이 귀부하였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한편 太祖는 中國五代の 後唐과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太祖 6년(923)에 後唐이 건국되자 太祖는 그 8년에 사신을 보내어 국교를 수립하였는데, 公山桐藪戰鬪 이후에는 後唐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데에 노력하여 太祖 16년(933)에는 天授의 年號를 폐지하고 後唐의 年號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渤海를 멸망시키고 地境을 접하게 된 契丹에 대하여는 그를 경계를 하면

서도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公山桐藪戰鬪 직후에도 사신을 보내어 수교하였다. 그러나 民族 再統一이 성취되고 나서 太祖 25년(942)에 契丹이 사신을 보내고 낙타 50필을 보내오자 太祖는 渤海를 멸망시킨 無道한 나라와 和親을 맺고 이웃할 수 없다고 하여 交聘을 거절하고 사신을 海島로 귀양보내며 낙타를 萬夫橋 아래에 매어 놓아 굶어죽게 하였다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太祖는 公山桐藪戰鬪 이후 國家經營에 보다 적극성을 띠게 되어 後百濟의 甄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新羅에 대하여 보다 親和策을 강화하였고, 北方經略에 보다 힘을 기울여 자주 西京에 행차하고 北邊을 巡幸하며 北邊에 대한 築城事業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며, 民心收拾策에 힘써 新羅 및 後百濟 지배하의 城主(土豪)들의 投化를 적극 수용하였고, 中國의 後唐과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썼다. 그리하여 新興 高麗의 國家經營은 날로 충실하고 견고하여져 太祖 18년(935)에 後百濟의 內訌으로 甄萱이 高麗에 亡命 歸附하였고, 또 그해 千年社稷 新羅가 高麗에 自進 歸附하였으며, 太祖 19년에는 後百濟의 神劍이 黃山에서 太祖에게 굴복함으로써 太祖에 의한 民族 再統一의 偉業이 성취되었다.

이와 같이 高麗 太祖는 公山桐藪戰鬪 이후 國家經營에 보다 적극성을 띠워 마침내 民族 再統一의 偉業을 성취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公山桐藪戰鬪는 그 意義가 매우 크다 할 것이며, 이 戰鬪에서 太祖를 救出하고 壯烈히 戰死한 申崇謙의 殉節은 진실로 위대한 것이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고 太祖의 國家經營이

公山桐藪戰鬪 이전에는 소극적이었다는 것이 아니다. 물론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公山桐藪戰鬪 이후에는 그 戰鬪에서 얻은 敎訓과 體驗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더 적극성을 띠게 되어 民族 再統 事業을 성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시기를 앞당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3. 申崇謙의 遺址

申崇謙과 관련된 遺址로는 지금 大邱直轄市 東區 智妙洞(중전 達城郡 公山面 智妙洞) 八公山 王山峰 아래에 申崇謙이 전사한 곳의 殉節壇(일명 表忠壇)이 있고 그를 제사하는 表忠祠가 있었으며, 江原道 春城郡 西面 芳洞里에 그의 墓所가 있다. 그리고 그를 祭享한 院祠로 表忠祠를 비롯하여 太師祠와 德陽書院·東陽書院·道浦書院이 있었고 그를 配享한 祠廟로 崇義殿이 있었으며, 谷城縣의 城隍神으로 祭享되었다.

앞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太祖 10년(927)에 大將 申崇謙이 公山桐藪戰鬪에서 元甫, 金樂과 함께 力戰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자 太祖는 심히 애통하여 壯節이라 諡하고 그가 전사한 곳에 智妙寺를 세워 冥福을 빌게 하였다.⁴⁾ 이 智妙寺는 어느 때 어떻게 없어졌는지 지금에는 전하지 않고 이곳의 地名으로 智妙洞이 이루어져 전하고 있다.

殉節壇은 일명 表忠壇이라고도 하며 申崇謙이 순절한 곳에 설

4) 《高麗史》 권92 列傳5 申崇謙條.

치된 祭壇으로서 지금 大邱紀念物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純祖 19년(1819, 崇禎紀元後 192年 己卯)에 大邱營將 申義直이 세운 「高麗壯節申公殉節之地」라 기각된 殉節壇碑가 있다. 앞에서도 보이는 것과 같이 〈申壯節公行狀〉에 의하면 公山桐蔭戰鬪에서 戰勢가 불리하여 太祖가 매우 위급하여지자 申崇謙이 太祖를 피신시키고 御車에 갈아타고 金樂과 함께 力戰하다가 전사하였는데, 太祖가 本陣으로 돌아와 그 屍身을 찾음에 머리가 없어 분간을 못 하다가 「申將軍의 왼발 아래에 사마귀의 무늬가 있는데 北斗七星과 같다」라는 말을 듣고 마침내 그의 시신을 찾아서 木工으로 하여금 頭面을 만들게 하고 朝服을 갖추어 자리에 앉게 하여 太祖가 친히 祭禮를 행하고 몹시 통곡하였으며 葬地를 옮기어 光海州(春川) 昭陽江 悲方洞에 禮葬케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면 殉節壇이 설치된 것은 바로 이 시기였던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申崇謙이 전사한 곳에 智妙寺를 세운 것도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한 것이었으나 殉節壇을 수호하는 구실을 함께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太祖로서 絶世의 忠節에 대하여 그가 순절한 곳에 넋을 위로하기 위한 殉節壇을 설치하고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한 願刹을 세운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이다.

表忠祠는 宣祖 40년(1607)에 慶尙道觀察使 柳永詢이 嶺南에 거주하는 申崇謙의 後孫들로부터 經費를 모아 廢寺된 智妙寺 옛터에 건립한 申崇謙의 祠宇로서 春秋로 良日을 가리어 後孫들에 의하여 祭享이 거행되었는데, 이때 祭物은 官給되었다. 그러다가 顯宗 11년(1670)에 鄉儒 李時柱·崔翊南 등의 발의로 儒林에 의하여 祠宇를 重建하고 申崇謙을 享祀함으로써 表忠祠(일명 表忠書院)는

종전과는 달리 儒林에 의한 院祠에 들게 되었으며, 肅宗 2년(1676)에는 金樂을 配享하였고, 肅宗 13년(1687, 丁卯)에 賜額되었으며⁵⁾ 英祖 2년(1726)에 壬辰倭亂 때 聞慶에서 순절한 聞慶縣監 贈左承旨 申吉元을 追配하였다. 高宗 8년(1871)에 疊設院祠의 撤廢로 表忠祠도 毀撤을 당하고 말았으나 高宗 25년(1888)에 嶺南에 거주하는 申崇謙의 後孫들로부터 經費를 모아 表忠祠 옛터에 表忠齋를 건립하여 殉節壇의 수호와 함께 祭享을 맡게 되었다.

表忠祠에는 高麗太師壯節申公忠烈碑가 있다. 이 忠烈碑는 禮曹判書 兼 藝文館提學 申欽이 짓고 行驪州牧使 金玄成이 쓰고 行安邊都護府使 金尙容이 篆하여 宣祖 39년(1606, 萬曆 34)에 건립한 것으로 그 全文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譯 文〉⁶⁾

高麗太師壯節申公忠烈的 碑

公山桐藪는 곧 高麗太師壯節申公이 목숨을 바친 곳이다. 公의 죽음이 後唐 天成 2년인지라 이제 700여 년의 옛일이건만 사람들이 이 숲(藪)을 지나면서는 오히려 넘름히 公의 義를 생각하기를 마지 않고 간간이 公의 事蹟을 이르기를 밝고 밝은 것이 엇그제의 일과 같이하더니, 明의 萬曆 丁未(宣祖 40, 1607)에 이르러 公의 外裔인 柳永詢이 觀察使로 赴任하여 삼가 遺址를 살펴보고 慨然히 本始를 미루어 생각하면서 말하기를 「오직 이 같은 大忠大烈

5) 組豆錄은 일종의 祭享錄으로서 그 編者가 누구인지 자세치 않으며, 朝鮮 哲宗年間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은 成均館의 文廟, 宗廟, 大報壇, 廟, 祠, 書院에 대한 대략적인 연혁과 거기에 享祀 및 配享한 諸賢의 生涯의 대강을 기술하고 있다.

6) 譯文은 주로 《壯節公申崇謙將軍事蹟》의 것에 의하였다.

로서 쓸쓸하게도 顯刻함이 없으니 이는 나의 책임이다」라 하고 드디어 公의 後孫으로 嶺南에 사는 자를 倡導하여 工人들과 資材를 모으게 하니 모두 따르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에 智妙寺 옛터에 公의 祠宇를 창건하고 春秋로 良日을 가리어 官家에서 祭物을 마련하고 後孫의 居住하는 자로 하여금 香火를 받들어 끊임이 없게 하니 아마도 公의 神靈은 감격하여 여기에 오르내릴 것이다. 그리하여 돌을 베어 이를 다듬고 碑文을 申欽에게 부탁하였는데 申欽은 公의 後孫인 것이다. 申欽은 삼가 再拜하고 말하기를 公의 節概는 이미 綱常을 붙들어 심었고 公의 이름은 宇宙에 걸쳐 가득하며 公의 魂氣는 족히 하늘을 나와 사람에 들어가서 변화를 헤아릴 수 없으니, 돌이켜 생각하건대 여기에 더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리요마는 그 혹시 逸偉崇英함이 이에 힘입어 그 방불함을 얻게 된다면 忠義를 권장하고 後人을 敎訓함에 있어서 어찌 그 의의가 적다고 하겠는가. 柳公은 그 먼저 힘써야 할 바를 안 것이라고 하겠다.

이에 公의 行狀에 간추려 序하건대 申氏는 谷城에서 비롯하였는데, 高麗太祖가 平山으로 貫籍을 하사하였으며 公의 諱는 崇謙이요 初名은 能山이라 하였고 그 字는 史乘에 전하지 않는다. 태어나서부터 拳勇과 機智가 있었더니 赫居國(新羅)의 衰殘한 때를 당하여 弓裔와 甄萱이 반역하여 동쪽과 남쪽에 雄據하자 公은 天命이 돌아가는 바를 알고 高麗太祖를 도와 王位에 오르게 하였으며 水陸을 정벌함에 모두 公을 의지하여 중히 여김을 받았다. 甄萱이 新羅의 都城에 침입함에 高麗太祖가 精銳騎兵을 동원시켜 公山桐藪에서 甄萱을 맞아 싸울 적에 甄萱의 군사들이 高麗太祖

를 포위하여 형세가 매우 위급하였다. 公이 大將으로서 얼굴이 太祖와 같았던지라 公이 太祖를 代身하여 죽기를 자청하여 御車에 갈아타고 나가서 싸우다가 죽자 太祖가 이에 힘입어 빠져 나오게 되었다. 甄萱의 군사들은 公을 高麗太祖로 여기고 그의 머리를 취하여 돌아갔다. 高麗太祖가 公의 屍身을 찾아내어 工人에게 명하여 머리와 얼굴을 새겨 만들고 朝服을 갖추게 하여 光海州 昭陽江 悲方洞에 移葬케 하니 곧 지금의 春川府이다. 壁上虎騎衛·太師·開國公·三重大匡·毅景翊戴匡衛怡輔砥節底定功臣을 追封하고 諡를 壯節이라 하였으며 敎로서 匡翊効節獻襄의 號를 더하고 廟庭에 配享하였다. 高麗太祖가 八關會를 베풀 때 神像이 일어나서 춤을 추던 기이한 일이 있었고 睿宗이 西都에 巡幸하였을 때도 神像이 말을 타고 뛰던 기이함이 있어 모두 산 사람과 같았는데 世代가 바뀌어도 오히려 이를 전승하여 기적으로 삼으니 公과 같은 경우야말로 이른바 살기를 기다려서 生存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따라서 滅亡하지 않음이 아니겠는가. 睿宗은 詩歌를 내리어 讚美하였고 我朝에 들어서는 子孫이 繩繩하며 官爵을 이어받으니 이는 대개 公의 遺德이라고 할 것이다. 谷城에 있는 公의 祠宇는 外裔인 韓浚謙이 觀察使로 갔을 때 극력하여 重新한 바거니와 柳公이 잇달아 舉事를 이룩하였으니 두루 장한 일이다. 高麗太祖가 처음 일어날 때를 당하여 좌우에서 匡弼한 자를 어찌 헤아릴 수 있으리요. 저 五太師(申崇謙·裴玄慶·洪儒·卜智謙·庾黔弼) 같은 경우는 실로 公과 필적할 만하여 그 성취한 바가 누구인들 아름답지 않으리요마는 世人의 耳目에 뚜렷하게 빛나는 것을 지적한다면 반드시 公으로 우두머리를 삼게 되니 이것은 무슨 까닭일까. 勳名은

一世에 그치되 忠義는 영원토록 전하는지라 것처럼 并稱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이다. 그러면 이 舉事야말로 특별히 吾宗의 다행함만이 아니라 이로써 景慕感發하여 忠義를 興起케 함이 있지 않겠는가. 아니 이를 보고 스스로 부끄러워하여 이마에 땀을 적시는 자가 있지 않겠는가. 公에게서 보고 느낀다면 勸勉되고 戒飭됨이 함께 많을 것이다. 아아! 銘하여 이르기를 임금이 天命을 받으심에 公은 도와서 성취케 하셨네. 한번 소리쳐 義旗를 들고 五百年 터전을 굳히셨네. 저 漢나라 紀信이 몸으로써 仁을 이름과 같으셨네. 後孫들이 餘慶을 거두니 綿綿한 遺業이 떨치었도다. 여기 宅相이 있으니 柳公은 그 어질었도다. 斧鉞을 가지고 南쪽에 와서 여러 곳을 巡宣하다가 桐藪에 걸음 멈추고 은연한 가운데 서글퍼 하였도다. 저 옛터에 자리를 가리고 돌을 세워 꽃다움 새겼도다. 우뚝한 그 자취, 높으신 그 이름, 武勇은 용솟음치는 물줄기였고 貞烈은 타오르는 불길이었네. 朝冠의 비녀는 장엄하고 깃발은 휘날리는도다. 으시시한 저 바람소리에 神靈이 여기 내리시도다. 갑자기 일어난 빛이 엷히고 뒤섞이어 눈부시도다. 君子가 남기신 恩澤은 오래도록 새로우리로다. 두고두고 千秋萬世에 우리 백성 도우시리로다.

裔孫 資憲大夫 禮曹判書兼藝文館提學 (申)欽 짓고
 通政大夫 行驪州牧使 金玄成 쓰고
 通政大夫 行安邊都護府使 金尙容 篆함
 萬曆 34年(宣祖39) 丙午 3月 日 세움

〈原文〉

高麗太師壯節申公忠烈之碑

公山桐藪 卽高麗太師壯節申公致命之所也 公之死 在後唐天成二年 距今七百有餘載 人過是藪者 猶凜凜想公不已 間能道公事 赫赫若前日 逮皇明萬曆丁未 公之外裔 柳公永詢 仗鉞來花粵瞻遺址 慨然原念本始曰 惟是大忠大烈 昧昧沒顯刻 繫吾責也 遂倡起公後 在嶺南者 鳩工聚材 罔不率從 乃剏公祠宇於智妙寺基 官供俎豆於春秋良日 今雲仍之居止者 奉香火母替 庶公之馨饗 陟降於茲也 仍伐石勒之 求其辭於欽 以欽亦公裔也 欽謹再拜而言曰 公之節既扶樹綱常 公之名亘滿宇宙 公之魂氣足以出天入人 變化不測 顧何事於斯 而厥或逸偉崇英 賴以得其彷彿 則於勸忠詔後 豈淺淺哉 柳公知所先務矣 斯撫公行狀爲序 申出谷城 麗祖賜籍平山 公諱崇謙 初名能山 史失其字 生有拳勇機智 值赫居國衰 弓裔甄萱反據東南 公知天命有歸 翊麗祖登大位 水陸征討 皆倚公爲重 暨甄萱之入羅都也 麗祖發精騎邀萱於公山 萱兵圍麗祖甚急 公爲大將 而貌類麗祖 請以身代乘御車出戰死之 麗祖得脫 萱兵以公爲麗祖 取頭以去 麗祖求公尸 命工彫造頭面 備服移葬于光海州昭陽江悲方洞 今之春川府也 追封爲壁上虎騎衛太師開國公三重大匡毅景翊載匡衛怡輔砥節底定功臣 諡曰壯節 敕加匡翊效節獻襄之號 配享廟庭 麗祖設八關會 有神像起舞之異 睿宗之省西都也 又有神像騎馬 俱如生焉 易世猶傳之 以爲奇蹟 若公非所謂不待生而存 不隨死而亡者耶 睿宗賜詩歌以美之 入我朝 子姓繩繩 袍笏相襲 蓋公之遺餘也 公祠在谷城者 外裔韓公浚謙之按廉也 亟重新之 而柳公踵有此舉盛矣哉 當麗祖之興也 左右匡弼者 何限有如五太師 實方駕於公 其所就孰非不懋焉 而指其焯人耳目者 則必以公爲首 斯曷故也 勳名止乎一世 忠義傳於無極 其不可以竝也明矣 然則此舉也 非特吾宗之幸也 其不有景慕感發而興起者乎 抑不有

覽此而忸怩泚頰者乎 觀乎公勸戒俱矣 吁銘曰 王受明命 公贊襄之一呼舉義 五百基昌 若漢紀信 以身易仁 收餘于後 綿緒振振 厥有宅相 柳公其良 授鉞巡宣 火維其方 爰止桐華 隱中如傷 相彼舊址 樹石揭芳 卓卓其蹟 巍巍其名 洸洸其武 烈烈其貞 峩峩其簪 旆旆其旗 有風淒其 神之來思 歎其有光 粉陸離兮 君子之澤 久而新兮 於千萬紀 庇我民兮

商孫資憲大夫吏曹判書兼藝文館提學 欽撰

通政大夫行驪州牧使 金玄成 書

通正大夫行安邊都護使 金尙容 篆

萬曆 三十五年 三月 日立

墓所는 지금 春川市에 인접한 江原道 春城郡 西面 芳洞리에 소재하여 거기에는 封墳 3基와 神道碑 그리고 齋室 등이 있다. 앞서도 말한 것과 같이 申崇謙이 公山桐叢戰鬪에서 순절하자 太祖는 머리가 後百濟 군사에게 잘려간 屍身을 거두어 木工으로 하여금 그 頭面을 새겨 만들게 하여 祭禮를 행하고 葬地를 그의 출신지인 光海州(春川) 昭陽江 悲方洞으로 정하여 禮葬하였다는 것인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封墳 3基(1基 3墳)가 조성된 것은 그 頭面을 金으로 만들었으므로 도굴을 당할 염려가 있어 疑塚 2개를 더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전하는 말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정확한 것을 알 수 없으나 疑塚을 만들어 封墳 3基를 조성한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을 것으로, 그것은 전하는 말대로 頭面을 金으로 만들었는지 또는 나무로 새겼는지 혹은 夫人의 무덤인지 정확한 것을 알 수 없다.

그 墓域에 篆額 「高麗開國功臣壯節申公神道碑銘」이라 기각된

神道碑가 있는데, 이 神道碑는 原任大提學 永安府院君 金祖淳이 짓고 弘文館校理兼宣傳官 申緯가 쓰고 議政府左議政兼監春秋館事 徐邁修가 篆하여 純祖 5년(崇禎紀元後 三乙丑, 1805)에 건립된 것으로 그 全文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譯 文〉⁷⁾

高麗開國功臣壯節申公神道碑銘 并序

春川府 북쪽에 昭陽江이 있고 昭陽江 북쪽 6, 7里에 悲方洞이 있는데 이곳이 곧 高麗의 代死功臣인 太師 申公의 體魄을 奉安한 곳이다. 높다란 封墳 셋이 있는데 世上에서 전하여 오기를 太師가 전사할 때 그의 머리를 잃은지라 高麗太祖가 太師의 얼굴을 金으로 주조하고 屍身에 합쳐서 장사 지낸 다음 사람들이 건드릴까 두려워한 나머지 그 봉분을 셋으로 하여 의혹되게 한 것이라 하고 혹은 의심하기를 太師에게 본디 夫人이 있어서 祔葬한 것이라고도 하나 연대가 오래이고 文獻을 稽考할 수 없으므로 무릇 祭享할 때는 가운데 封墳에 省拜하고 행사하니 이는 그 중함을 비긴 것일 뿐이고 그 실은 혹은 왼쪽인지 혹은 오른쪽인지 헤아릴 길은 없는 것이다. 삼가 살피건대 公의 諱는 崇謙이요 처음의 諱는 能山이라 하였으며 그의 先代는 百濟 欲乃郡에서 비롯하였는데 史書에는 光海州 사람이라고 하였다. 欲乃郡은 지금 谷城縣이요 光海州는 곧 春川府이니 아마도 谷城에서 春川으로 옮긴 것이리라. 新羅의 政治가 쇠잔하여지자 甄萱은 完山에 웅거하여 後百濟라 일컫고 弓裔는 鐵原에 도읍하여 泰封이라 이름하였는데, 公

7) 譯文은 주로 《壯節公 申崇謙 將軍 事蹟》의 것에 의하였다.

은 처음에 弓裔에 종사하여 騎將이 되었다. 이윽고 弓裔가 凶暴無道하여 날로 사람 죽이기를 일삼는지라 그의 妻 康氏가 이를 말리다가 죽음을 당하고 그의 두 아들에게까지 미치니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그 해독을 이길 수가 없었다. 高麗太祖 神聖大王이 松岳에서 일어나니 너그럽고 어진 度量으로 亂世를 바로잡고 民生을 안정시킬 뜻을 가졌었다. 자주 큰 공을 세워 侍中·百船將軍이 되었고 威嚴과 德望이 날로 높아져 人心이 治然히 기울었다. 이에 公이 天命의 소재를 살피고 洪儒·裴玄慶·卜智謙과 함께 그를 임금으로 추대하기를 은밀히 도모하니 이 3인은 또한 함께 騎將들이었다. 夜半에 太祖의 집에 가서 말하기를 「三韓이 분열됨으로부터 지금 왕이 분발하고 크게 활동하여 草野의 도둑을 쓸어 없애고 나라를 三分하여 그 태반을 가졌으되 마침내 끝을 잘하지 못하고 음란하고 포악한 짓을 함부로 하여 妻子를 죽이고 臣僚들을 멸망시키며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그를 미워하기를 원수와 같이 여기니 夏의 桀王과 殷의 紂王의 포악도 어찌 이보다 더 하리요. 어리석은 임금을 몰아내고 어진 임금을 내세우는 것은 天下의 大義이니 청컨대 殷의 湯王과 周의 武王과 같은 일을 행하십시오」라 하였다. 이에 太祖가 얼굴을 붉히면서 굳이 거절하자 公 등이 말하기를 「하늘이 주는 것을 취하지 않으면 도리어 災殃을 받는 것이니 어찌 하늘의 뜻을 어기어 獨夫의 손에서 죽겠습니까」라 하였다.

이때 神惠王后 柳氏가 帳幕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오면서 太祖에 말하기를 「義로움을 일으키고 사나움을 치는 것은 예로부터 그러한 것인데 지금 여러 장수들의 말을 듣건대 쫓의 마

음이라도 오히려 분발되거든 항차 大丈夫리요」라 하며 손수 金甲을 들어 太祖에게 입히니 公이 여러 장수와 함께 부축하여 밖으로 나와서 새벽에 太祖를 露積가리 위에 앉히고서 모두 늘어서서 절하며 萬歲를 외치고 騎兵을 시켜 달리면서 외치게 하기를 「王公이 舉義하였다」라 하니 백성들로 따르는 자가 數萬名이나 되었다. 弓裔가 놀래어 바위굴짜기 사이로 도망하였다가 斧壤(平康) 백성들에게 살해된 바 되니 實로 後梁 貞明 4년(918) 6월이었다. 太祖가 布政殿에서 즉위하고 뒤이어 추대한 공을 책정함에 公과 洪儒·裴玄慶·卜智謙으로 모두 一等功臣을 삼고 詔書를 내려 포상하면서 金銀器를 하사하고 錦繡綺被褥을 패물로 주었으며 이로부터 매양 征伐이 있을 때마다 오로지 公에게 의지하였다. 公은 몸이 長大하고 機智가 있었으며 弓術이 뛰어났는데 일찍이 太祖를 따라 平山에 갔을 때 세 마리의 기러기가 날아가는지라 太祖가 여러 將帥들을 돌아보면서 「누가 저 기러기를 쏘겠는가」라 하였다. 公이 곧 절하면서 말하기를 「臣이 쏘겠습니다. 몇째 기러기를 맞힐까요」라 하니 太祖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셋째의 왼쪽 날개를 맞히라」 하자 시위를 당기는 순간 기러기가 떨어지는데 과연 어김이 없었다.

太祖가 감탄하여 마지않아 드디어 세 마리 기러기가 지나가던 땅을 둘레로 하여 하사하고 이어서 平山으로써 公의 貫鄉을 삼게 하였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子孫들이 대대로 지켜오고 있으며 그 땅을 이름하여 弓位라고 하였다.

太祖 10년 9월에 甄萱이 新羅를 침범하였을 때 新羅 景哀王이 사신을 보내어 위급함을 고하자 太祖가 말하기를 「新羅는 與國으

로 구원하지 않을 수 없다」라 하여 侍中·公萱 등을 보내어 군사 1萬 名으로 달려가게 하였는데 아직 미치기 전에 甄萱가 갑자기 慶州에 침입하여 드디어 景哀王을 죽이고 金傅(敬順王)를 새 왕으로 세우는 한편, 병사를 풀어 노략질을 자행하였다. 太祖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사신을 보내어 吊祭하고 親히 精騎 5천을 거느리고 公과 金樂을 大將으로 삼아 公山桐藪에서 甄萱를 맞아 크게 싸웠으나 不利하였다. 甄萱의 군사가 太祖를 포위하여 매우 위급하였는데 公의 얼굴이 太祖와 흡사하였는지라 公은 형세가 궁박하여 벗어날 수 없는 것을 헤아리고 몸소 太祖를 대신하여 죽을 것을 자청하였다. 그리하여 太祖를 礙藪에 숨게 하고 드디어 임금의 수레에 타고 金樂과 함께 힘껏 싸우다가 죽으니 甄萱의 군사가 公을 太祖로 여겨 그 머리를 취하여 창에 꿰어 돌아가니 포위가 마침내 풀렸다. 太祖가 겨우 죽음을 모면한 다음 싸우던 곳으로 되돌아와 公의 屍身을 찾으려 하였으나 이를 분별할 수 없다가 公의 왼발 아래에 北斗七星과 같은 사마귀가 있었으므로 이를 증험하여 찾아내었다. 이에 工人에 명하여 얼굴을 새겨 만들어 자리에 안치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예를 갖추어 장사하고 祭田 9천 步를 하사하고 守墓軍 30戶를 두었으며 그 아우 能吉과 아들 甫藏으로 모두 元尹을 삼았다. 또 桐藪에 智妙寺를 세워 명복을 빌게 하였으며 中書門下省에서 公을 壁上虎騎衛·太師·開國公·三重大匡·毅景翊戴匡衛砥節底定功臣에 壯節의 諡를 上奏하자 이를 裁可하여 御筆로 中書門下省에 大書하였다. 그리고 致祭할 때 敎를 내리어 匡翊効節獻襄의 功臣의 號를 더하게 하고 뒤에 太祖廟庭에 配享하여 高麗가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 本朝(朝鮮朝)

의 우리 文宗大王이 公이 임금을 위하여 代死한 節義가 우리 나라 百世의 綱常을 깨우쳤으니 世代가 다르더라도 빠뜨릴 수 없다고 하여 麻田의 崇義殿에 올려 제사케 하고 有司에게 戒飭하여 公의 子孫에게 벼슬을 주게 하고 비록 支派나 庶派라 하더라도 軍籍에 올려 充役하는 일이 없게 하였다. 이로부터 역대의 임금들이 계속하여 준수하였으며, 또한 우리 先王인 正宗(正祖) 莊孝大王은 그 20년 丙辰에 平山の 太白山城에 公과 裴玄慶·卜智謙·庾太師 黔弼의 鑄像이 있는데 그 畠人們이 소중히 여겨 제사 지낸다는 말을 듣고 크게 감탄하며 말하기를 「三韓을 統合할 때 이를 도운 공을 세운 자는 壯節公과 여러 太師들이다」라 하며 親히 祭文을 짓고 公의 後孫으로 大將을 지낸 (申)大顯에게 명하여 斗酒와 生餼로써 祠堂 아래에서 북을 치고 軍樂을 연주하여 侑食하게 하였으며 禮曹에서는 額號를 논의하여 紀功이라 하였으나 임금이 四太師祠라 고치게 하였다. 嗚呼라! 公의 忠과 烈은 千古를 날날이 헤아려 보아도 오직 紀信이 이 같을 뿐이요 그 다른 예가 있음을 나로서는 알지 못하겠다. 그러나 公은 紀信보다 두 가지 나음이 있다. 紀信은 평범한 漢高祖의 장수이나 公은 나라의 터전을 창건한 元勳으로 이것은 살아서 낫다 함이요, 南宮의 잔치에서 漢高祖가 유독 三傑의 힘만 칭찬하고 紀信에게 미치지 않았으나 公은 高麗太祖가 측은히 여겨 애도함이 그와 같았고 천년 후에도 우리 두 임금의 그윽한 감회를 불러일으켜 융숭하게 보답함이 이와 같은 것으로 이것은 죽어서도 낫다 함이다. 하물며 그 훌륭한 名聲과 義로운 소문이 밝은 세상의 선비들이 우러러 보는 바가 되어 저 고향마을로부터 공을 드러낸 곳과 순절한 땅에 이르기까

지 모두 俎豆를 받들고 부지런히 학문하면서 칭송하되 世代가 더욱 오래수록 恩澤이 더욱 새로우니 이는 또 일시의 慷慨함만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 사람으로서 바랄 수 있는 바가 아닌 것이다. 嗚呼라! 거룩하고 뚜렷하지 아니한가. 公의 積德餘慶이 後孫에게 흘러내려 平山申氏가 海東에 가득하여 이름나고 두드러진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널려 있고 譜牒 百餘 卷이 世上에 전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더 언급하지 않겠다. 또 살피건대 公이 돌아간 뒤에 精靈이 아주 기이하여 海東名臣行蹟에 이르기를 高麗太祖가 八關會를 베풀 때 公과 金樂이 전사한 것을 슬프게 생각하고 그들의 假像을 짚으로 만들어 班列 위에 앉게 하고 酒食을 내리자 술이 문득 저절로 말라지고 짚으로 만든 假像이 춤을 추었다고 하였으며, 뒤에 睿宗이 西京에 巡幸하여 八關會를 베풀 때는 두 假像이 簪과 笏을 갖추고 붉은 옷을 입고서 말을 타고 뛰어 달리는지라 임금이 괴이히 여겨 물으니 좌우에서 그 연유를 고하자 임금이 몹시 감개한 나머지 金樂의 孫과 公의 玄孫 勁에게 벼슬을 주었다고 하였다. 또 輿地勝覽에 이르기를 公이 죽은 뒤 谷城縣의 城隍神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그 子孫이 또한 이르기를 墓所를 수호하는 자가 혹시 근신하지 않으면 문득 빌미가 된다고 하여 세상 사람들이 의아함이 없지 않으나 나는 가만히 생각컨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옛날 莊子가 이르기를 殷의 어진 政宗인 傳說은 죽어서 列星이 되었다 하였고 子厚(柳宗元)가 柳州에 귀양가서 죽으니 그 神靈이 고을(州)에 내리는지라 羅池의 祠堂에 이를 享祀하였는데 李儀가 술에 취하여 慢忽히 하다가 暴死하자 退之(韓愈)가 碑文에 이를 실었으며 그 밖의 伍子胥와 關雲長과 같은 경우

도 뚜렷한 靈異함이 傳記 가운데 흔히 나오는 것은 모두 속일 수 없는 일이다. 대저 사람이 태어나되 굳세고 맹렬한 기염이 있는 자가 非命에 죽게 되면 그의 精靈이 애뜻하고 산란하며 답답하고 끓어오르듯하여 肉體를 따라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따금 황홀히 변화하여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하는 것이니 이도 또한 事理에 없을 수 없는 바이다. 그러나 公과 같은 경우는 저절로 天地를 뒤엎고 宇宙를 휩쓸어도 破滅되지 않을 것이니 어찌 족히 구구하게 이러한 것을 論하라.

墓所에 본디 神道碑가 없었으나 이제 甲子年(純祖 4, 1804)에 (申)大顯이 비로소 그 宗親들과 함께 도모하고 (金)祖淳이 外裔가 된다고 하여 글을 부탁하였다. 嗚呼라 公이 돌아간 지 千年이 되었는데 혹은 때를 기다림이 있어 그러하였던가. 사양하려 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또 굳이 그럴 수도 없는 일이다. 銘하여 이르기를 綿綿한 申氏의 世系는 맨 먼저 谷城에서 나시었도다. 史書에는 光海州(春川)로 보이지만 아마도 뒷날 옮겼음이라. 이제 는 平山으로 貫鄉하여 나라에서 주신 땅도 가졌도다. 거룩하신 太師여! 하늘이 高麗를 도우셨도다. 弓矢로 威嚴을 떨치고 干城으로 나라를 지키셨도다. 弓裔가 淫虐하여 저절로 꺾이자 비로소 鐵原을 치셨도다. 太師가 機先에 밝으시어 颯然히 번갯불 같았도다. 高麗太祖를 도와 추대하여 포박한 政治를 물리쳤도다. 洪儒와 卜智謙이 서로 돕고 裴玄慶과도 德을 같이하였도다. 鷄林을 휘어잡고 鴨綠江을 무절러 나라의 터전을 돕고 天命을 비릇하였네. 新羅는 쇠잔하여 쓰러져 가고 甄萱은 함부로 반역하였네. 나라의 社稷은 옮겨가고 寶玉과 冕旒冠도 바뀌었도다. 임금이 太師에게 말씀

하기를 盟邦의 厄運을 참을 수 있으리요. 내가 親히 甄萱을 정벌 하리니 그대는 出師함에 中道로써 吉하게 하라고 하셨도다. 날새 고 슬기로운 騎兵 五千으로 八公山에서 적을 무찔렀도다. 天時가 이롭지 못함인가. 힘은 빠지고 智略은 궁하였었네. 逢丑父는 齊頃王을 닮았고 紀信은 楚霸王을 속였도다. 머리를 잃으심은 勇猛함이요 몸을 버리심은 忠誠함이로다. 임금이 太師를 죽은히 여겨 죽음은 오히려 元勳이라 하셨도다. 先軫의 얼굴은 살아 있는 듯하였고 范蠡의 鑄像은 정교하였도다. 公의 머리를 새겨 屍身에 합치고 禮를 갖추어 장사하였도다. 높다랗게 솟은 세 封墳이여! 悲方洞 언덕에 자리하였도다. 太師가 高麗太祖의 臣下였을 때 桓桓한 武勇을 누가 따랐으리. 太師는 이미 돌아갔지만 그의 神靈은 凜凜하시도다. 吳의 伍子胥는 潮水를 몰아 일게 하고 漢의 壽亭侯는 임금의 巡幸을 도왔도다. 눈부신 光彩가 아른거리며 모여드니 분명코 우리 백성을 도우리도다. 太師의 餘慶이 넘쳐 흘러 代代로 後孫들이 昌盛하였도다.

헤아릴 수 없이 성하게 펼쳐 八道 가는 곳마다 가득하도다. 백성도 되고 이름난 선비도 되고 때로는 한 나라의 將相도 되었도다. 麒麟인가 鳳凰인가. 진실로 太平盛代의 빛이로다. 빛을 펼쳐 德을 풀이하고 大書特筆하여 깊이 새기는도다. 멀고 아득한 이 外孫은 靑史를 간직하는 직책을 맡았는데 거룩한 名聲을 상상하건대 千年 옛일이 이제인 듯하도다. 太師의 功績이 없어지지 못할진대 나의 榮光도 다함이 없으리도다.

崇禎紀元後 三乙丑(純祖 5年) 세움

外裔 原任大提學 輔國崇祿大夫 領敦寧府事 兼 知經筵實錄事 奎

章閣檢校提學 永安府院君 安東

金祖淳 삼가 지음

後孫 承議郎 守弘文館副校理 知製敎 兼 經筵侍讀官 春秋館記注官 實錄記注官 東學教授 文臣 兼 宣傳官 (申)緯 삼가 씀

外裔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左議政 兼 領經筵事 監春秋館事 達城 徐邁修 삼가篆

〈原文〉

高麗開國功臣壯節申公神道碑銘 并序

春川府治之北 有江曰昭陽 江之北六七里 有洞曰悲方 卽高麗代死功臣太師申公體魄之所安也 三塋穹然 世傳 太師戰込喪元 王鑄金爲太師面 合體而葬 懼人之竊啓也 三其封以疑之 或者疑太師自有夫人祔焉 年化遠文獻無稽 故凡祭省拜中塋而行事 視其重而已 其實或左或右 皆不可度也 謹按公諱崇謙舊諱能山 其先出百濟欲乃郡 而史稱光海州人 欲乃今谷城縣 光海卽春川 或自谷而遷於春也 新羅政衰 甄萱據完山稱後百濟 弓裔都鐵原號泰封 公始從弓裔爲騎將 旣而裔凶暴無道 日事誅戮其妻康氏諫而被殺 及其二子 國人惴惴不堪其毒 而高麗太祖神聖王起自松嶽 寬仁大度 有撥亂安民之志 屢立大功 爲侍中百船將軍 威德曰盛 人心洽然傾嚮 公知天命有在 乃與洪儒裴玄慶 卜智謙密謀推戴 三人者亦騎將也 夜詣神聖邸 告曰自三韓分裂 今王舊臂一呼 芟掃草寇 三分遼左奄有太半 乃不克終 淫虐以逞 殺妻戮子 夷滅臣僚 民塗炭 疾如仇讎 桀紂之惡 何以加焉 廢昏立明 天下之大義也 請公行殷周之事 王作色固拒 公等曰天與不取 反受其咎 豈可違天 死於獨夫之手乎 神惠王后柳氏 從帳後竊聽之 出語王曰

舉義伐虐 自古而然 今聞諸將言 妾心猶奮 況大丈夫乎 手提金甲而
 被之 公與諸將擁而出 黎明坐王積穀上 羅拜呼萬歲 今騎馳旦呼曰
 王公舉義矣 國人歸者 立數萬人 弓裔驚竄巖谷間 爲斧壤所害 實梁
 貞明四年夏六月也 王卽位於布政殿 尋策推戴功 以公及儒·玄慶·智
 謙皆一等 下詔褒美 賜金銀器 幣錦繡綺被褥 自是每有征伐 悉以倚
 公 公長大有機智 善射命中 嘗從王遊平山 有三鴈飛過 王顧諸將誰
 可射 公卽拜曰 臣請射 射何中 王笑曰 第三而左翼 弦開而墜 果然
 王嘉嘆不已 遂宮三鴈所經之地賜之 仍以平山爲公鄉 子孫至今世守
 名其田曰弓位 神聖王十年秋九月 甄萱犯新羅 新羅景哀王遣使告急
 王曰新羅與國也不可不救 遣侍中公萱等 以兵一萬赴地 未至萱猝入
 鷄林 遂弑王而立金傅 縱兵大掠 王聞之大怒 遣使吊祭 親率精騎五
 千 以公及金樂爲大將 邀萱於公山之桐藪 大戰不利 萱兵圍王甚急
 公貌類王 度勢窮不可脫 請以身代 匿王於礙藪 遂乘王車 與金樂力
 戰而逃 萱兵以爲王也 取其頭貫槊而歸 圍乃解 王旣免還至戰處 覓
 公屍莫可辨 公左足有七黑子 如斗驗而得 命工雕造頭面 置諸位哭之
 甚痛 備禮以葬 賜祭田九千步 置守塚三十戶 以其弟能吉子甫藏 竝
 爲元尹 旣又勅 智妙寺於桐藪 以薦冥福 中書門下奏公 可壁上虎騎
 衛太師開國公三重大匡毅景翊戴匡衛怡輔砥節底定功臣謚壯節 御筆
 大書中書門下 祭教可匡翊效節獻襄 後配食神聖廟庭 訖于麗世 及本
 朝 我文宗大王 以公爲君代死之節 啓東土百世綱常 不可以累代泯沒
 命躋享于麻田之崇義殿 飭有司錄用其子孫 雖支庶毋得籍軍充役 自
 是以來列聖繼遵 亦粵我寧考正宗莊孝大王 二十年丙辰聞平山之太白
 山城 有公與裴卜及庾太師黔弼鑄像 邑人葆祀之 上喟然興感 若曰
 贊成統合三韓之功者 壯節諸太師也 親撰文 命公裔孫前大將大顯 以

斗酒生彘 至祠下 擊鼓鐃吹以侑之 禮曹議祠額曰紀功 上改命四太師祠 嗚呼公之忠之烈 歷數千古 惟紀信似之 其他余不知也 然公之於信 有二勝 信漢氏之凡將 而公瓶基之元功 生而勝也 南宮之宴 高祖獨稱三傑之力 而不及於信 公爲神聖所隱悼 如彼而千載之後 獲遭我兩聖人曠惑而崇報之 又如此 死而勝也 況其風聲義聞 爲昭代士林之所景仰 自夫鄉貫井閭 以至著功之所立殣之地 皆俎豆以奉之 藏修以誦之 世彌遠而澤彌新 則又非一時慷慨成名之人 所可企也 嗚呼偉哉 公之積德衍慶 流于後昆 平山之申 遍於海東 名公碩人磊落相望 有譜百餘卷 行于世 茲不槩及 又按公 歿而精靈絕異 海東名臣行蹟云 王設八關會 慨念公與金樂 結草爲像 列班上 賜以酒食 酒輒自乾 草像起舞 後睿宗省西都設會 有二假像 簪笏服紫 騎馬踴躍 王怪問之 左右告之故 王爲之感慨 官金樂孫及公玄孫勁 又輿地勝覽云 公死爲谷城城隍之神 而其子孫亦謂 守墓者或不謹輒有咎 世之君子或不能舞疑 余竊謂不然 昔莊子云 傳說死爲列星 子厚謫死 其神降於州 廟食羅池 李儀以醉慢暴死 退之載諸其碑 其他如伍子胥關壯繆之赫奕靈異 雜出傳記者 皆不可誣 蓋人之生而有威猛氣燄者 死其非命 其精爽倏佗佛鬱 不隨以滅 往往怳惚變化 驚動生人 是亦理之所不能無者 雖然若公 自有敝天壤 窮宇宙而不泯者存 又何足區區論此哉 墓本無碑 今年甲子 大顯始與其宗人謀 屬銘於祖淳 謂祖淳外裔也 嗚呼公之歿今且 千年茲或有待而然歟 辭不獲 亦不敢固 銘曰 申系綿綿 谷云出先 史著光海 或後式遷 籍平於今 厥有賁田 烈烈太師 天爲有麗 弧矢維威 干城維姿 弓謠自絕 造攻于鐵 太師炳機 鸞發電掣 翊戴神聖 而往割正 左洪右卜 同德玄慶 操鷄搏鴨 贊基肇命 羅顛目革 甄僭肆逆 鍾簫動移 圭冕改易 王謂太師 與邦其厄 予其卽戎 汝

吉師中 輕騎五千 鑒彼八公 時乎不利 力屈智窮 逢類齊君 紀誑重瞳
喪元爲勇 捐軀曰忠 王隱太師 死愈元功 肖軫如生 鑄蟲惟工 合其遺
體 窀穸以體 三封屹起 悲方之坻 太師爲臣 桓桓絕倫 太師云込 凜
凜其神 吳胥驅潮 漢壽司巡 怵惚赫翕 顯護生民 太師衍慶 十世其昌
振振不億 彌散八方 爲庶爲清 或賓于王 其麟其鳳 昭代之光 擒光述
德 大書深刻 遙遙外昆 金匱之職 想像風聲 千載如卽 太師不朽 我
榮無極

崇禎紀元後 三乙丑 立

外裔原任大提學 輔國崇祿大夫 領敦寧府事兼知經筵實錄事 奎章
閣檢校提學 永安府院君 安東 金祖淳 謹撰

後孫 承議郎 守弘文館副校理 知製敎兼經筵侍讀官 春秋館記注官
實錄記注官 東學教授 文臣 兼 宣傳官 緯 謹書

外裔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左議政 兼領經筵事 監春秋館事
達城 徐邁修 謹篆

申崇謙과 관계되는 院祠로 表忠祠는 바로 앞에서 말한 바 있으
므로 여기에서는 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으며, 太師祠와 德陽
書院·東陽書院·道浦書院에 대하여 여기에서 概觀하기로 하면 다
음과 같다.

太師祠는 黃海道 平山 북쪽 약 10里가 되는 太白山城 안에 高
麗 때 건립되어 朝鮮 正祖 20년에 賜額된 祠宇로서 申崇謙과 庾
黔弼·卜智謙·裴玄慶의 4太師를 祭享하였다. 이 太師祠는 고려 때
尙忠祠라 하여 고려 太祖에 의하여 鐵像을 만들어 奉安하고 제사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德陽書院은 全羅道 谷城邑 동남쪽 5里가

되는 梧谷面 德山里에 宣祖 22년(1589)에 건립되어 肅宗 21년(1695, 乙亥)에 賜額된 書院으로서 申崇謙을 제향하였다. 또 東陽 書院은 平山 서쪽 60리가 되어 雲峰山下에 孝宗 1년(1650)에 건립되고 肅宗 13년(1687)에 賜額된 書院으로서 申崇謙과 李穡을 제향하였다. 그리고 道浦書院은 孝宗 6년(1655)에 春川 悲方洞 申崇謙墓下에 창건되어 申崇謙을 제향하였는데, 肅宗 20년(1694)에 春川 서쪽 15리가 되는 道莊浦의 鰲山으로 옮겨져 申崇謙을 主享하고 申欽·金敬直을 配享하였다.

또 그를 配享한 祠廟로 京畿道 麻田(漣川郡)의 崇義殿을 들 수 있는데, 이 崇義殿은 朝鮮太祖가 高麗太祖 王建의 廟를 세우고 제사하다가 定宗 때 거기에 高麗의 惠宗·定宗·光宗·景宗·成宗·穆宗·顯宗의 7王을 더 제사하였으며, 世宗 때 高麗의 太祖·顯宗·文宗·元宗의 4王만을 제사하게 되었는데, 文宗 때 廟의 이름을 崇義殿이라 하고 高麗王族의 후손으로 하여금 제사를 맡게 하였으며, 申崇謙과 卜智謙·洪儒·裴玄慶·庾黔弼·徐熙·姜郇贊·尹瓘·金富弼·金就勳·趙冲·金方慶·安佑·李芳實·金得培·鄭夢周를 配享하였다. 그리고 《新增東國輿地勝覽》 谷城縣 人物條에 申崇謙이 죽어서 谷城縣의 城隍神이 되었다고 한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다.

한편 平山申氏系譜에 의하면 谷城郡 木寺洞面 九龍里는 바로 申崇謙의 誕生地로서 그곳에는 後孫들에 의하여 龍山壇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龍山齋와 九龍門을 세웠다고 되어 있다.

5. 結 語

위에서 보아온 것과 같이 壯節公 申崇謙은 武將으로서 立身하여 高麗太祖 王建을 추대하여 高麗를 개창케 하는 데에 제1의 인물이었고, 다시 10년 뒤에는 公山桐藪戰鬪에서 太祖를 대신하여 殉節함으로써 太祖로 하여금 民族 再統一을 성취케 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인물이었다.

그 生涯에 있어서 한 가지 석연치 않은 것은 그의 出身地로서 견해에 따라 全羅道 谷城說과 江原道 春川說이 있으나, 本稿에서는 《高麗史》申崇謙傳에 그를 光海州(春川)人이라 한 점, 그가 중앙에 진출하는 데는 谷城보다는 春川을 중심으로 하여 어느 정도의 세력기반을 형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그의 墓地가 春川으로 선정되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春川說로 결론을 지었다. 그러나 그것은 當代 또는 멀지 않은 先代의 일로 원래의 先代는 谷城이 근거지였던 것 같다.

公山桐藪戰鬪에서의 그의 殉節은 단순한 殉節이 아니었다. 그 殉節은 太祖를 死境에서 구출한 것이었다. 또 太祖로 하여금 國家經營에 보다 적극성을 띠게 하여 民族 再統一의 偉業을 성취케 한 계기를 제공한 것이 되어 그 의의는 매우 큰 것이다.

그의 遺趾로는 먼저 大邱 八公山の 殉節壇을 들 수 있는데, 이 殉節壇은 그가 殉節한 곳에 설치된 祭壇으로서 그것이 설치된 시기는 기록에 자세히 않아 정확한 것을 알 수 없어도 太祖가 그곳에 智妙寺를 세워 冥福을 빌게 하였다는 《高麗史》의 기록으로 보

나, 또 太祖가 그의 죽음을 심히 애통하였다는 기록으로 보나, 또 太祖로서 그의 죽음의 장소에 어떠한 기념물을 마련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太祖 때 설치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그의 忠節은 後世에까지 빛을 발휘하였다. 朝鮮時代에 들어 士林들에 의하여 그의 忠節이 높이 평가되어 大邱 八公山の 表忠祠⁸⁾를 비롯하여 平山의 太師祠와 東陽書院, 春川의 道浦書院, 谷城의 德陽書院 등이 설립되어 士林共同體에 의하여 祭享이 받들어졌던 것이다.

8) 表忠祠가 처음 설치된 것은 宣祖 40년에 慶尙道觀察使 柳永詢이 嶺南에 거주하는 申崇謙 후손들로부터 경비를 거두어 창건하여 후손들에 의하여 제향이 받들어졌으나, 顯宗 11년에 士林들에 의하여 중건됨과 함께 士林共同體에 의하여 제향이 받들어졌다.

清日戰爭은 왜 韓半島에서 일어나야 했는가

梁 泰 鎮
(土 門 會 長)

1. 머 리 말
2. 100年 前의 國內情勢와 清日戰爭의 發端背景
3. 清日戰爭의 戰場化된 韓半島
4. 清日戰爭의 勃發과 戰況
5. 清日戰爭으로 因한 韓國의 人的, 物的 被害狀況
6. 맺 는 말

1. 머 리 말

戰爭이란 대체로 勃發對象國과 被侵國과의 對決로 戰爭의 主戰
爭터는 相對國의 領土에서 벌어지는 것이 常例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現代史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청일, 러일전쟁은 우리민족
의 입장에서 볼 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의 전쟁터가 되
었다. 이 兩大戰의 피해는 곧바로 당시의 우리민족 전체에 미쳤을

뿐만 아니라 그 여파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불행한 역사적 사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왜, 하필이면 내 나라 내 땅에서 문제의 제 3국들이 角逐戰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깊은 반성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필요성은 당연히 제기되어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의문과 필요성에 대한 自問自答인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미래의 통일한국 창조를 지향해야 할 통일정책 차원에서도 鑑戒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실 우리의 통일문제는 싫든 좋든 주변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감안할 때, 100년 전 우리민족의 불행한 역사적 原因 提供의 當事國들이 바야흐로 오늘날에 와서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서 있음을 볼 때 憂慮와 自省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와 맥락을 같이하여 일부 識者간에는 100년 전의 상황이 오늘날의 국제정세와 유사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도 만만치 않다.¹⁾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고 확인키는 어려우나 불행했던 사건의 재발방지는 가능한 史的敎訓에서 찾아야 한다. 시대적 불행을 되풀이하는 민족은 가장 愚昧한 민족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수많은 內憂外患에 따른 試鍊과 苦難을 겪어 온 민족인 까닭에 이에 따른 叡智로운 敎훈들이 역사의 뒤안길에 수없이 매몰되어 있다.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을 비롯해 청, 러의 직간접적인 침략과 서구열강들의 利權쟁탈을 위한 政略이 이 나라를 둘러싸고 얼마나 추잡하게 전개되어 왔고 이에 따른 민족적 치욕과 손

1) 李東旭, 東亞日報, 1994. 5. 13日字, '新「朝鮮策略」아쉽다' 및 同年 8. 2日字, 李東熙, 「87년 전 굴욕의 군대해산」 등 記事 參照.

실이 얼마나 심각했었는가 말이다.

바로 오늘의 이 시점에서 100년 전의 주변 4강에 의한 한반도에의 진출경쟁은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다만 전략, 전술 차원에서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위협은 아니더라도 경제적 利害得失에 치중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위와 같은 견지에서 청일전쟁이 발발한 지 100년 전의 역사적 사실과 오늘날의 제반상황을 견주어 他山之石을 삼았으면 하는 것이 本稿 작성의 목적이다.

2. 100年 前の 國內情勢와 淸日戰爭의 發端背景

가. 100年 前の 國內狀況

朝鮮王朝의 누적된 積弊는 간단없는 民亂을 自招하다가 드디어 地方官衙의 탐관오리들에 대한 聲討와, 한걸음 더 나아가 中央政府에 대한 적극적인 弊政의 개선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是正要求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는 동학운동(東學運動)으로 분출되었던 것이다. 輔國安民이라는 大義名分하에 사회제도와 국가정치의 대개혁을 기도하는 대담한 농민전쟁의 형태로 변형되었다. 500년 王朝의 根幹을 뿌리째 흔들어 놓으면서 斥倭斥洋을 주장하는 근대적 民族主義의 旗幟를 뚜렷이 내세웠다.²⁾ 이 運動

2) 癸巳 三月初十日 卯時, 東學倡義儒生等の 名義로 된 報恩郡衙 三門밖, 「掛書」參照.

(革命)은 조선왕조의 말기적 붕괴를 자초 내지는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대외적으로는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를 흔들어 놓는 一大變化를 가져 왔다.

東學敎門은 민족을 本位로 하고 宗教的인 信仰生活과 政治, 軍事關係의 行動이 混在한 狀態로 이어졌다.³⁾

東學敎徒 가운데는 단순한 宗教的인 祈禱나 修練을 反復 持續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비약, 전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 집단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리하여 이들 집단 가운데서는 우선 甲子年에 殉敎한 敎主의 伸冤을 내세워 폭 넓은 敎徒들의 支持를 획득하는 基盤 위에서 東學敎勢의 政治的 對應力을 擴大해 나가하고자 하였다.

과거의 例로 보아도 교조의 신원운동은 정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伸冤이 된 이후로는 被害 遺族側과 加害者側에 대한 報復이 뒤따르게 마련이고 정치적인 立地도 변화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견지에서 東學敎 幹部들은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敎勢를 확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겼고, 일반교도들도 이에 동조하는지라 敎主인 崔時亨은 敎祖의 伸冤과 아울러 一線 官吏들의 횡포를 지적하고 이를 금지시켜 줄 것을 請願하였다. 이러한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동학도의 울분은 터져 드디어 報恩集會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집회는 정부당국을 매우 당황하게 하였으며 민심 또는 흉흉하기 이를 데 없었다. 게다가 斥倭, 斥洋이라는 슬로건은 당시 서울에 주재하고 있던 外交使節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국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3) 李瑄根, 韓國史 - 現代篇 - 乙酉文化社, 1963, pp. 125~126.

특히 보은집회에서는 교조 신원에 대한 슬로건은 내세우지 않고 斥倭洋昌儀의 정치적 요구를 뚜렷이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주목을 끌게 되었다.⁴⁾

이 같은 상황하에서 정부는 이들을 회유하는 한편 위협, 해산을 종용하는 차원의 미봉책으로 대응하였다. 즉 三政의 紊亂은 시정되지 않고 드디어 全羅道 古阜郡守 趙秉甲과 같은 貪官汚吏의 虐政으로 말미암아 東學農民革命은 터지고 말았다.⁵⁾

나. 淸日의 對韓觀과 周邊情勢

(1) 淸日 兩側의 對韓觀

고종이 즉위하고 난 이후 흥선대원군은 일본의 維新政府가 보내 온 國書와 使臣을 거절한 데 반해 淸國政府는 별다른 拒否反應 없이 순순히 이들을 接待하고 淸日通商條約까지 체결하였다.⁶⁾

이러한 外交關係의 수립은 지난날의 傳統的인 외교관례를 벗어난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와 같은 경위를 뒤늦게 안 조선정부는 몹시 당황한 반면, 일본측의 對韓態度는 매우 격앙된 상태였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일본측의 이른바 음흉한 征韓論의 발로와 맞물림으로써 戰爭不辭의 분위기에 휩싸이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에또(江藤信坪) 같은 자는 1871년 6월 구미제국주의적 수법을 배워 가지고 세계정복의 꿈을 꾸고 있으면서 말하기를 “중국은 아시아

4) 東學亂記錄, 上, 韓國史料叢書, 第10, p. 111. 聚語 參照.

5) 全捧準拱草, 初招 및 秘書類纂朝鮮交涉資料, 中卷, pp. 343~356 參照.

6) 李瑄根, 韓國史 - 現代篇 -, 乙酉文化社, 1963, pp. 125~126.

의 쟁지로 이를 얻지 못한 자는 위태롭다. 이를 얻으면 아시아 전체를 점령하게 된다. 무릇 중국을 얻어 아시아의 형세를 차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능력을 구사하고 정치를 정돈하여 민심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그러한 연후에 미국, 러시아, 프랑스와 다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홍계는 오꾸보(大久保), 이또(伊藤) 등류의 인물들과 맥을 같이하고 있었던 것이다.⁷⁾

그런가 하면 이 시기에 미·불 등 서구열강들이 조선과의 수교 문제로 육신각진할 때에 청국의 중재를 요청함에 청측은 [조선은 자주국]임을 내세워 불간섭 입장을 취했다. 따라서 淸韓從屬關係는 전혀 문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틈을 타서 일본은 巨艦大砲로 조선국을 위협하여 丙子修好條約을 체결하였다. 특히 일본측은 “조선이 자주국임을 크게 강조하였다.” 이에 당황한 청측은 일본의 對韓進出을 견제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접근도 아울러 경계하면서 미·영·독 등 서구 列強諸國을 朝鮮에 소개, 修好通商條約을 斡旋 締結케 함으로써 以夷制夷의 外交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였다.

그러한 渦中에서도 청은 조선정부의 對淸從屬體制의 존중을 은연중 일방적으로 표명하게 하였다. 반면에 일본정부는 조선국의 主要港口를 開港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발판을 굳히고 근대자본주의 국가의 침탈수법을 써서 제반 利權과 市場獲得에 성공함으로써 제3국의 추종을 불허하였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事大保守의 親淸勢力을 정면으로 排除, 牽制하기에 이르렀다.

1882년 壬午軍亂이 일어나자 청국은 勿失好機로 보고 自進出

7) 李炫熙, 征韓論, 大旺社, 1986, pp. 171~172.

兵함과 동시에 내정간섭까지 하였다. 그리고 재등장한 대원군을保定府로 拉致 幽閉시키는가 하면 이미 진정된 난군의 토벌을 빙자하고, 서울의 梨太院, 往十里의 군인부락들을 도륙하는가 하면, 도피했던 민비의 還宮을 支持護衛하여 戚族勢道の 復權에 同調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교업무의 顧問 및 관련 指導要員을 추천, 介견하여 外交와 세관업무, 재정분야에까지 간섭하고 기존의 反淸勢力인 親日開化黨을 억제함으로써 마침내 甲申政變이라는 大慘劇은 유발되었다.⁸⁾

甲申政變은 결과적으로 한국내에서 청일간에 무력충돌까지 벌이게 되었고 이의 사후처리로 1885년 天津條約을 체결케 함으로써, 청일 양국의 對韓 勢力爭霸를 국제적으로 승인한 꼴이 되었다.

그러한 상황하에서도 청국정부는 對韓從屬關係를 견지하면서 30세 안팎의 야심만만한 원세개를 駐韓淸國公使로 임명하고 조선 정부에 대한 종횡무진 횡포한 내정간섭을 함에 부득이 국왕은 「引俄拒淸」의 親露政策을 펴게 되었다. 청 또한 일본의 對韓政策에 따른 영향력을 견제키 위해 러시아와의 공동견제를 기도하기도 하였다. 이에 일본은 우선 청의 對韓 우월감을 逆이용하여 형식적, 표면적으로는 Initiative를 청국정부에 내주어 對日警戒를 완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가 제시한 8개항의 共同干涉案을⁹⁾ 청국정부가 액면대로 승인케 하고는 實益實權은 일본이 차지하였다. 요컨대, 淸의 對韓觀은 쇠로한 노인의 과욕처럼 능력은 없으면서 虛禮와 實없는 威嚴으로 영향력을 행

8) 李瑄根, 韓國史 - 最近世篇 -, 乙酉文化社, 1963, pp. 490~491.

9) 상계서, pp. 800~801.

사하려고 하였다.

다. 天津條約과 淸日 兩國의 兵力

1882년(高宗19年) 壬午軍亂 이후 청국은 원세개의 지휘하에 3천의 병력을 서울에 주둔시키고 있었다. 일본은 甲申政變 이듬해인 1885년 1월 이노우에 지휘하에 2개 대대의 병력을 서울에 주둔시켜 놓고 있어 兩軍의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었다.

당시의 국내동향은 극도의 排日感情에 휩싸인데다 일본군의 주둔에 대해 강한 불만을 朝廷에다 겨냥하였다.

이에 일본은 매우 당황하여 駐淸 英國公使 파아크스(H.Parkes)를 통하여 淸國과의 교섭을 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이토(伊藤博文)를 청국 天津에 파견하여 청의 直隸總督 이홍장과 협상을 벌이게 하여 이 해 4월 18일 天津에서 全文 3個條의 條約을 체결하였다.

조약 내용을 풀이하면 첫째, 중국은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을 철수하고 일본은 공사관 호위를 위하여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을 철수시킨다. 이 조약 조인일부터 기산하여 4개월을 기한으로 정하고, 이 기한내에 양국의 병력 전원을 철수시킴으로써 양국 사이의 사단의 염려가 있음을 면하게 한다. 중국병은 마산포로부터 철수하고, 일본국병은 인천항으로부터 철수한다.

둘째, 양국이 동시에 승낙하고 조선국왕에게 권고하여 병사를 교란함으로써 치안을 스스로 확보하기에 족하도록 하고 조선국왕에 의해 제3국의 武官 1명, 혹은 數名을 선발, 고용하여 군사교련

을 위임할 것이며, 앞으로 중·일 양국은 파병하여 조선에 주재하면서 교련하는 일이 없게 한다.

셋째, 장래 조선국에 변란이나 중대사건이 일어나 중·일 양국, 혹은 그 어느 일국이 파병을 요할 때에는 의당 먼저 서로 行文知照할 것이다. 그 사건이 진정되게 되면 즉시 병력 전부를 철수하고 再留防하지 않는다. 이상의 내용을 담은 조약이 이른바 天津條約인 것이다.¹⁰⁾

이 조약은 당사국인 우리나라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청일 양측의 자의적인 의도에 따라 행해졌다. 여하튼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일본은 조선에서 청국의 우월권을 제거하고, 대등한 위치의 세력을 펼쳐 나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됨에 따라 내적으로는 조선을 둘러싸고 淸日兩國은 호시탐탐 그들의 세력부식에 혈안이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동학란이 일어남에 따라 무기력한 조선정부는 부득이 원세개에 구원을 요청함에 원세개는 我田引水格으로 공명심을 앞세워 본국에 군출동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군의 출동 구실을 제공하게 되었다.

동학란을 구실로 또다시 인천에 상륙시킨 일본병력은 2천명이었다. 일본군은 서울에 1천명, 인천에 4천명, 도합 5천의 병력을 집결케 하였다.¹¹⁾

이 당시 청군의 戰力이 재래적이라 한다면, 일본군의 전력은 같고 닮은 현대적 장비였다. 일본군부를 대변하는 당시의 가와가미

10) 日本外交文書, 第18卷(文書 No. 162) p. 291 및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上册, 卷 8, pp. 158~159.

11) 日本 外務省, 日本外交文書, 27卷 2册, p. 216.

(川上) 참모차장의 말을 빌린다면 대륙출동의 차비는 완료되어 오직 “放火手 하나의 출현 뿐이라는” 표현으로 대변되고 있었다.¹²⁾

裝備的 취약성은 차치하더라도 수적으로 5대 1의 열세는 일본군의 오만방자함을 가히 부추기고도 남음이 있었다.

3. 淸日戰爭의 戰場化된 韓半島

가. 日本軍 兵力 增強에 따른 各國의 視角

1884년 壬午軍亂을契機로 청일 양국의 한반도에서의 세력이 청優位로 기울자 일본은 臥薪嘗膽, 切磋琢磨의 匕首를 갈고 있었다. 더욱이 일본군부는 軍備의 확장이 일본의 主權線(領土 防衛)을 지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利益線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所信을 일본 육군의 창설자요, 사실상의 지휘자인 야마가다(山縣) 首相 등이 공언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利益線이라 함은 곧바로 主權線에 접해 있는 지역인 조선을 말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생각은 표현만 다를 뿐 西鄉隆盛 같은 자도 마찬가지이다.¹³⁾

그런가 하면 淸은 壬午軍亂을 계기로 朝鮮에 대해 적극적으로 淸韓從屬關係를 회복시켜 나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례가 오만방자한 젊은 원세개를 공사로 임명하고 조선에서의 商權을 장악해 나가고자 하였다. 청의 실력자인 이홍장은 그의

12) 李瑄根, 韓國史－現代篇－, 乙酉文化社, 1963, p. 134.

13) 関斗基, 日本の歴史, 知識産業社, 1976, p. 247.

심복인 독일인 뢰렌돌프(당시 천진주재 독일영사)를 海關總務局 고문으로 임명하고 조선의 세관업무를 左之右之케 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오랫동안 淸商들의 기득권을 바탕으로 主要商權을 차지함으로써 여타국에 비해 월등한 利權을 얻고 있었다. 경쟁국인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종로나 남대문통의 상권은 청인들이, 오늘날의 충무로인 진고개는 일본인들이 차지함으로써 현격한 차이를 놓고 있었다. 또한 수입물량으로 볼 때에도 개항장인 인천, 원산, 부산 등지에서도 차이는 두드러졌다. 일본은 명치유신 이래 서구적 자본주의 산업정책하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 왔다. 이러한 사례는 1874년부터 1893년 사이에 64萬斤의 銅이 3千3百萬斤으로, 石炭은 20萬 8千톤에서 3百32萬톤으로, 石油은 3千石에서 9萬 4千石으로, 船舶은 2萬 6千톤에서 17萬톤으로, 鐵은 90萬톤에서 500萬톤으로 증대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특히 여러 산업 가운데 섬유공업은 강력한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¹⁴⁾ 여하튼 甲申政變 이후 일본은 상품시장과 원료공급지로서 조선을 택하여 청국의 무역수준을 넘어서 1885년의 청일의 무역대비는 19대 81로 일본이 압도하기에 이르렀다.¹⁵⁾ 이러한 기세에 놓여 있던 일본세력에 대해 청국은 일본의 영향력에 제동을 걸고자 하던 차에 조선에서의 借兵要請이 있자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즉각적으로 출병을 결정하였다.

조선의 청국에 대한 援兵要請은 당시의 국제관계 정황으로 보

14) 煎重綱美, 戰爭史(日本資本主義 發展史 講座), 岩波書店, 5面~6面.

李北滿, 日淸戰爭論, 新東亞, 1936, 2, pp. 118~120.

15) 李鉉淙, 韓國의 歷史, 大旺社, 1982, p. 398.

아 일본군의 출병을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같은 상황은 비록 청이 일본과 大戰을 회피하려 하는 듯한 감을 주고 있기는 하나 결과는 싫든 좋든 청일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¹⁶⁾ 1885년(甲午年) 5월 7일 일본공사 大鳥圭介는 일본군 海兵隊 420명에 大砲 4門을 이끌고 서울에 입성하였다. 이에 朝廷은 오도리가 이끌고 온 호위병의 철군을 강경하게 항의하였다. 이 당시는 동학군의 全州城 철수로 서울 장안은 곧 평온해졌다. 이러한 때에 日軍의 입성을 시민들은 물론 駐韓外交使節까지 매우 의아해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오도리 공사는 본국의 외무대신에게 과다한 병력의 상륙중지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¹⁷⁾ 그러나 다음날인 9일에는 혼성여단의 선발대 800명이 一戶 陸軍小佐 인솔하에 인천에 도착함에 교활한 오도리는 外衙門에 照會하되 상륙한 부대는 전번의 병력과 교대하기 위함이라 변명하였다. 이 당시의 일본군 병력에 대해 The Tragedy of Korea의 저자인 Mckenzie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Whereupon the 3,000 men were landed, fully armed, and marched up to the environs of Seoul. ...”¹⁸⁾ 즉 3천명의 병력이 완전무장을 하고 인천에 상륙, 一路 서울로 진군했다. 이러한 일본측의 태도에 각국의 외교사절들은 분개하고 힐책하였으나, 전혀 개의하는 기색없이 서울에 입성한 부대는 남산과 북한산에 포대와 진지를 구축하고 서울시가를 위협함에 서울 장안의 인심은 극도로 흥흥해지고 시민들은 피난소동을 벌이는가

16) 李北滿, 日清戰爭論, 新東亞, 1934, 2, p. 121.

17) 日本外交文書, 第27卷 第2冊, 184面, 文書番號 535.

18) Mckenzie, The Tragedy of Korea, p. 40.

하면, 임금이 북한산성으로 피신한다는 풍설까지 나돌았다. 양력 6월 25일(음력 5월 22일) 일본군 여단병력이 서울로 집결하고는 만리동 고지와 아현동 일대에서 서해와 잇닿는 한강변과 시내 중심부를 조망할 수 있는 고지에 군막을 짓고 대부대가 주둔, 그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러한 일본군의 병력에 비해 청군은 수적으로나 장비면에서도 열세였다. 청군의 주둔상황을 개괄하면 1882년 임오군란 때에 중국제독 吳長慶 휘하의 3천 병력을 보낸 바 있는데 이를 배경으로 원세개는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깊숙이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년 뒤인 1884년 2월 월남문제로 인해 3천의 병력 중 약 절반에 달하는 1천5백명을 철수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부터 2년 뒤에 동학란이 일어나 전주성이 함락되자 閔泳駿은 借兵問題를 임금께 제의하고 이 해 4월 30일 임금은 정식으로 借兵請願을 하였다. 5월 1일 이홍장은 丁汝昌으로 하여금 군함 2척, 병력 1천5백명을 출전케 하였다. 5월 5일에는 청군 910명이 汽船 陶南號로 牙山에 도착했고, 이어서 葉志超가 인솔한 청군 1천5백여 명이 2척의 수송에 의해 도착, 약 2천5백명의 병력에 대포 8門도 함께 수송되어 왔다. 이러한 청군의 병력 집중에 대해 일본군은 이들의 氣勢에 질세라 대병력을 연이어 파병하니 양국군의 충돌은 明若觀火하게 되었다.¹⁹⁾ 이에 高宗은 Jhon M.B. Sill 미국 公使를 통해 미국의 협조를 통해 난국을 수습하려 했으나 성과없이²⁰⁾ 淸日戰爭은 내나라 내땅에서 일어나고 말았다.

19) 日本外交文書, 第27卷, 第2冊, 181面, 文書番號 529.

20) 文一平, 對米關係五十年史, 一 湖岩全集 第1卷 一, 朝光社, 1941, pp. 195~196.

나. 겔돈 袁世介와 오도리(大鳥)의 談判

이 해 5월 7일 大鳥圭介는 본국으로부터 귀임 인사차 淸館으로 원세개를 방문하였다. 이에 원세개는 오도리에게 2시간이 넘도록 양측 군대의 동시 철병안을 제안하였다. 이 당시의 정국 분위기로 보아 오도리도 과다한 일본군의 상륙은 외교상 분란을 초래케 될 것을 염려하여 후속부대는 대마도로 돌려 보내달라고 타전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미 상당수의 일본군은 인천항에 정박해 있었다. 따라서 이들 병력의 휴식이 요청된다는 구실하에 잠시 下船하여 운동을 하고자 하니 양해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3천 명의 대부대가 완전무장을 한 채 일로 서울을 향하여 진군을 해 버렸다.²¹⁾

이 같은 정황에 원세개는 매우 당황하여 일본의 오도리 공사를 긴급히 방문하여 아산에 주둔하고 있는 청병과 일본군도 동시에 철수할 것을 거듭하여 간곡히 제의하였다. 이에 오도리는 본국정부의 의도대로 내심 강편책을 취하기로 하고 표리부동한 외교적 언사로 “우리 양국병력의 공동철수로 동양제국의 평화를 보전하고자 함에는 동감이다. 그러나 본 공사는 군철병건에 관해 본국정부로부터 아무런 훈령을 받지 못했은 즉 본국정부의 훈령을 득한 후에라야 협의할 수 있다.”²²⁾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인천을 통해 상륙한 3천의 병력을 무용하게 철수시킴은 득이 되지 못함에 이 대병력을 유효하게 사용할 방도를 찾아야 했다. 이러한 때

21) Mckenzie, The Tragedy of Korea, p. 40.

22) 日本 外務省, 日本外交文書, 第27卷, 第2冊, (文書 No. 552), p. 208.

에 원세개가 6월 15일 내방하여 청일 양군의 공동철수안을 제의함에 오도리는 철병의 권한이 없는바, 본국정부의 지시를 받은 후 답을 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기화로 오도리는 일본군의 철병에 앞서 청군의 철회를 조선정부와 원세개에게 요구해야 한다는 案을 본국에 타전하면서 만약에 원세개가 우리측의 요구를 거절하면 이는 청국이 조선에서 宗主權을 유지, 우리의 조선독립 지지론을 부인하는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소행은 우리의 在韓權益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어떻게 하든 청병을 조선국 밖으로 축출해야 하는데, 우리의 위엄을 손상하지 않고 온건한 友好調整이 안될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좋을 것인지 긴급회전을 바란다고 본국정부에 타전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大鳥公使는 陸奧 외무대신이 지시한 대로 동학란 발발 현지조사를 내세워 일본 공사관원과 통역관 각 1명씩을 전주로 파견시켰다. 요컨대 일본측은 청의 共同撤兵案을 거부, 청군의 철수만을 종용하고 일본군의 주둔을 既定事實化하고자 하였다. 이에 원세개 또한 일본측의 교활한 대응에 분개하여 증원부대의 급파를 요구하고 나섰고, 다른 한편으로는 駐淸歐美諸國公使를 움직여 제3국들의 간섭 내지 居仲調整을 통해 청일 양국간의 정면충돌을 회피 내지는 지연시켜 보고자 전력을 다하였다. 6월 25일(음 5.18) 일본정부는 서울의 大鳥공사에게 청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청국에서는 5천의 병력을 증파한다하니 일본도 2천의 병력을 곧 증파하여 혼성여단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차제에 조선국을 시종일관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하므로 공사는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감언으로 유인 또는 위협하든, 그 방도는 공사

에 위임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일본외무대신은 주일청국공사에게 청국이 조선국에 대한 日淸 兩國의 共同干涉에 불응하는 한, 일본 단독으로라도 조선국의 내정개혁을 촉진시킬 것이며, 따라서 일본군의 철군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회신(回信)에 대해 일본외무대신 스스로가 청국정부에 대한 일본측의 「第1次 絶交書」라고 말할 정도였다.²³⁾ 이러한 시기에 오만방자하던 원세개는 세가 불리하여 고심 끝에 發病으로 집무가 어렵다는 핑계로 본국으로의 귀국을 간청, 6월 18일 이른 새벽에 서울을 빠져 나갔다. 이후 일본공사 大鳥는 자의대로 조선정부를 회유, 협박 등 횡포를 부리기에 이르렀다. 共同干涉案을 넘어서 이른바 從屬問題를 트집 잡아 조선국이 자주국임을 내세워 주한청국군을 境外로 축출, 자주의 위신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조선과 청이 체결한 通商貿易章程을 폐기하여 朝鮮이 自主國임을 内外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박하였다.

다. 開戰의 口實을 찾기에 급급한 日本帝國主義者들

일본이 청과의 開戰을 企圖한 要因들을 추려보면 대체로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丙子修好條約을 체결하고 난 이후 지난날 조선국이 일본국에 취해온 交隣政策을 탈피한 對外的 禮遇를 받고자 하였다. 이 같은 要件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청국이었다. 물론 러시아 등을 비롯한 여타의 제3국이 걸리는 바 없지 않으나 일차적인 타겟은 청국이었다.

23) 상계서, (文書 No. 572), pp. 227~229.

이 같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일본국의 군비확장은 明治維新 이후로 본격화되었다. 즉 영국 등의 서구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모방, 대량생산품의 소비시장을 찾아 나서면서 경제력을 신장시켜 나갔다. 그리고 무엇보다 強國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증강이 절대요건임을 다짐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태동한 일본군부는 이른바 대륙경영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일찍부터 세워놓고 있는 가운데 근대적인 군비확충에 전력을 투구하였다.

일본군의 제1차적 假想敵國이 청국이었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허명에 들 때 세계대세에 눈이 어두운 노대국의 쇄진해 가는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조선국에 대한 발돋움을 하고자 하였다. 그 같은 기회가 친일 개화당을 중심으로 한 갑신정변의 참극을 유발케 하고는 청일 양국이 무력충돌을 감행하였고, 이의 사후처리로 이른바 天津條約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조약은 청의 의도와는 달리 일본을 국제적으로 청과 대등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시킨 꼴이 되었다. 이 조약에 의해 일본은 청의 한국에서의 영향력 행사에 맞설 명분을 확보한 것이다. 또한 지난날 丙子修好條約에 명기한 “조선국이 자주 독립국임”을 크게 강조한 裏面을 완벽하게 보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은 조선에서 壬午軍亂이 일어나자, 이를 기화로 출병하여 상당수의 청병을 주둔시켜 놓고는 종횡무진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조선정부가 반발하여 친로정책으로 기울게 되었고 서구제국이 “韓淸關係”를 청에 문의할 때마다 겉으로는 조선국은 자주독립국임을 공언하는 등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냈다.

이러한 渦中에 일본과 러시아의 對韓政策이 점차로 적극화됨에

따라 청은 일본의 對韓進出을 견제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접근도 견제한다는 입장에서 美·英·獨 等 서구제국을 조선에 소개하고 수호통상조약의 체결을 알선하여 이른바 以夷制夷의 외교정책을 펴나가면서 裏面的으로는 對淸從屬體制를 건지하기를 은연중, 때로는 공공연히 내세웠다. 이 같은 상황하에서 1894년 동학란이 발발하여 조선의 借兵要請이 있자 기다리고나 있었던 듯이 출병을 서둘렀다. 그렇지 않아도 기회만 엿보고 있던 일본은 청에 뒤질세라 한반도 상륙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여 힘겨루기를 서슴지 않았다. 두번째는 일본이 이처럼 청에 대해 대담해진 것은 英·佛로부터 계속 패배해 왔음을 주시해 왔고 앞으로의 일본의 진로는 脫亞入歐 정책에 있음을 절감하고는 서구식 군비확장에 주력, 신식병기와 군대를 양성, 청과 대결할 만한 실력을 착실히 쌓아 나갔다. 세번째로는 국력이 신장되면서 脫亞入歐 정책의 先決事項으로 중국, 조선, 대만, 유구 등이 서구세력에 예속되기 전에 일본이 先手를 쳐야 한다는 대외침략정책의 수립에 있었다.

이러한 의도가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교량으로 하는 대륙지향정책과 대만, 琉球 등지를 향한 남진정책이다. 대륙침략의 첫걸음은 두말 할 필요없이 朝鮮을 점령하는 것이고 남진정책의 첫단계는 오키나와의 정복이다.²⁴⁾ 네번째로는 조선은 자주국방력을 갖추지 못한 나약한 나라로 보고 조선을 전장화합을 당연시하였다. 다섯째, 조선을 둘러싸고 있는 제3국들도 한반도에서의 청일의 대결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나 조선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나라도 없었다. 대체로 강대국들은 팔짱만 끼고 중립을 지킨

24) 김순교, 청일전쟁, 군사, 제16호, 1988, p. 144.

답시고 관망자세이고 보니 日·淸의 대결은 불가피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일간의 상업 및 경제적인 이권경쟁은 일본군부의 조선내 철도, 통신시설, 그리고 개항장을 통한 상품수출 등을 선점, 독점하는 것만이 저들의 팽창야욕을 달성하는 데 절대 불가결한 요인으로 본 것이다.²⁵⁾ 따라서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일본측은 판단하였다.

4. 淸日戰爭의 勃發과 戰況

가. 淸日 兩軍의 韓半島에의 集結과 決戰

(1) 豊島 앞 바다에서의 海戰

동학의 거센 반란이 일어나자 당시의 영의정 閔泳駿은 청국에 借兵要請案을 임금께 주청하여 승낙을 받은 후 곧바로 청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이에 청의 이홍장은 威海衛로부터 내란의 인접지역인 충청남도 아산만에 1천5백명(三衛:1衛는 500명)의 병력을 상륙시켰다. 이러한 시기에 오도리는 서둘러 군함 야혜마(八重山)號를 타고 마쓰시마(松島), 지요다(千代田) 등 2척을 대동, 6월 9일 인천항에 상륙하였다. 이 밖에 인천항에는 이미 아까자(赤城), 야마도(大和), 쓰구시(築紫)號 등의 함정이 도착하고 있었다. 3일 후인 12일에는 일본 육군소장 오시마 요시사마(大島義昌)가 이끄

25) 日韓外交資料輯成, 第4卷, p. 440. 日本外交文書, 第27卷, 第1冊, pp. 593~597.

는 混成旅團이 와가노우라마루(和歌浦丸) 편에 인천으로 집결하였다.²⁶⁾

이상의 청일 양국의 상륙 명분은 ‘청은 조선정부의 내란진정을 위한 원병요청에 따른 것이고, 일본군은 그들의 공사관과 거류민 보호차원’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상륙명분은 어디까지나 구실을 위한 구실일 뿐 실체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양국의 세력다툼이었다. 청군은 영국운송선 高陞號를 借用, 군함 操江號로 호위케 하고 濟遠, 廣乙號 등 양 함대를 선발대로 하여 항진시켰다.

위의 선발함대가 豊島 앞 바다에서 요시노(吉野), 아끼쓰시마(秋津州), 나니하(浪速) 등 일본함선과 3,000m 거리를 두고 遭遇하게 되면서 砲火가 터졌다. 교전시간 약 1시간 20분 만에 청국 군함 濟遠號는 달아나고, 廣乙號는 암초에 묶여 자진 불질렀다. 정확하게 이 날은 1894년 7월 25일 7시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났다. 다시 말해 청일전쟁은 바로 이 전투가 開戰日인 것이다.²⁷⁾

이 날 9시 경에는 操江號가 일본 아끼쓰시마호에 추격당해 항복하고, 高陞號는 나니하호 함장의 명령에 정선(停船)은 했으나 항복치 않음에 격침당했다.²⁸⁾ 이때가 동일 오후 0시 40분이었다. 이로써 청일전쟁의 緒戰은 일본군의 승리로 끝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청일전쟁 선전포고를 1주일 후인 8월 1일자로 포

26) 陸奥宗光, 蹇蹇錄, 岩波書店, 1933, p. 32.

27) Hosea Ballou Morse,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Chinese Empire, V. 3, London: Ldngman Green, 1910, p. 24 및 柳永益, 淸日戰爭중 日本의 對韓侵略政策 글 가운데 p. 131. 註 4 참조.

28) 日本外交文書, 第27卷, 第2冊(文書 No. 709~729), 軍艦 良速號 高陞號 擊沈 一件 - 高陞號 擊沈에 對한 諸報告 및 英國政府와의 交渉 -, 明治 27. 7. 27~8. 22.

고하였다.

양국의 선전포고를 비교해 보면 하나같이 상대국을 비난하고 반면에 조선을 위해 싸운다는 명분과 나아가 서로가 합상공격을 먼저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청은 조선을 전통적인 조공국으로서의당 보호되어야 할 나라로 보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은 어디까지나 조선은 자주 독립국임을 강조하면서 청의 보호를 받아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가 상대국의 응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勝戰을 다짐하고 있다.

여기서 필히 언급해야 할 부분은 이홍장의 서구열강제국에 대한 지나친 외교역량을 과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서구제국은 일본의 好戰性을 혐오하고 있으므로 일본이 조선의 내정에 간여하는 사태에 列強이 묵과하지 않으리라 생각한 점과 豐島 앞 바다에 英國汽船 高陞號를 보낸 사실이다. 이홍장은 영국기를 게양하고 항진하는 함선을 감히 일본군이 발포하지 못하리라 본 점이다. 그러기에 高陞號 격침 보고를 받고 난 이후 하는 말이 “우리 측에 고용된 상선이 英國旗를 달고 있었음에도 일본이 감히 이를 격침시켰으니 영국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영국기를 달았고 아직 宣戰布告도 하지 않았는데 감히 공격하다니 이는 국제법도 모르는 소치이다.”라고 함으로써 스스로 일본정세를 꿰뚫지 못하고 있었음을 백일하에 노정시키고 말았다.²⁹⁾

豐島海戰에 관한 당시의 전황을 상세히 기록한 蹇蹇錄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29) 金舜圭, 淸日戰爭, 軍史, 第16號, 1988, p. 157.

“일본연합함대사령관 伊東亨祐 해군중장에게 저의 大本營으로부터 開戰을 목적인 출동명령이 내린 것은 음력 6월 21일(양력 7월 23일)이었다. 이 날 그들은 하세보(佐世保)군항을 출발하여 22일에는 군산 앞 바다에 나타났다.

이또사령관은 第一遊擊隊司令官인 平井 少將에게 吉野, 浪速, 秋津洲號 등 3대의 쾌속정을 이끌고 청군의 상륙지인 아산만 일대를 정찰하도록 명령하는 동시에 청국군 함대를 발견하게 되면 주저말고 진격하라는 밀명을 내렸다.

그리하여 이 달 23일(양력 25일) 오전 6시반경에 청군함을 발견하게 되자, 7시 50분경부터 砲門을 열어 공격을 가했다. 淸艦 濟遠號는 크게 파손되고 戰死 13명, 負傷 27명을 내고 간신히 도주하였다. 廣乙號 역시 戰死 10명, 負傷 40명에 船體가 크게 파손되어 도주치 못 하고, 해안에 좌초됨에 승선원들을 상륙케 하고, 자진 폭파시키고 말았다. 이 같은 전황 속에 청국군 운송선 高陞號가 영국기를 게양하고 청병 1천2백여 명의 증원군과 14門의 야포를 비롯해 다량의 군수품을 싣고 操江號의 호위를 받으며 戰地에 도달함에 일본함정의 맹추격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操江號는 항복했으나 高陞號는 浪速艦이 수행키를 명령했으나 탑승한 지휘관이 불응하고, 선장 또한 불복함에 격침당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1,200명의 병력 중 147명만이 살아남고 1천여 명이 익사하는 동시에 엄청난 군수물자를 수장시키고 말았다.”³⁰⁾

이로써 일본군은 제해권을 장악하고 청군을 제압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30) 上掲書, p. 109 및 小松錄, 明治史實, 外交祕話, 中畏商業新報社, 1927, pp. 114~115.

(2) 成歡 一帶에서의 內陸戰

풍도 해상에서의 승리에 이어 일본군은 육상전투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해로를 통한 증원부대의 援軍이 차단됨으로써 아산에 집결한 청군은 3천명 가량인데 반해 일본군은 서울에만 5천이 넘는 병력이 집결되어 있었다. 인천, 부산 등지의 병력까지 합치면 1만 8천명이 넘을 정도였다.

이 해 6월 10일 이후 청측이 전쟁을 각오하고 증원부대의 파견을 서두르게 되었을 때는 晩時之嘆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 아산에 집결한 청군은 고립상태에서 진퇴양난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京仁 一帶의 병력이 아산을 향해 남하함으로써 청군은 양분하여 먼저 남하하는 일본군을 저지키 위해 主道路上의 요지인 成歡驛을 수비케 하고 나머지 병력은 公州를 지켜 수용진지로 삼고자 하였다. 이미 해로가 봉쇄되어 증원군이 올 가망이 없는 시점에서 공주의 천연적 지세를 이용, 방어하고자 하였다.

우선 2천의 병력으로서는 성환 동북의 月逢山 고지를 主陣地로 삼고 서편 고지에도 보루를 설치 방비케 하는 동시에 포병대는 서남쪽 높은 산정에 설치하고 일본군의 남하를 저지코자 하였다. 그리고는 1천여 명의 병력으로 公州를 점령하였다.

그런데 일본군은 이미 성환역에 10여 리밖에 되지 않는 素砂場에 도착함으로써 兩軍의 접전은 급박하게 되었다. 즉 27일 새벽부터 일본군의 선제공격으로 전투는 시작되었다. 安城川 다리를 가운데 두고 天津武備學堂 학생 于光旻, 周憲章, 李國華, 辛得林 4명이 건장한 대원들을 매복시켜 놓았다가 일본군 선발 공격대를 맹공함으로써 일시 일본군을 혼란에 빠뜨리고 상당한 사상자를

내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이들을 지원할 후속병력이 오지 않는 데다 물밀듯 몰려드는 일본군의 수적 열세에 몰려 포위당한 끝에 격파되었다. 뒤미처 月逢山 陣地도 일본군의 협공을 감당치 못해 패주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청군의 육상전은 해상전투보다 강력한 저항을 하기는 하였으나 장비와 수적 열세로 인해 부득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즉 월봉산에 陣을 쳤던 병력들은 공주에 주둔하고 있던 병력과 합류, 일본군의 공격을 피해 천신만고 끝에 평양쪽으로 북상하였다.³¹⁾

이 전투에 참가한 인원 에 대해 일본측은 보병 약 3천명에 대포 8門이라고 애써 참전 병력수를 축소하고자 하는데 당시의 일본군 혼성여단의 부대편성에 준하더라도 보병 외에 기병, 포병, 공병 등의 참전을 감안한다면 3천의 2배인 5천 내외가 되지 않겠는가 유추된다. 그런데 항시 기록상 과장된 표현을 하는 청측은 일본군 수가 2만이라고 하는데 신뢰하기 어려운 숫자이다.

(3) 平壤에서의 淸日軍의 戰鬪狀況

성환전투에서 패전한 청군은 평양으로 집결하여 재회전을 싫든 좋든 맞이하게 되었다. 청군은 어디까지나 자기나라 영토가 아닌 우리의 땅에서 전쟁을 치르고자 하였다. 따라서 북진해 오는 일본군을 평양성을 거점으로 하여 저지코자 하였다. 그리하여 청군의 정예병을 8월 상순까지 평양에 집결케 하였다.

즉, 衛汝貴 휘하의 盛字軍 6千과 馬玉崑 휘하의 旅順毅字軍 1

31) 日支外交六十年史(日譯本), 第2卷, pp. 140~146 및 中日甲午戰爭之外交背景, 第9章, 成歡之戰 및 H.B Morse,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Chinese Empire, Vol. 3, pp. 22~25.

千5百, 左寶貴 휘하의 奉天 주둔 奉軍 3千5百, 豐陞阿 휘하의 盛字練軍 1千5百, 葉志超 및 攝士成 등이 이끄는 아산에 주둔했던 병력 약 4천5백명 등으로 하여금 평양성을 지키도록 하였다.³²⁾

이상과 같은 청의 병력이 집결, 임전태세를 갖춘 상황하에서 일본군은 부산과 인천항에 증원군을 상륙시켜 서울로 진입시키려는가 하면 동해쪽으로는 원산에 일본군 제5사단 야포대와 보병을 실은 군함이 도착함으로써 원산수비대가 설치되는 등 원산은 마치 청 일전쟁 진원지와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전운에 휩싸였다.³³⁾

이들 병력은 野津道貫 휘하 大島義昌의 제9여단 병력을 義州街道로 전진시켜 평양주둔 청군을 정면공격토록 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立見上文이 이끄는 朔寧分遣支隊가 新溪, 遂安, 三登, 江東을 거쳐 진군해 나가면서 진군 중인 원산지대 병력과 합류하여 청군의 좌측을 공격케 하고 5사단 주력 병력은 청군의 배후인 퇴로를 차단, 청군을 서해안으로 몰아붙이려는 작전하에 9월 15일을 D day로 정하고 평양성을 포위 공격토록 하였다. 후속부대인 원산으로의 상륙하는 증원군은 陽德, 成川을 거쳐 順安으로 나아가 평양전투에 가담토록 하였다.

이러한 전황에 접한 청군은 처음에는 황주로 진군해 오는 일본군 3천명과 정면 대결하고자 했으나, 연이어 진격해 오는 일본군 원산지대 병력이 이미 陽德을 지나 成川에 도착했고 일본군 여단 병력도 黃州에 집결함으로써 병력을 분산치 않고 집중 방어전략을 취함으로써 일본군은 의도대로 평양성을 포위할 수 있었다.

32) 平安南道誌, 李朝時代와 本道篇, 1978, p. 155.

33) 咸鏡南道誌, 元山篇, 1989, p. 642.

일본군 9여단은 9월 10일 中和에 도착하였고 다시 의주가도를 거쳐 永濟橋를 향해 전진, 12일 상오 8시 조금 지나 永濟橋의 보루를 점령한 후 일대는 長城里를 향해 전진하여 裁松里 남방고지를 통해 街道 좌우의 거점을 확보하였다.

다른 한편 元山支隊는 양덕, 성천을 지나 13일에는 순안을 점거하였고 14일에는 坎北山 북방에 도달하였다. 삭녕지대는 수안,綾洞을 거쳐 13일에 國主峴 남방의 산지를 점령함으로써 평양쪽에서의 퇴로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다음 공격 주력부대는 10일에 황주에 진입하여 곧바로 대동강을 건너 일부는 江西에, 나머지는 保山の 서북방에 머무르게 하였다. 14일 밤중에 본대는 옛달마구의 고지를 점령함으로써 명실공히 일본군은 청군이 주둔하고 있는 평양성을 포위하였다.

이에 대해 청군은 평양守將 葉志超부대가 남문 밖의 江南에 馬玉崑의 一營과 盛字軍의 一營을 함께 橋頭에 배치하고 위급시에는 증원토록 하였다. 또 大西門(靜海門)은 盛字軍과 毅字軍이 攻守케 하고, 北門 밖의 山上에는 江自江(牙山 駐屯兵)의 兩營을 배치하였다. 드디어 격전일은 다가왔다. 즉 9월 15일 상오 2시 일본군이 선제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일본군 9旅團은 船橋里 江岸에서 청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고전하다가 상오 3시 야음을 이용하여 쪽배들을 타고 洋角島 서단에 도달하면서 6시경에는 전체 병력이 대동강 우안쪽 상륙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청군의 저항은 지속되는 가운데 平川里 부근을 점령하였고 2시간 후인 8시경에는 外城 2리에 진입하였다.

朔寧支隊는 9월 15일 새벽 牡丹臺 부근에 진출했으나 청군의

기관포 사격으로 큰 피해를 입으면서 포격전 끝에 乙密臺 부근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元山支隊는 예정대로 坎北山 북방에 도착, 15일 새벽 加峴西方高地에서 대격전을 겪은 후 玄武門쪽 箕子綾高地를 점령하고 七星門 방면을 경계하였다. 본대의 주병력은 평양성 景昌門 부근에서 청군의 사격을 계속 받는 가운데 鼎山 동북방 平野에 진출하여 普通江岸 진흙밭으로 들어가 진퇴양난의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청군의 맹공격으로 전멸의 위기를 겨우 면하고 가까스로 甌山街道를 점령하고 이어서 江西街道와 大揚洞 부근에 병력을 배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됨에 청군은 작전상 불리함을 알고 9월 15일 乙密臺에 게양했던 將旗를 내리고 白旗를 올림으로써 평양전투에서의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돌아갔다.³⁴⁾

(4) 繼續되는 淸軍의 敗戰

豐島海戰, 成歡戰鬪, 平壤戰鬪에서 계속 패전한 청군은 일본군이 한반도를 벗어나 청국 영토내로 진격해 나가면서도 전세는 여전히 패전을 거듭했다.

즉, 압록강을 넘어 노도처럼 밀려들어가는 일본육군 第1軍(山縣有朋 司令官)은 九連城과 鳳凰城을 차례로 함락시켰고, 第2軍 오야마(大山巖 司令官)는 용기 백배하여 어느덧 金州城을 함락시켰고 다음에 大連灣을 점령하였다. 급기야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졌던 旅順口도 불과 하루 만에 공략당하고 말았다. 이렇듯 주요 거점을 우선적으로 장악한 일본군은 1·2軍이 호응하여 岫岩을 공략하고 奉天으로 통하는 요충지인 海城을 점령하는가 하면 2軍의

34) 續陰晴史, 上. 汚陽行遣日記. 甲午八月十七, 八日 및 平安南道誌. p. 155.

일부는 盖平城을 장악하고 海城의 여타 일본군과 제휴할 수 있게 되었다. 2군의 주력부대는 해군과 공동작전을 펴 山東半島의 榮城灣에 상륙하여 威海衛를 공략, 점령하였다.³⁵⁾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본군 주력함대는 劉公島의 청국함대를 봉쇄 격파함으로써 淸의 北洋艦隊는 전멸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 같은 패전으로 北洋水師提督 丁汝昌은 降伏書와 함께 殘餘의 艦船, 砲臺, 軍旗, 軍需品을 일본해군에 내맡기고 自殺하고 말았다.³⁶⁾

이러한 기세에 편승한 일본군은 침략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牛莊, 營口를 함락시킨 다음 田庄臺까지 점령하여 遼河 동남의 전지역을 제압 지배하게 되었다. 따라서 天津, 北京까지의 진격은 시간문제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臺灣海峽의 澎湖島를 점령하고 다음해 양력 3월(음력 4월)에는 全州城에 征淸大總督府까지 설치키로 하고는 淸帝國을 완전 정복해 버릴 기세였다. 이 같은 기세 하에 조선정부는 軍務大臣 趙淵夏를 대표로 하여 戰地視察이라는 명목으로 1895년 4월 25일 威海衛에 도착, 劉公島에 상륙하여 일본서해함대사령관에게 일본의 전승을 축하함과 동시에 비록 自意는 아니더라도 조선국왕의 勝戰 慰問文을 보내는 쓰디쓴 입장에 처하기도 하였다.³⁷⁾

이렇듯 비참한 청제국의 패전의 원인은 여러 측면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作戰系統의 無能·無謀와 統制力の 喪失, 軍의 紀綱解弛

35) 日本 陸海軍省文書, 征淸海戰史, 明治 27·8년分 中 M/F Reel No. 35 參照 및 梁啓超, 李鴻章傳.

36) 李瑄根, 韓國史 - 現代篇 - 乙酉文化社, 1963, p. 399.

37) 日本 報知新聞, 1895년(明治 28年) 4月 23日字 3面, 威海衛에 朝鮮軍務大臣 來着 報道記事 參照.

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여기에는 兵力의 多寡나 武器體系의 優劣을 논할 수 있을지 모르나, 虛張聲勢의 쓸모없는 威勢와 과렴치한 欺瞞으로 군대로서 갖춰야 할 애국충정이 부족한 데 기인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패전에 따른 원인을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첫째 원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이 淸朝의 민족차별정책과 禁錮思想을 빼놓을 수 없다. 火器의 제조, 보유를 엄격히 금지하는가 하면 군대 내에서도 군별로 화기사용을 엄격하게 구분시켰다. 예컨대 漢族일 경우 구식무기만을 휴대케 하고 滿蒙八旗軍이라야만 우수한 신식무기로 무장케 하였다. 심지어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것이 만주족의 전통이라는 보수적인 사상에 묶여 화기류 발명품을 제한, 또는 금지시켰다. 뿐만 아니라 기 연구되어 온 바 있는 병서류인 武經總要, 武備誌 등을 禁書로 분류하고는 四庫全書 편찬 때에도 이들 禁書는 삼입치 못 하게 하고 심지어는 불태우도록까지 명령한 것이다.

그러한 정책 속에서 자기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서 자만하는 자아도취에 빠져 외국의 기술경험을 전연 중시하지 않을 뿐더러 敬鬼神而遠之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접촉을 피하는데 급급하였다. 그러는 가운데도 일부 화포의 질 내지 성능 또한 매우 조잡, 낙후한데다 군함 역시 승무원들의 기술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 해상전에서도 열세를 면치 못하였다. 더욱이 전쟁의 총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이홍장의 對日觀이다.

일본의 도전은 열강의 외교적 노력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지극히 안이한 대처방안 등을 패전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5) 開戰當時의 淸日 兩軍 狀況 對比

兵力狀況과 달리 「日淸戰爭實記 第一篇 支那三軍」의 兵數에 대한 記事를 보면 全國의 陸軍은 3軍으로 나누어 邊境의 守備隊와 內地의 衛戍兵營으로 나누고 3軍은 平時에는 李鴻章 直隸部隊 3萬을 제외하고는 生業에 從事하다가 有事時에만 服務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3軍은 八旗兵, 勇軍, 鍊軍이라 칭하고 있다.

八旗兵은 25萬7百68名으로 이 가운데 北京 駐屯兵力은 16萬7千4百33人이다. 滿洲地方에는 3萬6千9百50名, 그리고 新疆地域에 4千8百75名, 이 밖에 各 省別로 4萬1千5百10名을 두고 있다.

다음 勇軍은 14萬5千8百2名으로 이 가운데 步兵이 9萬34名, 騎兵이 4千8百21名, 砲兵 2千2百72名, 滿洲駐屯 補助兵 2萬8千9百56名, 滿洲國境 警備兵 1萬9千7百19名이다. 練軍은 71萬4千4百30名으로 이 가운데 各 省別 綠旗兵 47萬5千68名이 包含되어 있다. 練軍 本隊員은 20萬8千9百82名이다. 그리고 新綠旗兵이라 하는 練軍이 2萬5千1百42名이다. 滿洲에도 練軍이 別途로 있는데 여기에 5萬2百33名, 그리고 蒙古民軍 17萬7千8百名, 이 밖에 西藏 등에 1千5百名과 常置局 地局兵 3千名이 있는 것으로 調査 報告하고 있다. 이들 兵力 中에는 전혀 軍事訓練을 받지 못한 者가 상당수라고 하고 兵士들은 新式銃器를 가진 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在來의 槍劍을 휴대하고 있을 뿐이었다.³⁸⁾ 이렇듯 일본군은 전쟁에 대비하여 청일전쟁 발발 2년 전인 1892년(淸光緒 18年)度 현재의 軍事力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이들 武器體系 등에 관한 취약점을 분석함으로써 승리를 확신하였다.

38) 日淸戰爭實記, 第一篇, 博文館, 1895, p. 89.

나. 敗戰한 淸軍의 虛僞戰果 報告

淸군의 성환전투 패전으로 간신히 평양쪽으로 도주한 淸의 提督 葉志超는 戰果를 造作하여 北洋大臣 이홍장에게 보고하였다. 이홍장은 葉志超의 보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출전 장병들에게 포상을 上奏하고 난 후 一大論功行賞의 諭旨까지 내리게 하였다.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에 의하면 淸군제독 葉志超軍이 連戰連勝하여 仗斃倭賊二千餘人하였으니 마땅히 포상해야 할 것이라고 7월 2일·3일자에 언급되어 있고 7월 26일자 上諭에는 전날의 보고내용보다 좀더 상세하게 이들의 戰功을 찬양하기를 “倭兵 二萬餘名이 돌연히 來襲 包圍하게 되니 我軍이 奮勇對敵하여 激戰 6시간 만에 倭兵 死亡者 一千七百餘名에 我軍 死亡者는 三百餘人이라. 이에 該提督은 衆寡과 懸隔하므로 設計 退敵하고 遂東渡漢江하여 현재는 平壤에 留陳중이라 일컬은 다음 將兵의 褒賞을 自請했음을 기록하고 있다.”³⁹⁾

이상의 戰果報告는 오히려 정반대로 봄이 옳을 것이다. 여하튼 이홍장과 淸廷은 이 전과를 과대 평가하여 銀 2萬兩의 恩賞을 내리는가 하면 葉志超를 諸軍의 총지휘관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總兵 攝士成 이하 수백명의 장교와 지휘관들을 敍勳 승진시켰다.⁴⁰⁾

이들은 이상의 허위보고에 그치지 않고 6월 27일 이후 평양으로 퇴각하는 도중에서 있지도 않은 적과의 交戰에서 왜병 5천여명의 전사자를 냈다고 거짓 보고를 하였다.⁴¹⁾

39)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卷16, 軍機處電寄 李鴻章諭旨, 4面.

40) 上揭書, 卷18, 10面.

41) 李瑄根, 韓國史 - 現代篇 -, 乙酉文化社, 1963, p. 220.

이렇듯 청병은 이미 信義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허세와 거짓투성이 군대가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부도덕한 청병에게 원병을 요청한 조선정부의 입장은 보나마나한 것이었다. 왜적 또한 오직 그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정개혁을 앞세워 이 나라를 강탈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러한 와중에 한국민만 청일 양군의 전쟁 틈바구니에서 人的, 物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

5. 淸日戰爭으로 인한 韓國의 人的, 物的 被害狀況

가. 人的 被害狀況

동학란으로 인한 소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청일전쟁이 아산, 성환에서 시작되어 북부 평양쪽으로 확대됨에 전국적으로 전쟁의 피해는 막대하게 퍼져 나갔다. 즉 조선의 중부와 북부는 전쟁터로, 여타지역은 군수물자의 보급, 운송에 따른 징발로 그 피해는 실로 막심하였다.

당시 조선에서의 운송수단은 철도나 트럭 등이 없었기 때문에 내륙에서의 군수품 이동, 운반은 우마차나 인부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일본군이 이동함에 따라 운반에 따른 인부와 우마차의 징발이 강행되었다. 이 당시 일본의 군인·군속은 무려 20만이 넘는 수였다. 이들에게 소요되는 식량은 대부분 현지에서 조달하였다.

일본군은 통행이 빈번한 요로에서 우마차가 발견되는 대로 강제로 나포하는가 하면 매어놓은 소나, 우리 안에 있는 돼지, 닭 등을 그대로 강탈해갔다. 이러한 사례를 열거해 보면 1894년 7월 25일 밤 수원 인근에서 우마차를 강제로 나포해 놓은 400여 대의 우마차와 마부들이 밤중에 탈주함으로써 일대 소동이 벌어졌고 그 여파로 수원, 진위 일대 농가의 우마차와 장정들이 자취를 감추기에 혈안이 되었다. 400여 대의 우마차를 올바르게 감시하지 못한 고시 마사즈나(吉志正綱) 소좌는 자살할 수밖에 없었다.⁴²⁾

일본군은 이 해 8월 26일 朝日兩國同盟을 강제로 체결케 하는데 그 내용은 “양국정부는 청국에 대해 이미 攻守에 있어 서로 돕는 지위에 서 있는바,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양국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전체 條文은 3개조로 되어 있는데 제1조는 청병을 조선국의 국경 밖으로 철수케 하여 조선국의 자주독립을 공고히 하고, 조일 양국의 이익을 증진케 한다라고 하고 제2조에는 일본국은 청국에 대해 攻守의 전쟁을 말하고 조선국은 일본군의 進退 및 그 식량 준비를 위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청일전쟁에 있어서 조선의 역할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핵심적인 규정이다.⁴³⁾ 아울러 부기할 것은 이 맹약이 8월 26일에 조인되었지만 그 이전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는 효력을 미치게 함으로써 후에 발생할지 모를 異論의 端緒를 막아 놓았다.⁴⁴⁾

42) 朴宗根, 日淸戰爭과 朝鮮, 東京, 靑木書店, 1982, pp. 87~90.

43) 田保橋潔, 日淸戰役外交史의 研究, 刀江書院, 1951, pp. 332~334.

44) 彬村濤, 明治二十七・八年 在韓苦心錄, 彬村陽太郎, 1932, p. 72.

이 맹약이 체결되자, 조선정부는 지방관청에 명하여 징발을 행하고 때를 맞추어 일본군의 수요에 응하게 한다는 諭告文을 시달하였다.

諭告文의 내용은 “일본군대가 파견되어 온 것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이니 백성들은 이전처럼 안도해야 한다고 하고 징발에 적극 협력하고 징발의 대가로 일본 은화로도 수령하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므로서 사실상 조선의 전국토가 청일 양국의 전장터로 전락되고 만 것이다.⁴⁵⁾ 이 맹약을 구실로 주한일본 오도리 공사는 징발문제로 매일같이 조선정부를 볶아댔다. 그러나 백성들은 일본군의 징발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체 백성들이 항일기운으로 팽배해 있는 데다, 일본군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관리는 모두 참살시켜야 한다 라고 하고, 징발에 동원되는 자는 살해된다고 함으로써 징발을 적극적으로 기피하고자 하였다. 어쩔 수 없이 징발 동원된 인부들은 기회만 있으면 탈주하고자 함에 일본군은 징발된 인부 1명에 감시병 1명씩을 딸리게까지 하였다. 사태가 이같은데 일본인 인부를 데려오기도 하였지만 절대수가 부족한 데다 이들은 불학무식한 무뢰한으로 난폭하게 아무집에나 들어가 재물을 빼앗고 부녀자들을 겁탈하는 등 그 피해가 또한 막심하였다.⁴⁶⁾

조선인 人夫의 脫出은 一身上의 위험과 반일감정에도 연유하지만 지나치게 가혹한 使役에도 연유한다. 元山에 상륙한 松山の

45) 陸奥宗光, 蹇蹇錄, 岩波書店, 1933, p. 128.

46) 藤野房次郎, 平壤包圍攻撃, 下卷, 博文館, 1895, p. 88 및 日清戰爭, 興文社, 1894, p. 11.

22연대는 8월의 찌는 듯한 더위에 행군을 강행함으로써, 300여 마리의 소가 무참히 쓰러져 죽었고, 인부들도 日射病으로 희생되곤 하였다. 그런데도 계속 짐을 지고 행군을 강요함으로써 차라리 죽는 것이 나으니 우리의 목을 쳐 죽이라고 항변하였다. 이에 잔인한 일본군은 군기의 엄함을 보여 주려고 실제로 한 인부의 목을 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하나 선뜻 나서 짐을 지고 행군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없고, 웅크리고 앉아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었다.⁴⁷⁾

이듬해 1월의 경우 압록강변 安東陸軍病院에는 입원 환자의 수가 700명이 넘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凍傷者들이었다. 凍傷이 심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들이 동상에 걸리게 된 것은 방한복을 전혀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⁴⁸⁾ 그나마도 입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인 인부들이요, 조선인 인부는 한번 부려 먹고 병이 나면 그대로 방치하기가 다반사였다. 그야말로 一回用 소모품이나 다름이 없었다.

평양전투를 목전에 두고 8월 하순경쯤 개성에 도착한 일본군의 임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군량과 馬草의 운반이었다. 전투를 하기보다는 양식마련과 이의 운반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다. 이와 같은 징후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일본군 제10여단장 다츠미나오부(立見尙文)의 경우 황해도 신계 일대를 무대로 식량이 될 만한 것은 가리지 말고 무엇이든 징발하라고 중대별로 엄명을 내린 데서도 알 수 있다.⁴⁹⁾

47) 兵本利三郎, 日淸戰爭從軍祕錄, 青春出版社, 1972. p. 37.

48) 日淸戰爭實記, 第17編, 博文館, 1895, p. 96.

49) 長岡外史, 新日本の 鹿島立, 小林川流堂, 1920, pp. 179~181.

그러나 이러한 난리를 앞두고 현지 주민들은 징발의 대상이 될 만한 물품은 될 수 있는 대로 눈에 띄지 않게 감춰버렸다. 징발에 필요한 인부들은 몸을 숨김으로써 軍役に 종사할 인부는 태부족이었다. 따라서 일본군의 압록강 渡河作戰 계획도 제때에 뜻대로 수행키 어렵게까지 되었다.

일본군은 어떻게 하든 조선이 청국군에 대해 적대적 활동을 하게끔 하고자 하여 조선인 병사들도 평양전투에 참전시키려고 하였다. 비록 그 수효는 미미했지만 중도에 모두 달아났다.⁵⁰⁾

청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20여 만의 군인·군속은 현지에서 식량을 포함한 군수품을 조달케 함으로써 조선반도는 일본군의 병참기지화함으로써 엄청난 인적, 물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나. 平壤戰鬪에서 掠奪해 간 金銀塊들

일본군이 평양성을 점령한 이후 적지 않은 노략질을 하였다. 이 가운데는 매우 값진 금은괴의 약탈도 있었다. 이들을 내용물별로 세분화해 보면 銀이 1百13貫9百頓, 金塊 61個 들이 1箱子, 金板 7個들이 1箱子, 2百個 들이 7箱子, 20個 들이 3箱子, 砂金 10包 들이 8箱子, 20包 들이 6箱子 등 都合 26箱子에 韓錢 6萬7千貫이었다.

日清戰爭實記 第7編에는 「日清戰爭중 平壤서 掠奪한 金銀의 內容」 가운데 〈分布 金銀의 類別〉統計를 적시하고 있다.

다량의 地金을 약탈해 간 일본측은 그 이듬해인 1895년부터 金 수출량이 격증되었다. 즉 1894년에 95만달러 상당의 금이 1895년

50) 日清戰爭實記, 第4編, 博文館, 1894~5, p. 17.

에는 1백36만여 달러 상당액으로 늘어남으로써 호경기를 초래하였으며 경제 전분야에서 기업의 활동이 활기를 띠었다. 따라서 국가의 세입도 자연 증가되었다.

이전까지 銀本位의 통화가 청일전쟁을 치르고 난 지 2년 뒤인 1897년 8월 1일을 기해서는 金本位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이 화폐정책을 금본위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없이 이는 평양성에서 약탈해 간 金과 戰後 淸에서 배상 받은 金이 밑받침이 된 것이다. 이렇듯 일본이 금본위제를 채택한 후로 조선에 나와 있던 일본제일은행 지점은 혼신을 다해 金 購買活動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갔다.⁵¹⁾

다. 이 밖의 經濟的 侵奪狀況

일본의 對淸戰爭 도발의 제1차적인 목적은 한국을 병탄하여 독점적, 배타적 諸般利權을 장악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목적 수행에 제1차적인 敵對國이 청국이었기 때문에 청국과의 전쟁을 서슴없이 감행한 것이다. 이 같은 속셈은 “청국이 조선에서 누리고 있던 일체의 이익을 일본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화에 따른 경제적 수탈을 위해 交通, 通信關係 開港場 掌握에 급급하였다. 이들은 군사력을 배경으로 긴급 훈령을 빈번하게 내리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⁵²⁾

51) 日淸戰爭實記 第7編 - 分布金銀의 類別一, 日淸交戰錄 第8號, 咸鏡南道誌, pp. 156~157.

52) 日本 外務省編纂, 日本外交文書, 日本國際文化協會, 第27卷, 第1冊, 1953, p. 582.

淸日이 開戰을 하기 전인 그해 7월 10, 11일 양일간에 걸쳐 외무대신 陸奧는 오도리에게 鐵道, 通信, 木浦港 開港問題를 조선측에 제시하도록 지시하고 동월 20일 일본 각의에서 開戰決定과 함께 利權奪取의 방법은 오도리에게 일임하되 京城—釜山간의 철도 및 전선 목포개항 등에 관한 實利를 차지하는 데 진력하라고 다그치고 있다.⁵³⁾

일본은 조선의 철도부설 이권에 대해서는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 軍部는 다급하게 철도부설권에 대해 서둘렀다. 1885년 일본 육군 참모본부에서는 마츠다 유키조오(松田行藏)가 의료투약의 명목으로 조선에 입국하여 무려 4년여 간에 걸쳐 전국을 누비면서 朝鮮鐵道敷設에 따른 調査를 행하였다. 1891년 가와가미 소로꾸(川上操六)는 청일전쟁에 대비하여 중국, 조선을 여행하면서 여행목적은 미국의 유명 박물관에 진귀한 작은 새를 잡아 기증하기 위해 사냥을 하는 것이라고 둘러댔다. 그리고는 철도부설을 위한 精密地圖 작성에 열중하였다. 그리고 가와가미가 파견된 지 약 2개월 후에는 가와노 덴스이(河野天瑞) 技士를 보내 부산에서부터 우리나라 최북단까지 비밀리에 측량을 하였다. 이상의 자료들이 육군참모본부에 제출되어 청일전쟁 수행시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⁵⁴⁾ 이 밖에 마에지마 히소카(前島密)도 일본철도의 연장선으로 만주에 달하는 철로와 조선의 남북을 꿰뚫는 간선철도를 일본이 시급히 부설하

53) 日韓外交資料集成, 第4卷, p. 440 ; 및 日本外交文書 27卷 1冊, pp. 593~597.

54) 田保橋潔, 國際關係史上의 朝鮮鐵道利權, 歷史地理, 57卷 4號, 1931, 弘文館, p. 224.

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⁵⁵⁾ 청일전쟁 직전 다케우찌 츠나(竹內綱)라는 자는 무츠(陸奥宗光)의 지시로 조선의 교통로를 시찰하고 오미와 초오베이(大三輪長兵衛) 등과 경부선, 경인선 鐵道利權의 획득을 위해 온갖 공작을 다하였다.⁵⁶⁾ 즉 이들은 조선정부의 내정개혁을 강요하는 가운데 서울과 주요항구간에 철도를 건설하도록 강박하는 한편 철도이권을 일본에 양여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들은 조선이 독자적으로는 철도부설을 할 방대한 자금과 기술이 없으리라는 판단하에, 제3국의 개입을 봉쇄하는 데 우선은 많은 신경을 썼다. 일본은 일찍이 영국이 아랍에 영국자본을 풀어 實利를 챙기는 정책처럼 조선에 대해 충분한 기반을 굳히고 아울러 내정간섭의 구실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철도부설권을 先次的인 一大事業으로 보았다. 일본정부의 對韓經略은 조선을 아시아의 Egypt로 보고 영국의 대아랍정책을 모방하고 있었다.⁵⁷⁾

조선의 철도부설권 문제는 비록 무력을 배경으로 일본이 조속히 독점하고자 하였으나 쉽사리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는 안간힘을 다해 반대하는 조선정부와 열강의 반대가 녹록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일본의 한반도 강점 전략에 의해 끝내는 京仁, 京釜, 京義線 등이 차례로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다음은 通信關係이다. 通信은 鐵道와 마찬가지로 주요한 분야이다. 鐵道가 人體의 動脈이라 한다면 通信은 神經으로 비유되는바, 이 兩大 機能이야말로 主權國家에서의 國防上, 産業, 經濟上 절대

55) 朝鮮總督府 鐵道局, 朝鮮鐵道史, 第1卷, 1929, pp. 2~3.

56) 註 55와 같은 冊, pp. 2~3.

57) 日本外交文書, 第27卷 第1冊, pp. 476~477 및 第28卷 第1冊, pp. 546~547.

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일본은 철도에 못지않게 통신시설을 또한 장악하고자 혈안이 되었다. 1884년 일본은 나가사키(長崎), 釜山간에 海底電信을 가설하고, 서울 부산간은 1888년 조선에서 연결하였다. 이것을 南路電信線이라 하며 이 선은 뒤에 서울에서 公州, 全州, 大邱를 경유하여 釜山과 연결되었다. 1889년에는 공주, 淸州간을, 1891년에는 서울에서 春川을 경유하여 元山에 이르는 京元線을 가설하였는데 이를 北路電信線이라 한다. 위 南北路電信線보다 훨씬 앞선 1885년에 서울과 義州간에 西路電信 또한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894년에 서울에 침입하면서 조선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京仁間에 軍用電信線을 7월 8일에 착공하여 나흘 뒤인 12일에 개통시킴에 이 불법적인 행위에 조선군이 이 電線을 切斷하였다. 이에 일본군은 電線切斷者를 체포하여 처벌함으로써 일본은 주권의 침해와 조선군을 처벌하는 二重의 國際的 犯罪行爲를 저질렀다. 이들은 당면한 군사적 필요성이 절실해지자 電信事業은 電信의 새로운 架設이나, 또는 既存의 施設을 買受하여 자신들의 감독하에 두도록 결정하고⁵⁸⁾ 日本軍用電信施設의 敷設, 強行구실을 既存施設이 略式工事인 까닭에 自然災害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이 가설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철도부설권에 관해서 보다 훨씬 강경하게 반대하였다. 조선정부가 말하되, “일본정부가 조선을 자주독립국이라고 해주니 참으로 고마울 따름이다. 이러한 자주독립국에 이미 경부간에 전신선이 가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측이 또다시 새로운 선을 가설하려는 것은 자주독립국의

58) 日本外交文書, 第27卷, 第1冊, p. 590.

체면에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도저히 따를 수 없다. 더욱이 貴國의 工兵隊가 京釜電信線을 修繕하는 일도 一國의 주권에 속하므로 외국인으로 하여금 수선하게 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섰다.”⁵⁹⁾

일본정부는 청일전쟁 개전결정을 계기로 새로운 군용전신선을 일본군으로 하여금 가설에 착수토록 하였다. 1894년 7월 19일 일본은 조선정부에 조선국내에 일본군 병영설치와 경부군용전신선의 가설을 선언하였다. 그리고는 동일자로 조선국의 전신선을 일본군 專用線化하였다. 그런데 사실상 현지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은 임의적으로 조선정부의 동의도 없이 경부군용전신선의 가설을 위한 측량을 이미 끝내고 있었다. 게다가 이들 일본군은 기존의 전신시설을 강압적으로 탈취하여 저들의 용무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일본군의 만행에 오히려 민중들의 거센 저항이 잇달았고 열강의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경복궁 점령후로는 서울의 전신국과 器機局 그리고 관계 직원들까지 감금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이들은 경부군용전신선은 1945년 패전시까지 계속 점거 우리의 통신권을 침해하였다.

다음으로는 개항장을 통한 경제적 침탈을 들 수 있다. 일본의 한국침략에 있어 군사적 침공이 外皮의이라 한다면 內面的 침략은 開港場을 통한 경제침탈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이 조선과 강압적인 수교를 맺고 난 이후 가장 먼저 눈독을 들인 것은 일용상품의 시장 확대와 미곡 등 농산물과 金 등 鑛·水·林産物 등의 원료공급지화하는 데 있었다.

59) 前掲書, p. 591.

이상과 같이 청일전쟁은 지난날의 征韓論을 시행한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헤어나기 어려울 정도의 종속적인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는 가운데 대륙침략의 군수기지화됨으로써 돌이키기 어려운 주권상실국으로 전락하는 단계를 맞게 되었다.

6. 맺 는 말

1894년 7월 25일 0:7시, 조선국 서해안 豊島 앞 바다에서 첫 砲門이 열리면서 개전된 청일전쟁은 이듬해인 4월 17일 시모노세끼(下關)조약이 체결되면서 終戰되었다.

이 전쟁은 어디까지나 청일 양국이 羊頭狗肉格으로 조선국을 위한다는 구실하에 출병하여 상호 충돌하면서 戰場을 중국 땅으로까지 확대하여 나갔다. 戰勢는 청의 연전연패로 인해 北京까지 위협받게 되자 列強의 居仲調整으로 休戰하게 되었다. 이 전쟁은 청의 內政 不調和와 구태의연한 장비 등, 開戰에 따른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통해 기득한 우위권과 지난날의 종주권을 유지 행사하는 데만 몰두하였을 뿐, 일본의 전쟁도발에 대해 심각하게 대처하지를 않았다. 즉 구태의연한 夷以制夷의 외교적 대응에 그쳤으며 일본이 감히 저들을 상대로 전쟁을 도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안이한 판단으로 일본을 대해 왔다.

반면 일본은 뿌리깊은 정한론을 바탕으로 호시탐탐 대륙진출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內政을 안정케 하고 군비를 충실히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필요에 따라 일보전진, 일보후퇴를 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술수를 펴 나가면서 갑신정변에서 당한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리고 政府 上下 軍部가 조화를 이루어 국론을 대외전쟁으로 귀일시켜 나가면서 주도면밀한 작전계획까지 세운 다음, 자신만만한 투지로 군사적인 機先을 잡아 對淸戰爭을 수행해 나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청은 이홍장이 北洋海軍을 검열하는 자리에 영국측을 참관케 하였는데 청의 당시 해군력은 한마디로 일본해군을 對敵하기는 力不足이라고 하고 영국제 패속선 2척의 구입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購入치를 못하였다.

반면에 일본은 이를 구입하여 해군력을 강화, 승리를 하는 아이러니를 낳기도 하였다. 요컨대 이러한 정황하에서 치르어진 청일전쟁은 전래적인 동양의 盟主國이 신흥 일본제국에게 패전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세계제국의 인식이 바뀌었고, 일본은 이 전쟁을 계기로 아세아의 맹주로 자처, 한반도 예속에 가일층 적극성을 띄워나갔다. 이러한 氣勢에 조선은 놀려 국력은 날로 쇠잔해졌다. 그리고 서구열강제국도 경제적 實利를 찾는 데만 급급하고 일본의 한반도 침략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해 나갔다. 이에 일본은 오만방자, 안하무인지경에서 이 나라 國母를 弑害하고 저들이 취하고자 하는 온갖 利權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독차지하기에 血眼이 되었다. 이 같은 일본에 대해 강력한 라이벌국으로 대두된 나라가 러시아였다. 러시아는 극동에서의 세력확대와 이권획득을 위한 침략행위를 노골화하면서, 우리나라 압록강 하류 龍岩浦를 점령 砲臺를 쌓는 등, 일본의 대륙침략정책과 정면 충돌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과 청국과의 기회균등은 물론 나아가서 일본의 우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에 청일전쟁 발발 10년 만에 한반도가 또다시 러일의 전쟁터가 되는 불운을 겪게 되었다.

이처럼 청일전쟁은 내 나라 내 땅에서 제3국이 조선왕조를 둘러싸고 저들의 이권을 확보키 위해 각축전을 벌였던 것이다. 특히 일본은 청일전쟁 이후 조선을 저들의 보호국으로 掠取하는 것이 급선무였다.⁶⁰⁾ 그러기 위해서는 國母인 명성왕후를 弑害하는 등 천인공노할 만행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그 같은 저들이니 일반 백성들에 대한 희생은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는 이 나라에 관한 온갖 경제적 이권을 약취해 가면서 끝내는 이 나라의 國權마저 탈취하여 식민지화하였고, 그 같은 불행한 역사는 오늘날에 까지 민족적 분단의 아픔을 남겨 놓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100년 전에 이 나라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청일 양국간의 무력전은 외형상 끝나기는 했으나 1945년 일제의 패망까지 이어져 왔고 그 여파는 우리 한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 오늘날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60) 柳永益, 清日戰爭 日本의 對韓侵略政策, 「一 研究論叢 84-7 - 清日戰爭을 前後한 韓國과 列強」,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pp. 129~177.

韓國戰爭時 勞務動員과 運營에 관한 研究

梁 寧 祚
(國防軍史研究所 研究員)

1. 序 言
2. 戰爭의 勃發과 勞務政策의 限界
3. 國軍의 勞務動員과 運營
4. 聯合軍의 勞務政策과 運營形態
5. 結 語

1. 序 言

本 研究의 목적은 韓國戰爭 기간 동안 부대에 보급을 지원하거나 근무지원을 제공한 민간인 勞務者의 動員과 組織, 그리고 勞務形態 등 노무 운영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있다.

전쟁기간 동안 노무자들이 수행한 임무는 다양하였으며, 특히 그들은 戰線部隊에 탄약·연료·군자재·식량·식수·보급품 등을 운반해 주었음은 물론 진지 공사와 전사·부상자 수송 그밖에 도로

와 교량의 보수 등의 주요 역할을 수행하였다.

전쟁기간 동안 군에 의해 운용된 노무자의 숫자만 해도 韓國勞務團 노무자 93,154명, 直雇用 노무자 75,000名, 契約雇用 노무자 20,900명, 해·공군 및 기타 기관의 노무자 약 13,500명에 이르렀으며, 이들 중 51~53년간 전선 부대를 직접 지원한 노무자 가운데 확인된 희생자만도 총 8,794명(전사 2,064명, 부상 4,282명, 실종 2,448명)이었다.¹⁾

이러한 노무자들의 전쟁 지원활동에 관하여, 당시 국군의 지휘관들은 한결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전투의 절반을 그들이 치렀다”라고 입을 모아 증언하고 있으며,²⁾ 제8군사령관 리브시(Livsey)도 “그들은 대단히 힘든 기후와 지형, 전장에서의 위험을 극복하며 차량이 갈 수 없는 곳으로 보급을 추진하였다”라고 하였고, 스틸웰(Stilwell)은 “그들은 군인과 다름이 없이 적의 화력을 무서워하지 않고 전사상자를 받아 구호지점과 보급지점 사이를 人間橋梁을 만들어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회고하였다.³⁾

그러나 지금까지 韓國戰爭 勞務者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1) Monograph, Indigenous Labor in Korea, July 51~Jul 53, (MHD-33)8086th, AU, MHD(AFFE), 1954, pp. 34~37 ; Monograph, Offshore Procurement in Korea, (MHD-26)8086th, AU, MHD(AFFE), 1954, p. 69 ; 전쟁 초 국군이 임의로 동원한 노무자의 숫자가 약 4~5,000명(1개 대대당 5~60여명)이었으며, 多富洞戰鬪時 노무 희생자가 많은 경우 하루 평균 50여 명씩에 이르렀다고 하지만(國防部戰編委, 『多富洞戰鬪』(1981, pp. 199~200),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고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상기 수치에서 제외하였다.

2) 朴基柄 大領, 金應祚 大領 證言, 國防軍史研究所 證言錄.

3) UNITED STATES ARMY KOREA SERVICE CORPS, *KSC-INTRODUCTORY HANDBOOK*, 1990, p. 4.

편이다. 다만 선구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는 韓國勞務團에 관한 논고가 한 편이 있으며, 기타 주로 公刊史에서 일부 산발적으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⁴⁾ 이것은 아직까지 한국전쟁 연구자들이 주로 전쟁의 원인이나 작전의 전개과정 등에 관심의 중점을 두고 전쟁에 관련된 基礎 整理에는 상당히 소홀한 현재 연구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本 研究에서는 上記한 국내 연구 또는 자료와 당시 公刊된 관련 통계자료를 참고하였으며, 美軍 資料로는 최근까지 공개된 聯合軍, 極東軍, 第8軍, 韓國兵站地帶 司令部 등의 문서와 관련 예하 기관의 문서 중 노무관련 문서들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이 가운데는 당시 노무관련 美軍 研究報告書와 당시 勞務將校의 보고서 등 一次資料를 이용하였다.⁵⁾

그러나 전쟁초 “徵發에 관한 特別措置法”(1950. 7. 26)이 마련 되기 이전까지는 주로 국군 각 사단부대의 연대 또는 대대가 임

4) 金炳坤, 「韓國戰爭期間 중 韓國勞務團에 대하여」, 國防部戰編委, 『軍史』 23號; 國防部戰編委, 『多富洞戰鬪』, 1981; 『丹陽·義城戰鬪』, 1987; 『國防史』 第2卷, 1987; 國防部 政訓局, 『韓國戰亂1年誌』, 1951; 陸軍本部, 『陸軍發展史』(上) (陸軍本部: 1970), 日本陸戰史研究普及會, 陸軍本部(譯), 『韓國戰爭』, 1970.

5) 勞務關聯 研究報告書 資料는 다음과 같다. Report, ORO-R-4(FEC), Utilization of Indigenous Manpower in Korea; Monograph, Offshore Procurement in Korea, (MHD-26) 8086th AU, MHD(AFFE); Report, ORO-T-285, Army Payment in Korea; Monograph, Organization of the Korean Communication zone, U. S. Army; HQS USAFFE & Eight Army(Rear),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San Francisco, 1954), Historical Manuscript File, call; no. 8-5, Vol. 1; Monograph, Indigenous Labor in Korea, July 51~Jul 53, (MHD-33)8086th AU, MHD(AFFE); Monograph, Offshore Procurement in Korea, (MHD-26) 8086th AU, MHD(AFFE).

의로 노무 인력을 동원하여 운용하였으므로 초기 노무 운용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證言資料나 기타 방증자료를 통해 보완하기로 하였다. 本 研究의 망라기간은 韓國戰爭 勃發부터 한국노무단이 창설되어 노무자의 동원과 운영이 체계를 잡기 시작한 51년 7월까지로 제한하였으며, 韓國勞務團이 창설된 이후의 상황에 관해서는 別考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상기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內容을 중심으로 밝혀 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전쟁간에 운용된 노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쟁 이전의 勞務組織과 運用 내지 政策에 관하여 개관한 후, 전쟁기간 동안의 노무자 운용을 주로 制度史的인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며, 또한 開戰後부터 약 1년 기간 동안의 노무동원과 운영, 그리고 지원상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로 전쟁초 국군에 대한 노무지원활동과 유엔군 참전 이후 유엔군을 지원한 노무지원, 즉 항구내에서의 埠頭荷役 활동과 民間人輸送團의 보급 추진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戰爭의 勃發과 勞務政策의 限界

가. 勞務動員의 成立背景

과거 日帝의 韓半島 植民統治 기간 동안 日本은 勞動組合이나 勞動組織을 허용하지 않았다. 노무자들의 노동조직을 형성하려는

노력으로 1924~25년 勞動組合이 설립되었으나 곧이은 日帝의 규제로 인하여 해산되었으며, 결국 그들의 활동은 지하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것은 곧 日帝에 대항하는 民族運動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지하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노동조직이 표면으로 부상하였고, 그것은 곧 美軍政에 의해 합법적인 활동으로 허용되었다. 따라서 軍政時期 동안에는 국내 정치세력과 마찬가지로 노동조직에서도 左翼과 右翼이 분열되어 좌우익의 갈등이라는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다. 결국 48년 政府樹立 이후 정부가 우익조합만이 노동조합에서 인정될 것이라는 방침을 고용주와 노무자들에게 공식 발표함으로써 문제는 해소되었다.⁶⁾

따라서 대부분의 노무자들은 大韓獨立促成勞動總聯盟에 가입하였으며, 이때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는 우익조합이 北韓으로 사라진 좌익조합에 충분한 압박을 가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50년 北韓의 南侵 당시 노무자들의 관심은 우익조합만을 지지하고 있었다.

전쟁이 발발한 당시 한국에는 총 120만 회원이 있는 6개의 노동조합이 있었다. 정부는 경찰에 의해 반드시 사전조사를 거친 후 새로운 조합설립을 인정하였으며, 또한 노조의 즉흥적인 과업행위는 공산주의로 규정하여 엄격히 금지되었다.⁷⁾

한편 정부 노동부서에 관하여 개관하면, 먼저 日帝 植民統治 기간 동안은 노동문제를 다루는 기관은 정부의 독립된 부서가 아니

6) 任松子, 「美軍政期 大韓獨立促成勞動總聯盟의 組織에 대한 考察」, 『成大史林』 第9輯, 1993, pp. 67~68; Indigenous Labor in Korea, July 51~Jul 53(MHD-33), p. 22.

7) Ibid., p. 23.

었으며, 노동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의 성격에 따라 행정국에 조회되었다. 재무부는 임금이나 가격 문제를 다루는 반면, 농산부는 농업 노동문제에 책임이 있었다. 노동 소요문제는 어떤 것이든 경찰에 의해 다루어졌다. 그러나 日本이 물러간 후 南韓에서 軍政을 담당한 美軍政은 독립된 勞動部를 설립하였다.⁸⁾

軍政기간 동안 미국인 노동전문가들이 노동조직에 관한 문제를 자문하였으며, 전국의 노동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었다.⁹⁾ 그러나 군정이 종료되고 1948년 韓國政府가 수립될 때 정부조직 아래에 노동부서가 독자적인 부서가 아니라 社會部 산하의 사무국으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노무문제에 책임이 있는 노동국장은 사회부 장관을 통해 노동문제를 조정하였으나, 군정시 독립적으로 편성되었을 때보다는 업무추진의 한계를 갖게 되었다. 1948년 당시 노동국은 勞動行政課, 雇用課, 組合指導課로 편성되었으며,¹⁰⁾ 이러한 편성은 한국전쟁 개전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나. 開戰初 後方支援의 狀況

人民軍의 남침을 받은 政府나 軍에서는 사전에 서울 철수의 필요성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며 철수계획도 수립하지 못하여 피난민

8) Report of the Labor Situation, Labor Administration, UNCACK, 820AU, APO59(R).

9) Ibid. 1946년 6월 2일 최초로 맥아더 사령부의 노동문제 사절단 중 2명의 미국인이 군정청의 초청으로 서울에 왔다.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자료사』 2, p. 762.

10) Ibid., p. 3 ; 朝鮮通信社, 『朝鮮年鑑』(1947, 1948年版)

과 군의 철수를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다. 서울은 적의 압력이 가해지자 공포와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고 서울 이북지역으로부터 내려온 피난민들에 의해 시내는 더욱 혼잡하였다.

京水間에서도 군경이 피난민의 이동을 통제할 수 없었으므로 모든 도로상의 수송작전이 방해를 받았다.¹¹⁾ 이와 같은 상황의 악화는 신속한 철수에 장애요인이 되었고 또 적시에 漢江을 도하하여 체제를 정비하는 데도 어려움을 주었다.

漢江橋梁 폭파로 兵役關係文書 等 중요한 政府記錄文書を 비롯하여 보급품을 실은 1,318대의 차량이 전부 한강 북쪽에 유기되었다. 강남 안에서는 적절한 교통통제소의 부재로 인하여 후방지원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으며 통신망의 두절로 연락마저 곤란하여 指揮系統 및 協調體制가 원활치 못하였다.¹²⁾

따라서 7월 초 국군은 병력과 보급 등 후방지원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놓여 있었다. 육군본부는 7월 5일부터 부대별 계획표를 작성하는 등 지원체제의 정비에 착수하여 지원 마비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었으나, 아직 戰時動員이나 徵發 등 國民總力戰體制를 구비하기엔 시간이 더 소요되었다.¹³⁾

한편 이 무렵부터 각지에서 자원한 노무자와 학도병 등 국군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미 일부의 노무자들이 保國隊를 자처하면서 戰線 後方에서 작전을 지

11) 8086th AU(AFFE) Military History Detachment, *Evacuation of Refugees and Civilians from Seoul*, Precis, 1956(國防軍史研究所 史料 No. 914), p. 4.

12) *Evacuation of Refugees and Civilians from Seoul*, Precis, pp. 4~5; 第7師團 G-3 朴元根 少領 證言(國防部戰編委, 『韓國戰爭史』 第1卷, 1967, p. 761.)

13) 『陸軍發展史』(上), pp. 443~447; 『後方戰史』(軍需篇), pp. 293~295.

원하고 있었으며, 국군이 각 부대별로 피난민이나 인근 마을 주민들 중에서 노무자들을 모집하자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응모에 나서고 있었다. 점차 노무자들의 역할이 부각되자 국군 각 부대는 연대 단위로 추가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국군 1개 대대에 평균 50~60명의 노무자가 활동하고 있었다.¹⁴⁾ 한편 학도병도 각 지구에서 수십 명씩 국군부대에 입소하여 전투와 군무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7월 중순부터 2천여 명이 현지 입대하여 훈련을 받기도 하였다.

다. 勞務政策의 限界

정부는 1950년 7월 말 釜山으로 이동하였다. 정부 산하 社會部와 保健厚生部, 文教部는 釜山市廳으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부산에서의 정부 사무공간은 대단히 혼잡하였고 사회부 예하의 勞動局도 몇 개의 다른 국과 함께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미처 철수하지 못한 정부 공무원들의 자리는 부산에서 긴급히 보충되었으나 그들의 상당수는 전혀 행정적인 경험 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더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급박한 서울 철수로 인해 정부의 통계, 기록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식문서들은 서울에 남겨졌으므로 혼란은 크게 가중되고 있었다.

노동국에 할당된 예산은 거의 태부족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노동국의 고위 공무원들은 새로운 변화에 따른 예산 계획안을 기획, 수립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엔 民間支援本部가 파악하고 있었던

14) 『多富洞戰鬭』, p. 41, p. 124.

당시 “勞務狀況 報告書”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은 뿐 아니라 해야 할 일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¹⁵⁾

노동국은 각 지방도청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었으나 정부의 서울 철수의 결과로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못하였으며, 지방 도청 간에도 협조나 연락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못하였다. 각 지방 도청은 노무문제에 관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한편 도청내에는 노무정책이나 지침을 장관에게 건의할 만한 노무행정 부서가 없었으므로, 노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며 도청 예하기관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노동국과 부산시청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임시로 노무문제를 담당하였으나, 그들 역시 다른 문제들 - 특히 피난민 문제를 처리하는데 거의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노무문제를 전담하여 검토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¹⁶⁾

비록 전쟁의 막바지인 1953년 초 정부의 노력으로 임금, 노무계약, 시간, 여성과 미성년 노무, 안전문제 등의 고용기준을 정한 勤勞基準法이 설립되지만, 노무인력의 수급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노무정책은 전쟁 초기에는 물론이고 거의 전기간 동안 체계적이거나 또는 일관성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노무수요를 집행할 만한 공식적인 노무조직을 통제하지 못하자 국군은 주로 각 부대별로 노무수요를 충당하였다. 유엔군도 자체에서 직접 계약하거나 한국정부와 국군의 도움을 받아 노무수요를 충당하였으며 1951년 7월 韓國勞務團을 설립하면서 유엔군 노무자는

15) The report of a Survey of the Labor Situation, HQ UNCAC, 1951.

16) Indigenous Labor in Korea, p. 5.

물론 국군 노무자 일부까지 통제하였다.¹⁷⁾

노무인력 확보라는 면에서 보면, 당시 한국에는 풍부한 인력이 있었다. 산업과 농업이 붕괴되어 대중실업을 야기하였기 때문에 중간숙련 또는 비숙련 노무자의 공급은 충분하였으며 또 전장지역과 이북지역으로부터 '남하한 많은 실업 피난민들이 있었다.'¹⁸⁾

이미 정부는 7월 10일 각 부처에 '避難民 分散에 관한 件'을 발표하고, 8월 4일 '避難民 收容所에 관한 臨時措置法'이라는 통첩을 하달하여 필요한 장소에 피난민 수용소를 설치하고 증명서와 식량을 교부하며, 군경이 검문과 안내를 담당하여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¹⁹⁾ 이와 같이 피난민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는 피난민을 보호하고 작전에 편의를 제공하며 나아가 노무인력의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國軍의 勞務動員과 運營

가. 初期 勞務動員과 動員法の 樹立

전쟁 이전 國防部는 국군 병력규모가 10만을 초과하여 편제될 수 없는 제한으로 정상적인 징집을 집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군 예산의 제약으로 陸本 兵務局과 각도 兵事區司令部가 1950년

17) Ibid., p. 5 ; 勤勞基準法の 내용은 같은 자료, pp. 153~169.

18) 『韓國戰亂1年誌』 p. C57 ; Command Report, 2d Log Com, Feb, Civil Assistance Sec(S).

19) 위의 책, p. C51, p. C57, p. C61.

3월에 들어서 해체된 상태에 있었다.²⁰⁾ 따라서 군에서는 전시 병력보충과 관련하여 노무인력의 동원에 관한 계획안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인민군의 남침을 받았다.

인민군의 침공으로 국군은 인력의 동원이 가장 긴급을 요하는 문제이었고 동시에 향토방위를 위한 대책도 시급하였다. 또 정부는 개전 초의 혼란으로 인해 많은 병력관계 서류를 유실하였기 때문에 후방에서 빠른 시간 안에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동원을 위해 군은 임시방편으로 兵役法 제58조를 적용한 ‘第2國民兵 召集’으로 가두소집이나 집단소집으로 병력과 노무인력을 보충하였다. 7월 22일에 ‘非常鄉土防衛令’이 공포되자 만14세 이상의 남자는 향토방위의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7월 26일에는 대통령령 긴급명령 제6호 ‘徵發에 관한 特別措置令’이 공포되고 동일 국방부령 임시 제1호 ‘徵發에 관한 特別措置令 施行規則’이 발표되어 마침내 군작전상 필요한 군수물자 또는 인적 자원을 징발·징용하여 국민 총궐기태세를 갖추하고자 하는 입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비상시 향토방위령은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채 8월에 일단 폐기되었다가 다시 공포되었고 9월에 그 개정법이 발표되었다.²¹⁾

20) 『陸軍發展史』, pp. 430~431.

21) 『陸軍發展史』(上), p. 435; 같은 날 한국정부와 유엔군은 ‘유엔군 經費支出에 관한 韓美協定’을締結하여 ‘政府는 유엔 會員國 聯合軍總司令官에 대하여 同 司令官 指揮下에 있는 參加軍隊를 包含하며 韓國 및 韓國水域에 있어서의 作戰 및 活動에서 생기는 經費支出로서 同 司令官이 요구하는 金額, 種類, 時日, 場所에 따라 韓國通貨와 그 通貨로 된 信用

노무자 동원상황에 있어서는 勞務動員令에 의거 만35~45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자는 의무적으로 노무봉사토록 되었고 그 인원은 各 道市郡 邑面으로 할당되었으나 단, 공무원, 불구자, 환자는 사정을 참작하여 보류되었다.²²⁾

국방부는 국본 일반명령에 의하여 1950년 9월 26일부터 전국 각도에 병사국사령부를 창설하여 병사업무를 집행하게 되었으며,²³⁾ 그후 노무인력의 보충도 병력과 함께 급속히 강행되어 소집행정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병사기구도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그 동안 피난민들 중에 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스스로 찾아 모여 들거나, 또 大韓靑年團 등 청년단체들이 자원하여 군을 지원하는 등 여러 보충원에 의해 신속하게 증원되고 있었다.

한편 군은 정부 및 민간 노무기관에 협조를 구하여 급증되는 보급작전에 총 역량을 경주하였다. 국방부는 慶南地區에 산재한 중요물자를 군수품으로 충당하고, 全南 방직공장의 재고품을 釜山으로 수송하여 군복으로 대용하였으며 大邱와 부산 등지의 방직공장 노무자를 총동원하여 군의 소요량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²⁴⁾

陸本 調達監室은 7월 중순에 설치된 釜山分室을 위시하여 서울에서 이동한 陸軍 被服廠과 더불어 부산 방면의 피복공장의 노무종업원을 동원하여 획기적인 생산에 착수하였던 것이다.²⁵⁾

을 供與한다’는 내용을 發表하였다. 李大根, 韓國戰爭과 50年の 資本主義, 까치, 1987, pp. 281~282.

22) 『後方戰史』(人事篇), pp. 163~170.

23) 『陸軍發展史』(上), pp. 428~432.

24) 위의 책, p. 111(一般命令 第40號), p. 290.

25) 위의 책, pp. 428~432.

釜山과 濟州道에 造兵基地가 설치되어 탄약과 수류탄, 총기 부속품의 제조, 노획병기의 정비작업 등이 공병과 노무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많은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피난민의 수용, 구호물자 배급, 부상자 치료를 지원하였고, 자원한 노무 기술자들이 공장을 가동하여 장비 및 보급물자를 조달하기 시작하였다.²⁶⁾

1950년 8월 21일에는 대통령령 제381호 ‘徵發報償令’이 공포되고, 같은 날 국방부령(임시) 제3호 ‘被徵用者 報酬規程’을 발표하여 군에 동원된 노무자의 최소한의 보수규정도 마련되었다.²⁷⁾ 이 때 발표된 노무자 보수내용은 아래와 같다.

勞務者の 給與表

(1950. 8. 21 현재)

등급	노 무 직 종	일 당	비 고
갑	기술공(운전수, 전공, 인쇄공 등)	500원	군에서 급식하는 자에게는 급식비를 일당 300원을 공제한 액을 지급한다.
을	중노동자(하역부, 차 조수 등)	450원	
병	경노동자(급사, 잡역 기타)	400원	

이 때에 발표된 노무자의 급여(일당)는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보수라고는 할 수가 없고 최소 노무자 자신의 급식비

26) 위의 책, p. 292; 國防部 政訓局, 『韓國戰亂1年誌』, 1951, p. C277.

27) 『韓國戰亂1年誌』, pp. C58~75; 이때의 보수규정은 51년 3월 2일에 가서 다시 개정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國防部令 第6號 被徵用者 報酬規程中 改定(4284. 3. 2) “被徵用者報酬規程中 左와 같이 改定한다. 別紙 日額中 500圓을 970圓으로, 450圓을 830圓으로, 400圓을 770圓으로 하고 備考를 削除한다. 附則 本令은 檀紀4284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를 보조받는 정도였다. 따라서 국군을 지원한 노무자들은 1951년 3월 2일 보수규정이 어느 정도 현실화될 때까지는 거의 무보수로 전쟁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고 해도 과히 틀린 지적은 아닐 것이다.

이 밖에 정부는 1950. 12. 21일 법률 제172호로서 ‘國民防衛軍設置法’을 공포하여 제2국민병에 해당하는 만17세 이상 만40세 미만의 장정 약 50만 명을 동원하게 되었으나, 이는 징집부터 문제가 많았으며 또 방위군 간부들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결국에 전시국민동원에 있어서 오점을 남긴 채 해산되고 말았다.²⁸⁾ 결국 이들 병력 중의 상당 부분이 1951년 7월 韓國勞務團이 편성될 때 노무자로 흡수되었다.

나. 勞務者의 支援活動

韓國戰爭 勃發 直後 국군은 보급부족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더구나 1950년 7월 초 유엔군 地上軍 부대가 참전함에 따라 전선의 재정비가 이루어지면서 西部戰線은 유엔군이, 中部 및 東部の 산악지대는 국군이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국군이 담당한 방어지역이 주로 지세가 험준하고 교통이 불편하였으므로 전투부대에 대한 보급품 추진은 더욱 곤란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전투임무 수행상 상당한 지장이 야기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은 개전 직후부터 각 연대 및 대대별로 필요에 따라 피난민이나 인근 마을 주민 중에서 노무자를 모

28) 『陸軍發展史』(上), pp. 428~432.

집하였다. 각 사단에서는 노무동원을 일괄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였으며, 동원된 노무자에게는 최소한의 보수도 지급할 수 없었다.²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비록 소규모이긴 하지만 노무자 모집에 자원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

초기의 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국군의 재편성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군은 전선부대에 보급품을 운반할 노무자를 공식적으로 모집하였다. 대체로 이 무렵까지 국군 각 부대는 자원한 소수 노무자의 지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보급품은 자체 병력으로 추진, 분배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단 전투상황이 벌어지면 전투부대에 소요되는 각종 보급품을 운반할 병력부족으로 보급부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투 중에 탄약이 고갈되거나 전투요원이 굶주리게 되는 일이 다반사여서 대치한 인민군과 싸우는 전투부대 장병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또한 사기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컸었다.

그러나 군의 노무자 모집이 있고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보급품이 노무자(保國隊)의 손으로 추진되었다. 노무자들은 보급선이 발달하지 못한 산악지대에서 지계를 지고 부대보급을 수행하는 등 극히 어려움을 겪어 가며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보급품을 운반하는 도중에 적으로부터 포격을 받아도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보급품을 유기하는 일이 없었으며, 동료가 쓰러지면 그가 운반하던 것을 회수하여 메고 갈 정도로 사명감에 투철했다. 국군 각 연대는 상급부대에서 동원한 노무자만으로 임무수행이 곤란할 경우 각 연대단위로 추가모집하여 충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국군 1개

29) 『多富洞戰鬪』, pp. 41~42.

대대에 평균 5~60명의 노무자가 활동하고 있었다.³⁰⁾

그들은 대개 전투지역 인근 마을이나 피난민수용소에서 동원된 40대의 농촌출신 장년들로서 매일 새벽 04:00부터 밤 늦게까지 전투원의 식량을 비롯한 탄약과 장비, 기타 보급품을 지게로 최전방까지 운반하였으며 되돌아갈 때 전사상자를 후송하기도 하였다.³¹⁾

따라서 적의 총포에 희생되는 사람도 적지 않았으며³²⁾ 오히려 전투원보다 더 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다. 전투에 참가한 대대장 및 중대장들은 한결같이 “어떤 의미에서 전투의 절반은 그분들(노무자)이 치렀다.”라고 입을 모아 증언하고 있다.³³⁾ 그 정도로 노무자들이 전투에 기여한 공로는 다대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1950년 8월 大邱 北方戰鬪에서는 한 능선에서 적의 포격으로 인한 노무자의 손실이 하루에도 50~60명씩 발생할 때도 있었다. 게다가 주보급로로부터 대대 방어진역까지의 보급품 운반거리가 멀고 지형이 험준했기 때문에 노무자들이 야간에 보급품을 운반하던 중 길을 잃고 헤매다가 끝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³⁴⁾ 그래서 장병들은 하루에 한 끼의 주먹밥으로 연명하고 때로는 보급품이 전혀 추진되지 않을 때도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지휘관들이 직접 탄약을 걸머지고 노무자를 인솔하여 대대 관측소까지 운반하기도 했다.

대체로 국군 각 부대에 노무자들이 충원된 후부터 최전방에 투

30) 앞의 책, pp. 124~125.

31) 第103師團 勞務者 李相永, 同師團 監察法務部 前任下士 宋寅錫 證言, 『民族의 證言』 第5卷, 中央日報社, 1973.

32) 第103師團 醫務隊 看護員 李順子 證言, 위의 책.

33) 朴基柄 大領, 앞의 證言錄.

34) 위의 책, pp. 199~200.

입된 장병들은 특별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굶주리거나 탄약 부족 때문에 고전하지 않게 되었다. 노무자들이 식량과 탄약을 전방까지 운반하며 부상자와 노획품을 후송하게 되자 전투력 강화의 상승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다른 한편 노무자들은 도로와 교량을 보수하도록 책임을 분담 하기도 하였다. 우선적으로 착수한 가장 큰 공사는 倭館 鐵橋의 보수공사였으며, 이들은 국군 공병들과 함께 주야로 작업하여 7일 간의 보수로 개통하였고 다음에는 洛東江에서 漢江까지 철로 및 도로보수공사도 시작하였다.³⁵⁾ 이 밖에 앞절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공장 노무자와 전문직 기술자를 비롯하여 급사·하역부 등 많은 인원이 후방에서 국군을 지원하고 있었다.

4. 聯合軍의 勞務政策과 運營形態

가. 美軍의 勞務運用 類型

50년 7월 초 유엔 지상군의 방어담당지역은 서부축선으로서 국군이 담당한 중부 및 동부축선에 비해서는 비교적 도로가 발달한 곳이었지만, 대부분의 전선부대는 도로상에서 벗어나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급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미군은 전선부대의 보급추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가장 현실성있는 대안으로 산악지형

35)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639.

으로의 보급지원은 현지인력을 이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전투근무지원에 병력을 투입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당시 병력이 부족한 유엔군으로서는 전투병력을 근무지원에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또 차량으로 도달될 수 없는 험한 한국의 산악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미군들은 한국인보다 육체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다.³⁶⁾

미군이 험준한 지형의 전선부대에 보급품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인 노무자를 운용하는 것은 한국전쟁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다. 즉 제2차 세계대전 동안 亞細亞-太平洋地域의 작전에서 주로 많이 운용되었다. 이러한 수송작전의 사례로써 레이테(Leyte)에서 미 제1기병 사단이 민간인 노무자를 운용하여 험준한 지대로 보급을 추진한 것이었다. 당시 部隊 歷史報告書에 의하면, ‘현지인 노무자들은 한 번에 6일간 고용되었다. 보급추진임무는 전쟁 동안 필리핀 지도자들이 떠맡은 가장 힘들고 불쾌한 잡일이었다. 보급 캠프로부터 무거운 식량, 탄약과 기타 보급품을 꾸리는 임무가 시작되었다. 무장 엄호하에 운반자의 긴 행렬은 즉시 전장으로 향하였다. 지형은 좁고, 미끄러운 오솔길과 깊고 구부러진 강, 무성한 덩굴, 정상까지 가파른 경사면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상에서는 4.5km도 안 되는 거리를 5시간 이상 허비해야 하는 그런 지형이었다. 두번째 보급기지에 도착하면 숙영을 한 후 다음날 새벽부터 전방부대를 향하여 다시 행군이 계속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³⁷⁾

36)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p. 22.

37) Historical Rpt, Hq 1st Cal Div, Leyte to 25 Dec 1944(U), pp. 44~45(op. cit.,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p. 23)

따라서 미군은 이러한 교훈을 교리에 적용하여 현지인 노무인력의 운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었다. 1949년 9월에 작성된 美 陸軍敎範인 FM100-10에 의하면,³⁸⁾ ‘노무지원단은 근무부대, 민간인과 포로, 전투단 또는 기타 조합으로 편성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가용한 민간인과 포로노동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지인 노무인력의 운용에 관한 일반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었으며, 다만 FM100-10에는 ‘작전지역내 지휘관의 정책에 따른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전쟁 직후 미군이 참전하게 되었을 때 민간인 운용형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였다. 즉, 신속한 부두하역을 위해 민간인과 직접 및 간접계약 고용을 통해 운용한 경우, 전방부대로의 보급추진을 위해 국군으로부터 인력을 제공받아 운용한 경우, 그리고 민간인 차량부대를 편성하여 각 부대의 보급을 추진한 경우 등 다양하였으며, 당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노무자의 효과적인 운용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었다.

군이 노무자와 직접 계약하여 운용하는 直接雇用勞務의 경우, 노무자들이 필요한 지역내의 부대노무장교에 의해 직접 고용, 운용, 해고되었으며, 부대노무장교가 전문, 숙련, 준숙련, 비숙련 등으로 분류하여 직종과 임금을 결정하였다. 그의 임무는 노무자와 기술자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운용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다양한 분야, 즉 행정이나 숙련, 기술적인 임무에 직고

38) U. S. Army, FM100-10, 1949. 7.

용노무자를 활용함으로써 유엔 병력을 전투나 관리임무에 전용할 수 있게 하였다. 직고용노무자의 운용효율에 대한 평가는 미군 기술자들의 기준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되었다.

노무자 중 훈련을 거친 기술자와 운전기사의 효율은 미군 기술자의 약 50~60%이며, 목공은 80%, 선로원, 통신가설공은 100%, 철공은 70%라고 각각 평가되었다.³⁹⁾ 한편 契約雇用勞務와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고 논의되었다.⁴⁰⁾ 장점으로는 먼저 선택적인 고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또 감독으로 인한 안전성이 높으며, 현지에는 전문적인 기술인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준숙련, 비숙련 인력은 광범하게 존재한다는 점 등이다. 단점으로는 언어장벽 문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되었다. 그 밖에 군의 감독이 필요하며 주의부족과 절도로 인한 보급품과 장비를 손실할

39) Rpt, ORO-R-4(FEC) ;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pp. 35~37. 이러한 평가는 미군의 기준에서 제시된 것이므로 실제 효율은 그보다 훨씬 높았을 것이라 추측된다.

40) 유엔군 고용 직급, 직종별 구분은 아래표와 같다.

전 문 직	숙 련	준 숙 련	비 숙 련
건축가	감독	기술장	노동자
기술자	조서관	시 간 계	수 위
의사	제 도 연 관	중 장비 기 사	급 사
과 학 자	번 역 목 수	노 동 자	
예 술 가	속 기 전 기 공	소 방 원	
	미 장 통 역 공	난 로 공	
	십 장 타 자 수	운 전 기 사	
	회 계 무 전 수	사 무 원	
	요 리 사 간 호 원	경 비	
	행 정 보 조 주 방		

참고자료 :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p. 36.

위험성이 있으며, 지휘관이 한국정부의 협조에 의지해야 하는 점, 그리고 사고에 대한 책임문제, 노무인력의 기술 저급, 한국민을 열등시하는 미군들의 태도, 노무자들의 빈번한 이탈, 임금문제 등의 요구에 대한 행정적인 통제의 어려움 등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군에게는 직고용노무가 효과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었으므로 계약노무보다는 선호되었다.⁴¹⁾

반면, 契約勞務의 경우는 한국인 계약자가 노무자를 고용하여 군조달장교와 협상한 계약을 이행하는 형태이다. 부대조달장교는 특정한 시간에 군을 위한 근무를 이행하도록 계약자들에 입찰을 하며, 이때 계약절차에 따라 가장 낮은 입찰자가 계약하게 되며, 그후 노무자의 조달과 행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었다.⁴²⁾

계약노무의 노무자는 거의 대다수가 부두하역, 기중기 기술자, 선원, 검사원 등이며, 그 밖에 도로보수, 병참건설, 선로작업과 유지, 인력조달, 낚시 수집, 텅스텐 채광 등의 형태도 있었다. 계약노무자들은 대체로 효율면에서 직고용노무자와 비슷하거나 못하였다. 군이 직접 감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효율이 떨어졌으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成果制契約(톤당 계약) 형태가 효과적이라 평가되기도 하였다.⁴³⁾

계약노무의 장점은 많은 미군 병력을 전투나 기타 중요한 다른 업무로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병력을 노무자 조달

41) Ibid ; 1950년 7월 말경 釜山軍需司令部에 의해 약 8,000명의 直雇用勞務者가 고용되었으며, 그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였다. 1951년 12월경은 最高 수치인 90,499명의 직고용노무자가 고용되었다. Ibid. p. 31.

42) Indigenous Labor in Korea, pp. 26~27.

43)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p. 38.

과 감독 임무로부터 해제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결점으로는 계약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시간제 계약은 노무자의 업무수행시간에 따라 지불되는 형태이지만, 노무자를 집중적으로 운용하여 단시간에 종료해야 할 특수한 업무에는 부적합하였다. 업무성장에 따라 지불되는 성과제 계약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업무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결함이 있었다. 한편 업무종료에 따라 지불되는 한시적 계약은 업무별로 계약이 이루어지지만 항상 정해진 업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⁴⁴⁾

나. 勞務者의 支援活動

(1) 埠頭荷役 活動

美地上軍이 참전한 이후 釜山 港口에는 밤낮으로 수천 톤의 보급품이 선박에서 하역되었고 이용 가능한 모든 수송수단이 투입되었다. 개전 초 유엔군사령부는 병사 1인당 1톤 기준으로 보급품이 日本에서 釜山으로 수송되었으며, 제8군은 예비보급품을 최소한 45일분을 유지하고 점차 120일분으로 증가시키도록 계획하였다.⁴⁵⁾ 따라서 7월 한 달 동안 부산항에는 230척이 입항하고

44) Ibid., p. 41. 限時的 契約은 계약자나 노무자의 입장에서서는 업무가 종료된 후 다음 업무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결점이 있었으며, 군의 입장에서는 노무자들이 계약업무가 끝난 후 상당수가 민간인회사와 계약을 맺게 되므로 숙련노무자의 상실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45) HQS USAFFE & Eight Army(Rear),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San Francisco, 1954), Historical Manuscript File, call No. 8-5, Vol. 1, ch. 2, pp. 5~15.

214척이 출항하여 총 309,314톤의 보급품과 장비가 하역되었다.⁴⁶⁾

이러한 보급품은 항구에서 보급지점까지 트럭과 열차를 이용하여 수송되고 있었으나, 당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보급수단으로서는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더구나 탄약과 식량, 피복, 의약품 등이 절실히 필요한 전선의 많은 지역은 지형상 차량이 도달될 수 없었다. 결국 지형이 험한 곳은 인력으로 운반해야만 하였고 때문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는 전쟁초기의 혼란으로 정부조직의 체제를 회복하는데 일정기간 시일이 요구된 상황이었으므로 사회부 산하 노동국은 각 지방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유엔군에 소요되는 노무자 조달문제는 유엔군 자체에 의해 다루어지게 되었다. 전쟁 초에 미 제8군의 노무정책은 民事支援課에서 취급하였고, 釜山軍需司令部는 1950년 8월 現地人 勞務課를 신설하여 인사참모가 관장하였으며, 얼마 후 민사참모에게 이양되었다.⁴⁷⁾

그러나 부산항에서의 보급품 추진문제는 7월 초 시작부터가 난관이었으며 부산의 제8군 병참부에 근무지원 병력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다.⁴⁸⁾ 따라서 인력은 한국 민간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노무자 운용은 미군부대가 한국에 도착할 때부터 부두에서 장비와 보급품을 하역하는 업무에 동원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부두에는 분류되지도 않은 화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방어선이 洛東江線까지 계속 밀리고 있을 무렵인 7월 말 유엔

46)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60.

47)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pp. 13~14.

48) 美陸軍 軍史監室, 『韓國에서의 戰鬪支援』, 崔昇平(譯), 兵學社, 1978. p. 434.

군은 비교적 규모가 큰 韓國運送會社와 계약하여 부산항의 수송선에서 하역되는 모든 보급품을 하역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⁴⁹⁾

유엔군의 주된 관심 중의 하나는 부산항의 4개의 주요 부두에서 작전에 절실히 필요한 장비와 보급품을 신속히 하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第2軍需司令官 가빈(Garvin) 준장은 운용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8월에 들어 한국수송회사를 대체할 다른 계약자를 원하였지만, 전방으로 보급품을 증가시켜야 하는 위급한 상황으로 인해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2군수사는 大同輸送會社와 제3부두의 하역수송을 계약하였지만 나머지 전부는 다시 한국수송회사와 재계약을 맺었다.⁵⁰⁾

이 무렵 유엔군에 고용된 민간인 노무자들은 부두하역, 화물점검 등의 임무와 공항, 도로, 철로의 건설과 유지 임무, 그리고 군 보급소에서 보급품의 추진임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었다.⁵¹⁾ 그러나 50년도 한국 항만에서 운용된 노무유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국수송회사와의 계약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엔군에 의해 운용된 노무계약은 크게 時間制와 成果制 두 가지로 분류되었다. 시간제 계약으로서는 한국수송회사와의 계약이 대표적이었으며, 모든 노무자들은 일괄적으로 일당으로 지급받았다. 한국수송회사 노무자들의 임금은 업무량과 무관하게 시간제에 따라 1일 1인당 800원(44센트), 야근시 1인당 1,200원(67센트)이었다.⁵²⁾

49) Offshore Procurement in Korea(MHD-26), p. 77.

50) Ibid., p. 79.

51) Monograph, Logistical Problems and their Solution, Hq Eighth Army(S).

52) Offshore Procurement in Korea(MHD-26), p. 79.

유엔군이 시간제를 채택한 이유는 가빈 장군이 각 기지에서 적당한 노무자들을 통제하여 미군이 거의 독점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釜山에는 主港과 外港, 보급기지, 병참기지, 기술기지, 화약기지에 그와 비슷한 노무 기술자들이 필요하였다.⁵³⁾

두번째 계약형태는 성과제 계약형태(업무종료 또는 톤당 계약)로서 전쟁 초부터 논의되었지만 일반적인 형태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군수송단은 보급품의 하역과 부두, 기지를 정리하기 위해 가끔 이러한 형태를 운용하였다. 군은 계약자에게 업무를 수행한 업무량만큼 임금을 지불하였다. 대체로 하역작업은 수송선으로부터 부두까지 1인당 하루 평균 7톤의 화물을 하역할 수 있었다.

기간별 계약 노무자 운용상황⁵⁴⁾

연	월	제2군수사령부	제 8 군
1950.	10	30,000(명)	
	11	25,000	
	12	25,000	
1951.	1	25,000	
	2	35,000	
	3	35,000	
	9		37,841

한국 통화가치 변동

기	간	가	치
1950. 7.	~ 1950. 9. 30	달러당	1,800원
1950. 10. 1	~ 1950. 11. 5		2,500원
1950. 11. 6	~ 1951. 3.		4,000원
1951. 3. 10	~ 1953. 2. 16		6,000원

참고자료 :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p. 34.

53) *Offshore Procurement in Korea*(MHD-26), pp. 79~80.

54)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p. 39.

따라서 성과제의 경우, 한 사람이 하루에 14톤을 하역하면 두 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노무자의 숫자나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수행한 업무량에 역점이 두어진 것이었다.⁵⁵⁾ 계약자가 최소한의 시간과 인력으로 하역할 수 있다면, 계약자는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으며 또한 노무자들도 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에 같은 인원으로 다른 조직의 평균량에 미치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었다. 유엔군은 仁川에서 1950년 11월 성과제 계약을 적용하였으며 1951년 2월 群山에서도 실시하였으나 일반적인 계약형태는 아니었다.⁵⁶⁾

결론적으로, 유엔군에 의해 운용된 두 가지 계약형태 중 成果制契約은 군보급품 하역시 군과 계약자, 노무자 모두에게 더욱 유리한 것이었으나, 주의를 요하는 업무나 또는 위험이 따르는 전방부대 보급추진 등과 같은 업무에서는 활용될 수 없다는 결함이 있었으므로 그런 경우는 時間制契約이 널리 활용되었다.

(2) 前方地域 補給品 運搬

1) 民間人運搬團 組織 以前의 勞務支援

유엔군은 해상과 공중수송을 통해 부산에 도착한 보급품과 장비들을 다시 트럭, 철도, 해상, 공중수송을 통해 각 사단 보급지역까지 수송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전선부대로까지의 수송은 험준한 지형의 장애로 인하여 큰 난관을 겪고 있었다. 통상 전투병력에 대한 보급추진도 군무부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쟁 초 유엔군은 군무부대의 부재와 지형의 험준

55) Offshore Procurement in Korea(MHD-26), pp. 80~81.

56) Ibid., p. 81.

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무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보급추진문제가 신중히 검토되었으며 그 중 현지 민간인 노무자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러한 계획을 발전시킨 세부안 중에는 민간인 운용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부대 요원이 민간인 노무인력을 조직하여 운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것은 곧 1951년 3월 民間人運搬團(CTC)의 조직으로 현실화되었다.⁵⁷⁾

그러면 먼저 민간인운반단이 창설되기 이전 한국정부와 국군의 노무자 지원과 유엔군의 노무운용 상황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초기 노무지원 상황은 체계적인 자료가 없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으나 단편적인 자료를 통하여 그 대강은 파악할 수 있다.

최초 미지상군이 참전했을 당시 유엔군은 가용 수송부대가 태부족하였으므로 임시방편으로 한국 민간인 차량들을 활용하였으며, 한국경찰을 통하여 동원한 민간인 운전기사에 의해 운용되었다. 일부 민간인은 제8군 수송장교의 통제하에 미군차량을 운전하도록 훈련받기도 하였다. 그 결과 1950년 7월, 3개의 民間人 輸送車輛中隊가 조직되었으며, 이들은 釜山地域에서 하역된 보급품과 장비를 사단 보급지역까지 차량으로 수송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⁵⁸⁾

한편 유엔군 방어부대에 보급을 추진하기 위해 운용된 최초의 민간인은 直接雇用勞務 형태였다. 미군에 의해 광범위하게 운용된 直雇用勞務者⁵⁹⁾는 전쟁이 개시된 한 달 안에 8천 명의 민간인이

57) Logistical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58)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pp. 11~12.

59) *Indigenous Labor in Korea*, p. 37.

釜山兵站司令部에 의해 고용되었으며, 또한 忠南 지역에서 미 제8군의 요청으로 국군이 노무자 1만 명을 편성하여 지원하기도 하였다.⁶⁰⁾

上記 釜山과 忠南 지역에서의 노무지원은 엄격한 의미에서 임시방편에 따른 비합법적인 조치였지만, 7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의 非常大統領令(1950. 7. 26)이 공포된 후부터는 합법적으로 전시에 필요한 민간인 인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군은 국군과의 협조를 통하여 전선까지 보급품을 운반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민간인 운반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무렵부터 거의 모든 비숙련 업무에도 민간인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1950년 8월 동안에는 미군 4개 보병사단에 사단당 평균 약 500명의 노무자를 지원받아 부대보급을 추진하였으며, 그 숫자는 점차 증가하였다. 따라서 국군이 미군부대에 노무자를 지원하는 제도는 이처럼 대통령령에 의거 육군본부가 제8군사령부와 합의함으로써 성립되었으며, 그 목적은 유엔군 각 부대에 각종 勞務와 勤務를 지원하는 것이었다.⁶¹⁾

2) 民間人運搬團(CTC)⁶²⁾의 組織과 活動

第8軍 民間人支援課는 최초로 전방지역에서 운용할 노무자를

60)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p. 24, p. 31.

61) 『國防史』第2卷, p. 305, p. 354에서는 “이들은 ‘徵發에 관한 特別措置令’(1950. 7. 26)에 근거하여 動員되었고, 이들의 運營費는 美 第8軍과 協議하여 유엔군 駐屯費에서 支出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62) CTC(Civil Transportation Corps)는 ‘民間人輸送團’이라고 호칭되고 있으나(金炳坤, 앞의 論文, p. 229), 그 업무와 기능으로 보아 ‘民間人運搬團’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생각되며, 이것은 또 50년 7월에 창설된 民間人輸送車輛中隊(Indigenous Truck Companies)와는 구별되는 조직이다.

조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지원과는 노무인력이 필요한 각 부대로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등록된 노무자 가운데 남아 있는 인력을 조사하여 그 지역 내의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형식으로 조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노무자들이 전방지역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이탈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므로 비효율적이라 지적되었으며, 즉시 새로운 조달체계가 검토되었다. 따라서 그러한 이탈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무자들을 중대단위로 편성하여 국군장교나 헌병의 통제하에 전방지역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⁶³⁾

한편 유엔군은 노무자의 규모가 증가하자 민간인 인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도 수송장교의 통제하에 운반중대로 조직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무자들은 民間人運搬團이라는 準軍事組織으로 편제되어 유엔군의 보급추진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것은 전술한 民間人車輛中隊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주로 이들의 임무는 지계(속칭 지계부대, A체계)를 지고 험준하고 가파른 산악지형에 위치한 최전선까지 보급품을 운반하는 것이었다. 민간인운반단은 1951년 3월까지 각 240명을 보유한 82개 중대로 편성되었으며 총인원 19,680명의 규모가 되었다.⁶⁴⁾ 이들은 大邱 외곽에 설치된 본부에서 간단한 훈련을 받은 후 3월 말까지 65개 중대 총 15,600명이 전방으로 투입되었다.⁶⁵⁾

민간인운반단 노무자들은 韓國 通貨로 국군 임금수준을 고려하

63)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p. 17.

64) Ibid.

65) Command Report, Hq Eight Army, Aug 51(S).

여 지불받았다. 이들은 민간인 조직이었기 때문에 의류 및 장비 등은 民間人救護基金으로부터 공급되었다. 제8군 병참장교가 이들 노무자들에게 유니폼, 신발, 취사도구, 담요, 지게, 기타 장비를 구입하여 지급하였다.⁶⁶⁾

이들에 대한 보급지원은 민간인구호품 가용품목으로도 조달될 수 있었지만, 통상의 보급체계는 국군 보급지원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또한 전방지역에서의 그들에 대한 임원이나 의료 지원도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마찬가지로 국군에 책임이 있었다.⁶⁷⁾

대략 각 전선에서는 차량으로 보급품을 수송할 수 있는 지점과 전방 전투중대와의 거리는 약 1.5~7.5km에 이르는 산악지형이 있었다. 병참선에서의 이러한 간격은 거의 전적으로 민간인운반단 노무자들의 운반인력으로 채워졌다. 이들은 비전투요원으로서 운반을 담당하지 않을 때에는 작전상 필요한 기타 업무인 축성, 도로와 교량의 보수, 그 밖의 유사한 임무에 동원되어 전투부대를 직접 지원하는 데 기여하였다.

미군과 비교하여 운반단 노무자는 근무지원임무에 대단히 효율적이었다. 지게를 통해 운반하는 보급품의 양은 거리나 지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전 전선을 통해 한 명의 노무자가 평균 시간당 1.5킬로미터 기준으로 3.5~4kg의 보급품을 운반할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⁶⁸⁾ 험준하고 비탈진 지형에 익숙하지 못한 미군은 산

66)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p. 17.

67) *Logistical Problems and their Solution*, Hq Eighth Army(S).

68) *Ibid.*

악지형으로 보급품을 운반하는 것은 지계를 사용하는 한국인보다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다. 民間人運搬團 運營의 意義와 限界

전술한 바와 같이 지계부대 또는 A체계군이라는 별명의 민간인운반단의 조직은 전쟁 동안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들은 전근대적인 지계를 운반수단으로 하여 가파르고 험한 지형을 넘고 적의 화력을 극복해 가며 절실히 필요한 탄약과 장비, 식량 등을 유엔군 병력에 수송해 주었으며, 같은 방식으로 그들은 전사자와 부상자를 운송하였다.⁶⁹⁾

따라서 민간인운반단 운용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비록 민간인이긴 하지만 전투근무지원의 임무를 담당함으로써 유엔군이 직면한 병력부족 상황을 극복하는 데 일조해 주었으며, 또 작전수행시 고지에 위치한 병력에 보급과 장비를 적시에 제공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운용상 한계점으로 몇 가지가 지적되었다. 즉 통역관의 부족으로 인한 노무자와 유엔군 사이에 언어장벽문제가 있었으며,⁷⁰⁾ 또 노무자들의 빈번한 무단이탈 등으로 인한 통제의 어려움과 보급품의 도난과 손상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고, 이 밖에 보급속도의 둔화, 노무인원 개편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노무운용규정에 상치되는 문제가

69)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 388에서도 ‘민간인을 운용하여 산악지대에서 지계로 보급품을 운반하도록 한 것은 기타방법을 이용하느 것보다도 훨씬 경제적이며 능률적이기 때문이다.’고 평가하고 있다.

70) 第103師團 李松晩 少尉 證言, 民族의 證言 第5卷.

있다는 것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⁷¹⁾

이 밖에 노무자의 관리상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으로 민간 인운반단을 위한 보급지원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식량은 공급되었지만 피복과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인운반단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1951년 7월 韓國勞務團이 편성될 때까지 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군사훈련의 부족과 업무와 관련된 위험 등 문제와 함께 매우 높은 이탈률을 야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점차 개선되어 갔으며 편성된 지 불과 몇 달 후 民間人運搬團 노무자는 상당한 규모로 증가되고 있었다.

5. 結 語

韓國戰爭時 勞務者の 역할은 무엇보다 전투근무지원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군의 전투병력이 행정이나 그 밖의 근무지원에 투입되지 않고 전투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데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노무자들은 국군과 유엔군이 수행해야 할 다양한 행정이나 기술적인 임무의 상당부분을 분담하였으며, 또한 최전선에서 전투병력이 담당해야 할 상당한 부분의 임무를 맡아 수행하여 국군과 유엔군의 병력부족 상황을 최대한 완화하였다는 점도 역할면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한국전쟁 기간 동안의 노무자 문제를 보다 분명히 평가

71)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p. 19.

하기 위해서는 당시 국군과 유엔군이 전투병력의 부족으로 민간인 노무인력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었다는 사실과 또한 민간인 노무자를 운용함으로써 대단히 많은 병력을 절감할 수 있었던 상황을 이해해야만 한다. 실제 당시 참전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노무자의 운용으로 병력면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쟁을 지원한 모든 민간인 노무자는 동원시기와 역할, 동원형태 등에 따라서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먼저 노무 역할에 따라 구분하면 첫째, 인민군 남침 이후 국군의 지연작전시각 부대별로 모집동원하여 운용한 노무자, 둘째, 유엔군의 참전 이후 塹頭荷役に 종사한 노무자, 셋째, 항구에서 하역된 보급품을 전방까지 추진하기 위해 조직, 동원된 民間人輸送團의 노무자 등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그리고 동원형태에 따라서 구분하면 첫째, 국군에 동원된, 흔히 保國隊라고 일컬어지는 노무자, 둘째, 유엔군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된 契約勞務者, 셋째, 역시 유엔군의 지원을 위해 동원된 直雇用勞務者, 넷째, 한국정부가 조직하여 주로 유엔군과 국군을 지원한 준군사적 조직체인 韓國勞務團 노무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유엔군 지휘관들은 대부분의 경우 직고용, 계약고용 또는 한국 노무단 인력을 운용하기 위해 정부와 국군의 협조를 받았으며, 이러한 한국인 노무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노동력의 지원없이는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韓國的 安保環境下的 戰爭指導 考察[※]

－ 새로운 安保環境과 戰爭指導 －

李 基 鐸

(延世大 教授)

1. 安全保障의 새로운 環境과 展開
2. 戰爭指導와 새로운 安保環境의 諸條件
3. 새로운 軍事環境과 戰爭指導의 論議

1. 安全保障의 새로운 環境과 展開

韓半島의 安保環境이 대내 및 대외적으로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변화는 대내적으로는 ‘金日成의 死亡’이라는 정치 현상이며, 대외적으로는 ‘蘇聯의 崩壞’ 내지는 ‘消滅’이라는 국제정치 현상에서 기인한다.

대외적으로는 ‘소련의 붕괴’와 ‘국제공산당’의 완벽한 소멸과 동시에 한반도 대내적으로는 ‘김일성의 사망’으로 북한의 정치체제

※ 본고는 國防軍史研究所 주관으로 1994. 9. 28에 실시한 〈歷史的 敎訓을 통한 韓國의 戰爭指導 方案〉主題 학술회의에서 發表된 내용임.

에서 金日成이 50년 구축하여 온 단일 정치체제인 ‘唯一體制’에도 깊은 균열이 가고 있으며 갈 수밖에 없는 한반도 안보환경의 대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의 한국정치와 군사를 결정 한 주요한 요인이 소련의 세계적인 조직이었던 ‘국제공산당’과 한국전쟁을 개시하고 지휘한 ‘金日成體制’였기 때문이다.

단계적인 외교협상을 거칠 것이지만 1947년 平壤에 美軍事代表部가 있었고 이것이 철수한 이래 처음으로 美國의 공식적인 대표가 平壤에 입국하였다. 平壤에서 美國과 北韓의 정치협상, 더욱이 美國의 平壤 대표부 설치를 위한 협상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한반도 군사환경에서 韓國戰爭의 ‘戰後狀況(Apres-Guerre)’으로부터 ‘戰前狀況(Avant-Guerre)’으로 돌입하는 전환점이란 것을 부인할 수 없다. 美國과 北韓 간의 평양에서 ‘후전체제’라는 상황에서서의 ‘군사적 접촉’을 떠나서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前段階인 평양 ‘美國代表部’의 설치라는 협상의제를 놓고 ‘정치접촉’을 할 정도로 진행되는 수준과 의미에서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韓國의 安全保障政策의 핵심은 ‘朝鮮勞動黨’ 규약 서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조선’정책, 즉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北半部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¹⁾는 목적에 굴복하지 않고 대항하는 데 안전보장정책의 목적이 있다. 1945년 이래 ‘하나의 조선’정책을 기초로 하여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의한 ‘군사행동’과 ‘혁명공작’으로부터 우리의 정치적, 사회적 가치, 즉 정치체제와 사회체제를 지킨다는

1) 통일원, 『북한개요』(서울: 통일원, 1992), p. 543.

것이 안전보장정책의 목적인 것이다. 국가의 안전보장정책은 그 국가의 정치체제 및 사회체제라는 ‘價值’를 지키며 이를 유지한다는 것이며, 그 목적과 수단이 곧 군사정책과 대외정책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一人體制’로 구축하여 온 북한체제의 기본정책이었으며 북한체제의 국가 논리였던 ‘하나의 조선’정책을 기초로 하여 권력을 조직하여 온 김일성의 사망은 명백히 한반도의 안전보장 환경에 본질적인 전환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일성체제와 비교하여 쉽게 예측되었던 ‘金正日體制’의 김일성체제 ‘연속성’은 ‘김일성의 기치’ 이외에 깃발이 없으므로 ‘1995년 통일의 해’라는 김일성이 이미 설정해 놓았던 궤도로 가고 있다.²⁾ 그러나 동시에 권력적인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現時點이다.

또 하나 우리의 안전보장정책의 핵심적인 支柱는 ‘冷戰體制’라는 안보환경에서 기인하였던 대외적인 요인에서 ‘소련의 붕괴’는 이 역시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본질적으로 변화를 초래하였다. 한국전쟁의 근원적인 기원이었던 소련의 소멸은 한국전쟁으로부터 오늘의 ‘休戰體制’에 이르는 한반도의 안전보장체제에 새로운 전망을 낳게 하고 있는 것도 명백한 것이다.³⁾

냉전체제하에서의 한반도는 美·蘇 간의 대립이라는 기본구도가 구축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韓美軍事同盟(Alliance)’이라는 군사동맹을 매개로 우리의 안전보장정책의 기반을 ‘서방(The Western)’에 기초하여 온 것이었다. 李承晩 이래의 한국의 전쟁지도라는 것

2) 김정일은 이미 ‘1995년 통일의 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있다. 다만 비 공식으로 김일성의 사망으로 1~2년 지연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 있다.

3) 최근 러시아 정부가 한국 정부에 인도한 「한국전쟁에 관한 문서」(1949년~1953년)에는 한국전쟁의 원인에 관한 거의 확고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도 실질적으로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안전보장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미국과의 ‘군사동맹(Alliance)’을 그 根幹으로 하여 온 것이었다.

‘김일성의 사망’과 ‘소련의 붕괴’라는 두 요인은 확실히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根底에서부터 뒤흔들어 놓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본질적인 변화를 전망케 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안보환경과 조건은 불가피하게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우리의 안전보장정책을 국가론적인 관점, 즉 새로운 한반도의 안보환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전쟁지도’라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고찰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러한 한반도의 안보환경의 변화는 巨視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1945년의 전환’의 시기와 比肩할 수 있는 전환점에 이르고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2. 戰爭指導와 새로운 安保環境의 諸條件

전쟁지도라는 문제를 전제하여 한반도를 圍繞한 안전보장상의 조건을 검토할 때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문제점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과 조건들이 고찰을 위해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가. 韓半島의 ‘現狀(Status Quo)’과 變更

우선적으로 한반도의 ‘현상(Status Quo)’이 ‘維持’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남북한 관계의 내용이나 그나마의

유지되었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첫째로, 美·蘇가 군사적 대립을 기초로 하는 대립체제가 그 기초였으며 둘째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간에 남북한이 ‘힘의 均衡’이라는 관점에서 묵시적으로 남북한 관계의 내용으로 하여 오던 ‘平和共存(Peaceful Coexistence)’⁴⁾이 앞으로도 가능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현상’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근거나 불가피성은 우리의 손을 벗어나 있는 북한체제의 내부적인 深層動因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현실적으로 북한체제의 모순과 딜레마가 앞으로 제기될 것이며 이것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간에 불가피하게 현상을 동요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북한체제가 심층동인이라는 관점에서 절대적인 딜레마를 낳게 하는 몇 가지 요인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1945년 이래 김일성의 권력은 ‘反美’ 혹은 ‘美帝國主義’ 打倒라는 정치사상을 기초로 하여 조직되어 왔다. 북한 대내의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조직도 ‘反美’를 目標로 하여 조직되어 왔다.⁵⁾

그러나 ‘고르바초프’ 현상 이래 미국이 새로운 세계질서(New World Order)를 주도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군사적인 엄격성을 갖고 나타난 것이 ‘이라크 전쟁’

4) 1972년 「7·4 공동성명서」의 실체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은 ‘평화공존’체제였다. ‘힘의 공존’, ‘평화공존’, ‘경쟁적 공존’, ‘협력적 공존’, 그리고 ‘공존의 해소’라는 통일의 과정이었다. 이에 대항하는 이론이 ‘수렴론(Convergence Theory)’ 혹은 ‘합작이론’이었다.

5) ‘조선노동당’은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기본적으로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 군대를 몰아내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슬로건에서 ‘미제의 각을 뜨자’라는 것이 흔히 볼 수 있는 구호다. 물론 국민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통일원, 『북한개요』(서울 : 통일원, 1992), p. 543 참조.

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소련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동조할 정도였다. 앞으로 북한은 미국의 보장없이 북한의 정치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아니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와 세계체제에 도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美帝 打倒나 反美를 목표로 조직하여 온 북한의 권력체제나 정치체제라는 것이 한반도의 ‘현상’을 변경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둘째, 북한은 특히 1954년 휴전 이래 경제정책을 ‘중공업 우선주의’로 전개하여 왔다. 물론 이는 ‘하나의 조선’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 군사에 대한 ‘전략적 압도’정책을 위해서였다. ‘중공업 우선주의’는 물론 ‘경공업’이나 ‘농업’을 거의 완벽하게 무시하는 경제정책이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세계질서는 자유로운 ‘시장경제(Market System)’체제가 주도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에도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급속하게 波及 내지 침투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북한의 지하적인 철저한 군수 우선의 ‘중공업 우선주의’라는 경제가 전환되어 어느 수준에라도 밖의 ‘시장경제’에 ‘적응’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북한이 대내경제를 어느 정도 ‘修正’하여 시장경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겠는가 하는 딜레마인 것이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예견된다.

셋째로, 북한의 군사체제의 딜레마이다. 냉전체제에서의 美·蘇間의 세계체제는 그 기반에 美·蘇間의 핵체제를 기초로 하고 있었다. 美·蘇間에는 ‘핵억지 체제’(Nuclear Deterrence)를 기초로 하여 핵의 상호 우월적인 강화를 통하여, 즉 ‘공포의 균형’을 통하여 세계체제가 유지되어 왔다. 레이건의 ‘우주방위계획(Strategic De-

fense Initiatives)’에 소련의 군사경제⁶⁾가 밀리면서 소련이 체제적인 몰락을 하였다. 새로운 세계적인 핵 질서는 美·蘇間 혹은 美·러間的 합의로 냉전시의 ‘핵 강화’ 대신 이제 핵을 감축시키면서 세계질서를 확립한다는 ‘핵확산금지(Nuclear Non-Proliferation)’ 체제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美·蘇間에 핵탄두나 미사일을 상호 감시하에 파괴하는 것은 몇년 전까지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NPT체제가 세계질서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 시기에 이러한 세계질서에 도전이나 대항이라도 하듯 북한의 군사체제에서 핵군사정책으로 ‘4大 軍事路線’을 완성하려 한 것이다. 새로운 세계체제인 핵감축 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딜레마인 것이다. 이미 ‘유엔 핵실험전면금지조약 위원회(CTBT)’는 모든 국가의 핵실험을 전면 금지토록 하기 위한 국제조약의 草案에 합의를 볼 정도인 것이다.⁷⁾ 물론 ‘金日成 이후’ 및 金正日體制에서 북한이 핵군사정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예측키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그러나 북한이 핵군사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는 경우라는 것은 북한의 전면적인 체제적 ‘修正’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예상키 어려운 일이 된다.⁸⁾

넷째로, 사회체제적인 딜레마이다. 실체에 있어서 東西間的 체제적인 대립과 그 내용은 이념적인 대립이 본질적인 것이었으나

6) 고르바초프가 권력을 장악한 후 레이건의 ‘우주방위계획(Strategic Defense Initiatives)’에 직면하였다. 소련의 고르바초프로서는 미국과의 ‘우주방위의 Gap’(케네디의 Missile Gap과 같이)을 상쇄하려면 재정적으로는 5~6,000억 달러, 시간적으로도 4~5년 이상이 걸린다는 딜레마였다.

7) 『중앙일보』, 1994년 9월 1일자 참조.

8) 북한이 현재 협상 중에 있는 미국과 북한 간의 핵협상에서 ‘과거 문제’(핵탄두 1~2개와 그 이상의 준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북한 핵정책 결정의 핵심이라고 본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폐쇄체제’와 ‘개방체제’ 간의 싸움에서 ‘개방체제’가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사회체제는 거의 완벽하게 ‘개방체제’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의 사회적인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북한은 ‘폐쇄체제’를 기초로 하는 폐쇄사회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폐쇄’ 위에 사회, 정치심리, 기술, 권력을 올려 놓고 구축하여 온 체제인 것이다. 북한이 북한사회를 조금이라도 ‘개방’할 경우 북한의 정치체제에 깊은 충격을 주거나 나아가서는 북한의 사회, 정치체제를 근저에서부터 동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로는 국제체제 문제이다. 북한의 국제적 지위(International Status)는 과거에 있어서는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Proletariat Internationalism)’에 기초하고 있었다. 즉 북한의 국제적 지위는 소련과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와의 ‘兄弟國’으로서의 ‘紐帶’ 속에 지위가 주어져 온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국제공산주의와 국제공산당의 源泉이었던 소련이 완벽하게 붕괴되고 변질되었으며 중국도 많은 변질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적인 지위를 상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핵협상에서 가장 큰 협상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 의한 북한의 새로운 국제적 지위(Status)의 ‘보장(Guarantee)’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인 것이다.⁹⁾

9) 미국과 북한 간의 ‘평양 회담’에서 ‘연락사무소 문제’는 곧 미국에 의한 사실상의 북한체제의 인정을 의미하며, 북한의 목적은 미국으로부터의 ‘국제적 보장’을 확보하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북한의 대내체제에서 기인하는 심층동인 혹은 딜레마는 앞으로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과연 북한의 체제를 ‘보장’한다 하여 북한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된다. ‘현상’이 ‘변경’되거나 ‘파괴’된다고 할 때에는 어떤 측면에서나 한반도가 분쟁화될 수 있는 ‘動因’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나. 脫冷戰 이후 紛爭形態와 地域紛爭의 性格

탈냉전 이후 세계분쟁의 영역에 속하였던 분쟁지역이 점차로 ‘지역분쟁’의 성격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 지구상의 분쟁의 성격이 점차로 세계분쟁이라는 ‘외향적’인 성격으로부터 ‘내향적’인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國際紛爭’으로부터 ‘地域紛爭’의 성격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앞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지도 문제를 논하려 할 때에 새로운 분쟁의 성격과 그 특징을 논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대표적인 형태가 ‘유고型’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美蘇次元의 분쟁지역이었던 지역이 점차로 ‘세계적 차원’으로부터 ‘지역적 차원’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은 한반도의 앞으로의 분쟁의 성격에도 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의 지역분쟁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를 장차의 한반도 분쟁의 성격과 관련시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본다.

첫째로 우선 ‘內戰型’의 분쟁 성격 문제의 제기이다. 순수하게 한 국가나 나라의 내부적인 성격에서 기인하는 분쟁 형태다. 분쟁

의 동기나 진행, 혹은 그 영향이 한 나라 내부로부터 기인하며 국한되는 지역분쟁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는 냉전시기에는 순수한 ‘내전’형의 지역분쟁은 드물었다. 대개가 역시 冷戰型의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성격으로부터 지역분쟁으로 내전화하거나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냉전에서 기인하였던 하부차원(Sub-system)의 지역분쟁 지역은 보다 ‘내전형’의 성격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둘째로는 ‘냉전형’이다. ‘냉전형’의 지역분쟁은 과거 냉전 시기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분쟁에 속한다. 동서 진영 혹은 美·蘇間の 양극현상에서 기인하였던 지역분쟁이며 동서 兩陣營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개입한 지역분쟁이다. 그러나 냉전이 해체된 지금에도 역시 냉전의 殘滓로서 하부차원에서 지역분쟁의 형태가 있는 것이다. 아마도 한반도가 그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셋째로는 ‘介入型’이라고 할 수 있다. 개입형이라 하는 것은 지역분쟁에 비대칭적으로 강대국에 의한 일방적인 개입을 통하여 지역분쟁이 진행되는 지역분쟁을 말한다. 이는 古典的인 의미에서 강대국에 의한 小國에 대한 개입의 지역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적인 대국이 일방적으로 그 지역국가에 비대칭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종의 ‘강대국 개입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로는 ‘體制 選擇型’을 위한 지역분쟁의 성격과 형태가 있다. 특히 소련의 몰락 이후에는 蘇聯邦을 구성하고 있었던 위성국들이 소련의 체제를 배제하면서 체제 선택형의 분쟁을 통하여 진행되는 지역분쟁을 말한다. ‘체제 선택형’과 냉전형 간의 차이는 ‘체

제 선택형’은 주로 한 나라 안에서 정치세력간의 냉전적인 이념의 차이로 분쟁이 야기되면서 지역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있어서 체제 선택형의 대표적인 지역분쟁은 1950년 같은 민족이 고의적으로 같은 민족을 군사적으로 공격한 한국전쟁이 ‘체제 선택형’의 지역분쟁으로서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는 ‘민족 대립형’의 지역분쟁이다. 이는 주로 種族的이며 민족적인 대립에서 기인하는 지역분쟁이다. 실제로 있어서 소연방의 해체 과정에서 多民族으로 구성되었던 舊소연방내의 많은 종족간에 진행되는 지역분쟁이다. 지금 이러한 분쟁은 연방의 해체와 함께 국가간의 지역분쟁으로 화하고 있는 것이다. 고전적인 지역분쟁의 경우가 된다.

여섯째로는 ‘민족 독립형’이다. 이는 식민지국가나 이에 준하는 準植民地國家들이 민족국가로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발발하는 지역분쟁을 말한다. 주로 식민지 독립운동에서 기인하는 분쟁을 말할 수 있다. 탈냉전 이후 특히 소연방에서 독립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또는 영토의 분할이나 분쟁으로부터 기인하면서 다시 민족독립운동으로 발전하는 지역분쟁을 말한다.

일곱째로는 ‘宗教 對立型’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종교 내에서 그들간에 혹은 다른 종교에 속하는 집단간에 분쟁을 야기시키는 형태인 것이다. 종교적인 대립, 종교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분쟁을 말한다. 종교적인 생활양식의 차이가 지역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를 말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하였던 냉전이 소멸하는 지금 逆으로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분쟁이 발발할 경우는

앞으로 지역분쟁의 큰 요인이 되리라 볼 수 있다. 이슬람내의 종교분쟁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종교 대립형은 필수적으로 지역적인 분쟁으로 발전한다.

여덟째로는 ‘霸權型’의 지역분쟁을 열거할 수 있다. 일정한 지역에 새로운 ‘힘의 空白’이 생길 경우 야기되는 국가간의 대립을 말한다. 또는 일정한 지역에서 한 세력이 그 지역의 패권을 추구하면서 야기되는 지역분쟁을 말한다. 이는 특히 세력의 再編成이 이루어지는 過渡期的이며 새로운 국제질서로 이행할 때에 흔히 야기될 수 있는 지역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만일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세력을 후퇴시킬 경우 반드시 이 지역의 패권적인 문제가 야기된다고 예측된다. 예측되는 일본과 핵국가인 중공 간의 관계나 일본이 요구하고 미국이 거절한 ‘太平洋 憲章(Atlantic Charter)’이나 ‘東京宣言’에서 보듯이 일본은 이미 미국이 남겨 놓을 ‘힘의 공백’을 목적으로 패권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¹⁰⁾

아홉째로는 ‘都市 게릴라型’의 지역분쟁이 있다. 최근의 내전형의 분쟁에서 특이한 것은 한 나라 안에서 일종의 도시 게릴라적인 분쟁의 樣式을 취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분쟁이 근대적인 도시에서 진행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게릴라형은 주로 農耕의인 무대에서 분쟁이 진행되었던 것과는 다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前線 없는 분쟁이 근대적인 도시에서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

10) ‘태평양헌장’의 제의, 『한국일보』, 1991년 10월 10일자 참조.

‘동경선언’에 대한 미·일간의 문제점 참조. 『세계일보』, 1991년 12월 16일자 참조.

다. ‘統一政局’과 未來의 韓半島 紛爭의 性格

‘통일정국’이라는 것은 장차 한반도의 통일 문제와 관련되는 정치, 사회, 외교, 군사, 민족심리와 관련되는 모든 요인을 포함하면서 전개될 한반도의 정치 장래 전체라고 定義할 수 있다. 이미 앞에서 논한 바 있는 한반도의 ‘현상’이 변경되고 있는가 아니면 변경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깊숙히 연계되는 것이다.

특히 ‘통일정국’이라는 현실적인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되는 정치적인 격동적 ‘전환기’가 한반도의 ‘현상’을 변경할 경우 이는 한반도의 분쟁이나 전쟁과 깊은 관련을 가지면서 전개될 素地가 크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북한은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면 핵 군사정책으로 한국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때로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핵 군사정책으로 ‘현상’을 유지하려 할 것이며, 또 하려 할 것이나 위에서 지적하고 논한 북한의 내재적, 체제적인 모순 때문에 ‘현상’의 유지는 앞으로 거의 불가능한 국면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된다.

(1) ‘체제 선택형’과 ‘냉전형’의 분쟁과 체제 보호

한반도에서의 지역분쟁의 성격은 앞으로 ‘체제 선택형’의 성격을 가장 뚜렷하게 띌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북한의 對南政策에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정책은 정치적이론에서부터 구체적인 1) 對南 軍事政策 2) 대남 공작정책 3) 대남 혁명정책 4) 김일성체제를 인계받는 ‘김정일체제’의 대내정책을

감안하고 다시 나아가서 5) 북한의 핵정책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정책의 모든 초점은 ‘體制強化’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제강화’ 정책은 반드시 남한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이나 대남공작이라는 측면에서 반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체제강화’나 誇示政策은 반드시 남한에 대한 반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김일성 이후에 있어서 북한의 대담한 對美 접근정책에서 보듯이 평양에서의 美·北會談의 진행은 한국의 체제의 일부분이었던 ‘한·미군사동맹(Alliance)’을 약화시키면서 동시에 미국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체제 선택형의 분쟁의 前兆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에서의 지역분쟁의 성격은 일차적으로는 체제 선택형의 지역분쟁이라는 성격에서 분쟁이 기인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지역분쟁의 성격이 동아시아의 지역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당연히 남북한의 정치적 구조가 아직도 냉전의 잔재로서 상당한 기간 구조적으로 남을 것이라는 점에서 역시 그 성격은 ‘冷戰型’의 성격을 떨 수밖에 없다고 본다. 세계는 확실히 냉전체제가 거의 소멸하였으나 북한은 냉전적인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냉전형’의 분쟁을 북한이 취하고 있다는 정치적 근거는 북한이 말하는 ‘우리式 社會主義’라는 표현에 근거하는 것이다.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정치적 의도는 東유럽 사회주의국가와 소련 사회주의의 몰락을 경계하여 사용하는 말인 것이다.

또한 세계를 변화시킨 ‘고르바초프 현상’ 속에서 가장 특이하게 놀라운 현상의 하나는 북한이 공산국가로 ‘살아 남았다’는 현상이며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살아 남을 것이라는 확신에서이다. 북한은 지금 소련이나 동유럽의 사회주의와 차이를 두면서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말을 창출하였다. 북한은 소련 사회주의나 동유럽의 사회주의의 혼란과 몰락에도 불구하고 ‘自己式 사회주의’를 할 수 있다고 철저한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하는 국가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마도 불가피하게 ‘김정일체제’에서도 변함없는 ‘이데올로기의’인 정치적 원칙이 되리라 볼 수 있다.

또 하나 한반도에서의 지역분쟁의 가능성과 그 성격에서 문제되는 것은 특히 1985년 고르바초프 현상이 세계를 뒤덮고 세계질서가 변할 때로부터 오늘의 소련의 몰락에 이르기까지의 변화에서 북한은 군사적으로 ‘강화된 북한’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고르바초프 현상이 야기되는 동안 또 하나 특이한 현상은 구소련이 ‘새로운 사고(New Thinking)’라는 소련의 대외정책의 변화와 원칙에 불구하고 고르바초프의 보수적인 군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원조를 대대적으로 실천하였다는 점이다. 고르바초프의 소련은 북한의 군사력을 보다 근대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¹¹⁾ 이는 다른 사회주의권 내의 지역국가들, 즉 東瀾의 예에서 보듯이 국가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완전히 붕괴되거나 약화된 것에 비하여 북한의 군사적인 강화는 놀랄 만한 일이라고

11) 구소련은 1985년 말 소련 부외상 카피차와 김정일과의 단독회담 이후 고르바초프 정부는 북한에게 미그-23, 미그-25, 미그-29, T-72, Scud 미사일, SAM 미사일 등 과거에 없었던 북한에 대한 군사원조를 하였다. 오늘의 북한 인민군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문제는 북한의 國家戰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북한의 ‘核政策’ 문제다. 북한은 확실히 첫째, 대내적인 ‘체제유지’를 위해서나 둘째, 대외적인 ‘체제보호’를 위해서 국가전략상의 ‘核政策’을 추진하여 왔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정책은 단순히 북한 자체만의 핵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분쟁과 긴밀한 관련을 갖는 지역적인 ‘핵확산’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점에서 지역분쟁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이라는 관점에서는 만일 북한이 핵을 갖게 될 경우 대만, 파키스탄 그리고 중공의 핵무기 체계의 심화 나아가서 일본의 핵능력까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2) ‘개입형(Intervention)’의 한반도 분쟁의 가능성

앞으로의 한반도 분쟁에서 한반도 域內의 분쟁이 격화 내지는 확대될 경우 ‘개입형(Intervention)’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의 체제적인 붕괴과정에서나 남북한 관계에서 분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특히 중국의 ‘개입’ 가능성은 크다고 전망된다. 이미 ‘김일성 사망’ 과정에서 북한이 대내적인 군사반란 혹은 소요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국군의 파견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²⁾ 중국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장래에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치명적인 이해(Vital Interest)가 걸릴 정도로 분

12) 김일성 사망 직후 북한 지도부는 대내의 반란이나 소요를 우려하여 중국군의 파병을 요청하였으며, 중국측은 한국전쟁 당시에는 ‘외침’이었기에 파병하였으며 김일성의 사망은 대내적인 문제로 파병할 수 없다는 점을 전하였다 한다.

쟁화할 때에는 군사적인 개입을 서슴지 않으리라 전망된다. 이는 이미 한국전쟁에서 증명된 것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개입형’의 분쟁 개입의 動因은 앞으로 한반도가 그 어떤 ‘힘의 공백’을 낳을 경우 상정할 수 있는 분쟁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의 ‘힘의 공백’을 낳게 될 수 있는 실질상의 심층동인은 ‘미국의 한반도 이탈’이라고 할 수 있다. 냉전시기에 있어서 일본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을 억제하여 온 것은 한미방위조약을 통한 한미군사동맹의 형성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이것이 일본의 對韓半島 직접개입을 억제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장차 한반도에서 힘의 공백을 만들기보다는 일본에게 그 어떤 역할을 인계하는 형식으로 후퇴(사실상의 미군의 철수)를 하는 경우 일본은 한반도를 ‘死活的 이익(Vital Interest)’ 지역으로 간주할 것이며, 한반도 분쟁시 일본은 개입의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본다. 또한 그러한 예측을 전제하는 것이 현실적인 관측이라고 보아진다.¹³⁾

물론 이러한 ‘개입형’은 곧 한반도를 위요하는 힘의 공백을 메꾸면서 동시에 이 지역에서의 ‘패권형’의 군사분쟁을 낳게 될 수 있음은 말할 필요 없다. ‘개입형’은 사실상 그 목적에 있어서는 이 지역에서의 패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패권형’의 군사분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3)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명백히 하는 것이 ‘오카자키’ 前大使이다. 조선일보와의 대담이나 일본에서의 시사논문에서도 꾸준히 다음 분쟁에는 일본이 불가피하게 미국과 함께 군사 개입을 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3) 북한의 정치변동과 한반도의 분쟁

한반도에서 북한의 정치변동이 ‘김정일 이후’라는 관점에서 야기될 경우, 즉 북한의 ‘정치변동’이 야기될 경우 이에서 기인하는 그 어떤 형태의 군사분쟁화가 진행될 경우를 전제할 수 있다. 북한의 정치변동은 앞으로 반드시 대내의 ‘軍部’가 개입되는 권력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의 정치변동의 기초적인 요인은 두 가지일 수 있다. 그 하나는 ‘노동당’이며 둘째가 ‘군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당은 전적으로 ‘族閥’체제로 형성되어 있다. 일단 유사시에는 족벌체제라는 약점으로 와해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에 있어서 가장 1) 조직적이며 2) 권력적이고 3) 지식적이며 4)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 권력 담당자는 군부밖에 없다고 본다.

물론 북한에는 동독과 같은 서구 문명의 역사적인 세례를 받아 본 일이 있는 ‘시민사회(Civic Society)’라는 것은 없다. 1945년 이전의 식민지로부터 1945년 이후에는 ‘스탈린주의’적인 억압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인간 본연의 ‘饑餓暴動’ 형식의 주민 반란은 간헐적으로 야기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나 북한 사회의 체제적인 성격으로 보아서 전면적인 봉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북한의 대내적인 정치변동이 야기될 경우에는 반드시 군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군부가 문제될 경우에는 반드시 무력의 동원을 통한 군사 분쟁적인 성격을 띠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는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본다. 예로 북한의 정치변동 과정에서 대내적인 무력이 동원될 때에 이는 반드시 전반

적인 휴전선에서의 군사적인 긴장을 낮게 될 것임은 말할 필요 없다. 휴전선상에서의 인민군의 動態는 다양한 성격을 띠 것이다. 휴전선이 동요될 때에 그 성격이 全面戰의 성격은 아닐 것이며 산발적이며 정치적 성격을 띠 때에 올 군사적 혼란은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인민군 중에는 한국측에 ‘협력’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며 반대로 ‘敵對的’ 성격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혼란스런 이유로 휴전선을 동요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을 것이다.

(4) ‘김정일 체제’와 군사분쟁과 대남정책

김정일은 이미 그 권력의 행사방식이 과거에 잘 나타나고 있다. 1983년 중에 연이어 있었던 KAL기 폭파사건이나 한국의 대통령을 포함하는 全閣僚의 살상을 목표로 한 폭파사건,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관문점의 ‘도끼殺害’와 같은 극단적인 테러행위를 직접 진두 지휘한 것이 金正日이었기 때문이다.¹⁴ 김정일은 이미 스스로 군사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거쳐 김일성 사망 후 군사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또한 ‘元帥(Generalissimo)’의 군사적인 지위에 올라서 군을 완전히 장악하여 왔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 직업적인 軍事訓練이나 經驗이 없는 金正日이 북한의 군사권을 장악하였다는 점은 지역분쟁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4) 1976년 관문점에서의 ‘도끼만행 사건’에 김정일이 깊이 관여하였다는 것이 최근 밝혀졌다. 1992년 4월 26일 평양방송에서 김정일의 군사자질과 지도력을 선전하는 프로에서 관문점 ‘도끼사건’에서 김정일의 ‘비범한 군사적 지략’으로 ‘묘한 수’를 썼다고 묘사한 것이다.

金日成 사망 이후 이미 ‘金正日 체제’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¹⁵⁾ 金日成으로부터 金正일에게로의 권력승계의 상징과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권력이양은 1) 대남군사정책이며 2) 대남공작정책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 간의 정치인격으로서 가장 큰 차이점은 김일성은 한국전쟁을 직접 지도한 경험이 있었던 인격이며 대조적으로 김정일은 전연 한국전쟁의 경험이 없는 정치인격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김일성은 한국전쟁에서 敗戰의 경험을 갖고 있는 지도자였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김정일은 현재까지 ‘큰 決定’을 한 경험이 없으며 주로 김일성 엄호하에서 ‘대남공작’정책에 주력하여 왔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그의 지휘하에서 밖으로 실험된 대남공작 혹은 군사작전의 형태가 ‘도끼만행사건’, ‘KAL기 폭파사건’, ‘랑군테러사건’ 등이 대표적이며 상징적인 반군사적인 대남정책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15) 김정일이 권력 표면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김정일 스스로가 주변에게 1) 이미 권력을 김일성 생시에 인계받은 것인데 2) 무슨 새삼스런 공식적인 권력승계의 법석인가 하는 말과 심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 새로운 軍事環境과 戰爭指導의 論議

가. ‘戰爭指導’라는 概念問題

우선 ‘전쟁지도’라는 용어에 대한 개략적인 정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실제상 ‘전쟁지도’라는 명확한 용어는 일본의 군사용어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西歐의 용어에서는 전쟁지도라는 명확한 용어는 없다. 그 이유는 ‘전쟁’을 ‘지도한다’는 말은 곧 국가의 군사적 영역에 속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도리어 종합적인 ‘통치력(Statecraft)’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쟁지도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두 가지 범주, 즉 狹義의 전쟁지도라는 의미와 廣義의 전쟁지도라는 말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일본의 군사용어에서 ‘전쟁지도’라고 할 때에는 ‘협약’의 의미에서 사용하였다. 극히 군사적인 성격의 의미로 이를 사용하였다고 본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전쟁지도는 전적으로 정치와 군사를 분리하여 ‘大本營’에서 장악하였기 때문이다. 예로 이 기구는 終戰處理를 하는 종전외교에서도 군부의 ‘大本營’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¹⁶⁾ 동시에 일본의 ‘대본영’이라는

16) 大江志, 『일본의 참모본부』(동경 : 중앙신서, 1990) 참조. 일본은 1936년 ‘국가총동원체제’를 수립하고 이어서 참모본부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면서 ‘第1部 2課’를 ‘戰爭指導課’로 편성하였으며 ‘戰爭指導課’의 업무를 전쟁지도 및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규정한 데서 알 수 있다. 만주사변을 획책한 ‘石原’대좌가 전쟁지도과장을 역임하였다.

1942년 1월 개전 직후의 새로운 편제에서는 ‘대본영’ 제20반장이 ‘전쟁지

방대한 군사편제는 실제에 있어서 ‘천황’의 직속하에 있었으며 정부와 분리되어 있었다는 의미에서 극히 군사적인 범위에 속하는 ‘전쟁지도’의 모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쟁지도’라는 용어는 특히 지금의 Civilian Control이라는 관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의할 수 없는 극히 상상하기 어려운 용어 정의라고 할 수 있다.¹⁷⁾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군의 統帥權은 당연히 민간인인 대통령이나 총리가 장악하는 것이 정치적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쟁지도’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군사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나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용어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지도’라는 말은 ‘광의’의 의미를 갖는 것과 ‘협의’의

도’의 책임자였다.(『일본의 참모부』 pp. 220~221 참조)

대본영 제20(전쟁지도)반장(참모차장 직속), 총무부장-서무과장, 교육과장, 제1부장-작전과장(작전반장, 병참반장, 항공반장), 편제동원과장(편제반장, 항공편제반장, 동원반장), 방위과장, 제2부장-구미과장(독일반장, 남방반장, 미영반장), 중국과장(중국반장), 러시아과장(러시아반장), 모략과장(모략반장), 제3부장-철도와장(철도반장), 선박과장(선박반장), 통신과장, 제4부장-전사과장, 전략전술과장, 육군대학교장(간사).

전후 일본의 군사용어사전 예로 『국방용어사전』(일본방위학회편 朝雲新聞社 1977년 간행) 등에는 아예 ‘전쟁지도’라는 항목이 빠져 있다. 협의의 전쟁지도라는 말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 17) Joseph G. Dawson III, ed., “Commanders in Chief : Presidential Leadership in Modern Wars” (University of Kansas Press, 1993), p. IX 참조. 현대적인 서구형의 ‘전쟁지도’라는 용어로서는 본 문헌에서 보듯이 전시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지도력에서 군사적인 지도력을 강조하면서 ‘군의 통수권’을 갖는 대통령으로서 정치 지도력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협의의 전쟁지도만이 아니라 전시외교, 전쟁의 종결 등 군사외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The President’s role as commander in chief during war”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미를 갖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전쟁지도’라는 의미를 기초로 하여 몇 가지로 구분하여 논하여 본다.

나. 戰爭指導의 問題點과 考察

한반도에 있어서 새로운 국제환경의 형성과 이에 따른 새로운 안보환경이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다. 새로운 국제환경과 안보환경은 한반도에 있어서 새로운 군사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탈냉전’이라는 용어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군사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는 용어인 것이다. 새로운 한국적인 안보환경과 군사환경에서 어떤 전쟁지도 이념과 체계가 형성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된다.

(1) 북한의 기본 전쟁능력과 전쟁지도

북한의 기본적인 전쟁지도와 관련되는 개념은 1) ‘단독 전투능력’ 즉 외부의 군사지원이나 군사원조 없이 한미연합 체제를 어떻게 격파하는가 하는 기본정책과 2) ‘혁명공작’이라는 노동당 규약에서 기인하는 ‘全朝鮮의 공산주의화’라는 광범위하고 공작의 ‘심화’와 ‘군사화’를 통한 남한사회의 顛覆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지도가 그 기본이라고 평가된다.

1) ‘단독전투능력’과 북한의 전쟁지도

‘단독전투능력’이란 전술적인 용어의 개념인 동시에 넓은 의미의 전쟁지도의 개념의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될 수 있다. 그 하나의 분석 수준은 국제적으로 中·蘇분쟁이 시작되는 1960년 초로부터 시작된다. 中·蘇 간의 ‘이념분쟁’과 ‘국경분쟁’으로부터 시작하

는 사회주의 국가간의 분쟁에서 북한의 군사적인 지위가 위협하게 되면서 나온 개념이다.¹⁸⁾ 또 하나의 분석 수준은 북한의 전쟁지도에서 한·미연합작전으로 표현되는 한·미동맹체제를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2) ‘革命工作’과 북한의 전쟁지도

‘단독전투능력’이라는 전쟁의 범주는 순수하게 전면전의 범주에 속하며 한미동맹에 대처하는 연합작전에 대응하는 전쟁개념인 것에 반하여, ‘혁명공작’이라는 것은 공산주의의 ‘프롤레타리아트 暴力論(Proletariat Violence)’에 입각한 남한사회의 전복을 위한 혁명전략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다. 북한이 혁명적이라고 한다면 ‘혁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북한은 혁명의 정의를 ‘혁명’과 ‘사회혁명’ 두 가지로 하고 있다. 즉 ‘혁명’은 “정치, 경제, 문화, 사상의 모든 분야에서 일체 낡은 것을 없애버리고 새것을 창조하는 근본적인 변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사회혁명’은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세우는 사회 발전에서의 근본적 변혁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혁명’과 ‘사회혁명’을 다 같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혁명의 본질은 한국사회의 역사적, 규범적인 전통을 ‘없애’버리거나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 엎고’ 다시 ‘새로운 사회제도’(공산사회)나 ‘새것’을 창조하는 ‘근본적인 변혁’을 말하는 것

18) 이기택, 『한반도의 정치와 군사』(서울:일신사, 1988) 중에서 “중소분쟁이 한반도에 끼친 영향”, pp. 172~189 참조.

이다. 이어서 사회혁명의 ‘기본문제는 主權에 관한 문제이다’라고 혁명의 목적을 확고하게 설정하고 있다. ‘낡은 국가 기구’에 대한 ‘清算’으로 표현하고 있다.¹⁹⁾ 따라서 북한의 혁명공작은 한국정부와 국가체제를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혁명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金日成이 되풀이해 온 ‘1995년은 통일의 해’라고 할 때의 의미는 곧 남한 국가체제의 ‘청산’을 의미하는 것임은 말할 필요 없다.

‘단독전투능력’이라는 군사개념과 대칭적이며 극단적인 군사에 반대개념인 ‘혁명공작’이라는 북한의 관이한 대남정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전쟁지도의 기본 문제가 된다.

과거에 있어서 ‘단독전투능력’이나 ‘혁명전략’에 있어서 前者는 ‘한·미동맹’이나 구체적으로 ‘연합작전’이라는 군사개념을 갖고서 대응해 왔으며, 後者는 國是라는 각도에서 정치 심리의 기초였던 ‘反共產主義’라는 국민적인 합의로 대처해 왔다. 그러나 탈냉전이 되는 지금 이 두 개념은 많은 문제점들을 낳고 있다.

3) ‘혁명공작’의 단계적 특성

북한은 한국전쟁을 개시할 때에 ‘혁명전략’으로 전면전쟁을 개시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을 개시하기 직전 평화공세와 정치적 의도의 위장전술로 ‘간첩 李周河 - 曹晚植선생’ 교환론으로부터 한국전쟁의 개시를 위장, 전면전을 개시하였다. 그 이래로 북한의 대남 ‘혁명공작’은 ‘해방전쟁’이라는 전쟁체계의 하나로 단계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전개해 왔으며 현재도

19)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용어사전』(평양 : 사회과학원, 1970), p. 349, p. 648.

현실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본다.

① 한국전쟁으로부터 광주사태까지

이 시기는 주로 한국전쟁이라는 전통적인 대남공작의 특성이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한국전쟁으로부터 기인하는 전시적인 대남혁명공작의 성격을 띠는 시기다.

② 광주사태로부터 1990년까지

이 시기의 특성은 지하의 ‘指揮部’의 형성이라는 개념과 일치한다. 북한은 광주사태를 실패로 보고 있다. 실패의 이유는 전시적인 간첩망을 갖고서 광주사태에 대처하였다는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지하에 ‘지휘부’를 신속하게 구축하여 ‘前衛隊’들에게 빠른 ‘혁명지시’를 하지 못하였기에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광주사태를 남한 전역에 확산하지 못한 것은 지하에 ‘지휘부’가 형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실패의 원인을 말하고 있다. 사실상 이 시기로부터 1990년까지 북한의 ‘革命工作’은 ‘지하 지휘부’의 구축과 형성에 주력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²⁰⁾

③ 1991년 이후의 ‘혁명공작’

1990년 초로부터는 ‘지하 지휘부’의 구축과 형성으로부터 이를 기초로 하여 점차로 ‘권력’ 그 자체와 ‘정치’ 그 자체로 하여 북한의 ‘혁명공작’이 전개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革命工作’이 북한의 전쟁지도라는 관점에서 ‘권력’과 ‘정치’ 그 자체를 갖고서 대남혁명공작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20) 북한의 노동당 위원인 李善實이 남한에서 활동한 시기와 활동의 범위에
서 이를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북한의 노동당이 직접 남하하여 ‘지휘부’
를 구축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4) ‘治安’과 ‘戰爭’이라는 相反 개념에 대한 대응

여기에서 문제점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인 ‘治安’과 ‘戰爭’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실패한 경우가 ‘광주사태’인 것이다. ‘치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한다는 차원의 개념이며, ‘전쟁’은 국경 밖으로부터의 적에게 거의 무조건 대항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목적은 같으나 방법과 수단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개념이 된다. 앞으로 이에 대한 종래의 정책개념만 갖고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본다.

5) 북한의 ‘혁명공작’의 軍事化

북한은 최근 들어서면서 ‘혁명공작’의 성격에서 점차로 이를 군사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2) 전쟁형태와 전쟁지도

한반도에서의 전쟁형태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범주로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즉 전쟁지도라는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세 가지 분류는 1) 全面戰 2) 게릴라戰 3) 半게릴라전 - 半전면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全面戰’일 경우

이 경우에 전쟁지도는 전통적인 방법, 즉 군사적이며 외교적인 방법이 된다고 본다. 전면전일 경우에는 ‘한·미군사동맹’을 가능한 동원해야 할 것이며 현존하는 ‘유엔체제’를 가동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전면전에 대한 동원도 전통적인 방법이 된다고 본다.

2) ‘게릴라전’일 경우

게릴라전으로부터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는 두 가지 수준이 있다. 그 하나는 게릴라전으로부터 시작하여 ‘Escalation’을 매개로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이며, 반대로 철저하게 ‘非正規戰’으로 국한시키는 경우다. 물론 이에 대한 전쟁지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는 외교적인 전쟁지도의 중요성은 전면전일 경우와 같이 전개해야 할 것이나 ‘한·미연합작전’이라는 개념에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다. 즉 韓·美防衛條約에 따른 연합군사작전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임은 과거의 경험에서 알 수 있는 문제다. 게릴라전에 의해 남한의 안전보장이 전면적으로 문제될 때에 미국과의 군사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된다.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3) ‘반게릴라전-반전면전’의 경우

극히 어려운 전쟁이 어떤 형태로든간에 ‘반게릴라전-반전면전’의 양상을 띠 때라고 본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전쟁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수한 군사적인 관점에서 ‘단독전투능력’에 대한 군사적인 대응보다 외교적인 관점에서의 전쟁지도 문제가 크게 문제될 것이라고 본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서방세계의 여론의 확보는 남북한의 전쟁지도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반게릴라전-반전면전’이라는 개념에는 전쟁의 ‘模糊性’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전쟁의 ‘모호성’은 곧 ‘침략’이라는 문제와 전쟁의 성격이 극히 ‘내전적’인 성격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전쟁지도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케 할 것이다. 적어도 미국과 일본 국민의 전적인 지지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지도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4) 핵전쟁과 전쟁지도 문제

북한은 이미 일정한 핵탄두와 핵운반 수단을 완료하고 있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동시에 세균 및 화학전에 있어서는 운반수

단과 함께 전쟁의 수단으로 화하였다. 전쟁지도라는 관점에서 이는 극히 정치 심리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동시에 실제적인 전쟁 형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이 지금처럼 ‘선언되지 않은(undeclared)’ 핵보유 이상으로 될 때에는 정부의 對國民 전쟁지도에 큰 난관을 야기케 될 것이다.

5) ‘혁명공작’과 전쟁지도

‘혁명공작’과 전쟁지도 문제는 한국의 안전보장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으로 ‘혁명공작’은 전쟁이라는 문제와 직결되면서 전개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현재 ‘혁명공작’의 성격이 ‘권력’과 ‘정치’ 그 자체를 갖고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고 본다.

(3) 북한의 ‘해방전쟁’에 대응하는 전쟁개념

북한의 ‘남조선 해방전쟁’이라는 기본 관점은 한국전쟁에 대한 북한의 기본 입장에서 연유한다. 앞으로 이와 관련하는 정치적인 전쟁개념으로서는 1) 민족전쟁 2) 남북한 전쟁 3) 통일전쟁 4) 국제전쟁 등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본다.

민족전쟁이라는 개념은 주로 ‘내전’이라는 개념과 ‘체제’를 위한 전쟁개념으로 정치적으로 정의될 것이라고 본다. 남북한 전쟁이라는 개념은 주로 한반도 남한과 북한 간의 ‘地理的 概念’으로 정의되는 전쟁일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인 개념은 이데올로기를 배제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통일전쟁’은 앞으로 직면하게 될 ‘통일정국’에 대응하는 독일 통일의 비스마르크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전쟁지도에서 이러한 용어와 의미의 사용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의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 없다. 국제전쟁이라는 개념은 만일 한반도 분쟁이 주변국의 ‘개입’으로 발전할 경우인 것이다.

다음 전쟁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개념은 ‘통일정국’이 현실적으로 전개될 경우에 대응하는 전쟁지도로서 ‘통일전쟁’이라는 전쟁지도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리라 예측된다. 북한이 불가피하게 ‘통일정국’으로 몰아가거나 북한의 내부적인 모순으로 분쟁을 야기할 경우에는 ‘통일전쟁’의 성격을 띠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4) 한국의 歷代 大統領의 전쟁지도의 역사적인 특성

건국 이래 이승만 정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쟁지도의 각 역사적 단계에서 특성이 있었다고 본다. 이는 한국전쟁이나 월남전쟁, 간접적으로 관련하였던 이라크 전쟁 등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태도에 따라서 전쟁지도 문제의 특성이 나타났다고 본다.

1) 李承晩 정부의 전쟁지도

이승만 정부는 전적으로 한국전쟁(1950~1953)에 대한 전쟁지도를 책임졌던 정부였다. 李承晩 대통령이 외교에造詣가 깊은 정치 인격이라는 측면에서나 전쟁의 국제화(또는 유엔화)라는 측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지도의 특성은 역시 안전보장정책에서 최대의 동맹국인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끌어내는 데에 모든 전쟁지도가 집중되었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이는 능숙한 李承晩 대통령의 군사외교라는 관점에서 성공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와 같은 집단안보체제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후에 朴正熙 대통령시에도 ASPAC과 같은 형태로 집단안전보장기구를

형성해 보려 한 것이었다.

2) 朴正熙 대통령의 전쟁지도

朴正熙의 정치적 인격은 기본적으로 군인 정치인이었다. 朴正熙 대통령의 전쟁지도는 몇 가지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 초기 정책은 5·16혁명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민족적인 관점에서 북한과의 타협을 통한 남북한 군사관계의 완화를 시도 하여 보았다.²¹⁾ 아마도 남북한 간의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은 것은 1·21 청와대 습격사건 이후였다고 볼 수 있다.

— 1·21 청와대 습격사건 이후 박대통령은 광범위한 대북군사 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이는 아마도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의 ‘총력전’의 개념을 도입하였다고 본다. 1·21 청와대 습격사건을 전환으로 하여 對北 戰爭指導 政策은 ‘7·4 공동성명서’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으며 그 후에도 변함이 없었다고 본다.

— 월남 참전정책은 李承晩 대통령의 전쟁지도와 유사한 미국과의 ‘同盟政策’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참전하게 되며 해외참전을 통한 ‘경제적 이익’과 ‘전투경험’에 목적을 두면서 전쟁지도라는 관점에서 월남참전을 감행하여 성공하였다고 본다.

3) 全斗煥 대통령의 전쟁지도와 동맹정책

— 전두환 대통령 시기는 특이한 시기였다고 본다. 미국에서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소련과의 대결정책을 채택하는 전환시기였다.

레이건은 바티칸의 法皇과 비밀협상을 통하여 동유럽의 붕괴로

21) 『조선일보』, 1992년 6월 21일자. 서해 용매도와 해주에서 5·16혁명 직후 15차례 남북한 간의 군사비밀협상이 진행되었다.

시작하여 ‘우주방위계획(SDI)’을 통한 군사적인 對蘇 압도를 통하여 소련의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서방측의 大同盟을 시도한 때였다.

1981년의 전두환-레이건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의 중요성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고 본다.

소련의 對人 암살계획이 법황에게나 레이건 대통령에게 가해질 정도로 긴박한 것이었다. 랑군사태도 이러한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전두환-레이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후의 공동성명서 제1항이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다’라고 확인했다. 동맹정책이 전쟁지도의 기본이었다.

4) 盧泰愚 대통령의 전쟁지도와 외교정책

－ 盧泰愚 대통령의 전쟁 지도관이라기보다 대외정책상의 문제는 특이점이 있었다.

노대통령은 대북한정책을 ‘7·7선언’으로 시작하였다. 북한이 ‘同伴者’라는 정의를 하면서 대내외에 접근하였다. 이어서 탈냉전 과정에서 이에 편승하여 ‘北方政策’을 전개하였다. 소련에 30억 달러의 借款을 제공하는 정책이었다.

노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군사정책에 불구하고 ‘남북한 합의서’와 ‘韓半島 非核化’라는 정책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와 과정에서 1) 미국의 전술핵 철수와 2) 북한의 핵을 허용하는 전쟁지도 아닌 정책이 진행되었다.²²⁾

22) 부시 행정부의 남한으로부터의 ‘전술핵의 철수’는 일방적인 것이었다.

(5) 한반도의 통일정국의 전망과 전쟁지도 문제

(‘東西獨型’과 ‘유고型’)

통일정국의 向方은 앞으로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그 하나는 한반도의 통일정국이 ‘동서독형’으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또 하나의 가능한 방향이 ‘유고형’으로의 전망이다.

한반도의 모든 정세를 감안할 때에 한반도는 앞으로 ‘동서독형’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유고형’의 분쟁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된다.

통일정국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방향에 따라서 전쟁지도의 정책적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韓國의 危機管理와 戰爭指導體制 發展方向[※]

全 庚 萬
(國防研 研究委員)

1. 序 論
2. 平時安保體制 - 危機管理 - 戰爭指導體制 相互關係
3. 韓國의 運營實態 및 事例
4. 外國의 危機管理와 戰爭指導體制
5. 發展方向
6. 結 論

1. 序 論

脫冷戰의 시대를 맞아 安保概念의 영역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국제관계에 新秩序가 형성되어 가는 것은 사실이나, 國家安保의 종국적인 수단은 여전히 古典的 의미의 國家안보인 軍事적 安보

※ 본고는 國防軍史研究所 주관으로 1994. 9. 28에 실시한 〈歷史的 敎訓을 통한 韓國의 戰爭指導 方案〉主題 學術회의에서 發表된 내용임.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도 또한 사실로서, 금년 초의 韓半島 군사적 긴장고조, '91년의 걸프전쟁, 그리고 최근의 크고 작은 국제분쟁을 통하여 인식되고 있다. 흔히 현재 방향이 감지되지 않고 있는 新國際秩序의 특징을 역설적으로 말하여 '國際無秩序의 形成'이라고 말할 정도로 국제관계에는 정형이 정착하고 있지 않으면서 다중적이며 다양한 국제관계는 증대하고 촉진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은 각국이 보다 유연하게 국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한편, 있을 수 있는 軍事的 次元의 安保威脅에의 대처능력의 확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韓國은 현존하는 韓半島상의 안보위협에 적극 대처하고 南北韓 공존구도와 나아가 통일구도하에서 東北亞 주변 4강과의 있을 수 있는 안보갈등요인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安保政策決定體系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바, 이 결정체계의 사실상의 핵심이 危機管理體制이며, 예외적으로 운영되지만 절대적으로 효율화해야 할 체계가 또한 전쟁지도 부분이다. 우리의 현행 안보정책 결정과정은 위기 또는 전시는 물론, 평시의 안보정책결정을 위한 체계조차도 제도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최근 소수의 관심있는 전문가들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구상 혹은 논의가 진행 중인 단계에 있다. 안보정책결정체계가 정형화되어 고식적으로 운용될 수는 없으며, 또한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기본틀을 설정하여 평시부터 활성화함으로써 위기 및 전시를 맞았을 때는 보다 탄력적으로 목표지향적인 결정 및 집행체제를 성공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국내외의 안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게 韓國의

安保狀況 및 安保政策決定 對象

狀 況	安保政策目標	主 要 決 定 對 象
非危機時 (平 時)	• 안보능력 증진 • 안보위협요인 제거	• 국가안보 기본정책의 입안, 조정 및 수립 • 동맹체제 유지 및 강화 • 군사외교 유지 및 확대 • 각종 외교·안보관련 조약체결 • 국가대전략 개발 • 군전력 강화(주요 무기장비 획득) •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 군비통제 방향 설정 및 추진 • 안보관련 예산편성 및 운용
危 機	• 안보위협 현안 해소 • 갈등 해결	• 외교적 수단의 확보 및 활용 • 경제적 수단의 확보 및 활용 • 군사적 수단의 확보 및 조치 • 국가동원태세 확보 • 대국민 홍보
軍事對峙	• 전쟁목적의 확정 • 군사력 사용의 당위성 확보	• 군 최고통수권자의 군통수체제 권한(전쟁계획 검토) • 대내외적 지지 확보대책 • 전쟁선포 및 대국회 동의절차 수행(개전시기 결정) • 계엄의 선포 및 전시 국가관리 착수
戰 爭 時	• 정치적 입장 강화 • 유리한 전황유지	• 전쟁지도역량의 극대 발휘 • 전쟁의 주도권 장악 • 국력동원계획의 실시 • 작전지휘 및 군수지원 • 종전협상 대비책 강구

戰平時 안보정책결정체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한국의 軍事的 危機管理 및 戰爭指導體制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에 안보정책결정체계가 미정착 또는 부재해 오는 근본원인을 식별하고 戰平時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포괄적이며 단일한 安保政策決定體系 속에서 위기관리 및 전쟁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2. 平時安保體制-危機管理-戰爭指導體制 相互關係

안보상황에 따라 안보정책결정의 대상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안보개념의 외연적 확대나 안보환경의 다양화를 반영하더라도 안보정책결정의 대상은 상황별 정책목표에 따라 원칙적인 범위와 유형을 취한다. 즉, 결정상황은 平時(非危機時), 危機時, 그리고 戰爭時로 크게 구분지을 수 있으며, 이들 각 상황별 안보정책목표로서 안보능력의 확충, 안보위협 및 갈등해소, 그리고 유리한 전황 확보를 통한 정치적 입장강화라고 각각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상황별 결정목표를 위한 안보정책결정대상을 〈표〉에서와 같이 예시한다면, 위기관리체제(crisis management system)와 전쟁지도체제(war conducting system)는 결국 목표달성을 위한 국력의 운용강도가 다를 뿐 평시 안보정책결정체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평시의 안보정책결정체제는 당장 보기에는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고전적 의미의 안보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중요성이 덜한 것

같지만 國家大戰略의 개발을 통한 장기안보능력의 제고와 안보위협 가능요인의 사전적 제거라는 정부의 전략적 지도력(strategic leadership)을 발휘할 수 있다는 관점과 평시-위기시-전시의 순서로 결정체계의 운용성이 낮아진다는 관점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제도화해야 할 분야에 해당한다. 美國의 경우 國家安保會議의 개최가 정례화되어 평소 대외정책이나 군사정책을 검토하고 조정을 기하며 日本의 경우도 安全保障會議을 연 7~8회 개최하여 방위정책에 관련한 대부분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각료간에 논의를 통하여 합의하고, 또한 首相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危機管理(crisis management)는 군사적 적대감이 개입할 확률이 단기에 극도로 증대하는 대외적 관계를 보다 통제된 방법에 의하여 정치외교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각종 비군사적 정책수단 또는 제한적 군사수단을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동원하는 기능인데,¹⁾ 정부의 안보정책결정체계가 가장 중시하고 긴밀하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다. 위기관리의 성패에 따라 위기발생의 어느 당사자도 원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전쟁(inadvertent war)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²⁾ 위기관리가 불안정하게 진행되어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경우는, 政治指導者가 전쟁 이외의 代案不在로 오판하는 경우, 위기관리의 일환으로서 예방목적으로 가한 군사적 위협이 확대되는 경우, 위기협상의 상대방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선제공격을 가하는 경우, 상대방 또는 자국에 관한 기

1) Gabriella Toepli Heichal, Decision Making During Crisis : The Korean War and The Yom Kippur War, UMI, 1990, p. 22.

2) Alexander L. George, edit., Avoiding War : Problems of Crisis Management, Westview Press, 1991, pp. 545~546.

정사실(Fait Accompli)을 급진적으로, 혹은 결정적으로 오산하여 해결하려 들 경우, 그리고 위기의교력(coercive diplomacy)이 실패하여 전쟁착수로써 위기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 등 대체적으로 다섯 가지의 유형을 상정할 수 있다.³⁾ 이런 유형의 원치 않는 전쟁의 발생가능성은 위기관리 기능에 내재되어 있는 근원적인 약점인, 효과적인 國家戰略 및 軍事戰略의 수립과 추진 여부, 적시 신뢰성있는 정보의 제공과 분석능력 여부, 상당한 군사력의 유지 및 원만한 통제관리 여부, 그리고 각종 위기협상 카드의 배합의 범위 정도가 해소될 경우에는 대폭 낮아지게 만들 수 있게 된다.

戰爭指導(war conducting)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기관리가 실패하여 위기안정성(crisis stability)이 파괴되어 顯在化된 부분 또는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에 대응하여 戰爭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쟁과 연관된 제반 국정사항을 유기적, 통일적인 일체관계로 체계화함으로써 전쟁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國家力量과 技術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쟁지도체제는 예외적인 안보정책결정체제의 운영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군사력의 직접적 운용과 이를 지원할 국정관리의 측면에서 평시 안보정책결정체제나 이의 연장선인 위기관리체제와는 달리 완전히 별개의 구조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 군사기구나 국방조직분야에서 戰爭企劃 또는 戰爭指揮概念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도 이런 견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쟁지도도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 의하여 평시 안보정책결정체제와는 별개의 체제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첫째,

3) Ibid., pp. 546~553.

전쟁상황에 맞는 작전위주로 볼 수 있는 전쟁지휘나 군사력 운용을 위한 軍事組織의 命令, 指示 및 統制에 관한 권한의 부여관계인 군사지휘(military command)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전쟁지도는 안보정책의 최고책임자인 軍統帥權者가 國家目標의 달성을 위하여 군사력은 물론, 비군사적 국력까지 총동원하는 국정의 지도력 발휘이며, 둘째, 2차대전 이전에 軍國主義的 환경에서 발상된 전쟁수행 위주로 국정을 인식했던 전쟁지도개념은 2차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등장한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개념에 수용되어 戰·平時를 통괄하는 안보정책기구에 의하여 실행될 수 있게 되었으며, 셋째, 전쟁지도체제의 운영상 특징인 구성원의 과두성, 결정권한의 집중성, 결정과 집행간의 유기성, 자원의 동원성, 사전기획의 중요성 등이 하등 평시안보정책결정기구의 운영상 성격과 차이가 없으며, 넷째,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군사전략은 국가목표 및 국가전략에 내포되는 개념으로서 최고통치자의 국정수행차원에서 전쟁지도와 이의 지지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국가안보정책의 결정과정과 기구에 일관성이 준수되고 문민통제개념에 기초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되며, 다섯째, 전쟁종결 및 전후처리과제는 고도의 정치적 수완의 영역이자 國家大戰略에 종속되므로 군사전략이나 작전과 같은 군통수의 차원보다 높은 國家統治次元에서 다루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안전보장개념이 각국에 의하여 보편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위기관리 및 전쟁지도개념도 안전보장을 위한 정책결정체제에 의하여 수용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써 日本의 경우, 1956년에 평화헌법의 준수관점에서 방위력 정비계획과 같은 군사적 문제만을

논의하고자 국방회의를 설치하였으나, 1986년에 국방회의의 기능을 포함하여 중대긴급사태의 대처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함으로써 국방회의를 폐지한 바 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전쟁지도개념도 안보정책결정체제와 별개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동일구조와 기능에 의하여 시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韓國의 運營實態 및 事例

가. 運營實態

韓國의 安保政策決定體系와 危機管理, 戰爭指導體制는 대체적으로 第3共和國時代(1962~1972)에 근간을 갖춘 이후 약간의 변형을 가하면서 운용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이 내재된 채 개선 필요성에 동감만 표시하지, 구체적인 해결책은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건국 당시부터 정부형태에 크게 반영해 온 의원 내각제가 第3共和國하에서 채택한 강력한 大統領制의 권력구조하에서도 대부분이 잔존한 결과, 미국과 같은 대통령중심제하의 안보정책결정체제를 도입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현상을 낳게 되었다.

즉, 대통령의 비서조직을 강화하여 장관급 비서실장하에 政務首席秘書官과 安保/外交/政治담당 특별보좌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안보정책결정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하였으며,

憲法機關으로 國家安全保障會議을 설치토록 하여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제도적으로 임하게 하였고, 1971년에는 非常企劃委員會를 설치, 동원기획을 전담토록 하였으며, 국가차원의 통합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안보정책 결정에 유용케 하기 위하여 中央情報部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함에 따라 외견상 미국의 안보정책결정체계를 온전히 수입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세 가지의 근본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위기관리 및 전쟁 지도를 위한 안보정책결정체제는 그야말로 인색하게 운용되거나 활성화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실정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첫째, 3년간의 美軍政과 日本政府의 기구를 수용하여 수립된 第1共和國 때 대통령중심제의 골간에 헌법기관이자 최고의결기관인 國務院을 설치하는 등 내각책임제의 요소가 깊이 가미되어 운영한 정부형태가 지금까지 크게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美國의 각종 대통령중심제적 안보정책 또는 위기관리에 관련된 조직편제를 도입했어도 정치문화의 이질성과 운용개념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수입된 제도 자체가 정착되어 통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으며, 둘째, 소위 군사안보의 전문가 출신이 第3共和國 이후 第6共和國에 이르기까지 최고통치자로서 또는 주요한 국가안보관련 보직에 기용되어 안보정책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 행사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관료행정면에서 자주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안보위기를 관리해 가는 국면을 국민에게 보여주기에 상당한 부담을 가졌을 것이며, 셋째, 대북 군사력 균형, 나아가 우위를 완전히 확보하지 않았던 가

운데 韓·美軍事同盟에 따른 연합방위체제하에서 독자적인 戰·平時 作戰統制權도 유보된 상황에서 韓國政府가 독자적으로 안보정책을 결정하거나 군사적 위기를 관리하기에는 적잖은 부담과 제약이 있었을 뿐 아니라, 北韓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최선책은 오히려 독자적인 안보정책결정체계의 발전 또는 활용을 시도하기보다는 韓·美聯合防衛體制의 우산 속에 있음을 일단 유리한 것으로 인식해 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韓國의 安保政策決定體系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취약성이 구체적으로 표출되어 있는 위기관리 또는 전쟁 지도를 위한 구조 및 기능상의 문제점은 상당히 현저하다고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점의 핵심 또는 초점은 위기관리 또는 전쟁지도의 최종결정자이자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안보정책에 관한 확고한 인식과 활동 정도에 관한 것과 이를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기구의 역할과 기능의 효율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대별되고 있다.⁴⁾ 韓國戰爭 이후 1·21사태와 무장공비사건, 관문점 도끼만행사건, 랑군 폭파사건, 10·26 大統領 유고, 북핵문제의 교착 등 다수의 군사적 위기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었음에도 한반도에 전쟁이 재차 발발하지 않았다는 점으로써 한국의 안보정책결정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었거나 별반 문제점이 없다고

4) 주요 참고문헌으로서, 정준호(민주화와 안보정책수립, 국제정치논총, 제 28집2호, 1988, pp. 61~82), 백종천 및 이민룡('90년대 안보환경과 정책방향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1. 11, pp. 119~139), 김영일(한국의 전쟁지도체제 발전방향,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84. 12, pp. 81~109), 김희상(생동하는 군을 위하여, 서울 전광사, 1993, pp. 557~575), 박휘락(한국안보전략연구, 법문사, 1993, pp. 383~398) 및 비상기획위원회(한국전쟁지도체제의 발전방향, 1993. 11, pp. 55~102) 등이 있다.

강변할 수는 없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통일한국의 안보정책결정과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변모를 포함하여 미래의 복잡다단하게 전개하고 변화할 韓國의 안보환경에 대처하여 安保政策遂行能力을 사전에 정비 및 구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므로 현행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먼저, 大統領의 안보에 관한 인식과 정책활동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 제66조(역할), 제69조(취임선서), 제73조(외교 및 선전포고), 제74조(국군통수), 제76조(긴급처분 및 명령) 및 제77조(계엄선포)에서 大統領中心制의 大統領이 위기관리 및 전쟁지도에 관하여 강력하고도 광범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정치리더십이 보수 권위주의적 성향 또는 폐쇄주의적인 용인술을 강하게 띠므로,⁵⁾ 大統領은 국가원수 및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종 안보정책의 조정 및 결정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 이 결과 大統領 개인의 판단력과 주도역량에 따라 안보정책이 결정되고 조정되었을 뿐, 안보정책 관련 부처는 상향적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통합조정을 위한 大統領의 역할을 제도적 차원에서 기대하기보다는 大統領이 이미 결심한 사항과 방향을 합리화 또는 지지하는 성격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하게 되고 조정과 결정보다는 집행과 처리에 급급하게 되고, 급기야 大統領은 고도의 형식주의적인 보고와 지시를 통하여 안보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런 類의 안보정책결정체계를 스스로 경시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大統領이 과

5) 김용서, 한국형 보수주의와 리더십, 을지서적, 1992.

도하게 안보정책결정체계를 지배하지 않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회의체와 전문보좌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安保政策機構 및 部署의 운영상 문제의 핵심은 정책조정과 통합의 부재라 볼 수 있다. 안보정책은 상대국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확고하게 결정된 내용을 시현함으로써 국가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통치자의 지도력을 확보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결정이전단계에서의 통합조정기능이 경제 또는 사회분야와 같은 공공정책분야보다도 더욱 중요한 일이다. 전평시 및 전쟁시의 집행관리체제는 기능상, 편제상, 또는 계획상 일단 상당히 짜여져 있다고 하겠으나, 정책결정을 위한 조정 및 통합의 메카니즘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책의 조정통합기능을 일상화(routine)하는 방안으로서는 기구 또는 회의체의 설치운영인데,⁶⁾ 현재 安保政策分野에서 통합과 조정을 담당하는 기구로는 大統領 秘書室(실장 또는 외교안보수석비서관), 國務總理室, 副總理室(통일부문), 그리고 회의체로서는 국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통일관계장관회의, 그리고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들 수 있다.

그런데 大統領中心制의 정부형태와 현행 헌법과 정부조직법상의 부처별 기능과 각 회의체의 설치목적과 배경을 감안할 때, 국무총리는 국가안보의 결정권한 제한성, 전문성과 인력부족, 예산권 불행사 등의 관점에서, 통일부총리는 안보논리의 통일논리 포괄성, 국가안보에 관한 국가차원의 정보활용의 제한성 등의 관점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심의기구적 성격 및 구성원의 무제한성과

6) 강신택·김광웅 편, 행정조직 개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연구총서 1, 1993. 3, pp. 131~146.

과다성 등의 관점에서, 통일관계장관회의는 안보정책의 포괄성 반영 부적합과 구성원의 과다 및 정보활용의 제약 등의 관점에서 각각 전평시를 대비하는 안보정책결정을 위한 조정통합기능을 담당하기에는 본원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리고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가 안보정책에 관한 조정과 통합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행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면, 이들 세 기구도 제각기 부여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大統領을 國家安保政策에 관하여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外交安保補佐官은 보조조직과 인력의 미비 및 직급의 부적합성, 그리고 내각중심적 안보정책 관리의 행정구조로 인하여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행정적 보좌에 한정될 뿐, 안보정책의 전반적 조정과 관할을 수행하여 대통령을 제도적으로 조정자로서 보좌하고 나아가 위기관리업무로써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여건에 전혀 있지 못하다.⁷⁾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는 법적 뒷받침없이 임시적 보좌기구로서 금년 4월 초부터 안보현안, 특히 대북한 행정책의 조정통합목적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소의 가시적인 성과는 얻고 있는 듯하나 회의주재를 동일전문성을 가진 統一院長官 - 副總理級이긴 하지만 - 이 말하는 점, 동회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없이 통일원측에서 직접 지원하는 점, 구성원에 대통령 비서실이 중복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이 동회의체의 정책조정 및 통합기능을 실질적

7) James C. Gaston edit., Grand Strategy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NDU Press, 1992, p. 136에 의하면 과거의 국가안보회의(NSC) 운영역사에 비춰볼 때, 행정가로서의 역할은 안보보좌관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다.

으로는 약화시키고 오히려 갈등의 가능성을 키우는 작용을 할 수가 있어 보인다.⁸⁾ 국가안전보장회의 또한 헌법기관으로서 운영 융통성 부족과 국무회의 심의를 위한 대통령의 자문기관적 기능 제한, 사무 또는 운영보좌조직의 부재로 인한 평시 안보정책조정 및 통합은 물론, 위기관리와 전쟁지도기구로서의 역할성 불비, 그리고 구성원의 부적합성과 경직성으로 안보정책조정 및 통합기능의 미흡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외에도 안보정책의 특성상 국가정보가 폐쇄적으로 수집, 분석, 교류 혹은 보고되기 때문에 安企部가 안보정책형성과정에서 두드러지게 역할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이 사실인데, 이는 제도차원의 안보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들의 정책개발과 활동을 약화시키고 대통령실과 안기부가 안보정책과정을 전횡할 소지를 낳을 수 있다. 美國의 경우, CIA 국장은 국가안보회의에 법정구성원이 아닌 자문자 자격으로 참석함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에는 당연직 멤버이자 정보의 독점적 관리가 허용되고 있어서 정보기관에 의한 안보정책의 조정과 통합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전평시의 상황에 따라 정보기관(안기부, 국방정보본부, 보안사, 경찰청, 외무부 등)들간의 역할분담상의 비중을 달리 하는 문제도 사전에 타결해 두어야 할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韓美聯合防衛體制가 양국간의 국가이익과 전쟁관의 차이 및 聯合司令官의 戰時 韓美軍事力の 통제권 보유와 같은 구조적 문제점이 있고, 北韓의 군사정보에 관한 대미의존과 전쟁경

8) 김상목, 조직구조에 관한 비교연구 -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94년도 5월 월례발표회 논문집, pp. 29~53 참조.

힘 부족으로 인하여 韓國 독자적인 전쟁지도력의 발휘와 전략지시개념의 발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엄밀하게 분석해 두어야 할 일이다. 自主國防은 독자적인 전쟁지도 및 수행에서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전시군사작전의 중요성 때문에 전쟁수행의 주도력을 가질 미국을 한국은 戰爭緊迫段階에서부터 終戰 및 戰後處理段階까지 전쟁지원임무에만 국한되는 전쟁지도를 담당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관한 韓·美 간의 戰時葛藤要因의 해결이 점차 중요해지리라 본다.⁹⁾

나. 運營事例

(1) 6·25戰爭時 戰爭指導

李承晩 大統領은 열렬한 애국심, 미래를 보는 炯眼과 조국의 독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독립운동에 투신, 해방과 더불어 大韓民國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건국초기의 혼란했던 정국을 이끌어 나가면서 조속한 군비강화, 주변 자유제국과의 동맹체결, 적극적인 대북공작 등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美國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인 가치의 경시와 이에 따른 미온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대미접촉과 유대강화에 노력하였지만, 다가오는 위기에 직면하여 전국민을 무장화하고 결전을 도모하며 승리를 쟁취할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미국이 지원하지 않으면 대

9) 예컨대, 전후단계에서 한미간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쟁점으로는, 전쟁목표, 기본입장, 북한지위, 남북관계, 통치효과, 수복절차, 통치조직, 계엄/군정기간, 통치절차, 전범처리, 군비통제, 최종설정단계 등이 있다.(시사저널, 1994. 3. 3, pp. 34~41 참조)

안부재라는 태도로 임했던 것은 전쟁긴박기의 전쟁지도력의 부족으로 지적될 수 있다.¹⁰⁾

北傀軍의 戰爭開始 이후 최초의 國務會議은 6월 27일 새벽 3시에야 개최되어 항전을 계속하느냐, 서울을 포기하느냐?, 서울을 포기할 경우 시민들은 어떻게 하는가, 필요한 장비를 언제 입수할 것이며 어떻게 수중에 넣을 것인가, 국가 총동원태세를 어떻게 갖추는 것인가, 서울을 포기할 경우 어디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漢江橋를 언제 폭파할 것인가, 중요물자의 후송에 18개 열차가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등 다섯 가지 의안을 토의했으나 결정없이 우선 水原으로 천도하기로 했으며, 그 다음의 비상국무회의가 개최된 것은 大田에서였다. 따라서, 북한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는 전력을 보강하지 못하고 침공을 당함으로써 자력으로 승산없는 전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군도 개전직전에 사단장급 주요지휘관의 인사이동, 중요장비의 정비차 후송, 진지공사의 부실, 장병의 휴가 및 외출실시 등으로 전선을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한 실책을 범했던 것이다.

전쟁수행 초기에는 경계소홀로 인한 적기습의 허용, 후방예비전력의 이동 지연 및 축차적 투입으로 인한 병력낭비, 기대했던 대전차로켓의 성능미달로 적전차에 대한 무방비, 무리한 반격시도로 인한 피해가중, 漢江橋의 조기폭파로 군 주력의 퇴로차단 및 무력화 등으로 인한 군작전 실패로 고전했으나, 일부 부대는 질서정연한 지연작전을 실시하고 李承晩 대통령이 외교수완을 발휘, 주한

10) 육군교육사, 전쟁지도이론과 실제, 군사발전 제58호 부록, 1991. 2, pp. 269~270.

미대사관과 美極東軍司令部 및 미국정부 등을 설득하여 조기에 유엔군 파병을 요구하고 한국군을 통합 지휘하는 조치를 취하여 전력을 재정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7월 14일 李大統領은 작전의 통일성을 기함과 아울러 한국군도 유엔군의 일원이므로 韓國軍의 작전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한다는 서한을 맥아더사령부에 보냄으로써 韓國軍의 작전권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됨과 동시에 李大統領의 전쟁지도의 주도적 역할은 끝나고 유엔군사령부의 작전지도하에 인력과 식량공급에만 주력하게 되고 휴전협정 체결 등 전쟁종결기의 지도력을 발휘할 기회를 잃었다.¹¹⁾

(2) 걸프戰 事態 對應

이라크가 1990년 8월 2일 01:00에 무력으로 쿠웨이트를 침공함으로써 신세계질서의 형성을 시험했던 걸프사태는 韓國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위기로 인식될 수 있었다. 우선 경제안보차원에서 석유공급의 中東의존도가 약 70% 정도에 달하여 걸프위기가 장기화되면 제3차 석유파동이 일어나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며, 또한 中東건설경기가 중단되어 국내경제의 회복이 곤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짙었으며, 군사안보면에서는 美國의 군사력이 중동에 증강배치되고 세계의 관심이 이 지역에 집중되면 北韓의 모험주의적 행동이 군사도발을 자극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¹²⁾

11) 한국군의 작전권을 유엔사령부에 위임할 당시 주한미지상군은 18,000명, 한국군병력은 58,000명이었다.(상계서, pp. 267~268 참조)

12) 실제로 걸프전쟁기간 중에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전력 중 약 15,000명이 중동지역에 파견됨으로써 과거의 미국 스윙전략이 부활되는 것 같아서 한반도의 안보가 불안해진 바 있다.

이러한 걸프사태의 韓國安保의 위협을 인지하여 취한 韓國政府의 대응행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위기관리상의 문제점을 식별할 수 있다. 첫째, 걸프사태는 경제문제이자 군사문제임에도 정부의 초기대응은 석유파동과 교민안전, 그리고 건설사업의 차질 등 경제문제로만 국한하여 주로 경제부처의 장관 및 실무자 중심으로 대책을 강구했다. '91년 2월 걸프전이 끝날 때까지 7개월에 걸쳐 국가안보회의가 관련부처의 보고형식으로 단 2회 개최되었을 뿐, 제도화된 안보기구가 가동되지도, 안보분야에는 거의 책임이 없는 국무총리 수준에서 처리되었지 최고층에 의한 대책의 조정점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안보정책을 입안, 집행, 사후관리함에 있어서 임시방편적으로 비체계적으로 대응, 관계장관회의 또는 전비조달이나 군의료진의 파견에서 보듯, 해당부처 차원에서 일회적 임무수행으로만 취급, 위기관리의 지속적 발전과 관련정보의 축적, 일관성있는 대응책의 모색 등이 결여되었다. 셋째, 국방부 중심으로 추진된 軍事要員의 파견은 국가안보회의 의제로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조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다는 국방부 자체의 상황판단에 따라 파견안이 제기되고, 실무적 준비에 돌입했던 것으로 관련부처 및 회의체를 통한 통합조정 및 협력의 노력이 전혀 없었던 셈이다.

(3) 北核問題 對應

北韓이 1992년 1월 IAEA 핵안전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동년 7월 8일부터 10일간 받은 제2차 IAEA 임시사찰에서 신고내용이 IAEA 사찰분석 결과와 상이함이 발견된 이래, 北韓核의 투명성 확보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韓國安保政策의 최대현안으로 계속

되고 있으며, 대책결정과정에서 정책행위자간 정책노선과 공조체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혼선을 빚고 있다. 북핵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이래 정부가 대응한 행태를 살펴보면 韓國의 현행 안보정책결정체제의 취약성이 여과없이 표출되었다고 본다. 첫째, 북핵문제를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사안발생시마다 관련부처별로 준비하여 핵대책반회의, 안보관계장관회의, 또는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와 같은 한시적 임의기구를 통하여 부처입장에서 논의했으므로 책임성있는 대안개발과 정책조정이 가동되기 어려웠고, 국가안보회의의 운용이 소극적이어서 정부의 안보의지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나아가 정부와의 안보유대감에 간격이 생기는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對北核政策 기조가 통일논리와 안보논리간에 혼선이 발생, 전자가 우세할 때는 민족주의적인 시각이 북핵의 안보위협성을 우선했고 후자가 강조될 때는 국가이익개념이 남북한 관계개선을 억압함에 따라 유관부처간에 정책조정 및 통합이 근본적으로 모색될 여건이 모자랐던 셈이다. 셋째, 북핵의 개발완료 여부가 국제공조체제의 관건으로 부각되면서 국제공조체제는 본질적이기보다 사실상 방편적으로 운용되어 대외적으로는 韓國의 對北核政策의 한계와 대미의존양상을, 대내적으로는 유관부처간에 조정과정에서 갈등과 경쟁관계를 노정하게 되었다. 넷째,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안기부의 협조리에 강력한 조정력을 구사했던 第6共和國時代와는 달리, 新政府에서는 안보정책의 최종조정역할과 사실상의 위기관리팀장의 역할을 발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조직의 불비, 개인위상의 부적절성으로 인하여 對北核政策에 주도적인 역할수행이 곤란했고, 특히 통일안

보정책 조정회의에서의 조정기능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4. 外國의 危機管理와 戰爭指導體制

가. 美國의 安保政策決定體制

韓國이 1960년대 초에 도입했던 美國의 安保政策決定體系는 1947년에 제정된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에 의하여 창설된 것인데, 美國이 第2次 世界大戰을 승리로 종식시켰으면서도 이러한 법제정의 필요성과 안보정책결정체제를 새롭게 설정했던 당시의 배경을 상세하게 성찰함은 韓國의 위기관리 및 전쟁지도체제의 발전개념을 정립하는데 대단히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美國은 第2次 世界大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 및 전쟁수행에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을 식별하게 된 것이다.¹³⁾ 첫째, 美國의 전쟁지휘가 국가안보정책의 결정상 제도적 책임을 가진 사람에 의하기보다는 정치권내의 비공식적 관계에 의하여 행해졌기 때문에 일관성과 효과성이 미흡했으며, 둘째, 육군성, 해군성, 그리고 전쟁성이 결성한 소위 “삼자위원회(Committee of Three)”가 전쟁을 수행했지만, 전력의 효율적 운영 및 조정기능이 부재하여 향후 통합된 군사정책의 성안과 반영을 위한 기구개편의 불가피성이 제기되었으며, 그리고 大戰을 계기로 미국이 초강

13) 전경만, 미국의 안보정책결정과 NSC역할, 국방강론 제2집 제1권, 한국국방연구원, 1990. 9, pp. 45~60.

대국의 지위를 굳힘에 따라 향후 핵시대의 외교 및 군사정책을 세계전략의 관점에서 조정, 수립 및 집행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戰後 어떤 형태의 조직을 설치, 유지해야 각군과 각 정부부처 및 기관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하며 보호할 수 있겠는가?” 이었다.¹⁴⁾

한편, 美議會는 1944년부터 전후의 미국군사력을 강화할 방안으로서 3군통합을 심각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하원 군사위원회가 공청회를 통하여 입법취지를 밝혔으며, 또한 이에 대한 戰爭省의 방안(Collins Plan)과 해군성의 방안(Eberstadt Plan)이 각각 연구되어 의회에 보고되었다. 美議會의 입법취지는 ;

- 미국의 미래안보를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제공할 것.
- 국가안보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의 정책기능을 통합된 방향과 절차에 따라 발휘되도록 조정함.
- 전투와 지원부대의 작전과 행정을 담당하는 각군에 대하여 지시, 관할 및 통제를 적절히 행사할 수 있는 국방장관직을 설치함.
- 독립된 3군체제를 유지하되 국가안보회의, 국가안보자원위원회, 합동참모회의 등과 같은 위원회 및 회의체와 유기적인 상호업무연계를 유지할 것.

따라서 당초의 국가안보법의 제정 주안점은 안보정책관련기구

14) James H. Dixon and Associates, National Security Policy Formulati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4, p. 9.

를 단일법에서 총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사기구의 위상 및 역할의 정비를 기하고 이를 통한 외교정책기구와 군사정책기구간의 유기적이고 통합된 안보정책의 도출에 있었다. 이에 따라 설치되어 근 50년간 지속된 주요 미국의 안보정책기구가 바로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 NSC), 중앙정보국(CIA), 국방부(DOD), 그리고 합동참모회의(JCS)이다.¹⁵⁾

미국의 NSC는 쿠바위기사태나 걸프전쟁 등에서 시험된 바와 같이 미국의 위기관리와 전쟁지도의 핵심체제로서 국가안보에 관련있는 국내정책, 외교정책 및 군사정책을 통합적으로 대통령에게 자문함으로써 각군과 정부부처, 그리고 유관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각료회의나 국무회의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미국의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일종의 초각료(super-cabinet)회의와 같은 역할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NSC는 통상 일컫는 NSC 자체와 이를 위한 전문보좌조직으로 이원적 조직으로 편제되어 있는바, 안보보좌관이 전문보좌조직을 운영함으로써 대통령의 NSC회의 주재를 뒷받침하고 자신의 안보분야 대통령의 개인보좌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NSC의 구성은 법정멤버(statutory member), 법정고문(statutory advisor), 그리고 상임참석자(standing participant)로 구분되는데, 국

15) 1947년 국가안보법의 제정시 국가안보자원위원회(NSRC)를 설치,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고 국무, 재무, 국방, 내무, 농무, 상무, 노동장관 등 8명으로 구성하고 산하에 스태프조직을 두어 대통령에게 군사, 산업, 민간 동원을 협조하여 조언하도록 하고, 또한 NSC와 CIA, 그리고 국방부와 업무협조 및 조정체제를 유지토록 하였으나, 그 이후 대통령 직할의 비상기획실(OEP)로 재편되는 등 수차례의 개편과정을 겪어 1974년에 폐지되었음.

가안보개념의 확장과 국제관계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대통령의 요구에 의하여 상임참석자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¹⁶⁾ 前兩者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및 국방장관 4인으로, 그리고 합참의장과 CIA국장 2인으로 각각 고정되어 있다. 물론, 대통령 개인의 안보정책에 관한 인식과 관련정보의 해석방법, 지적 능력과 판단력, 또는 용인술에 따라 안보정책결정의 유형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NSC와 안보보좌관의 역할과 비중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¹⁷⁾

한편, 국가안보법 제정의 제1차적 의의가 국가안보정책결정체제의 정립이었다면 제2차적 의의는 국가안보관련 정보의 통합을 위한 CIA의 창설이라 말할 수 있다. 第2次 世界大戰時 대통령은 국무성의 외교관 보고, 戰爭省과 해군성의 무관 및 첩보보고, 법무성의 FBI 수사보고 등 각 부처가 개별목적에 따라 분산적으로 수집한 정보에 의존한 결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國家次元’의 전략정보가 정리, 통합되어 보고받을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여 CIA의 창설을 추진했었다. CIA는 대통령에게 해외정보에 관한 주된 자문역을 담당하고 NSC에 조언하고 정보활동에 관한 협조사항을 건의하고 연관 정보를 국가안보관계기구에 전파하는 기능을 수행

16) 클린턴 정부에서는 군축국장은 물론 재무장관, 미국유엔대표, 대통령 경제정책보좌관, 법무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예산편성국장,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포함되어 있음.

17) Alexander L. George, *Presidential Decisionmaking in Foreign Policy : the Effective Use of Information and Advice*, Westview Press, 1980, pp. 145~168 및 James C. Gaston edit., *Grand Strategy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NDU Press, 1992, pp. 85~113을 참조.

토록 했던 것이다.¹⁸⁾

나. 日本의 安保政策決定體制

日本은 大本營을 淸日戰爭, 露日戰爭, 支那事變, 그리고 第2次 世界大戰 등 네 차례 설치, 軍政과 軍令을 통괄하고 나아가 정부까지 조정력을 발휘함으로써 평시군령기관인 대본영이 전시에는 실질적인 전쟁지도기구로 전환되도록 운영한 바 있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날은 1986년 7월에 발족한 안전보장회의가 평시의 안보정책결정과 전시지도기능을 동시에 담당하게 하고 있다.

戰後 日本은 평화헌법의 준수차원에서 방위력 정비계획과 같은 군사적 문제만을 논의할 수 있도록 1956년 7월에 국방회의를 설치하였으며, 1980년 12월에는 외교, 경제협력, 식량 및 에너지 확보 등 종합적인 안전문제를 다룰 수 있게 하기 위하여 ‘總合安全保障關係閣僚會議’를 각료급 간담회로서 별도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1986년 ‘안전보장회의 설치법’에 의하여 국방회의의 기능을 포함하여 첫째, 국방기본지침, 방위계획 대강, 방위계획 관련산업 등의 조정 대강, 방위출동 가부, 기타 수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둘째, 중대 긴급사항(국방사항 이외의 긴급사태에서 일본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협성있는 사안 중에서 통상 긴급사태 대처체제에 의해서는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곤란한 사태)에 대하여 각각 수상에 자문할 수 있도록 안전보장회

18) 1949년에 중앙정보국법이 별도로 제정되면서 CIA의 위상이 격상되고 기능이 확대됨.

의를 설치함으로써 국방회의를 사실상 폐지하였다.¹⁹⁾ 동법 제2조에 의하면, 첫째부류의 사항에 관해서 수상이 의무적으로 안전보장회의에 자문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둘째부류의 사항은 수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안전보장회의는 內閣 관방장관 산하의 안전보장실의 업무적 지원을 받아 미국의 NSC에 비하여 군사부문에 평시 더 깊이 개입하면서 또한 위기관리 및 전쟁지도기능도 방위청의 협조리에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안전보장회의의 멤버는 종전 국방회의 멤버인 수상, 외무, 재무, 방위청, 경제기획청 장관 이외에 새로이 국가공안위원장(내무장관이 겸임)과 내각 관방장관이 추가되었으며, 수상은 필요시 관련부처장 또는 통합막료회의 의장을 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특기할 점은 최근에 국가변영에 중점을 두며 국제적 역할을 증대할 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북한핵개발에도 영향을 받아 안보관련기구의 제도적 강화를 위하여 안전보장체계의 종합화를 기하는 '안전보장기본법'의 제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⁰⁾

다. 北韓의 戰爭指導體制

북한의 권력구조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共產革命의 주체인 共產黨이며, 따라서 국가에 대한 위협보다는 공산당 자체

19) 권호연, 문민통제 관점에서 본 일본방위정책의 결정과정, 동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8, pp. 19~20.

20) 조선일보, 1994년 6월 17일, 제7면.

의 존립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일에 더 큰 비중을 두기 때문에 북한의 안보정책에 관한 사실상의 심의 및 의결기관은 국가와 당 조직 중 최고 핵심부서인 黨中央委員會 政治局이라고 볼 수 있다.²¹⁾ 정치국은 당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당시 모든 사업을 결정하고 지도하는 사실상의 최고정책결정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국내에는 常務委員會를 설치, 金正日과 吳振宇 등 3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위원 9명과 후보위원 10명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당중앙위원회 위원 또는 비서국의 비서직을 겸무하거나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의 총리 및 부총리 등 당과 정의 핵심요직을 맡고 있다.

북한에는 전쟁지도체제가 평시에도 사실상 운영되고 있는 셈인데, 中央人民委員會에 의하여 비상사태가 선포되거나 동원령이 발포되면 중앙인민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주석이 최고사령관이자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군통수권을 행사하고 국가의 전체역량을 전쟁수행에 집중되도록 한다. 이 군사위원회는 第2次 世界大戰 당시 소련이 운영했던 국방위원회와 같은 성격을 가졌으며, 韓國戰爭 당시에는 군사위원회를 최고전쟁지도기관으로 두고서 人民武力部長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여 그 휘하에 각 참모조직과 군부대를 지휘한 바가 있다.²²⁾ 內閣인 政務院은 4대 軍事路線과 같은 국가정책차원에서의 군사사항에 관여할 수 없으며, 대장급 현역이 당 및 정의 양쪽 군사기구의 요직을 평시부터 맡고 있다. 또한 군참모총장은 당 중앙위원

21) 비상기획위원회, 전게서, p. 52.

22) 상게서, p. 54.

회 정치국 위원과 당 군사위원회 위원직을 겸하고 있다. 따라서 명칭만 국방위원회이지 그 실체는 당장 전시전환이 가능한 군사위원회이며 곧 전쟁지도기구라고 할 수 있다.

5. 發展方向

가. 發展概念 및 方向

(1) 未來의 平時 安保政策遂行能力 具備

21세기의 동아시아 군사질서는 미·일·중·러가 거의 대등한 군사세력으로서 ‘牽制와 均衡’을 통해 ‘武裝平和’를 유지할 것이므로 한국은 적정수준의 자위력을 보유한 채 비교적 중립적 위치를 지키면서 강대국들과의 군사적 우호관계를 통해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의 군사위협은 점차 그 의미와 실체를 상실할 것이므로 북한의 군사위협 대응위주의 안보정책기조를 과감히 전환하여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통일한국의 한민족 주권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 안보정책수단을 전략적 사고를 통하여 개발하고 실천할 수 있는 평시 안보정책결정체계를 정립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

한반도 평화구도에 바탕할 때, 民族共同體 統一方案이 단계별로 추진될 것이므로 한국의 안보정책결정체계가 말아야 할 주요과제로서는²³⁾ 첫째, 戰·平時 작전통제권의 韓國還收에 따라 한미동맹

23) 21세기위원회, 21세기의 한국, 국가장기정책 종합보고 제5권, 1994. 5. 2, pp. 156~57.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정립하는 일, 둘째, 休戰體制의 종식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보장장치를 마련하는 일, 셋째, 한반도내에 남북한간 군사적 신뢰관계를 확립하고 본격적으로 軍備統制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일, 넷째, 주변강대국과의 군사관계에 있어서 포괄적 우방화를 추구하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多者間 安保協調體制 및 군비관리체제의 정착에 적극 참여하는 일, 다섯째, 주변강대국의 군사력 행사가능성에 대비하여 적정규모의 독자적 방어능력을 갖추는 일, 여섯째, 분명한 核政策을 유지하는 일 등이 식별될 수 있다. 이들 중 어느 한 가지도 용이하게 단독적인 안보정책에 의하여 해결될 성질의 것들이 아니므로 고도의 순발력과 용의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시 안보정책결정체계가 설치,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측의 원인발생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시에 한국정부가 안보정책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는 첫째, 북한의 핵개발 비포기 및 다수의 핵무기 보유 선언에 대한 대응, 둘째, 북한의 대량 난민 발생으로 인한 對日, 對中, 對美 협조관계 설정, 셋째, 북한내부 권력투쟁의 격화에 따른 대남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 넷째, 북한의 급속한 체제붕괴에 따른 만반의 방안(지원, 흡수 통합) 적용, 다섯째, 대북 각종 대화 및 교류채널의 갑작스런 교착과 이에 따른 긴장해소, 그리고 여섯째, 金正日 이후의 북한 권력구조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비 등으로 상정될 수 있는데, 안보정책결정체계가 위기관리 기능을 본격적으로, 현실적으로 수행해야 할 분야에 해당한다.

또 다른 한편, 한반도에서 원치 않는 전쟁이 발생할 경우, 바람

직한 전쟁지도 방향으로서는 무엇보다도 평시 성안된 忠武計劃의 철저한 이행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전쟁시의 정책결정은 시간, 정보, 결정자의 심리적 압박 때문에 불완전하고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평시 철저하고 완벽하게 전시 국력운용계획과 전쟁수행계획을 범정부차원에서 성안, 전쟁시에는 이에 의거하여 전시국정을 집행하고 전쟁수행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번째로 중요한 전쟁지도의 방향은 한미간에 한반도 전쟁의 성격, 전쟁수행방식, 군사력의 운용방법, 그리고 통일 및 수복지역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상호이해와 합의를 확보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작제 5027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전쟁수행방침과 작전계획을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에 따른 전쟁지도의 행사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2) 總合安保政策樹立體制의 反映

안보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안보논리의 시공간적 확대와 안보인식의 심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총합적 안보정책의 수립을 강력하게 필요로 하게 된다.²⁴⁾ 첫째, 안보정책결정체계가 탈냉전시대의 安保多衆性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군사적 안보인식은 물론, 비군사적 안보문제도 다루도록 포괄적 구조를 가져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일반국민이 안보정책수립에 주체로서 참여하고 있음을 인식케 하여 안보정책 목표달성과정에서도 국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지지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총합안보정책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배가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전

24) 김동성 외 4인공저, 신국가안보전략의 모색,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총서, 세경사, 1993, pp. 231~33.

략에 부합하는 군사력의 건설, 외교정책의 수행, 그리고 위기관리 및 전쟁지도개념의 설정과 결정이 조직과 수행인력면에서 상호 연계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안보정책에 관련하는 기구, 조직, 구성원간의 관계, 개별기능과 임무, 정책 집행상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규적, 제도적 근거와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안보정책의 수립-결정-집행의 제도와 기능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체계의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원인들을 과감히 식별하여 시정과 제거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발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통합을 기하고 안보역량의 강화를 위한 자원의 충분성을 국민의 참여리에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安保政策決定의 特性 反映

안보정책의 결정은 축차적으로 진행하지만 외국정부나 기구를 상대하는 특성 때문에 교정가능성이 매우 낮다. 또한 결정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주로 긴박성, 총체성, 완전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이, 유관 정책참여자들의 정책조정능력의 확보가 안보정책결정체계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민주정치와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안보 및 국방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문 정치인출신 대통령이 향후 제도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등장할 것이 예상되므로 국가 안보와 국방분야, 혹은 이와 연계한 통일분야에 관하여 대통령을 완벽하게 보좌해야 할 정책조정 및 통합기능의 강화에 관한 당위성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안보정책을 종합조정하는 책임기구와 정책참여자의 참여정도를

명백히 설정해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주국민통제(civilian control)하의 대통령이 실질적인 大元帥型의 전쟁지도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 바람직한 體系의 定立方向

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술하고 분석한 안보정책결정체계의 임무간 상호 연관성, 주요외국의 결정체계, 한국의 현행 결정체계의 실태 및 운영사례상 문제점, 위기관리 및 전쟁지도개념의 일원적 발전 필요성, 그리고 안보정책결정체계의 발전방향 등으로부터 바람직한 체계의 구조 및 기능의 정립을 위한 6개의 기본개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 평시 안보정책결정체계에 위기관리 및 전쟁지도체제를 통합, 국가안보정책결정체계를 단일체제로 운영한다.
- 국가안전보장, 위기관리 및 전쟁지도에 관한 일체의 정부기능과 조직편제, 업무조정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단일법규(가칭 ‘안전보장기본법’)를 제정, 안전보장정책결정체계의 총합적 업무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 전평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장회의가 대통령에 대하여 최고 자문을 담당하며 국무회의에서의 심의를 전제하지 않는다.
- 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은 3구분(법정멤버, 법정자문, 임의멤버)하되, 법정멤버는 업무분장상 국가안보정책의 결정에 직

접 유관하여 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국무위원에 한정하며, 안기부장과 합참의장은 법정자문자로서 참석하고, 임의 멤버는 의제에 따라 유관 국무위원을 선정, 참석하도록 한다.

- 국가안전보장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고 안전보장회의를 위한 전문적인 참모역할과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의 업무조정 및 통합, 그리고 위기관리업무의 관리감독과 장기 국가전략개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기구(가칭 '안보사무총국')를 설치, 국가안보보좌관의 관장하에 운영토록 한다.
- 대통령이 전쟁지도를 통하여 국가보위의 책무를 완수하도록 보좌하기 위하여 전시에는 합참의장 휘하에 군사지휘본부를 설치, 군통수업무를 보조하고 韓美聯合防衛體制의 전시군사위원회(wartime military committee)의 전략지시를 한국측에서 발전시키는 임무를 담당한다. 또한 국무총리는 비상기획위원회의의 보좌를 받아 전시 민방위 및 치안, 자원 및 산업동원, 그리고 통신수송계획을 발전시켜 전쟁시에는 전쟁지원업무를 지휘감독함으로써 대통령의 전시국정을 보좌한다.

6. 結 論

韓國의 國家戰略的 리더십은 현재, 對內的으로는 민주정치적 정착과 더불어 범국민적 안보의식의 공고화와 전국민적 안보정책지지를 확보하고 對外的으로는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안보협력을 증진하고 통일한국의 평화적 달성을 지향하기 위하여 안보정책의 체

제(구조와 기능)면에서 새로운 과제를 맞고 있다. 안보정책수립과 시행의 성패관건은 기본적으로 전평시를 막론하고 정책결정의 무 오류성에 있는바, 이는 최적의 안보정책결정체계의 정립 및 운영을 통한 安保政策의 適時的인 調整과 統合에 좌우된다. 안보정책의 결정행태는 국가별 정치문화 및 행정관행의 상이점에 따라 다소 달라지겠지만, 체계는 오히려 정부형태에 크게 좌우된다고 본다.

한국은 독특한 안보여건에서 강력한 대통령중심제의 기본골간에 내각책임제적 요소도 현저히 가미된 정부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안보정책의 조정통합기구 및 운영 또한 양자를 적당히 배합한 방식을 택하고 있어서 원활하지도, 일관성이 보장되지도 못하고 있다. 각종 안보정책관련 제도 및 기구의 장차 운용성을 증대하면서 안보정책의 조정통합능력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일법적 기반을 통해 平時-危機時-戰時 단일안보정책결정방식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이 방식은 평시에는 외교정책, 통일정책 및 군사정책을, 위기시에는 외교정책과 군사정책을, 그리고 전쟁시에는 비군사부문의 전쟁지원과 군사부문의 전쟁수행이 각각 대통령의 전략적 지도력에 의하여 통합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융통성있게 조직되어야 한다.

본문에서 제시한 3개의 발전개념 및 방향에 따라 6개의 세부 기본정립개념을 반영하는 위기관리 및 전쟁지도체제는 현행 체제나 혹은 구상되고 있는 체제에 비하여 다소 원칙론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고 정책결정자의 의지에 따라 법제적, 관료정치적, 혹은 관행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제약을 극복하여 운용 가능하리라 본다.

總力戰 對備를 위한 國家動員態勢 發展方向[※]

張 炳 玉
(國防研 研究委員)

1. 序 論
2. 國家動員態勢란
3. 國家動員態勢 評價 및 發展方向
4. 結 論

1. 序 論

'94년 8월 현재 세계 191개 국가 중 31개 地域에서 紛爭이 진행되고 있으며, 紛爭發生 要因은 民族/人種, 宗教/理念, 政治/社會的 不滿, 資源/市場 등의 葛藤으로서 특히 紛爭의 早期解決이 매우 제한적이며 擴散防止에 隘路가 과생되고 있다는 것이 국제적

※ 본고는 國防軍史研究所 주관으로 1994. 9. 28에 실시한 〈歷史的 敎訓을 통한 韓國의 戰爭指導 方案〉主題 學術회의에서 發表된 내용임.

※ 일부 내용은 군사보안상 공란으로 처리하였음.

인 동향이다.

이외에도 분쟁발생 가능지역은 56개 지역으로서 특히 理念/政治的 側面에서의 葛藤으로 高強度의 紛爭이 예상되는 韓半島의 國防環境은 脫冷戰體制에 따른 新國際秩序 形成, 軍縮協商 및 常備軍 減縮環境, 經濟的 國防의 實現 등이 국제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주의를 요하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금년 들어 8월 현재 39명이란 귀순자 수는 예년보다 급증된 숫자이며 특히 북한의 特權階層이라 할 수 있는 핵심계층¹⁾에 속했던 康明道, 趙明哲 등의 귀순은 최근 북한의 동향을 내부 갈등 요인으로 살피는데 주목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또한 지난 4월 30일 북한 속의 결빙상태인 압록강을 건너 일가족 5명이 귀순한 呂萬鐵의 증언에 의하면 “친구들은 차라리 전쟁이 터져 북이 이기든 남이 이기든 결판이 나야 지금보다 낫지 않겠는가.”라는 말을 자주 했으며 또 어떤 친구는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내일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등의 울분을 터트렸다고 한다. 중국 丹東에서 국경무역을 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북한 젊은이들도 “총이라도 쏘서 통일이 되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는가.”라고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그들의 증언 중 “…… 전쟁이라도 났으면 ……”, “…… 통일이 된다면 ……” 등의 내용은 국방분야에 종사하는 우리들에겐 매우 주목할 내용으로 파악되는 바이다.

1) 북한은 철저한 사상통제를 위하여 전 주민을 51개 계층으로 세분화하여 감시통제하고 있는바, 핵심계층(12구분) 28%, 기본계층(9구분) 45%, 복잡계층(30구분) 27%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요인들은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종挑發事件들과 연계시켜 고려할 때 그 동안 변화되지 않은 北韓의武力赤化統一이란 對南基本戰略과 상승결과로 어떠한 돌출행동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이다.

<표 1> 北韓의 挑發事件들

시 기	도 발 사 건	시 기	도 발 사 건
1948	• 4·3 제주도 폭동 • 여수 14연대 반란 • 대구폭동	1983	• 아웅산 폭과사건
1950	• 6·25 남침도발	1986	• 김포공항 폭탄테러사건
1968	• 1·21 청와대 기습기도 • 푸에블로호 납치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1987	• KAL 858 폭과사건
		1992	•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1972	• 남침 땅굴굴착 발견	1994	• 북·미 핵협상 타결
1976	• 8·18 도끼만행 사건		※ IAEA 핵사찰중

또한 1994년 7월 8일 02시 金日成 사망 후 새로 구축된 金正日體制(?)는 신격화되었던 金日成으로부터 물려받은 經濟難, 國際的孤立, 體制維持에 대한 限界 등 유산을 그대로 답습한다기보다 國內·外的으로 金日成과의 差別化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차별화의 시도가 경직된 이데올로기 체제에 길들여진 北韓의 軍·黨·政간에 偶發的인 葛藤으로 도발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특히 北韓의 행동유형을 표변형인 돌출행위로 예상할 때 이러

한 도발성²⁾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태세는 굳건한 國防態勢(安保態勢) 뿐이다. 여기서 國防이란 北韓으로부터 威脅이나 侵略을 억제 또는 배제함으로써 國民生命과 財産을 보호하고 國家와 國民의 生存權을 수호하는 것인바, 國防의 手段은 軍事力이 核心이며 기타 비군사적인 수단은 이를 보완하게 되는 것이다.

軍事力은 주로 常備戰力과 動員戰力으로 구성되는데, 常備戰力의 대규모 유지는 국가경제적 측면과 탈냉전체제에 의한 상비군 감축환경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平時 動員態勢가 체계화된 動員戰力의 重要性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북한의 돌출행동으로서 발생할지도 모를 高強度의 挑發에 대한 對備策으로서 國家動員態勢에 대한 概念과 현 우리의 動員態勢 評價를 통한 發展方向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國家動員態勢란

國家動員態勢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動員思想의 淵源을 살펴볼도록 하겠다. 동원사상의 연원은 古代 都市國家 時代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즉 그리스의 도시국가 집단의 生存權 保護를 위한 共同參與로부터 시작되어 로마시대로 계승된 동원의 발상은 사전 준

2) 북한의 도발성은 국지도발과 전면도발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남조선해방전쟁이란 미명하에 선제공습에 의한 단기 속전속결전으로서 전면적인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총력전 대응태세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비계획된 행위라기보다 生存權의 威脅에 대하여 卽應的인 自衛本能에서 淵源했다고 할 수 있다.

中世紀에 접어들면서 封建 專制君主들의 霸權과 王權 守護를 위한 戰爭遂行 手段으로서 인적·물적 동원이 이루어졌으며, 19세기에 들어와서는 나폴레옹 전쟁을 계기로 民族國家가 성립되고 국민의 결전사상이 고취되어 군대라는 조직이 왕권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라 國民全體를 위한 權利와 義務를 수행하는 國家利益具現手段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을 계기로 國民皆兵制(Nation in arms) 개념인 전쟁의 국민화를 가져오면서 근대적인 동원의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美國의 南·北戰爭이 총력전 개념의 전쟁으로서 처음으로 수행되었으며 第1次 世界大戰을 겪으면서 敵對國의 군인, 민간인 등 후방지역까지도 공격목표가 되면서 總動員 概念이 등장하게 되었고, 第2次 世界大戰을 겪는 과정에서 주요 참전국들은 군사력과 비군사력을 동원하여 長期 持久戰 내지 大量消耗戰을 수행하는 國家 總動員 體制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 동원대비를 위한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3개 類型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첫째 유형은 의회의 전반적인 통제하에서 의회가 제정한 개별 法律에 의하여 議會와 大統領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형으로서, 美國의 동원대비태세를 위한 제도가 이에 해당되는데, 그 세부적인 동원의 종류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둘째 유형은 전쟁지도를 하는 統帥權者에게 非常大權을 부여하고 그에 따르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

〈표 2〉

美國의 動員種類

종 류	내 용	비 고
선 별 동 원 (Selective Mobilization)	• 심각상황(예 : 월남전) • 국방비를 GNP의 10%까지 증가 가능 • 대통령이나 의회의 요구에 의해 국내 비상사태 발생시 일부 군사력을 동원 〈작전소집(Call-up for Oper, Mission)〉 • 비상사태의 선포 없이 90일의 범위내에서 선발예비군 20만 명을 대통령이 소집할 수 있는 권한	작전소집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의회에는 없는 다른 종류의 동원과 구별되는 형태임.
부 분 동 원 (Partial Mobilization)	• 재래전 상황(예 : 한국전쟁) • 국방비를 GNP의 15%까지 증가 가능 • 대통령 또는 의회의 권한으로 선발예비군과 개인 긴급예비군을 24개월 동안 100만 명까지 동원	
완 편 동 원 (Full Mobilization)	• 의회의 승인을 얻어 선전포고나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현 군 조직을 충족시키는 대기예비군, 선발예비군을 포함한 모든 예비군을 동원	
총 동 원 (Total Mobilization)	• 전면전 상황(예 : 제2차 세계대전) • 국방비를 GNP의 30%까지 증가 가능 • 선전포고시나 비상사태 선포시 현 군구조 및 자원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자원까지를 동원	

는 유형으로서 英國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각 분야의 세부적인 동원유관 법률을 체계적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國家動員 基本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개별명령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유형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日本이 이에 해당된다 하겠다.

다음 國家動員態勢란 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國家 非常事態時 國家動員³⁾이 效果的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人力, 物資, 財貨 및 用役 등의 資源을 平時에 體系的으로 유지하는 準備狀態라 할 수 있다. 즉 국가동원이란 법률에 정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 인적, 물적 자원 등 모든 국가자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公權力 行使를 말하는데 반하여 국가동원태세란 국가동원을 위한 平時의 準備狀態를 말한다 하겠다.

국가동원태세의 평가기준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法的 側面에서 合法性이 요구되고, 국가동원의 目的에 부합되는지 여부의 合目的性, 국가동원 環境과 事態 變化에 따라 즉각적인 反應을 보일 수 있는가 하는 融通性과 卽應性,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동원의 執行節次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지 여부의 效率性, 동원태세는 國家資源의 節約이 가능한 체제인가 하는 經濟性, 유사시 동원이 計劃대로 실현 가능한가 하는 信賴性 등이다.

이러한 국가동원태세의 구성요소 중 현 우리의 동원제도에 있어

3) 여기서 국가동원이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국민의 통일된 국가수호의 정신하에 정부가 국가의 안위(National Security) 및 국가의 이익(National Interests)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모든 자원을 관리, 통제, 운용하는 행위인바, 즉 평시 국가체제를 전시 국가체제로 전환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서 人的資源 動員態勢, 物的資源 動員態勢, 初戰即應을 위한 有關係法規 側面에서 現 實態를 평가하여 發展方向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3. 國家動員態勢 評價 및 發展方向

가. 動員 關聯法規 側面

(1) 評 價

현 우리 나라는 國家總動員 概念에 따른 單 - 運營體制로 융통성이나 사전적인 예방개념이 전혀 수용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動員의 目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國家的인 側面에서의 목표는 국가의 안위 및 국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國家資源 利用이 극대화되도록 民·官·軍의 需要를 충족하면서 國家力量을 持續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며, 軍事的인 側面에서 동원의 목표는 軍事活動을 위한 人力, 物資, 財貨 및 用役 등 適量의 資源을 適所로 適時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군사적 측면에 있어서 동원의 즉응성은 適量과 適所라는 요소보다 適時라는 시간적인 概念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데,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원령 선포를 위한 요건이나 방법 등에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모든 전쟁은 대응하는 시간의 문제에서 승패가 좌우되었음은 壬辰倭亂에서, 가까이는 6·25 韓國戰爭의 초기에서 볼 수 있다.

즉 適時라는 시간개념과 관련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표 3〉

動員關聯 法規

동원관련 법규	주요 내용
헌법 제76조②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요건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4조, 제16조	- 비상사태에 대비한 인력·물자 등 비상대비훈련 실시(7일 초과 불가) - 평시 비상대비준비법령, 병력 이외의 비상대비 자원
전시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3조	①교전상태에 있어서 국방상의 목적을 위하여 ~ ~ 대통령은 ~ ~ 국가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다. • 전시대기법으로서 동원령 선포요건 명문화
병역법 제26조, 제31조	- 병력동원소집은 ~ ~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 ~ 행한다. -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 또는 점검을 위하여 ~ ~ 年30일 이내 실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2조, 제5조, 제6조	- 제 2 조 1 :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 수요를 위한 동원예의 대비 - 제 5 조 :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근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동원을 명할 수 있다. - 제 6 조 :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年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훈련 실시
훈령43호 (비상대비업무 종합지침)	- 충무II종 사태시 : 적의 전쟁도발 징후가 고조되어 전쟁의 위협이 가일층 농후한 상황 - 국무회의 의결 → 동원령 선포 → 국회통보

법적인 보장은 동원령 선포의 시기가 되는데, 헌법 제76조제2항에 “國家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交戰狀態”일 경우에만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요건(시기)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전쟁대비를 위한 구체적인 동원령 선포에 대한 명문화된 법률은 전시대기법인 “전시 자원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 긴급명령)” 제13조제1항에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防上의 目的을 위하여 …… 大統領은 …… 國家動員令을 宣布할 수 있다.”라고 동원령 선포요건(시기)을 명시하고 있는바, 여기서 “중대한 交戰狀態” 또는 “交戰狀態”란 상황의 해석이다.

“交戰狀態”란 쌍방간의 일종의 武力衝突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무력의 충돌은 도발의지 → 도발의 위태로움 → 도발가능성 확산 등의 과정이 생략된 결과론적인 상황으로밖에 볼 수 없다. 즉 動員令 宣布要件이 戰爭의 抑制, 事前 豫防的 概念으로까지 해석되어야 한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사후적인 결과에 따른 동원령 선포요건은 전시대기법에 동원령 선포요건을 수용하고 있다는 문제점과 함께 동원령 선포의 시기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크게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또한 法律 體系上으로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상 대통령 긴급명령권 → 전시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전시대비법)에 의거 동원령 선포 → 훈령 43호에 의거 동원령 선포토록 규정하고 있어 上位法과의 相衡關係에 있다. 즉 헌법 제76조제2항에 의한 긴급명령권을 근거로 전시대기법인 “전시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의거 동원령 선포가 가능토록 되어 있고, 구체적인 발동요건은 정부가 국가비상사태시 취하여야 할 지침을 규정하고 있는 “非常

對備業務 綜合指針”(대통령훈령 43호)은 충무II종 사태시 國防部長官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동원령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충무II종 사태란 “적의 전쟁도발 징후가 고조되어 전쟁의 위협이 가일층 농후한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憲法上の “중대한 交戰狀態”와 戰時資源管理에 관한 法律(案)上の “交戰狀態” 訓令 43號상의 “威脅이 가일층 농후한 狀況” 등의 위협정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

또한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전시근로동원법 등 동원과 관계되는 개별법에는 각기 동원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동원령 선포를 위한 법적 근거는 제정되어 있지 않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시대비법인 “전시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상 분석된 問題點을 요약하여 보면

첫째, 동원관계 개별법은 동원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전시대비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動員令 宣布에 대한 法的 根據가 동원령 선포시기를 포함하여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며,

둘째, 우리 나라는 총동원 개념에 따른 단일 운용체제로서 융통성있는 事前動員/部分動員 등의 운영의 제도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못하고,

셋째, “동원”이란 용어자체가 우리의 국방환경과 걸맞지 않게

4) 대통령훈령 43호의 충무II종사태 “적의 전쟁 도발징후가 고조되어 전쟁의 위협이 가일층 농후한 상황”이라는 개념이 헌법상의 대통령 긴급명령권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해당된다는 광의의 통치행위로 해석하는 일부 견해도 있다.

否定的으로 인식되어 그 동안 정권수호라는 측면과 연계 수용됨으로써 법률용어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까닭에 동원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되어 있지 못한 실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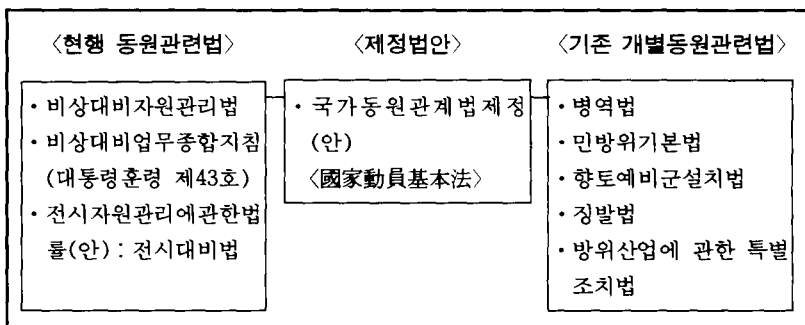
(2) 發展方向

1) 基本方向

戰·平時 單一動員法 制定으로 동원능력을 극대화하고 동원령 선포권 및 선포요건을 규정하고 事前動員, 部分動員의 법적 근거를 설정하고 평시 자원관리와 동원체계가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動員關係 法令을 정비한다.

2) 法體系 構成

이미 평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원에 관한 법률이 전·평시 이원화법으로 준비되어 있어, 이를 單一法으로 정비하여 一元化된 一般法으로 國家動員基本法(案)을 제정하고 기존의 개별동원관련법은 제정목적에 따라 개별법적 효력을 유지하고 국가동원기본법(안)에 대한 법체계를 [그림 1]과 같이 구성한다.



[그림 1] 國家動員 關係法令 構成體系

제정될 가칭 “國家動員基本法”(案)은 戰·平時 單一法 制定으로 戰時 迅速動員體制를 구축하고 특히 평시에 동원체제를 완비토록 한다. 제정안에는 動員令 宣布要件 및 節次, 動員의 範圍, 動員의 分類, 動員의 準備, 動員節次, 他法과의 關係 등을 체계적으로 제정하여 미래지향적인 국방환경과 문민정부 수립에 부응한 대국민 동원에 대한 인식과 홍보를 활성화하여 국가안위와 국익보장에 직결되어 있는 動員에 대한 認識이 生活化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나. 人的資源動員 側面

(1) 評 價

동원에 있어 인적자원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人力動員資源과 兵力動員資源으로 구분되는데, 인력동원 대상자원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에 의한 重點管理指定對象 業體의 從事者로서 20~50세까지의 남자(第1種動員)와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와 과학기술자⁵⁾를 말하며(第2種動員: 20~60세까지 남·여), 병력동원대상자원은 병역법에 의한 군부대의 작전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자원을 말한다.

人力動員對象資源 중 전시 군에서 긴요하게 소요되는 국가기술 자격/면허의 분류는 <표 4>와 같이 24개 분야 188직종으로서 우

5) 과학기술자라 함은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각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리 나라의 산업발전 영역과 추세로 보아 취득된 국가기술자격/면허가 제대로 관리만 된다면 크게 문제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兵力動員 對象 側面의 資源에 重點을 두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戰時兵力運用計劃上에서 兵力動員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는 자원은 57.5%에 해당하는 〇〇〇만명으로서 그 중 54%에 해당하는 〇〇〇만명이 긴급단계에 동원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특히 부대 증·창설 소요에 충당토록 되어 있다. 이러한 兵力動員召集은

〈표 4〉 國家技術資格/免許 分類表

분	아	직	종	분	아	직	종
기	계	41		정	보	처	리
금	속	13		에	너	지	5
화	공	10		국	토	개	발
전	기	5		해		양	2
전	자	4		안	전	관	리
통	신	4		생	산	관	리
조	선	10		산	업	응	용
항	공	9		환	경	관	리
토	목	10		교		통	1
건	축	12		서	비	스	5
섬	유	7		사	무	관	리
광	업	5		의		약	21
24개 분야				188직종			

전시, 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하여 豫備役, 방위병 및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補充役, 교육소집복무를 마친 보충역, 병역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 행하며, 병력동원자원의 인도·인접 장소까지의 引率責任은 각 地方兵務廳 責任하에 있다.

그리고 현 우리의 兵力動員運營計劃은 1년 365일을 12단계로 구분 1, 2, 3단계를 緊急段階로, 4단계 이후를 正常段階⁶⁾로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긴급단계 중 1단계 ○일간, 2단계 ○일간은 동원속도 단축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제 운용개념이고, 3단계 ○일간은 일수제이며, 이는 북한의 예상공격양상, 현대전의 특성인 속전속결 등의 속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동원단계 개념의 근원을 살펴보면 휴전 이후 1958년 최초로 동원제도가 형성되면서 15일간을 동원기간으로 설정한 것이 그 시초라 할 수 있으며, 그 후 1961년까지 15일간 → 60일간 → 30일간 등으로 동원기간이 변화를 거듭하였으며, 1965년 韓·美간에 動員制度 研究委員會가 발족되면서 緊急動員 및 正常動員 概念이 도입되고 당시의 군사개념인 15일 전쟁개념에 따라 M~M+14일간의 긴급단계 동원개념이 정착되었고, 정상단계는 전쟁지속기간을 고려하여 9개 단계로 세분화하여 180일인 6개월의 동원개념이 설정되었다.

그 후 1974년에는 動員段階를 12段階로 구분하면서 1년 365일을 동원계획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1985년에는 군사환경 변화에

6) 긴급단계라 함은 평시에 매년도 병력동원운영계획에 의거 소집부대로 동원대상자를 지정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정상단계는 평시에는 대상병력 자원만을 파악하고 관리하다가 매 단계별로 동원 4일전에 동원지정하는, 즉 주로 손실보충에 충당하는 개념이다.

〈표 5〉 後位調整(또는 動員保留·免除)對象 要請趨勢

대 상	관련부처	후위조정 요청사유	제기연도
○ 방 송 시 설 경 비 요 원	문 공 부	방송시설 방호대책	1968
○ 특 수 과 학 기 술 자	과학기술처	전시 과학기술진흥	1969
○ 수 송 요 원	교 통 부	전시 수송동원의 원활화	1969
○ 통 신 요 원	체 신 부	원활한 전시문서 수발업무 확립	1970
○ 교 도 관	법 무 부		1971
○ 식 량 증 산 후 방 요 원	농 립 부	식량증산을 위한 후방요원 확보	1972
○ 중학이상교사	문 교 부	전시교육 계속	1973
○ 화 학 요 원	과학기술처		1974
○ 동 원 업 체 기 술 요 원	교 통 부		1975
○ 철도기능사	교 통 부		1976
○ 선 원	교 통 부		1976
○ 부두근로자	교 통 부		1976
○ 교도소일반직	법 무 부		1978
○ 동 원 관 련 종 사 자	농 립 부		1979
○ 의용소방대원	내 무 부	전시소방공무원 충원대책	1979
○ 경 찰 관	내 무 부	전시경찰 충원대책	1981
○ 공 무 원	내 무 부	긴급단계 동원시 업무수행 차질	1982
○ 방 범 대 원	내 무 부	방범임무 차질	1982
○ 전 시 농 촌 지 도 인 력	농 수 산 부		1982
○ 방 송 요 원	문 공 부	전시 방송출연 인사 확보	1982
○ 공중보건의	보 사 부		1984
○ 전 공 무 원	총 무 처	초기 대량손실로 인한 행정공백 방지	1985
○ 심리전요원	문 공 부	심리전 전담요원 확보	1985

資料 : 非常企劃委員會, 을지훈련결과(종합), 1988.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긴급단계 1, 2, 3단계가 ○일간으로 정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음 병력동원 운영계획 중 後位調整 부분을 살펴보겠다.

후위조정이라 함은 병력동원시 緊急段階에서 동원해야 할 兵力資源을 正常段階에서 동원함으로써 시간적으로 동원을 연기시키도록 조정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병역법 제59조, 병역법 시행령 제107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5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11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7조, 병무청 훈령 130호, 제5조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즉 병역법 제59조는 후위조정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고,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5조 규정은 動員保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그 내용상으로 볼 때 같은 개념의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병력동원의 후위조정 인원을 긴급단계 병력동원 인원과 대비할 때 12%에 이르는 ○○○천여 명에 이르고 있어 大規模 兵力資源의 漏出現狀으로 보이며, 이는 전시라는 가정사항으로 계획된 것이어서 병역제도상의 특례보충역만큼 논점화로 대두되고 있지는 못하나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전시 초기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전황을 고려할 때 一種의 兵役 特惠措置이기 때문이다.

또한 후위조정(또는 동원보류·면제)대상 요청도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속적인 후위조정의 증대요청에 따라 動員保障率의 適正性 및 兵役義務 衡平性 問題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는 주무부처의 현업 업무 중심사고에서 병력동원에 대한 경시성향을 불식해야겠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바이다.

이상 兵力資源 動員態勢 측면에서 분석된 問題點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 병력동원운용계획상 緊急段階에서 兵力動員의 54%에 해당하는 〇〇〇〇천여 명이 주로 증·창설소요에 충당토록 계획되어 있는데 거주지의 잦은 이동대상자원들의 유동성, 수송망의 혼잡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이의 實現性이 매우 의문시되며,

둘째 : 현 동원계획의 단계구조가 긴급단계 3개 단계, 정상단계 9개 단계로 1년 365일간을 12단계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 지구전에 대비한다는 측면의 고려도 있겠으나 計劃을 위한 計劃으로 現實性이 의문시되고,

셋째 : 병력동원운용계획상 후위조정 문제인데 이는 動員保障率 側面과 兵役義務 衡平性 側面에서 問題가 제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發展方向

1) 常勤豫備役(兵) 服務制度 提案

병력동원운용계획상 緊急段階 所要의 일부를 준비도가 높은 常勤豫備役으로 확보한다. 특히 상비군 감축환경 도래시 그에 상응한 代替戰力 確保의 한 방안도 마련하면서 상비군의 經濟的인 代替戰力으로서 豫備役의 活用方案도 동시에 모색할 수 있는 총체 전력(Total-Force) 구성의 일환으로 **상비군** + **예비군** 개념의 전력배합(Force-mix) 개념의 한 방안으로 상근예비역(병) 복무제도를 제안한다.

〈概 念〉

일정기간 현역(병)으로 복무 후 예비역 신분으로 전환 병역의 무의 일환으로 잔여 현역복무에 상응하는 일정기간 소집(“상근예비역소집”)되어 자가출퇴근으로 근무하는 제도이다. 총복무기간은 현역(병) 12개월 + 예비역(병) 상근 16~18개월=28~30개월이며 상근예비역의 위상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6〉 常勤豫備役의 位相

구 분	현 역	예 비 역	
		상 근	비상근(현예비역)
복 무	재 영 상시근무	상근예비역으로 소집 되어 在家 상시근무	• 병력동원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시만 근무
성 격	상 비 군	준상비군 성격의 예비군	• 예 비 군
신 분	군 인	소집기간 군인	• 평시 민간인 • 소집시 군인

상근예비역(병)에 대한 제도는 '93년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94년부터 도입 추진 중에 있다. 이 제도는 우연히도 防衛兵制度 廢止와 시기적으로 연계되어 1단계 향토방위분야부터 적용토록 하였으나, 본 제안자의 연구발상은 常備軍 減縮環境 도래시 常備軍의 代替戰力 確保와 兵力動員運用計劃上 緊急段階 所要의 核心兵力의 주요 부분을 전력지수와 준비도가 높은 상근예비역으로 확보해 두자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구상은 앞으로 연구 정립될 將校/下士官 분야의 예비역 상근 복무제도와 함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단계, 3단계의 분야까지 확대 적용되었을 때 명실공히 상비군 대체능력을 가진 예비역제도가 정착되면서 병력동원운용계획상의 긴급단계 핵심자원도 상당부분 사전에 확보될 수 있으며 또한 현역복무 대신 豫備役으로도 兵役義務를 수행할 수 있는 병역제도로써 활로가 개척될 것이다.

<표 7> 常勤豫備役 服務 適用 對象分野

군 사 분 야	郷土防衛分野	1 단 계
	郷土師團, 動員師團, 有關司令部	2 단 계
	기타 軍事分野	3 단 계

2) 動員段階 調整方案

동원단계의 시간(일자)구분 및 동원대상을 중심으로 병력동원 단계의 조정방안을 제시하면 <표 8>, <표 9>와 같다.

兵力動員의 緊急段階는 현재 우리의 5~7 작전개념에 따라 ○ 일간으로 설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도보자원, 자도자원, 타도자원 등의 시간대 구분은 교통 및 생활권 등의 발달로 구분의 타당성이 약하게 되어 현실성이 없으므로 時間區分을 日數單位로 통일하여 일수내에서 적절히 운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조기경보능력 제한 및 사전 임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 先召集段階(사전동원개념)로서 超緊急段階(M-1D)를 설정하여 모체부대 동원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표 8〉

緊急段階 調整方案

구분	현 단계		개선 단계		비 고	
시간	—		초긴급 단 계	M	선소집단계로서 모체 부대동원자원을 대상	시간구분을 일수 (D) 단위로 통일
	1단계	M	1단계	M	도보자원 성격 무의미 (교통발달)	
		M				
		M				
	2단계	M	2단계	M ~ M		
		M				
	3단계	M	3단계	M ~ M	긴급단계 동원완료	
		M				
		M				
	자 원	—		초긴급 단 계		
1단계		%	1단계			
2단계		%	2단계			
3단계			3단계			

正常段階 調整方案은 〈표 9〉와 같이 전쟁 2개월분, 즉 제4단계의 증·창설, 제5단계, 제6단계의 초기 손실보충단계까지는計劃과

執行이 일치하도록 하고 제7단계 이후는 豫備段階로서 손실보충
소요만 있는 현 단계의 세분화는 무의미하므로 단계 구분없이 자
원만 관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였다.

〈표 9〉 正常段階 調整方案

현 단 계	단 계	4	5	6	7	8	9	10	11	12
	일 자 (D)	M	M	M	M	M	M	M	M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간 격	일	일			일				
개 선 단 계	단 계	4	5	6	예 비 단 계					
	일 자 (D)	M	M	M	단계 구분없이 자원만 관리					
		~ M	~ M	~ M						
	간 격	일	일							
비 고		증·창설 완 료	초기 손실 보충 단계		손실보충 소요만 있는 7단계 이후의 세분화는 무의미, 현 7단계 이후 동 원단계화 폐지					

3) 兵力動員 後位調整 方案

(가) 基本方向

현 사회의 변화추세에 비춰볼 때 점점 늘어나는 병력동원 후위
조정 직종 중 대체자원이 풍부한 직종은 縮小 調整함으로써 兵役
義務의 衡平性を 提高하고 정예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로 인하여 병력동원에 대한 對國民 인식

활성화도 가능하리라 본다.

(나) 改善方案

현재 여러 법령들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후위조정에 관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다음 <표 10>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0> 後位調整 關係法令 整備

현 근 거	병역법 제59조, 병역법시행령 제107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1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7조, 병무청훈령 130호 제5조
개 선근거	↓ 병역법 제59조, 병역법시행령 제107조
병 역 법 제 59 조	국가동원기능수행 국가기관, 방위산업체 종사자 ※ 대통령령으로 규정
병 역 법 시 행 령 제 107 조	1. 전시동원업무 관련분야 공무원 2. 군 무 원 3. 주한외국공관 재직 필수요원 4. 방위산업체 또는 동원업체 필수요원 5. 기타 국가기관·공공기관 필수요원

<표 10>에서 보듯이 후위조정에 관한 법적 근거는 병역법 체계에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체계의 병력동원보류 개념까지를 포괄하고 있으며, 또한 병무청 훈령에서도 다

〈표 11〉

後位調整 對象職位

구 분	세 부 내 용
전시동원업무 종사공무원	1. 원·부·처·청, 시·도 비상계획업무 담당 2. 시·도, 구·시·군 물자동원 담당 3. 병무행정분야 종사자 중 대체불가 직위 4. 전시 방송요원 중 대체자원 부재 직위
국정운영자	1. 국회의원 2. 차관급이상 국가공무원
주한외국공관 근무자	1. 외무부가 인정한 외교유지상 필요 직위
방위산업체 근무자	1. 면허증, 자격증 소지자로 당해직종 6월 이상 종사자 2. 비상계획업무 담당 1년 이상자 3. 방위산업 연구개발과제 수행 연구요원으로 당해 6월 이상 종사자
동원업체 필수요원	"
국가기관 필수요원	1. 대통령 비서실·경호실 소속 2.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3. 중앙전파감시소 기술직 4. 중앙기상대 및 산하기관 통신직 필수인원 중 대체자원 부재 직위 5. 민방공 경보통제소·지방경보단말 요원

구 분	세 부 내 용
공 공 기 관 필 수 요 원	1. 대한적십자사·산하기관 기술직으로 대체자원 부재 직위 2. 한국전기통신공사 안보·경호 통신분야/공중전기 통 신시설분야 3. 우편물 운송요원/집배원 중 대체자원 부재 직위
공 안 행 정 및 질서유지요원	1. 민방위대장 2. 지역예비군 말단 지휘조직 간부 3.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4. 군부대 군무원 중 전투직 및 전투지원직 종사자 5. 항로표지 공무원 6. 해안무선국 통신사, 정비사 7. 주요기관 청원경찰로서 대체자원 부재 직위 8. 기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
공 중 서 비 스 종 사 자	1. 철도종사원(기관사, 승무검차원, 구내원, 역무원, 운 전원, 차장, 검수원, 선로원, 간수, 보안원, 일차원) 및 지하철 종사자 중 대체자원 부재 직위 2.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중 대체자원 부재 직위 3. 해외선박근무 선원, 항공기조종사, 항공기승무원
32개 분야	

양하게 다루고 있는바, 法的 根據의 統一을 추구하여 兵役法 體系에서 이를 규정하도록 제시하였다.

이같은 입장에서 통일된 법적 근거에 의거 후위조정 대상직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표 11>과 같다. 일종의 병역특례제도로서 판단되는 후위조정 대상을 포괄적인 개념에서 축소하고자 하였으며, 이 결과 현재 56個 分野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32個 分野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다. 物的資源動員 側面

정부의 전시대비계획인 忠武計劃⁷⁾에 의하면 병력동원(국방), 인력동원(내무), 산업동원(농림수산·상공자원·내무), 수송동원(교통), 건설동원(건설), 재정·경제(경기원·재무·내무), 통신(체신), 홍보매체(공보) 등으로 동원계획구조가 설정되어 있는데, 物的資源動員 側面은 그 중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産業動員 중 군사작전지원(軍需)을 위한 방산 및 공산품 동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評 價

전시 소요대비 방산품목의 보유현황으로서 戰爭日數別 銃砲·彈藥 分野의 소요 충족도를 살펴보면, 기본병기는 90일 소요의 ○

7) 총무계획이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국가의 인력, 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전시대비계획으로서 기본계획(국무총리), 집행계획(주무부장관), 시행계획(시·도지사), 실시계획(시·군·구청장) 등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 1년 소요의 ○○%가 보유 및 비축되어 있으며, 현재의 보유 및 비축량은 전시소요의 ○○일분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다.

원자재 비축 및 생산능력 현황으로서 원자재 비축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총원자재 비축액은 215억원이며 기본병기분야의 비축액은 141억원이고, 총포·탄약 중 원자재 비축을 하고 있는 품목은 전차, 장갑차, 일부 소총류, 일부 탄약류(4품목)뿐이며, 비축금액도 매우 부족한 실태이다. 주요품목의 원자재의 인도기간이 대개 90일 이상임을 고려할 때 전시에 생산을 위해서는 비축량에 태부족(소요대비 ○○% 확보수준)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 방산업체의 연간 생산능력은 1년 대비 부족량을 ○○%밖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90일 소요기준 주요 방산품목의 부족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 600억원이다. 원자재 비축이 부족하여 주요 방산품목의 전시 90일간 생산량은 ○○○○○○○○○○이며, 원자재의 해외도입 소요기간도 보통 90일 이상 소요되므로 생산동원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

다음 공산품 중 장구류를 살펴보면 군수소요가 47품목이며, 관수소요가 3품목으로서 이들 50개 품목 중 수용동원으로서 대체가능품목이 11품목이며 대체공급할 수 있는 품목이 13개 품목으로서 거의 반 정도인 48%의 품목이 민·군 공용품목으로 판단된다.

物的資源動員 側面에서의 전시동원능력 評價를 요약하여 보면

첫째 : 전시 防產動員能力은 현 방산품의 보유비축으로는 전쟁 발발시 ○○일 정도 유지될 것으로 추정되고

둘째 : 특히 防產業體管理가 전·평시 二元化 體制로 전시 방산업체의 생산동원은 매우 제한적, 비효율적이며

셋째 : 전시대비 원자재 備蓄 및 生産體制에 대한 전면적인 再檢討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發展方向

基本方向 : 資源節約型 動員(經濟性), 産業動員連繫體制 強化

자원동원은 산업체의 시설투자, 수출 등 국가경제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소요와 지원능력을 고려하여 군사활동에 극히 필요한 戰爭 必須軍需物資는 100% 軍에서 보유토록 하되, 민·군 공용가능한 장비, 물자, 시설⁸⁾ 등은 평시 민에서 활용토록 하다가 전시에는 즉각 동원자원으로 충당하는 資源節約型 動員制度가 산업발전 및 군사개념 발전추세와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전시동원수준은 전시 총소요 중 현보유수준, 비축수준 등과 포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비축수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전시동원과 비축은 자원활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고 경제성이 보장되도록 평시 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자원수급 비축이 전시대비 비축제도와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유관 정부부처의 정책과 예산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일 수준 ⇒ ○○일 수준

마지막으로 현재 防産業體의 管理體系가 평시에는 국방부체제에서, 전시에는 상공자원부체제에서 관리토록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를 방산분야의 평시 육성과 전시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8) 예 : 장비 - 토목 건설장비 등, 공산품 물자 : 배낭, 모포, 등산장구 등
시설 - 의료시설 등

상공자원부 측면으로 一元化 摸索을 제안하는 바이다.

4. 結 論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소중하게 주장하면서도 그러한 자유와 이익을 근원적으로 보장해 주는 주체, 즉 國家의 安保에 대한 必要性을 인식하고 그에 상응한 代價를 지불하는 데는 매우 둔감한 경향이 오늘의 사회현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민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관심사는 국민 생존권의 기반인 국가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위하는 것이다.”라고 갈파한 루소의 표현은 국가안보에 대한 필요성의 정곡을 찌른 사상으로 여겨진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인한 잿더미에서 일본을 경제대국의 기초인 고도성장으로 회생시킨 재상 佐藤가 '70년대 초 국정의 최우선 목표를 국가안보에 두고 “그 준비태세는 평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안보는 100%가 아니라 200%, 300% 그 이상으로 다져져야 한다.”라고 주장한 점 등은 오랜 역사 속에서 외침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체험한 우리로서 시대환경이 바뀌었으나 음미해야 할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安保에 대한 第1次的 手段인 軍事的 側面的 戰時對備機能인 國家動員態勢를

- 동원 관련법규 측면에서 “國家動員基本法”을 제정하여 문민 정부의 환경에 걸맞도록 대국민 홍보와 동원에 대한 의식이

전환되도록 유도하였으며,

- 병력동원 측면에서는 긴급단계 병력동원 준비태세를 제고하면서 상비군 감축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常勤豫備役制度를 제안하였고, 손실보충을 위한 자원관리에 중점을 둔 정상단계의 動員段階를 조정토록 하였으며, 긴급단계에 동원토록 되어 있는 병력자원을 후위조정하게 되어 있는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였고,
- 자원동원 측면은 기본방향을 資源節約型 動員이 실현되어 경제성이 보장되고 산업동원이 체계적으로 보강되도록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가안보를 위한 動員對備態勢는 先進國 進入과 統一을 지향한 우리의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더욱 요구되고 있다. 그 대표적 국가 모델이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형이 좋은 모델이다.

병학의 대가인 손자도 「無恃其不攻，恃吾有所不可」(적이 공격하지 않으리라 믿지 말고, 적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대비태세를 갖추라)라 하였으니 전쟁에 대한 대비기능은 평시에 튼튼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周邊國 社會科 教科書 比較檢討

－ 軍 關聯內容을 中心으로 －

李 在 範

(國防軍史研究所 先任研究員)

1. 序 論
2. 周邊國 教科書 比較檢討
3. 우리나라 教科書의 實態 및 周邊國과의 比較
4. 結 論

1. 序 論

國家安保를 위한 對策은 여러 側面에서 강구될 수 있으나, 크게 兵力의 增強, 武器의 先進化 등 物理的 手段을 통한 對策과 精神的인 教育을 통한 對策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본고는 國防軍史研究所의 《軍事研究》 94-3 〈安保教育內容 分析〉을 축약한 내용임.

物理的인 安保手段의 狀況判斷에 대한 測定은 可視的인 軍事力과 經濟力 등의 統計數値를 이용한 直接 比較로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精神的인 安保狀況의 測定은 安保의 直接 擔當者인 國民 個個人的 無形의 安保意識을 一定한 基準을 정하여 측정·평가한다는 점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 人間의 性格이나 環境 등의 差異에 따라 意識의 形成에서도 매우 큰 個人差를 나타내므로,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 全國民의 普遍的인 安保意識 狀態를 측정한다는 것은 難題임에 틀림없다.

그리하여 本稿에서는 義務教育이 포함된 制度圈 教育의 教科書를 통하여 國民安保意識의 教育水準을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制度圈에서 실시하는 教科書를 對象으로 삼는 理由는 教科書의 屬性이 國民에게 가장 普遍的 知識을 공급하며, 統一性を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體系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教科書는 國定이며, 一部가 檢認定이라고는 하여도 國定이나 다름없는 教育部의 統制에 의하여 編纂되었으므로, 一般的인 基準 設定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보다 일반화된 객관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周邊國의 教科書와 비교 검토하여 보았다.¹⁾ 周邊國은 언젠가는 우리의 安保에 影響을 미칠 나라들로서 이 나라들의 教科書에서는 安保에 關하여 어떤 教育을 하고 있는지, 그 內容을 우리나라 教科書와 比較한다는 것은 바로 安保意識의 間接的인 比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比較 檢討는 우리나라 教科書의 安保內容에 대한 一般性 確認

1) 美國, 日本, 臺灣, 北韓, 러시아 등 5개국의 교과서를 참조하였다. 러시아는 극히 制限的으로밖에 취급하지 못하였다.

에 寄與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또한 韓國의 安保教育의 特徵을 더욱 뚜렷이 浮刻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補完點 抽出에도 有用하리라고 여겨진다.

2. 周邊國 教科書 比較檢討

本章에서는 周邊國의 教科書에 反映된 安保教育의 內容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點에 着眼하여 比較 檢討해 보려고 한다.

첫째, 安保와 關聯되는 內容의 教育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實施時期에 關한 것이다.

둘째, 安保와 關聯된 內容은 量的으로 어떤 比重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安保教育 內容의 分量比較는 全體 教育에서 安保教育이 차지하는 比重을 살펴보는 하나의 尺度가 될 것이다.

셋째, 安保教育의 內容上 比較를 通하여 周邊國 安保教育 內容의 具體的 實相과 그 特徵을 把握해 보고자 한다. 이 比較를 通하여 周邊國 安保觀의 特徵과 이에 對比한 安保教育의 方向을 確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周邊國 教科書 比較分析의 結果를 土臺로 하여 우리나라의 教科書와 比較해 보려고 한다. 이 比較는 우리나라의 教科教育에서의 安保教育은 世界 여러 나라들과 비교할 境遇 어느 程度의 水準에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安保教育의 客觀性 내지는 一般性을 獲得하기 爲한 豫備의 根據가 되고, 더 나아가 安保教育 補完에 대한 基礎

資料의 役割을 할 수도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點을 考慮하여 分析한 結果를 項目別로 具體化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實施時期(學年別)

實施時期 比較를 통해 본 周邊國의 安保教育 狀況은 一定한 共通點을 갖는다. 結論부터 말하자면 나라의 事情에 따라 若干씩의 差異가 있긴 하지만, 모두 早期教育에 臨하고 있다는 點이다.

世界 最強의 軍事大國 美國도 安保關係 教育을 早期부터 實施하고 있다. 學年別 教科書가 없고 課程別로 教科書를 採擇하고 있는 美國에서는 國民學校 社會課程에 ‘顯忠日’이라는 單元을 設定하여 象徴적으로 安保觀 確立 教育을 실시하고 있다.²⁾ 卽, 國家에 몸바친 軍人들을 顯彰함으로써 어린 學生들에게 愛國心과 함께 國家 危急時에는 自身보다도 國家 共同體를 爲하여 犧牲할 것을 隱然中에 強調하여 潛在적으로 國家安保의 重要性을 意識化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國民學校 歷史教科書의 表紙에는 獨立戰爭 當時의 軍服을 입고 査閱을 하는 寫眞이 실리기도 한다.³⁾ 이 寫眞에는 나이 많은 베테랑에서부터 幼年의 兒童까지 參與하는 光景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寫眞 收錄은 軍에 대한 國民의 積極的인 參與를 誘導하는 것이다.

2) What is Memorial Day!, 《Communities and Their Needs》, pp. 180~181.

3) 《The United States - Past and Present-》, 表紙.

日本에서의 安保教育도 早期부터 實施된다는 點에서는 여러 나라와 共通된다. 日本의 安保關聯 教育은 社會科 6學年 課程에서 集中的으로 實施되고 있다.

日本의 早期 安保教育은 戰爭에 대한 恐怖心 浮刻과 戰爭의 拋棄를 強調하는 方向으로 展開되고 있다.⁴⁾ 이러한 戰爭拋棄를 意圖로 實施되는 安保教育의 背景은 日本의 現實과 直結된 것으로 敗戰國으로서 強制 武裝解除를 當한 日本이 處地에서는 世界の 非武裝化만이 自國을 外國의 物理的인 侵略으로부터 保護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다.

臺灣의 安保教育도 歷史的 經驗이 反映된 狀態로 早期부터 實施되고 있다. 安保關聯 教育內容은 國民學校 4學年 1學期 ‘復興의 基地’라고 하는 單元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이 단원에서는 ‘臺灣海峽의 保障은 世界自由의 安全’이라는 表題 아래 臺灣海峽을 巡視하는 艦隊의 사진을 수록하는 등 地理教育에서 國防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⁵⁾

北韓은 國民學校 1학년 課程에서부터 金日成 禮讚과 安保에 關한 教育을 徹底히 하고 있다.

國民學校 1-1學期 國語 教科書는 全部 78쪽의 分量인데, 처음 41쪽 이후부터는 金日成 禮讚과 戰鬥과 直結된 內容들이 中心을 이루게 된다.

우리 땅크 나간다

꼬마땅크 나간다

4) 小學校 社會 6-上, p. 148.

5) 國民小學 社會 第七冊, 四學年 上學期 pp. 6~11.

미국놈 쳐부시며
꼬마땅크 나간다

위의 內容은 北韓의 어린이들이 글자를 읽게 되자마자 接하는 최초의 單元이다. 이 單元은 ‘땅크’, ‘미국놈’ 등 戰爭武器와 敵에 대한 敵愾心을 露骨的으로 表現하는 單語들을 使用하고 있는 것이다.⁶⁾

러시아의 境遇는 國民學校 5學年 課程에서 19世紀의 러시아 文學作品인 ‘보로지노’를 실고 있다. 이 作品은 1812년 러시아를 侵攻한 나폴레옹 軍隊를 러시아 民衆이 擊退한 戰爭을 素材로 한 作品이다. 또한 같은 課程에 나폴레옹 戰爭과 관련된 톨스토이의 ‘戰爭과 平和’도 收錄하고 있다.

이와 같이 各國은 教科書を 通하여 早期부터 安保와 關聯된 教育을 實施하고 있다. 學年間の 差異는 있으나, 國民學校 課程에서 부터 始作하는 것이 強大國이나 弱小國, 또는 分斷國이거나 聯邦國이거나를 不問하고 共通된 事項이다. 또한 早期 安保教育의 特徵 가운데 하나는 自國의 歷史的 經驗과 關聯된 內容들이 主가 되고 있다는 點이다.

나. 量的 比較

周邊國 교과서 가운데서 安保教育의 量的 考慮가 比較的 充實한 것이 美國 歷史 教科書이다. 美國의 歷史가 植民地 開拓과 獨

6) 인민학교 국어 1-1 pp. 42~43.

立戰爭, 南北戰爭 等 많은 戰爭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른 歷史的 事實이 잘 反映되고 있다.⁷⁾ 그리고 內容에서 이 過程을 成功的으로 遂行하게 된 밑거름은 軍事力이라는 事實을 圖面이나 寫眞을 活用하여 間接적으로 認識시키고 있다. 이 教科書에는 戰爭 및 軍事關聯의 圖面과 插畫가 80回 以上이나 登場한다.

이러한 경향은 高等學校 教科課程에서도 마찬가지로 本文 全體 分量 761쪽의 半이 넘는 490쪽이 된다.⁸⁾ 이러한 歷史敍述 態度는 國家 存立과 國防, 軍事와의 密接한 關聯性을 敎育하고자 하는 意圖의 發顯이라고 할 수 있다.

安保敎育의 量的인 面에 있어서 日本도 상당히 많은 部分을 割愛하고 있다. 國民學校 6學年 社會科(上160·下80, 下는 1945年 以後) 教科書는 日本의 歷史만을 敎育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9世紀 以後의 歷史는 戰爭과 平和 等 安保와 關聯된 內容이 거의 大部分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3分の 1 가량의 內容이 現代史이며 그 敍述은 대부분 戰爭과 原爆 등에 關한 敍述로 채워져 있다. 또한 중학교 교과서도 이와 비슷하다.⁹⁾ 또한 總合安保라는 日本의 安保觀은 非但 軍事뿐만 아니라 自國의 災害까지도 安全保障의 概念에 包含시키고 있기 때문에 日本 教科書가 安保敎育에 쏟고 있는 分量은 적지 않다.¹⁰⁾

臺灣의 境遇도 安保敎育의 內容이 차지하는 量的 比重이 커서

7) 《The United States - Past and Present-》의 목차 참조.

8) 《The American History -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목차 참조.

9) 중학교 과정의 목차도 그 기본정신은 국민학교 교과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10) 小學校 4上 pp. 46~76.

앞에서 언급한 4學年 1學期 課程의 ‘復興의基地’ 밖에도 ‘金門回顧’라고 하는 單元에서는 이곳에서 벌어졌던 共產軍과의 戰鬪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고, 이 밖에도 1874年 沈葆楨이나 1884年 中法戰爭에서 승리한 劉銘傳의 行蹟과 함께 그가 建築한 砲臺를 寫眞으로 收錄하여 安保에 대한 意識을 鼓吹하고 있다.

量的 比較로 본 安保教育에 대한 積極性은 北韓을 따라갈 나라가 없다. 이를 全體 教科內容을 對象으로 한다는 것은 無理한 일이므로 國語 教科書에 收錄된 內容만을 學年別로 全體 分量과 安保教育의 內容을 單元別·面數別로 整理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¹¹⁾

〈表〉 北韓 國語 教科書의 安保教育 內容 比重

學年 / 內容	單 元	%	面 數	%
1 學年	6 / 31	20	23 / 80	29
2 學年	13 / 50	26	53 / 136	40
3 學年	6 / 40	15	24 / 114	22
4 學年	9 / 40	23	35 / 120	29
中 1	13 / 30	43	67 / 147	46
中 2	7 / 27	26	50 / 124	41
中 3	6 / 19	32	29 / 83	35
計	60 / 237	25	281 / 804	35

위의 〈表〉와 같이 北韓은 單元上으로는 25%, 面數로는 35%에 該當되는 量的 安保教育을 國民學校 課程에서 實施하고 있다.¹²⁾

11) 安保와 關聯된 單元の 選擇은 筆者의 主觀的인 判斷에 依하였다.

12) 北韓은 國民學校 課程이 4年, 그 다음부터는 中學校 課程이다.

또한 그 比重도 어느 學年에 偏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各 學年에 共に 均等한 比率로 나타나 있다. 위의 統計는 戰鬪 또는 이와 直接的으로 關聯되는 內容들만을 整理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나머지 單元들도 金日成과 그 家系에 대한 禮讚과 함께 社會主義 革命을 爲한 鬭爭의 立場에서 敍述되어 있으므로 基準의 設定에 따라 北韓의 安保關聯 敎育은 이보다 훨씬 上廻할 수도 있다.

다. 內容上(安保敎育 考慮要素別) 比較

(1) 國防에 대한 認識

국방에 대한 의식의 고취는 안보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가를 왜 지켜야 하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학교 歷史 敎科書는 美國의 最初 移住者들이 新大陸에 上陸하여 처음 始作한 活動이 自身들의 安全을 爲한 要塞 建設이었으며,¹³⁾ ‘要塞의 強化는 점점 移住者들을 強하게 하였다’¹⁴⁾라고 敍述하고, 그 뒤를 이어 移住한 英國人들의 最初의 活動도 ‘要塞의 構築’¹⁵⁾이었다 라고 하여 自身들의 生活을 維持하는데 무엇보다도 優先하는 것이 安保라는 事實을 無意識적으로 注入시키는 敍述態度를 堅持하고 있다.

13) 《Communities and Their Needs》 pp. 149~150.

14) 《Communities and Their Needs》 p. 150.

15) 《Communities and Their Needs》 p. 154.

국방에 대한 關心의 直接的인 表現은 高等學校 歷史 教科書도 마찬가지인데,¹⁶⁾ 이 教科書는 ‘安全保障’이란 單元을 設定하여 트루먼 大統領 때의 政策을 敘述하면서 ‘National Security’라고 하는 소단원을 설정하여 國防政策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¹⁷⁾ 그 內容은 世界國家로서 反共의 先頭에 선 美國의 國際的 位相을 安保 次元에서 敘述한 것이다.

아울러 레이건 大統領의 對外政策을 敘述하면서, 그의 對外政策과 美國의 戰略 및 國防政策(National Defense)을 紹介하고 있다. 여기에는 180億 달러 防衛計劃과 그 計劃의 一環으로 完成된 B-1 爆擊機를 諸元과 寫眞을 함께 收錄하고, 이 防衛計劃에 포함된 通信體制의 확장, 트리덴트 核潛艦 計劃 등을 수록하고 있다.¹⁸⁾ 이는 國防에 聖域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軍民의 일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진다.

日本도 국방의식 고취에 關하여 積極的인 教育을 實施하고 있다. 그러나 그 方向은 軍事力 增強에 比重을 두고 있는 美國과는 달리 戰爭抑止의 方向으로 展開하고 있다는 點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日本의 국방관은 好戰性을 一切 排除하고 있으며, 오히려 戰爭에 대한 恐怖와 戰爭으로 惹起될 人類社會의 慘酷함을 未然에 防止하여야 한다는 點을 強調하고 있다.

16) 《The American Tradition -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 Robert P. Green, Jr., Laura L. Becker·Robert E. Coviello, CHARLES E. MERILL PUBLISHING CO. 1986.

17) 《The American Tradition》 pp. 638~639.

18) 《The American Tradition》 pp. 739~741.

國民學校 6學年 社會科 教科書에는 東京大空襲 當時의 記錄畫, 原爆으로 廢墟가 된 히로시마의 慘狀을 찍은 寫眞¹⁹⁾과 함께 히로시마(廣島) 原爆投下 當時 4살이었던 소녀가 國民學校 5學年이 되어 原爆投下 當時의 光景을 回想한 글을 수록하여 戰爭의 慘狀과 恐怖에 關한 敎育과 함께²⁰⁾ 核擴散 禁止를 強調하는 敎育을 通한 非核 非武裝의 國防觀을 認識시키고 있다.²¹⁾

또한 ‘核兵器의 禁止’라고 하는 單元에서는 ‘核兵器의 制限과 反核運動’이라는 年表를 收錄하여 核禁止에 關한 그 동안의 過程을 紹介하고, 唯一한 被爆國으로서의 歷史를 밝힌 뒤 다시 ‘日本의 나아갈 길’이라고 하는 單元에서 “戰爭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생겨 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平和의 城砦를 쌓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유네스코憲章의 前文 一部를 結論처럼 引用하면서 日本의 歷史的 經驗을 바탕으로 하여 非好戰의이며 戰爭抑止를 爲한 國防觀을 심기에 애쓰고 있다.

臺灣의 境遇도 國防의 重要性에 대한 敎育을 強調하고 있다. 臺灣의 國防觀도 歷史的 經驗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主로 大陸에 대한 關心과 反共에 대한 意識化 등을 敎育함으로 해서 大陸에 比하여 絶對 劣勢인 軍事力의 劣等感을 克服하려는 努力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4학년 1학기 1과인 ‘復興的基地’²²⁾에서는 臺灣의 地理를 安保 次元에서 敎育하고 있으며, 같은 책 4과 ‘海峽의屏障’에서

19) 小學校 社會 6上 p. 146.

20) 小學校 社會 6上 p. 148.

21) 小學校 社會 6下 pp. 14~15.

22) 國民小學 社會 第七冊, 四學年 上學期 pp. 6~10.

는金門에 關하여 ‘福建을 공제하고 臺灣을 保衛하여 澎湖의 安全을 지킨다.…… 金門의 防衛는 鞏固하여, 地面 위는 아름다운 公園이지만 지면 아래는 단단한 鋼鐵로 만든 堡壘이며 共產軍이 여러 차례 侵略하였으나 크게 물리쳤다.’²³⁾라고 하여 安保視覺에서 敘述하고 있다.

또한 이곳의 事情을 ‘國民相處, 如同一家人’이라고 하여 軍民이 한 家族처럼 지내면서 防備에 臨한다고 하는 軍民一致를 強調하면서 國防意識을 鼓吹시키고 있다. 또한 馬祖의 境遇도 金門과 마찬가지로 戰略的 重要性和 함께 安保 次元에서 教育하고 있다.

防禦施設을 重視하는 國防觀은 ‘臺灣是我國海上的堡壘’라고 하는 單元에서도 나타난다.²⁴⁾ 여기에도 劉銘傳이 修築한 澎湖의 옛 堡壘의 寫眞을 실고 있다.

이러한 防禦 中心의 國防觀은 大陸과 항상 相對 比較되어야 하는 臺灣의 處地에서는 當然한 것이지만, 自身들의 安全保障을 教育을 通하여 最大限 活用하고자 하는 意圖를 살필 수 있는 것이다.²⁵⁾

北韓의 國防에 대한 認識은 教育을 通하여 무엇보다도 強調되고 있는 事項이다.北韓의 國防觀에 대한 教育은 科目의 差異없이 全 科目에서 一定하게 實施되고 있다. 한마디로 잘라 말하면 教育全體가 金日成을 中心으로 한 社會主義 革命 達成을 爲한 教育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北韓의 교과서에서는 國家를 지킨다는

23) 國民小學 社會 第七冊, 四學年 上學期

24) 國民小學 社會 第七冊, 四學年 上學期 pp. 84~88.

25) 國民小學 社會 第七冊, 四學年 上學期 pp. 68~70.

國民小學 社會 第七冊, 四學年 上學期 pp. 72~74.

意味에서의 國防觀보다는 攻撃的인 性向이 짙은 好戰的인 國防觀이 교육되고 있다.

(2) 軍에 대한 認識

美國은 軍을 자랑스러운 存在로 一般 國民에게 教育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教科書의 表紙에는 美國軍의 查閱場面이 담긴 寫眞이 自然스럽게 登場한다.²⁶⁾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중 이탈리아 전선에서 용전중인 미군의 사진을 실어 놓고 ‘이 병사들은 그들의 용명을 어떻게 보여 주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형의 설명문을 달아 군인들에 대한 인상을 긍정적으로 심어 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²⁷⁾

또한 軍 入隊를 勸誘하는 포스터를 教科書에 收錄하여 軍에 自願할 것을 強調하는 教育도 實施하고 있다. 軍入隊 勸誘 포스터는 高等學校 歷史 教科書에 3차례나 登場한다. 이러한 美國의 教科書 編成은 美國이 軍이라는 存在를 자랑스럽게 名譽로운 것으로 認識한다는 實證이다.

日本은 비록 戰爭抑止와 戰爭의 恐怖로부터의 解放을 強調하고 있지만, 基本的으로는 軍事를 無用視하거나 힘을 輕視하지는 않는다. 戰爭拋棄를 標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軍事의 必要性을 積極 強調하는 二律背反的인 性格의 教育을 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自衛隊 設置의 合法性을 教育하기 爲하여 自衛隊의 母體가 되는 警察豫備隊는 日本의 意志에 依한 것이 아니라 美國의 指令으로 創設되었음을 強調하여 日本 武裝化의 責任을 美國

26) 《The United States - Past to Present-》의 표지.

27) 《Understanding Our Country》, p. 415.

에 떠넘기고, 自衛隊가 ‘平和憲法’²⁸⁾에 違背되지 않는 合法的인 것이라고 敎育하고 있다.²⁹⁾

이와 같이 日本은 基本的으로 平和를 목적으로 한 戰爭拋棄의 安保敎育을 實施하고 있으나, 그 실상은 軍事力 增強에 무게의 中心을 두고 있는 것이다.

臺灣에서도 軍의 필요성에 대한 敎育은 매우 積極的으로 實施되고 있다. 臺灣의 教科書에는 인물들의 軍事的 活動을 통하여 軍의 所重함을 認識시키고 있다.

또한 軍事活動을 통하여 臺灣을 구출한 鄭成功의 치적을 높이 사고 있는 것도 劉銘傳의 경우와 같은 脈絡에서 이해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다.³⁰⁾

‘國民革命과 臺灣’에서도 비록 실패했지만, 日本의 침략에 항거한 臺灣의 민중과 丘逢甲 등을 통하여 武力을 기반으로 한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³¹⁾ 武力 사용을 정당한 수단의 하나로 인식시키는 敎育은 곧 武力에 合法性을 부여한 軍을 肯定的으로 파악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北韓의 軍에 대한 認識敎育은 必要성의 정도를 넘어 절대적인 것으로 敎育하고 있으며, 安保 次元을 넘어 好戰的인 軍人像을 부각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민학교 과정에서부터 전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고 있다. 고등중학교 과정 제4과 ‘꼬마보초병’³²⁾은 제목 그대로 步哨를 잘 서는

28) 小學校 社會 6下 p. 41.

29) 小學校 社會 6下 p. 41, 中學社會 公民 p. 47.

30) 國民小學 社會 第七冊, 四學年 上學期 pp. 87~95.

31) 國民小學 社會 第七冊, 四學年 上學期 pp. 96~100.

32) 고등중학교 국어 1 pp. 17~22.

少年哨兵의 예이며, 제7과 ‘어린동무 노래 부르자’³³⁾는 제목과는 달리 그 내용 가운데에는 ‘……동무들 어린군인 노래 부르자……’라고 하여 軍人을 찬양하는 好戰的인 詩가 실려 있다. 이러한 北韓의 교육의 저의는 두말 할것없이 幼年時節부터 軍人에 대한 憧憬과 自發的인 戰鬥의 참여를 유도하자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것은 北韓의 ‘4大 基本路線’ 가운데 하나인 ‘全人民의 武裝化’를 교과서를 통하여 철저하게 주입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거짓없이 보여 주는 한 예에 불과하다.

이 밖에도 北韓의 중·고등학교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학교 교육에서도 ‘꼬마 유격대’ 등 軍에 대한 自發的인 참여와 이를 찬양하는 내용의 교과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여자들의 參戰活動도 소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말한 ‘4大 基本路線’의 遂行 일 뿐만 아니라, 全 國民이 戰士라는 인식을 통하여 唯一思想體制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엮어매는 한 수단이기도 한 것이다.

(3) 戰爭에 대한 認識

美國의 國防과 軍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戰爭에 대한 인식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美國의 戰爭에 관한 교육도 매우 肯定的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먼저 교육의 방향부터 말한다면 戰爭의 예방이 아니라 오히려 戰爭 當爲論的인 好戰的 戰爭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戰爭에 대한 인식은 教科書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美國은 植民地 상태에서 벗어난 계기가 英國과의 戰爭에서 勝利한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구태여 好戰性을 배제하려고 하지 않는다.

33) 고등중학교 국어 1 pp. 31~32.

마찬가지로 戰爭에 있어서 必須的인 武力의 사용에 있어서도 自制를 목적으로 한 教育을 하지 않는다. 武力의 사용도 그 목적이 合法的인 경우에는 肯定的이라는 내용의 教育을 실시하고 있다.

필요없는 戰爭이 아니라 필요한 戰爭이라고 하는 美國人의 관념은 교과서의 도면이나 사진의 수록 및 배치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그리하여 戰爭에 관한 사실들의 구체적 서술 이외에도 이와 관련된 사진·삽화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戰爭과 관련된 狀況圖는 단순히 개황을 살피는 補助資料가 아니라 戰爭狀況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작성된 必須資料의 성격을 띤다. 獨立戰爭의 예를 들면, 獨立戰爭이 시작되기 이전의 상황도가 3중, 開戰 이후의 상황도는 6중으로 모두 9중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南北戰爭 당시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던 게티스버그의 현장을 당시와 같이 복구한 사진을 수록하여 戰爭에 대한 의미를 학생들에게 教育하고 있으며,³⁴⁾ 國民들에게 戰爭의 참여를 積極的으로 호소하는 것도 美國의 戰爭에 대한 인식의 일면이다.³⁵⁾

戰爭에 대하여 積極的인 태도를 보이는 美國의 戰爭名分은 ‘自由와 平等’이다.³⁶⁾ 따라서 美國은 自國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名分과 관련이 있는 경우는 다른 나라의 紛爭에 개입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논리도 教育하고 있다. 韓國戰爭은 反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서술하고 있으며,³⁷⁾ 越南戰에 參戰할 수밖에

34) 《Understand Our Land》 p. 326.

35) 《The World Past to Present》 p. 297.

36) 《The American Tradition - 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
-PREFACE -

37) 《Understanding Our Country》, p. 435.

없었던 名分을 ‘世界秩序를 강화하기 위하여’³⁸⁾이다. 원자탄의 투하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인명을 구하는’³⁹⁾ 인도적인 처사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日本の 安保教育도 戰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유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唯一한 被爆國인 日本은 戰爭에 대한 恐怖心 유발과 아울러 日本이 치르었던 中日戰爭·太平洋戰爭 등을 소개하면서 戰爭으로 야기된 피해를 서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日本의 戰爭에 대한 인식 태도는 이른바 ‘平和主義’라고 하는 소단원을 설정하고, 그 내용에 戰爭 拋棄를 명시한 ‘日本憲法 第9條’를 인용함으로써 戰爭에 대한 日本人의 기본 방향이 戰爭拋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太平洋 戰爭 당시의 피해자의 수를 도표로 실고, 그 설명문을 ‘약 3년간에, 10인 가운데 3인이상이 사라지게 되었다.’⁴⁰⁾라고 서술하여 戰爭拋棄에 노력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臺灣의 경우도 戰爭에 대하여 폭 넓게 인식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즉, “人類는 平和를 追求하려고 하지만, 戰爭은 不斷히 일어나게 되며, 人類의 智慧가 커져도 國家間, 個人間에는 許多한 問題가 있으며”⁴¹⁾라고 하여 戰爭의 必然性에 대한 일반적 설명과 함께 原爆이 폭발하는 사진 등 戰爭을 연상케 하는 補助資料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같은 맥락에서 第1次世界大戰 중 美國軍과 獨逸軍의

38) 《The American Tradition -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p. 668.

39) 《Understanding Our Country》, p. 413.

40) 小學校 社會 6 - 上 p. 156.

41) 國民小學 社會 第十二冊, 六學年 下學期 p. 24.

戰鬪場面,⁴²⁾ 第2次世界大戰 中 日本軍의 眞珠灣 奇襲⁴³⁾ 등의 사건을 수록하고 있다.

北韓의 戰爭에 대한 인식 교육은 戰爭을 當然한 것으로 간주함은 물론 더 나아가 主體思想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必須的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고등중학교 1학년 과정 제26과 ‘은희에게 행복을’⁴⁴⁾에서는 大韓民國의 體制批判을 통하여 安保意識을 고취하고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투쟁의 길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미제를 몰아내고 그 앞잡이놈들을 때려 부셔야 합니다’라고 하여 北韓의 好戰的 戰爭觀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이러한 好戰的 戰爭觀은 自身들의 軍事力에 강한 自負心을 심어 주어 臨戰態勢를 확립하고자 하는 교육과 바로 연결된다. 또한 고등중학교 2학년 과정의 제9과 ‘바다는 철벽이다.’에서는 6·25戰爭시 海軍의 활약과 함께 《푸에블로》호와 《경호함 56》호에 관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戰爭의 當爲性을 교육하고 있다.⁴⁵⁾

(4) 周邊國 事情에 대한 認識

軍事 超強國 美國의 立場에서는 隣接한 國家만이 周邊國이 아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自身들의 安保上 周邊國으로 認識하고 있다. 그리하여 國民學校의 社會教科書에는 國際紛爭이란 章을 設定하여 世界 各國의 紛爭을 具體的으로 紹介하고 있는데,⁴⁶⁾ 여

42) 國民小學 社會 第十二冊, 六學年 下學期 p. 22.

43) 國民小學 社會 第十一冊, 六學年 上學期 p. 61.

44) 고등중학교 국어 1 pp. 124~131.

45) 고등중학교 국어 2 pp. 30~34.

46) 《United States - Past to Present- 》 pp. 546~649.

기에는 美國이 直·間接으로 關聯된 中東紛爭(1945~1965),⁴⁷⁾ 카리브紛爭(1955~1965),⁴⁸⁾ 韓國戰爭, 越南戰⁴⁹⁾ 等 世界의 紛爭이 網羅되어 紹介되고 있다.

周邊國 事情에 대한 敎育을 가장 敏感하게 實施하고 있는 國家가 바로 日本이다. 특히 日本은 周邊國의 國內 事情 敎育과 함께 이 나라들과 日本이 未來에 어떠한 問題로 紛爭에 휘말릴 素地가 있는가에 대한 敎育을 安保와 關聯지어 實施하고 있다.

國民學校 5學年 課程에서 單純히 國土地理로서 ‘北方四島’를 敎育하고,⁵⁰⁾ 이어 6學年 課程에서는 北方四島問題를 包含하여 銳敏한 關係에 있는 各國의 事情을 具體的으로 敍述하고 있다.⁵¹⁾ 다시 말하면 未來의 어느 時가 軍事的으로 衝突을 일으킬 素地가 있는 周邊國과의 關係를 早期부터 敎育함으로써 미리 精神的인 對備를 하자는 意圖가 깔려 있다고 보아도 좋은 것이다. 또한 美國과 소련의 군사력 比較를 구체적으로 敎育하기도 하여 주변國의 동향에 항상 관심을 갖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⁵²⁾

臺灣은 우리나라와 같은 反共國家이면서 大陸과 對峙하고 있는 關係로 周邊國에 대한 敎育에는 그다지 많은 關心을 갖고 있지 않다. 敵對關係에 있는 大陸과 反共敎育에 힘쓰고 있을 뿐이며, 自國의 經濟的 繁榮에 關한 對國民 弘報를 積極的으로 하고 있

47) 《The American Tradition -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pp. 683~684.

48) 쿠바紛爭의 敍述에는 쿠바에 配置된 蘇聯 미사일의 位置를 밝히면서 航空寫眞까지 수록하고 있다.《The American Tradition》p. 622.

49) 《The American Tradition》pp. 666~669.

50) 新編 新社會 5 - 下 p. 144.

51) 小學校 社會 6 - 下 p. 9.

52) 中學社會 公民 p. 217.

다.⁵³⁾ 이러한 점은 大陸과 相對的으로 比較 優位에 있어야 하는 臺灣의 事情이 反映된 結果라고 보인다.

北韓이 周邊國 事情에 기울이는 關心은 대단히 많다. 그 對象國들은 北韓이 帝國主義 國家로 規定한 美國과 日本 및 이 國家들과 親緣關係에 있는 資本主義 國家들이 包含된다. 中東戰爭에서의 이스라엘도 그 가운데 代表的인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⁵⁴⁾ 일본에 대해서도 帝國主義로 斷定 짓고,⁵⁵⁾ 이 國家들은 언제라도 帝國主義的 侵略을 敢行할 態勢가 갖추어져 있다고 教育하고 있다. 이는 敵愾心과도 連結이 되는 教育인데, 그 對案은 鬭爭으로 막아야 한다고 強調하고 있다.

이와 같이 臺灣을 除外한 國家들이 自身들의 安保와 關聯하여 周邊國들에 보인 關心은 國家마다 特徵이 있지만 至大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日本은 自國의 헌법에 非武裝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周邊國의 事情에 쏟고 있는 것은 特異한 點이라 하겠다.

(5) 武器와 軍費

軍費에 대해서도 必要한 費用이라는 積極的인 思考를 教育하는 나라는 美國이다. 爆擊機의 諸元과 함께 寫眞까지 收錄하여 美國의 國防에 대한 自信感을 表現함과 同時에 武器와 이를 維持하기 爲한 軍費의 切實함을 肯定的으로 教育하고 있다.⁵⁶⁾

또한 獨立戰爭 當時 英國軍을 비롯하여 스페인 등 여러 나라의

53) 社會, 國民小學 第八冊, 四學年 下學期の '艱苦奮鬥十年(pp. 84~93)', '鬭爭改造四十年(pp. 94~99)', '中國人的願望(pp. 100~107)'.

54) 고등학교 세계력사 6 pp. 89~94.

55) 고등학교 세계력사 6 pp. 95~100.

56) 《The American Tradition》, pp. 739~741.

軍人들이 銃器類를 携帶한 그림을 싣고 있다.⁵⁷⁾ 이러한 措處는 獨立戰爭에 대한 理解를 돕기 위한 것은 分明하지만, 한편으로는 敵과 我軍을 武器, 服裝 등으로 識別하는 安保 視覺에서 敘述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韓國戰爭에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에 있는 헬리콥터의 사진을 수록하고 그 설명문을 통하여 무기의 용도에 관한 설명도 하고 있다.⁵⁸⁾

軍費의 重要性에 대한 敎育을 強調하는 國家는 日本이다. 즉, 국민학교 과정에서 1935~44년까지의 10년간의 군사비를 국가예산 총액 대 군사비의 비율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프를 수록하고 있으며,⁵⁹⁾ 태평양戰爭 당시의 日本과 美國의 군사력의 비교를 도표를 이용하여 敎育하는 등,⁶⁰⁾ 安保와 經濟問題를 緊密하게 連結시켜 敎育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예산을 敎育하는 단원에서도 방위비의 비율을 밝히고 있다.⁶¹⁾

중학교 과정에서도 淸日戰爭에서 日本의 戰費는 當時 歲出의 2.5倍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며, 第1次世界大戰後의 戰爭 軍費 縮小問題, 日本의 中國侵略에서 第2次世界大戰까지를 敘述하면서도 軍費의 支出問題에 대해서는 빠뜨리지 않고 敎育을 實施하고 있으며,⁶²⁾ 자위대의 장비와 예산의 변화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57) 《Understanding Our Country》, pp. 216~7.

58) 《Understanding Our Country》 p. 435.

59) 小學校 社會 6 - 上 p. 151.

60) 小學校 社會 6 - 上, p. 153.

61) 1984年度의 國家豫算 50兆 6,272億엔의 5.8%가 防衛費라는 事實을 敎科書에 收錄하고 있다.(小學校 社會 6 - 下 p. 31)

62) 1931년에 약 31%였던 군사비의 비율이 1938년에는 약 74%까지 오른

도표화하여 밝히고 있다.⁶³⁾

臺灣의 教科書에 軍費를 項目化하여 敘述하고 있는 部分은 없다. 그러나 武器와 關聯된 寫眞이나 圖面을 찾아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미 앞서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金門이나 馬助의 砲臺, 臺灣海峽을 巡視하는 臺灣의 戰艦 등은 자주 教科書에 登場하여 軍과 民의 間隔을 좁히는 役割을 하고 있다. 抗日運動을 한 黃八妹의 部隊가 防毒面을 着用하고 小銃을 들고 鐵條網을 通過하는 寫眞도 收錄하고 있다.⁶⁴⁾

北韓 教科書에도 別項을 만들어 軍費나 武器를 敘述하고 있지는 않으나 教科目 가운데 많은 部分이 戰爭과 鬭爭에 關聯된 內容들이므로, 구태여 軍費와 武器의 比重과 관련하여 측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各國이 軍費나 武器에 대하여 어떤 教育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概略을 살펴보았다. 軍費에 대한 關心이나 武器에 관한 知識을 教科書에 싣는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好戰的인 國家나 集團이라고 看做할 수 없다는 結論에 到達하게 된다.

(6) 敵 愾 心

敵愾心은 平常時에도 自身에게 威脅을 주는 存在에 대하여 意識的으로 戰鬪와 關聯된 行動을 誘發할 수 있도록 動機를 附與하는 心理狀態로, 戰鬪에 臨한 兵士 個人이 發動할 수 있는 精神的인 戰鬪力이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兵士 個個人の 敵에

사실을 보여 주는 圖表를 수록하여 國家豫算과 軍費와의 관계교육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中學校 社會 歷史 p. 267)

63) 中學社會 公民 p. 48.

64) 國民小學 社會 第十冊, 五學年 下學期 p. 75.

대한 敵對的 心理狀態이며, 이는 民族感情, 理念, 宗教, 歷史性 등 여러 면에서 發露될 수 있다.

美國은 特定 國家에 대한 敵愾心を 敎育하고 있지는 않다. 敎科書上에 나타난 점으로 보면 美國의 敵愾心은 理念的 性格의 敵愾心이다. 그러므로 美國이 追求하고자 하는 理念에 對立되는 國家나 集團이 該當된다. 즉, 反共에 대해서는 強調하는 편이지만, 特定 相對國을 敵愾心の 對象으로 選定하고 있지는 않다.

美國은 敵愾心の 鼓吹 대신에 自國의 殉國先烈들에 대한 顯彰으로 이에 대신한 듯한 印象을 준다. 즉, 國家에 忠誠하고 죽어간 軍人들에 대한 追慕를 敎科書에 收錄함으로써 特定 對象國에 대한 敵愾心보다는 自國 兵士들에 대한 尊敬心を 浮刻시키는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顯忠日’의 制定 意義를 紹介한다든지,⁶⁵⁾ ‘冷戰’ 體制를 敎育하면서 여기에 越南戰을 紹介하고, 그 戰後 處理過程을 ‘1982年 政府는 越南에서 죽은 사람들을 顯彰하기 위하여 워싱턴市에 紀念碑를 獻呈하였다.’⁶⁶⁾라고 하여 越南參戰 犧牲者들에 대하여 國家가 法的 補償을 講究한 事實을 통하여 戰歿將兵들에 대한 追悼를 잊지 않고 있다.

日本의 境遇도 特定 相對國에 대하여 뚜렷하게 敵愾心を 보이는 敘述은 보이지 않는다. 日本의 敎科書에서 表現하는 敵愾心の 對象은 特定 國家나 집단이 아니라 原爆과 戰爭 그 自體이다. 日本의 敎科書는 原爆을 없애기 위하여 努力하는 日本의 活動을 敎育하고 있다.⁶⁷⁾

65) 《Communities and Their Needs》 pp. 180~181.

66) 《The United States, - Past to Present -》 pp. 389~390.

67) 中學校 社會 歷史 pp. 305~307.

그러나 실제로 日本의 原爆禁止 主張의 裏面에는 敵愾心에까지 이른다고는 할 수 없으나, 原爆投下の 張本人인 美國에 대한 警戒心 教育이 內包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日本이 非核化 主張을 하게 된 배경이 美國의 原爆投下事件이므로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⁶⁸⁾ 이 밖의 美國과 關聯된 敘述에서도 美國에 친근감을 갖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예가 美國이 返還期間이 지났는데도 不拘하고 如前히 軍事施設을 撤收시키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不滿足스런 敘述態度를 取하고 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오키나와 現地 住民들의 返還要求 示威 光景을 寫眞으로 收錄하거나, ‘日本의 獨立’이라고 하는 소단원에는 美國軍의 군사시설과 미국군의 훈련장을 표시한 지도를 수록하여⁶⁹⁾ 美國에 대한 警戒心を 意圖의으로 鼓吹시키는 듯한 教育을 實施하고 있다. 오키나와 문제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강조되어 교육되고 있다.⁷⁰⁾

臺灣의 敵愾心 教育의 對象은 그 歷史가 反映하는 바와 같이 日本과 中國이다. 蔣介石의 業績 가운데 가장 손꼽는 것이 ‘打敗了日本諸國, 重回祖國的懷抱’라 한 것을 보면 그러하다.⁷¹⁾ 國民學校 4學年 2學期 課程에서는 現代史를 紹介하면서 反共을 주로 한 理念的인 敵愾心を 強調하고 있으며, 特定對象國은 大陸 中國이다. 그리

68) 中學校 社會 歷史 p. 281.

69) 小學校 社會 6-下 p. 9.

70) 中學校 社會 歷史 p. 295와 p. 304에서도 美國의 飛行基地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中學校 社會 公民에서는 ‘日本에서의 유일한 戰場이었던 오키나와’라고 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더욱 강조하여 교육하고 있다. (pp. 222~223)

71) 國民小學 社會 第七冊, 四學年 上學期 p. 83.

하여, 大陸의 文化大革命의 失敗⁷²⁾와 天安門事件⁷³⁾ 등을 例로 들어 共產主義 體制批判과 이에 따른 經濟貧困을 敎育하면서 臺灣의 經濟的 富와 함께 三民主義에 立脚한 平和統一을 위한 未來 建設을 敎育한다.

또 臺灣의 敵愾心の 對象 가운데 하나는 日本이다. 5學年 2學期 課程에는 ‘屈原’, ‘蘇武’ 등 中華思想을 固守한 傳統時代의 人物과 함께, 여자로서 武裝 抗日獨立運動家인 ‘黃八妹’를 통하여 日本에 대한 敵愾心を 鼓吹시키고 있다.⁷⁴⁾ 또 ‘對日抗戰’이라는 單元을 設定하여 日本軍을 武力으로 물리친 歷史를 敍述하고 있다.⁷⁵⁾

특히 反共에 대한 強調은 臺灣의 特殊한 狀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를 통하여 集團의 團結을 鞏固히 하여 安保의 밑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臺灣 安保敎育의 特殊性이라고 할 수 있다.

敵愾心 鼓吹가 가장 強調되고 있는 곳이 北韓이다. 北韓의 敵愾心の 對象은 帝國主義와 封建主義이다. 이미 低學年에서부터 이러한 敎育은 徹底히 實施되며, 이러한 양상은 北韓의 全學年 교과서에 立관되고 均衡있게 나타나고 있다. 特定 對象國은 帝國主義로서의 美國과 日本, 그리고 美帝의 앞잡이라고 北韓에서 규정한 現大韓民國의 지도층과 封建地主階級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暴力과 殺人도 無妨하다는 것을 強調한다. 그리하여 ‘원썩놈들에 대하여 말할 때에는 《지주놈의 쌍통》, 《미제놈이 뉘졌다》는 식으로 말해야 합니다.’⁷⁶⁾라거나 ‘《미제승냥이놈을 때려 부시

72) 國民小學 社會 第八冊, 四學年 下學期 p. 93.

73) 國民小學 社會 第八冊, 四學年 下學期 p. 102.

74) 國民小學 社會 第十冊, 五學年 下學期 pp. 75~80.

75) 國民小學 社會 第十一冊, 六學年 上學期 pp. 58~61.

76) 인민학교 국어 3 pp. 57~58.

자》…… 미제놈을 찾아 내어 그 자리에서 처죽이고 말았습니다.’⁷⁷⁾라고 하여 敵愾心을 넘어 선 價値觀 敎育으로까지 擴大하고 있다.

이러한 價値觀이나 用語를 통한 敵愾心 鼓吹의 例는 北韓의 敎科書에는 일일이 例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이러한 傾向은 高等중학교 과정에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3. 우리나라 敎科書의 實態 및 周邊國과의 比較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은 敎科書를 통한 安保敎育에 매우 적극적임을 살펴보았다. 분량에 있어서나 그 실시시기에 있어서나 자국의 안전보장을 의식한 敎育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北韓과 같은 경우는 敎育 자체를 安保를 위한 과정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각국의 安保敎育은 ① 自國의 歷史와 밀접한 관련, ② 自國의 安保現實을 의식한 내용을 반영, ③ 戰爭·軍事 등에 대한 긍정적 태도 등이 敎과서 검토를 통하여 나타났다고 본다.

우리나라 敎과서도 위와 같은 사실들이 전혀 무시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

실시 시기별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주변국과 비슷한 國民學校 高學年 課程인 5學年부터 安保와 관련된 敎과 內容이 나타나고 있다. 國民學校 5學年 읽기 第7課 ‘편지’는 獨島를 지키는 아저씨에게 學生이 보내는 書簡文 形態의 單元인데,⁷⁸⁾ 그 가운데 獨島가

77) 인민학교 국어 2 pp. 58~60.

78) 국민학교 국어 읽기 5-1, pp. 65~68.

우리나라의 領土이며 이곳을 지키는 아저씨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내용이 있다. 즉, 國土와 國防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安保에 대한 動機誘發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과정 제15과 ‘고지의 태극기’는 6·25戰爭을 소재로 한 동화로서, 여기에는 6·25戰爭 당시 鐵의 三角地帶 695고지를 死守한 朴少尉의 勇戰을 통하여 國土守護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⁷⁹⁾ 그러나 내용을 보면 그다지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예컨대, 앞의 ‘고지의 태극기’는 소재가 6·25戰爭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제는 戰爭과 관련된 戰鬪·恐怖·敵愾心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朴少尉의 책임감을 비롯하여 그의 인간적인 측면을 돋보이게 하는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

분량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교과서에 수록된 안보관계 내용은 상당히 소략한 편이다. 특히 軍事와 관계되는 내용은 피상적인 서술로 그치고 만다. 또한 戰爭이나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서술에 있어서도 忌避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중학교 歷史 教科書를 대상으로 하여 安保와 관련된 내용을 양적으로 살펴보면 상하 409쪽 가운데 42쪽이 해당된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異民族의 침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이를 끈질긴 民族精神을 발휘하여 격퇴함으로써 현재의 大韓民國을 건설하였다고 敎育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역사 교과서에서 서술하고 있는 異民族과의 抗爭에 관한 내용은 양적으로도 적고 구체적이지도 않다.

이러한 현상은 교과서 편찬자들이 밝힌 바와 같이 그 목적이

79) 위의 책, pp. 131~141.

‘民族史의 總體的이고 構造的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戰爭과 관련된 부분만이 畸形的으로 비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戰爭이나 이와 관련된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서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6·25戰爭은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9면,⁸⁰⁾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5면의 서술에 그치고 있다.⁸¹⁾ 이러한 양적 배려는 美國 고등학교 교과서보다도 적다. 민족 최대의 비극이라고 하는 6·25戰爭에 대하여 美國보다도 관심을 덜 쏟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戰鬪의 概況을 설명하는 補助資料로서의 圖版 수록도 간략하다.⁸²⁾ 이렇게 6·25에 대하여 소략한 이유는 平和統一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에 대한 관심이 周邊國보다도 소홀하다는 점은 지적되어야 마땅하다.⁸³⁾

또한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에는 世界第1, 2次大戰이나 기타 戰爭關聯 사항은 극도로 축소 서술 지향이다. 심지어 美國과 日本 教科書에 하나의 單元으로 設定되어 있는 越南戰爭이 參戰國인 우리나라의 교과서에서는 別項으로 設定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서술 내용도 극히 짧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地域紛爭에 대한 서술도 없

80) 중학교 국사 하, pp. 160~168.

81) 고등학교 국사 하, pp. 176~180.

82)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평화통일에 자극이 되지 않도록 서술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美國은 비록 시각의 차이는 있다고 할지라도 6·25에 대해서 狀況圖 2, 寫眞 1매를 포함하여 4면에 걸쳐 서술하고 있다.(《American Tradition》, pp. 607~610)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면수는 많은 것 같으나, 책의 版型이 작아서 실제 내용은 미국의 교과서가 더 많다.

83) 量이 많아야만 安保教育이 잘 施行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의 基準이 될 수는 있다고 본다.

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서술 태도가 軍事와 戰爭에 대한 忌避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이유가 平和統一을 指向하는 國家政策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安保에 관한 不感現象을 초래하는 遠因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은 憂慮된다.

또한 獨立鬭爭에 대한 내용도 중학교 과정에서는 22면에 이르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12면에 이르는 무척 疎略한 양이다.⁸⁴⁾

軍費에 대한 내용을 교과서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우리나라의 교과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오히려 불필요한 消耗性 資金이라는 방향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평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실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周邊國의 사정에 대한 교육도 국방이나 안보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주로 지리적인 인식을 통한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이미 앞에서 日本은 ‘北方4島問題’ 등 周邊國과의 紛爭 예상 요소까지를 교육함으로써 안보에 대한 관심을 미래로 지향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이러한 점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敎育은 다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자국 방어에 대한 개념 교육이 소홀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공통적인 사항인 역사교육에 있어서 戰爭史에 관한 서술의 비중이 적다고 하는 점은 우리나라의 교과서가 그만큼 현실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다. 그 예로는 월남戰爭이 우리나라의 교과서에서는 단원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⁸⁵⁾

84) 중학교 국사 pp. 109~130, 고등학교 국사 pp. 139~150.

85)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에 越南을 서술한 부분은 ‘공산침략을 받고 있는

또한 민족 최대의 悲劇이라고 말해지는 6·25戰爭에 관한 서술이 美國이나 또 다른 나라의 같은 과정 교과서보다도 분량이나 서술의 정도가 깊지 못하다는 점은 우리나라 교과서의 안보교육 수준을 가늠하는 단적인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4. 結 論

教科書에 收錄된 國家安保教育의 내용을 周邊國과 우리나라의 教科書를 통하여 比較해 보았다. 이때의 考慮要素는 國防에 대한 重要性, 戰爭에 대한 認識, 軍費에 대한 關心, 敵愾心 鼓吹, 周邊國 事情에 대한 教育 등으로 細分하여 實施時期, 分量, 그리고 內容 敘述의 程度 등을 對象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그 結果 다음과 같은 事實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周邊國들은 教科書를 安保教育에 상당히 活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國防이나 戰爭 등에 대한 安保의 物理的 手段과 關聯되는 一般認識에 대해서도 教育을 하고 있었는데, 이 境遇는 當面한

베트남을 지원하기 위해 국군을 파병하였다.(중 p. 173)'이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베트남전쟁에 대하여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 日本의 中學社會 歷史(pp. 297~298)에서는 제3세계의 동향과 다극화 현상을 설명하면서 '越南戰爭'을 소단원으로 다루고 있고, 미국에서는 '越南派兵에 대한 일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전을 결정한 배경과 그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교육하고 있는데 비교하면 너무 소극적이다. 中·高等學校 歷史 教科書의 부록으로 첨부된 國內·外 主要事件 年表에도 國外事件으로 베트남 滅亡은 기록되어 있으나, 國內事件으로 韓國의 越南參戰이나 撤收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現實의 條件을 考慮하여 實施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基礎로 하여 우리나라의 교과서와 比較한 결과 우리나라 상황에 대하여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安保에 關한 教育內容이 다른 나라와 比較해 볼 때 매우 疎略한 것으로 나타났다. 分量으로도 적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敍述되어야 할 越南戰 等이 單元으로 設定되어 있지도 않았다.

둘째, 一般的인 安保 考慮要素에 대한 教育도 소홀하였다. 戰爭에 대한 認識이나 概念 等에 대한 敍述이 없고, 이에 關聯되는 內容의 敍述도 적었다. 自國의 武器나 軍備에 대해서도 美國, 日本 等은 教科書를 利用하여 教育하고 있는데 比하여 우리나라는 이를 쓸데없는 消耗性 費用 程度로 認識시키고 있었다. 또한 未來의 假想敵이 될 可能性이 높은 周邊國의 事情에 關해서도 정치·군사적 서술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比較 分析의 結果를 土臺로 몇 가지 提言을 끝으로 本稿를 마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教科書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國家安保에 關한 具體적이고도 實質적인 安保教育의 內容이 補充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둘째, 우리나라의 歷史經驗과 現實에 副應하는 教育이 實施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6·25戰爭, 越南戰爭 等과 같이 우리가 直接 經驗하고 參戰한 戰爭에 대하여 多角的이고 具體적으로 理解시켜야 할 必要가 있다.

셋째, 軍에서의 安保教育은 軍이라는 集團의 特性上 一般人들에게 實施하는 程度보다는 質的으로나 量的으로 積極性을 띠고 實施되어야 하며, 視野를 넓혀 對北威脅 次元에서의 安保라는 偏狹한 視角에서 벗어나 世界에 대한 大韓民國의 安保라는 視角에서 教育이 補完되면 더욱 바람직한 國家安保가 確立될 것이다.

現代 陸軍服飾의 變遷에 관한 研究※

金 正 子

(大田實業專門大學 教授)

1. 序 論
2. 軍服 變遷의 要因
3. 韓國 陸軍 戰鬥服의 變遷
4. 結 論

1. 序 論

人類의 歷史는 戰爭의 歷史이고 現代의 우리도 분명히 平和가 아닌 戰爭의 시대에 살고 있다. 戰爭의 歷史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戰爭은 人間의 鬭爭이며 人間이 人間에게 돌을 집어 던지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古代의 戰爭은 아무리 大軍이 交戰하건 결국 一對一의 싸움을 요소로 하는 ‘點’의 戰爭이었다.

※ 이 논문은 199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활·銃砲를 사용하게 되면서 一列橫隊로 布陣시킨 長弓隊로 격과 하는 ‘線’의 戰爭이 되었다. 이윽고 화기가 사용됨에 따라 戰法도 변하지 않을 수 없어 銃을 가진 步兵隊를 주력으로 騎兵隊·砲兵隊 혹은 적진을 攪亂시키는 主力部隊를 單位로 해서 戰鬪하는 三兵戰術의 ‘面’의 戰爭으로 發達하였다.¹⁾

이에 따라 部隊 掌握의 필요에 의해서 쿠스타프·아돌프(Gustavs Adulphus) 王은 部隊의 표적으로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옆구리 밑으로 띠를 맏게 하여 赤隊 혹은 綠隊로 구별하였고,²⁾ 프랑스 루이(Louis) 13세는 네그로 펠리스(Negrepelisse) 攻略 때 모자에 흰색 끈을 매거나 옷 위에 구별할 수 있는 셔츠를 걸쳐 입고 전투하였다.³⁾ 이것은 유니폼(Uniform)의 발생을 말해주는 것이다.

韓國에서도 「三國史記」에 보면 이미 統一新羅時代에 軍隊組織의 한 單位였던 衿幢은 그 隊의 標識으로 저고리의 깃을 二重 깃으로 하고 두 가지 色을 着色하여 입혔고 衿色은 紫 緋 綠 靑 黃 赤 碧 黑 白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色을 配合하여 자기 部隊의 所屬을 標示하였다.⁴⁾ 그리고 朝鮮末에는 「萬機要覽」에 軍人·官隸로 등의 所屬을 표시하기 위해 입었던 號衣는 方位에 따라 빛깔을 五方色을 사용하여 東은 靑色, 西는 白色, 中央은 黃色, 南은 紅色, 北은 黑色을 사용하였다.⁵⁾

1) 太田臨一郎, 「日本の近代軍服史」, 昭和 47, 東京; 雄山閣, p. 5.

2) 위의 책, p. 5.

3) Alex et philippe cart-Tanneur, 「Uniforms des Regiments de France(1740~1945)」, La Bibliotheque des Arts, p. 16.

4) 김부식, 「삼국사기 권 40」, 職官下 武官條.

5) 심상규, 서영보, 「국역 만기요람」, 1971, 민족문화추진위원회, p. 246.

軍服의 變遷을 보면 武器와 戰術의 變化에 따라 바뀌었다. 칼이나 槍 등을 사용했던 集體隊形의 전투에서는 威脅的이고 完全武裝한 鐵製短甲이나 札甲을 입었고 火藥武器의 발달로 火箭·火砲·鳥銃 등이 武器로 사용되면서 機動性이 要求됨에 따라 전투방식은 小單位 散兵隊形으로 가벼운 頭釘甲이나 鎖子甲 具軍服 등으로 변하였고 舊式 小銃과 拳銃, 爆發的인 砲彈의 出現이 있게 됨에 따라 世界의 군인들은 점차 暗褐色의 편리하고, 땅의 색과 비슷한 옷을 입게 되어⁶⁾ 색깔이 많고 거창한 것은 사라지게 되었다. 武器의 변화가 戰略과 戰術의 변화를 가져오고 戰術의 변화는 軍服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그리하여 現代 武器의 발달은 防禦用 兵器로서의 전투복의 개념에서 제복(Uniform)의 개념을 지니게 되었다. 制服의 개념은 機能性 뿐 아니라 敵과 我軍을 구별하고 戰爭을 遂行하기 위한 準備를 하고 軍服은 團體精神에도 寄與한다.⁷⁾ 또한 군복은 外貌와 品位를 堅持하고 國家的 位相과 國際的 優位性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⁸⁾

1980년 大統領令 제9713호에 의하면 軍帽는 禮帽 正帽 戰鬪帽 및 特殊帽로 구분하고 制服으로서의 軍服은 禮服 正服 勤務服 戰鬪服 및 特殊服과 外套 雨衣 補助衣로 구분하고 있다.⁹⁾ 그 중 本論文에서는 戰鬪帽와 戰鬪服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한국의 近代 現代 軍服의 變遷要因은 武器와 戰術의 변화보다는 國內·國

6) Peter F copeland, 「American Military Uniforms, 1639~1968」, N. Y ; Dover Publications. INC. 서문.

7) 위의 책, 序文

8) 국방부, 「軍人服制」, 1980, p. 1.

9) 위의 책, p. 1.

외의 政治外交·軍事와의 關係 속에서 많이 變遷하였기 때문에 이들과의 關係에 대해 알아보고 外勢에 의해 변화를 가져온 그 당시의 外國 軍服에 대해 연구하였고 外國 軍服을 모방하고 수차례 大統領令에 의해 修正되고, 改善하면서 변천되어 온 현재의 大韓民國의 자주적인 軍服에 대해서 考察하였다.

科學技術의 발달과 더불어 現代 軍服의 世界的인 趨勢는 낮에는 周圍色과 구별되지 않도록 얼룩무늬를 채택하였고 과학적인 染色法으로 實驗을 통해서 밤에는 자연에서 나오는 赤外線 反射率과 의복에서 나오는 反射率을 거의 같도록 하여 赤外線 裝備로부터 구별하지 못하도록 한 얼룩무늬 軍服을 착용하고 있다. 현재 입고 있는 이 얼룩무늬 軍服이 채택된 背景과 形態에 대해 알아보고 化學戰에 대비한 保護衣에 대해서 각국은 研究 開發 중인데 그 研究 狀況과 方向에 대해 提示해 보고자 한다. 현재 國부적으로 化學戰이나 核戰, 細菌戰이 행해지고 있고 韓國과 對峙하고 있는 北韓이 化學武器 禁止協約(C. W. C)에 署名을 拒否하고 있어 앞으로 韓國은 防禦武器로서 保護衣와 그 밖의 裝備에 대한 研究를 함으로 科學的이고 機能的인 防護體制를 가져야 할 과제를 갖는다. 따라서 앞으로의 군복은 外形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質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2. 軍服 變遷의 要因

가. 武器의 變遷

일반적으로 武器의 변화가 戰術의 변화를 가져오고 戰術의 변화는 軍服의 변화를 가져왔다. 다시 말하면 軍服은 武器의 발달에 따라 戰略과 戰術이 바뀌면서 함께 변천하였다. 火藥武器가 발달되기 전 原始時代의 주된 武器는 돌로 만든 도끼·칼·槍·활·화살이었고, 戰鬥方式은 個人的 腕力에 기초를 둔 非組織 集團間의 戰鬥을 주로 하였다. 古代國家가 형성되고 鐵이 發明되므로 鐵製로 된 칼·槍·활·화살·投石機 등이 出現하였고 말이 登場하였다. 騎馬武士는 鐵甲으로 온몸을 덮고 長槍을 쥐고 馬甲을 입힌 말을 타고 攻擊하는 長槍 騎馬武士가 시행되었다.¹⁰⁾

戰鬥方式은 大集團 戰鬥로 長槍을 이용한 突擊力에 의해 縱隊 戰術로 城廓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¹¹⁾ 槍과 칼로 武裝한 密集 步兵으로 城廓을 攻擊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고 防禦 혹은 攻擊側이 城廓 가까이 接近하는 것을 防禦했기 때문에 칼이나 槍대신 馬弓이나 石弓이 主武器가 되었다. 활과 화살의 貫通力과 遠隔發射의 利點·發射頻度·速度 등의 效用價値가 높아지자 重裝 甲冑의 實用性은 退色하는 전기를 맞아 위용만을 주는 輕捷한 갑옷으

10) 이은창, 「한국 복식의 역사」, 1978, 세종대왕사업회, p. 137.

11) 양운승, 「무기체계 발전에 관한 연구」, 1979,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29~30.

로 변화였다.

14세기 火藥武器의 발달은 지금까지 각종 칼·활·槍 등의 兵器의 活用價值가 차츰 상실되는 대신 銃砲武器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銃砲武器는 火繩砲로 시작하여 自動小銃·機關銃·連發銃 또는 大砲로 이어져 兵器史의 革命이었다. 銃砲武器의 등장 사용은 大集團 戰法은 被害가 많으므로 縱心이 얇고 火線을 길게 펼칠 수 있는 橫隊戰術을 發展시키게 되었고 橫隊戰術은 散兵戰術로 進展해 갔다. 武器體系의 변화와 발전은 軍隊組織의 編成·動員體制·戰略戰術의 開發·軍事敎理 修正 등 모든 군사 전면에 變革을 가져왔다.

軍服의 材料와 形態에도 變化를 가져와 철관이나 쇠고리 가죽 등을 이용하고 赤色이나 靑色 등 威容을 誇示하고 防禦의 역할을 했던 갑옷은 가벼운 織物로 바뀌어지고 총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점차 僞裝色으로 땅의 색인 카키색(Khaki)과 숲의 색인 암갈색(국방색)과 독일의 地色과 스위스의 알프스산의 색인 쥐색과 현재의 얼룩무늬 군복이 출현하면서 방어무기의 개념을 벗어나 제복(Uniform)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 카키(Khaki)는 영국의 식민지인 인도의 판자브(Punjab) 고지에서 하리 럼스덴(Harry Lum-sden)이 처음으로 1846년 위장색인 흙의 색을 착안하므로 시작되었고,¹²⁾ 국방색은 쿠바(Cuba) 전쟁 이후 미국에서는 초원전쟁에서 유니폼(Uniform)으로 카키(Khaki)가 不適當하였으므로 다른 色의 研究가 필요했고 그것은 褐色(Drab)으로 선택되어지고 결국 世界

12) Mollo. John, 「Military Fashion」, 1972. London ; Barrie & Jenkins Co. p. 211.

的인 국방색(Drab)의 作業服이 소개되었다.¹³⁾ 保護色の 연구는 중요한 여건으로 登場하였고 保護色은 또한 각 나라의 環境에 따라 氣候 및 土壤 植生 등의 지질학적인 研究가 先行되어야 한다. 舊式 小銃과 爆發的인 砲彈이 出現됨에 따라 세계의 軍人들은 점차 暗褐色의 便利한 땅색과 비슷한 軍服을 입게 되었고 색깔이 많고 거창한 軍服은 사라지게 되었다.¹⁴⁾ 制服은 社會的인 要請에 基礎해서 생긴 의복으로 輕重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權威를 가진 자가 制定하고 그 權威에 따르는 자가 착용하게 된다. 군복은 制服의 성격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의복이다. 그렇지만 威容을 위하여 士氣昂揚을 위하여 그리고 유사시 戰鬥에 종사하기 위하여라는 표적이 멀리 내걸려 있다.¹⁵⁾ 戰爭의 領域도 전에는 決戰場으로 地點의 개념이 戰線의 개념으로 연결되고 다시 一國의 單位의 地域的 全域概念으로 擴大되었으며 마침내는 世界的 규모의 界域單位로 變貌하였는데 오늘에 와서는 汎地球的 그리고 宇宙戰爭의 도래를 상정케 하는 現實에 직면한 核武器 時代에 접어들게 되었다.¹⁶⁾ 科學文明의 發達과 더불어 武器 體系도 複雜化·高度化·多樣化 되어 왔으며, 技術革新에 의해 그 性能이 급속한 발달을 이룩하면서 未來의 戰爭樣相도 電擊戰·麻痺戰·完全 科學戰 등으로 될 것으로 판단된다.¹⁷⁾

新武器의 科學化는 軍服에도 변화를 가져와 카키색(Khaki), 국

13) 위의 책, p. 222.

14) Peter F Copeland, 앞의 책, 서문.

15) 太田臨一郎, 앞의 책, p. 1.

16) 김홍철, 「전쟁론」, 1991. 민음사, p. 299.

17) T. N. Dupuy, 「무기체계와 전쟁」, 1987, 병학사, p. 500.

방색에서 얼룩무늬로 바뀌게 되어 晝間에는 周圍色과 경계를 없애기 위해 自然色과 비슷한 비율의 얼룩무늬를 사막지대용과 수풀지역용으로 각 나라의 地形色에 맞게 색을 선택하였고 夜間時에는 자연에서 나오는 赤外線 反射 커브(Curb)와 軍服色에서 나오는 赤外線 反射率을 거의 같게 하여 肉眼 保護뿐 아니라 赤外線 裝備로부터 發見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世界는 核武器가 등장된 후 核 保有國家의 增加趨勢에 따라 核의 威脅 속에 살고 있고 核 외의 化學戰·細菌戰의 防護를 위해 保護衣와 防毒 마스크 등 保護裝備의 研究 開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保護裝備의 完全 防護能力과 經濟性·實用性·簡便性의 開發은 世界平和 내지는 최소한 核 平和를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防禦用 兵器로 武器體系와 더불어 계속 발전 변화되어 갈 것이다.

나. 政治 變革에 의한 要因

東西洋의 역사를 볼 때 어떤 큰 政治的 變革이 행해졌을 때 服飾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¹⁸⁾ 歷史學者들은 주로 의복은 國家의 政治 外交에 관심을 두고 있고 또한 文化的 產物이기 때문에 대체로 先進 文化로부터 전파 수입되고 再創造하는 등 時代性과 社會性을 갖는다고 變遷過程을 밝힌다.¹⁹⁾ 韓國의 近代 軍服은 더욱 政治·外交·軍事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영향을 받아왔다.

18) 小川安郎, 「服飾變遷の原則」, 昭和 56, 東京 文化出版局, p. 18.

19)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한국군제사(근세조선 전기편)」, 1968, 육군본부, p. 471.

韓國은 종전의 封建的인 社會秩序를 打破하고 近代的인 社會로 나아가는 시기인 1876년 鎖國의 문이 열리면서 淸나라에 가서 軍機를 배우고 神祀遊覽團이 日本에 파견되어 近代文明을 시찰하였다. 大院君 失閣以後 閔氏 세력이 開化로 매진하자 1881년 新式 軍隊인 別技軍을 組織하여 新式 軍事訓練을 실시하고 從來의 具 軍服을 廢止하였고 한복 바지에 저고리를 變形시킨 軍服을 別技 軍服의 制服으로 착용하였다.

부당한 軍制 改革으로 舊式 軍人은 1882년 壬午軍亂을 일으켜 淸國의 援助를 청하면서 淸兵이 主權을 잡게 되자 朝鮮軍制는 淸의 制度로 改革하고 淸兵의 軍服을 잠시 입었다. 이러한 近代化의 性格은 甲午改革·1896년 建陽改革·1897년 光武改革 등 당시의 政治的 變化와 軸을 같이하여 軍制에 있어서도 이러한 近代性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많은 國家들은 서로 다른 軍事制度를 도입했는데 각 國家들은 특별한 國家政策에 가장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軍事制度를 導入한다.²⁰⁾

1895년 勅令 78호가 宣布됨으로 西洋式 軍服을 입게 되면서 1895년부터 1896년까지는 日本의 軍制下에 日本의 軍服을 입고 俄館播遷 이후 1897년부터 1898년까지는 러시아 軍制하에서 러시아의 軍服을 입었다. 1899년부터 軍隊解散이 있었던 1907년까지는 러시아와 日本의 相互 牽制된 상태에서 勢力 均等の 상태였기 때문에 內政干涉이 排除된 時期로 傳統的 要素를 가미한 自主的

20) Maxwell D Taylor, John A Klein, 「American Military History(1607~1953)」, 1956. Department of the Army. p. 6.

軍服을 착용하다가 1907년부터 1946년 日本의 敗亡과 韓國의 解放 그리고 처음 國防警備隊가 創設되는 해까지 日本의 軍服을 입는 暗黒期였다. 한국은 軍隊解散후 義兵의 活躍으로 繼承되어 光復軍으로 전승되고 오늘날 大韓民國의 國軍으로 발전되었다. 1946년 國防警備隊가 美軍援에 의해 軍需物資가 순조롭게 導入되면서 韓國戰爭이 끝난 1953년까지 미군의 軍制下에 미군복을 입었고 1954년부터 점점 開發하여 나가다가 1962년부터는 大統領令에 의해 修正·改正을 걸쳐 大韓民國 國軍의 位相을 갖는 軍服을 입게 되었다.

軍服의 變遷은 軍制 영향에 따라 직접적인 影響을 받아 왔으며 軍制의 近代化는 바로 先進國들의 軍制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졌다.

3. 韓國 陸軍 戰鬪服의 變遷

가. 韓國 固有의 軍服

18세기 말 鎖國 朝鮮은 西勢東漸의 一環으로 歐美 資本主義 列強들이 民族主義·國家 第一主義를 내세우고 產業革命에 의해 機械 生産된 商品들을 販賣하고 通商條約을 통해 浸透해 오는 國際環境의 激變을 겪게 되었다. 王權 強化를 目標로 했던 大院君의 軍制 改革과 新武器 개발은 보다 구체적인 軍隊 整備였지만 舊體制에 대한 보수성으로 日本의 新式軍隊에 대해 금방 虛弱함을 드

러내고야 말았다. 開港 이후 朝鮮軍은 일본식·淸式·러시아式·美國式 軍事訓練 및 軍制改編을 통한 富國強兵策을 추진하였지만 일정한 目標과 方向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實效를 거두지 못하였다.

外勢의 침략을 받기 전까지 韓國 軍服은 帖裏의 소매통이 넓고 치마 길이가 길어서 戎服의 기능이 상실되자 경첩한 具軍服을 입었다. 具軍服은 좁은 소매의 동달이 위에 옆과 뒤가 트인 戰服을 걸쳐 입고 허리에는 넓은 띠를 띠고 머리에는 화살막이 戰笠을 쓴 차림으로 이는 잦은 戰亂 속에서 必要에 의해 생긴 產物이다. 동달이와 戰服은 입고 벗기 편한 형이라서 戎服으로 적합했고 녀

〈사진 1〉 淸日戰爭後의 韓國軍의 모습



1894년(출처 : 격동의 구한말 역사의 현장, p. 24)

넉한 품은 지금의 防彈조끼와 같은 역할을 갖는 胸甲·綿甲 등을 입기에 편리했을 것이고 동달이와 붉은색 소매는 威色으로 軍人의 威嚴과 士氣를 높이고자 채택되었을 것이며 禮義를 숭상하는 韓國의 風俗에 동달이 위에 걸친 전복은 表衣로서 손색이 없는 軍服이었다.²¹⁾

그러나 1881년부터 입기 시작한 日本式 別技軍 軍服은 1882년 壬午軍亂에 의해 靑의 軍服을 입게 되었으나 1884년 甲申政變이 일어나면서 종래의 具軍服으로 돌아갔다.²²⁾

나. 淸 影響期의 軍服

1882년 7월 23일 別技軍에 대한 優待와 舊式軍隊의 軍료(쌀)支給에 대한 불만과 日本勢力에 대한 反撥로 舊式軍隊는 蜂起하여 壬午軍亂을 일으켰다. 壬午軍亂후 淸·일 兩國의 軍事的 浸透는 加重되었고 淸의 武力 干涉에 의해 政治上·商業上 特權을 부여하였다. 서울에 駐屯하고 있던 淸나라 袁世凱의 제안에 따라 朝鮮의 軍制를 개편하고 壯丁 1천명을 선발하여 새로운 군대를 창설하여 新建親軍(약칭 親軍)이라 칭하였다. 이때 훈련받은 部隊는 新建親軍左營이다.

親軍의 軍복이 113년 만에 발견되어 韓國刺繡 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는데 그 형태를 보면 團領(둥근깃)으로 오른쪽 앞판은 왼쪽 겨드랑이에서 매듭단추로 고정시켰고 품과 진동은 풍성하지만 소

21) 김정자, 「韓國 古代 戎服의 變遷考」, 1988, 국제복식학회 N5, p. 95.

22) 이강칠, 「육군 복장제식(1895~1908)」, 1972, 월간문화재, p. 1.

매부리는 진동에서 점차 좁혀 實用性을 높였다.

〈사진 2〉 親軍의 군복을 입은 상상도 옷감은 두터운 靑色 毛織으로



되어 있고 10cm 넓이의 홍색으로 소매부리와 몸판의 선단과 아래단에 선(☒)을 대었는데 앞의 여밈부분과 옆구리 부분은 청나라풍의 如意 무늬를 넣어 장식했다. 앞가슴과 등에는 지름 24cm의 원형 章標가 부착되어 있는데 중앙에는 세로로 인쇄체 붉은 글씨로 新軍이라 써 있고 그 위에 작은 글씨로 臣建左營이라고 부대소속을 가로 글씨로 표시했다.

그리고 오른쪽엔 右哨玖隊라고 表記했다. 왼쪽에는 붓글씨로 歩丁 金基元이라고 軍服의 주인공 이름이 써 있다.²³⁾

위의 軍服을 입은 모습을 1895년 中國式 복장을 하고 있는 巡劍의 사진²⁴⁾과 1894년 르몽드 일뤼스트레(Le Monde Lillstre)

23) 「서울신문 14974호」, 1993년.

24) 김수환 「백년전의 한국」, 1986. 카톨릭출판사, p. 60.

가 덧생(dessin)한 日本軍에 투항하는 淸國軍의 그림²⁵⁾과 1894년 東學革命 진압차 출동하는 淸國兵의 사진²⁶⁾을 참고로 하여 덧생(dessin)하였다.

淸國內에 變革이 일어나면서 朝鮮에 주둔하고 있던 淸軍 3,000명의 반수가 철수하고 청·프戰爭에서 淸의 敗色이 드러나자 日本은 征韓論의 구현을 위해 1884년 朝鮮에서 淸의 勢力을 逐出하는 기회로 判斷하고 開化派와 손을 잡고 甲申政變을 일으켰다. 袁世凱의 淸軍 개입과 韓國은 經濟的 軍事的으로 基盤이 脆弱함으로 失敗하였고 韓國은 다시 1884년 봄부터 청나라의 軍服을 벗고 고유의 복장인 具軍服을 입었다.²⁷⁾

그러나 사실상 이때부터 1894년 淸日戰爭이 勃發할 때까지의 10년간은 淸의 韓半島 지배기간이었다.²⁸⁾

다. 日本의 軍制

1868년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開港을 단행했고 中央執權體制를 수립하더니 1875년 운양호를 끌고와 통상을 요구하며 이듬해 韓日條約을締結함으로써 1880년 韓國은 세계의 문을 開放케 되는契機가 되었다.

한국은 開化와 自強을 위해 國政改革의 일환으로 1881년 1월 軍事制度를 改革하며 신식군대인 別技軍을 創設하고 日本人 敎官

25) 방우영, 「격동의 구한말 역사의 현장」, 1986, 조선일보사, p. 27.

26) 김수환, 앞의 책

27) 이강칠, 앞의 책, p. 1.

28) 김원모·정성길, 앞의 책, p. 30.

호리모도(堀本禮造)를 招聘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1882년 구식군대의 蜂起로 別技軍은 1884년 解體되었다. 이때 새로운 군복이 登場했으니 바지 저고리 위에 덧저고리를 입었다. 길이는 엉덩이까지 내려오도록 하고 옷고름을 없애고 앞중심에서 여미고 단추를 5개 달았다. 깃은 맞깃으로 하고 동정을 달았다. 허리에는 버클이 달린 허리띠를 매었고 머리에는 테가 작은 笠을 쓰고 목화를 신어서 한국의 전통의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차림이었다. 別技軍은 해체되었지만 別技軍服은 1894년²⁹⁾과 1904년³⁰⁾까지 입은 것을 사진과 함께 해설을 통해 알 수 있다. 黑白寫眞이기 때문에 軍服의 色을 잘 알 수 없으나 草綠色 軍服의 別技軍이 지나가고……라는 불란서 기자였던 르 프리 파리지앙(Le Petit Parisien)의 해설과 既存의 軍隊와 차별대우 때문에 壬午軍亂을 惹起시킨 草綠色軍隊다 라고 훈련받는 사진과 함께 解說이 첨부되어 있는 것³¹⁾으로 보아 草綠色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日本이 淸日戰爭에서 勝利하고 韓國 支配權을 確立함에 따라 高宗은 1895년 4월 9일 日本式 軍制를 받아들여 최초로 서양식 군복을 착용하게 하였다.³²⁾ 勅令 78호에서 본 군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군군인의 복장은 4種으로 그 세목은 正裝·軍裝·禮裝·常裝으로 將校 下士가 공동 착용하는 복장이며 禮裝만은 將校에만 한한다. 제4조에 軍裝은 戰時出征·非常出兵·軍隊諸勤務·週番勤

29) 김상기, 「사진으로 보는 한국 백년(1876~)」, 1978, 동아일보사, p. 122.

30) 방우영, 앞의 책, p. 31.

31) 위의 책, p. 33

32) 「官報 제10호, 칙령 78호」, 開國 504년 4월 9일.

務·衛戍勤務 中隊 以上の 演習에 착용하는데 군장의 종류는 帽·衣·袴·刀(劔)·刀緒手套·下襟·靴·五連短銃이고 禮裝과 正裝에는 笠毛·肩章·飾帶·正緒 등을 첨부하였다.

〈사진 3〉 別技軍服을 입고 일본식 군사훈련 광경



(출처 : 사진으로 보는 한국백년, p. 122)

1895년 勅令宣布는 日本이 淸國勢力을 구축하고 韓國 支配權을 확립하고 난 후의 服制改革이기 때문에 日本의 영향권에서 日本의 軍事制度에 의해 宣布되었으나 始制 당시의 尉官帽와 軍服은 그 당시 日本軍制와는 다른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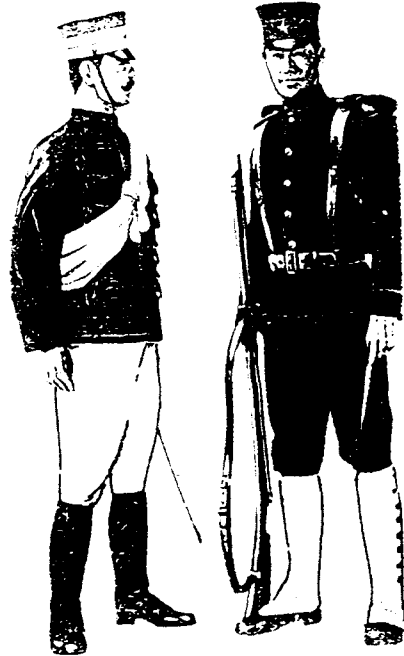
日本의 軍制는 1870(明治 3년) 독일어보다 프랑스어를 해독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³³⁾ 산뜻한 프랑스의 제도인 돌만(Dolman)

33) 위의 책.

〈사진 4〉 명치 6년 보병사관 〈사진 5〉 청일전쟁 즈음의 보병 병졸 군장



(출처 : 일본 근대 군복사)



(출처 : 世界 軍服 p. 40)

을 입었다. 돌만(Dolman)은 검정 자켓에 늑골 모양의 검정 장식 끈을 5개씩 양쪽 가슴에 엮어 붙인 군복이다. 모자는 캐피(Képi) 형이고 계급에 따라 金線으로 별을 1~5개 붙였다.³⁴⁾

日本은 1886년(명지 19년) 내각제도가 되면서 勅令 48호로 軍

34) 太田臨一郎, 「日本の軍服(幕末から 現代まで)」昭和 55년. 東京 ; 國書刊行會. p. 14.

制와 軍服을 독일식으로 하여 軟式인 프랑스식이 硬式인 독일식으로 바뀌었다. 즉 兵器 改良費 임출로 간소화되었다. 모자는 무츠(Mutze)형으로 크라운(Crown)이 높아진 원통을 자른 모양이고 笠毛는 直立해서 높아지고 군복은 스탠드 업 칼라(Stand Up Collar)에 어깨선이 모나고 앞중심에서 단추 5개로 여민 튜닉(Tunique)에 깃과 소매는 병과에 따라 定色絨을 붙이고 계급장이 생기고 각반을 찾다.³⁵⁾ 이 군복은 淸日戰爭(1894~1895)과 露日戰爭(1904~1905)까지 입었다.

韓國에서 1895년에 선포된 勅令 78호에 발표된 軍服의 형태는 日本의 軍制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고 많이 달랐다. 군모는 독일의 正帽로³⁶⁾ 상투 때문인지 매우 높고 정상에는 화살촉 같은 黃金色鎖가 부착되어 있고 의복은 日本의 군제도와 유사하여 스탠드 업 칼라(Stand Up Collar)에 앞중심에서 단추를 5개 달은 튜닉(Tunique)이고 계급장이나 각반이 없이 태극무늬 단추로 袖章을 하고 帽標는 무궁화 나무깃을 교차시키고 李花章을 새기므로³⁷⁾ 한국의 자주성을 나타내려고 애쓴 흔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1898년 이후부터는 上記한 일본의 칙령 48호의 군복과 같은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많은 사진들을 통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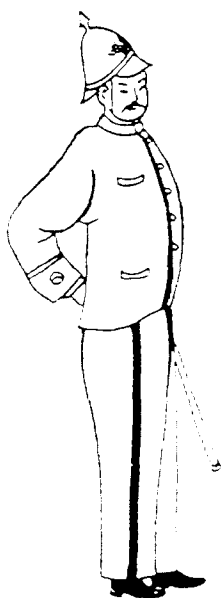
일본은 1905년(명치 38) 보호색으로 카키(Khaki)색 군복이 전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전쟁중임에도 불구하고 칙령으로 공포되

35) 위의 책, p. 69.

36) 佐藤今朝夫, 「20세기 초두 世界の軍服」, 昭和 59. 東京; 國書刊行會. p. 19.
Paul Hamlyn. Allan Wingate, 「A Book of Military Uniforms and Weapons」, 1964. London; Artia.

37) 「議奏七」, 開國 504년 4월 9일. 陸軍將校服裝圖例解譯. 上衣. (第2圖)條.

〈사진 6〉 칙령 78호의 군복과 제모



〈사진 7〉 독일군복



(출처 : 20세기 초두의 세계의 군복, p.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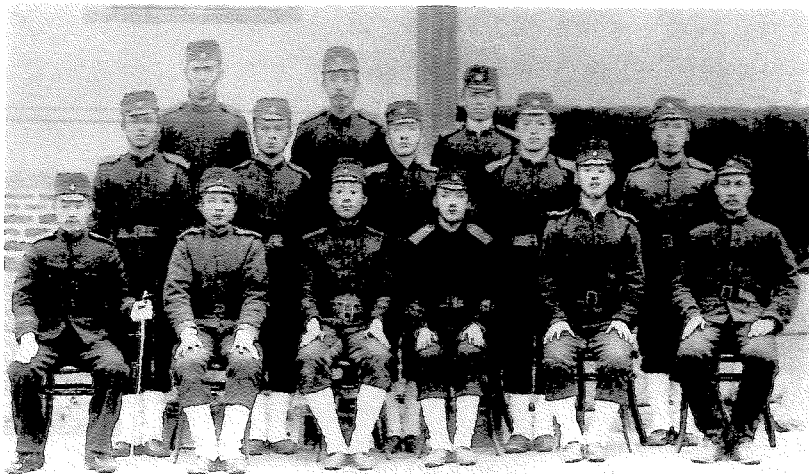
어 그대로 전면적으로 채택하였다. 이때 군복의 형태는 모자는 캡(Cap)형이고 스탠드 업 칼라(Stand Up Collar)에 뚜껑달린 속주머니를 양쪽 가슴에 붙이고 바지의 側章은 緋色으로 上下 구별없이 동일하게 하고 어깨띠와 허리띠를 두르고 각반을 찼다.³⁸⁾

1921년(大正 10년) 완장제도가 생겼고 매년마다 試作品을 만들어 실험에 의해 개량하여 상의의 깃은 되접은 스탠드 칼라(Stand Collar)로 하고 양가슴 양허리에 뚜껑있는 속주머니를 4개 부착하

38) 太田臨一郎, 『日本の軍服』, p. 88.

〈사진 8〉

侍衛聯隊 1898



(출처 : 사진으로 본 백년 전의 한국, p. 79)

고 袖章과 側章을 제거했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도록 암갈색(국방색)을 선택했다.³⁹⁾ 소화 7년에는 전투모(약칭 略帽)가 생겼는데 이 제도는 명치 45년까지 변함없이 착용되었다. 1945년(소화 7년) 패전한 日本은 군대와 군복이 해체되고 美國을 위시해서 英國, 濠洲 등 聯合國 점령군의 스포츠 칼라(Sports Collar)의 군복 모습이 되었다. 그리고 韓國戰爭이 시작되면서 日本의 再軍備는 시작되었다.⁴⁰⁾

전반적으로 簡素化되어가는 趨勢로 불필요한 경비를 節減하고 國內 軍需內 생산력의 증강에 힘썼다. 한국이 日本軍制의 영향을

39) 위의 책, pp. 103~104.

40) 「自衛隊 ユニフオムーの變遷」, p. 137.

받은 시기는 1차 시기는 前述한 바와 같이 1881~1882년 別技軍이었던 시기이고 2차 시기는 처음 西洋軍服을 입었던 1895년부터 아관파천이 있었던 1896년까지이다. 3차 영향기는 露日戰爭에서 승리한 후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고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강제 軍隊解散을 당한 1907년부터 일본이 패망하고 韓國이 해방되어 國防警備隊가 창설되는 1946년까지이다. 3차 영향기의 군복형태는 日本이 1905년에 勅令으로 公布된 다갈색 복제이다.⁴¹⁾ 이때는 國權이 상실된 시기로 일본의 徴兵制度和 學徒支援兵制度를 실시함에 따라 일본의 복제를 그대로 착용한 암울한 시기였다.

〈사진 9〉 탄환받이 한국청년 1938



라. 러시아(Russia) 軍制

日本이 淸日戰爭의 勝利로 淸國세력을 韓半島로부터 구축하자 高宗은 제3세력인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지하려고 親露政策으로 기울이기 시작했다. 1896년 乙未事變과 短髮令에 의해 의병이 심화되자 아관파천이 일어났다. 1년간 체류하는 동안 일본인 무관을 모두 파면하고 러시아 顧問士官이 초빙되고 러시아 군제에 따라 侍衛隊를 편성하

41) 「官報 제1814호」, 광무 5년 2월 19일. 육군복장 개정.

여 러시아 口술을 사용하고 러시아의 무기도 반입하였다.⁴²⁾

처음에는 러시아로부터 한국은 보호해 주기를 원했으나 러시아 정책은 처음 웨베르(Waeber)에 의하여 될 수 있는 한 내정간섭을 하지 않으려는 정책을 취하여 재정적 군사적으로 원조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나 러시아 공사가 1897년 9월에 스페인어로 바뀌어지면서부터 러시아의 대한정책은 크게 변질되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⁴³⁾

처음 閔永煥은 적어도 200명의 軍事敎官을 요구했으나 13명만 파견했고 1897년 러시아인 프티아타 大領에 의해 훈련받고 통제 받는 천명의 한국군대가 宮闕을 수비했다. 러시아가 韓國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길은 軍事敎官을 파견하는 길뿐임을 인식하고 168명의 군사교관을 추가로 任命하라는 계속된 요구 때문에 일본 뿐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⁴⁴⁾ 러시아는 1898년 軍事敎官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한국정부에 통고했고 고종은 일본의 訓練隊가 있었으므로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러시아는 자발적으로 철수시킴에 따라⁴⁵⁾ 韓·露間의 軍事關係는 사실상 끝난 셈이다. 增強一路에 있던 러시아 세력이 敗退하게 된 것은 내정간섭을 반대하는 先覺者들의 獨立協會 운동을 들지 않을 수 없다.⁴⁶⁾

1897년 5월 15일에 制定된 陸軍服裝規則은 다음과 같다.⁴⁷⁾ 이

42) 장지의, 「한국사 개설」, 1982. 형설출판사. p. 302.

43)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한국군제사(근세조선후기편)」, 1977. 육군본부. p. 382.

44) 위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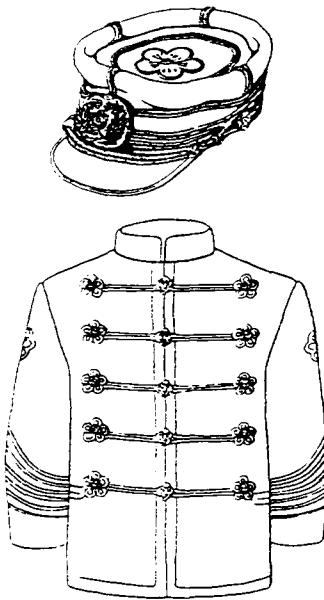
45) 위의 책, p. 216.

46)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한국군제사(근세조선후기편)」, p. 386.

47) 「官報」, 開國 506년 5월 15일.

복장은 러시아 군복과는 전혀 다른 검정색 毛織으로 프랑스 軍制인 돌만(Dolman)형이고 이 군복은 검은실로 무궁화 모양 매듭을 맺어 양가슴에 5개씩 부착하였고 袖章에도 무궁화 모양의 매듭을 부착하여 장식하였다. 軍帽는 獨逸式 무츠(Mütze)형으로 圓筒形의 모자인데 윗덧개에는 梨花 표식을 황금색실로 繡놓은 것을 붙이고 모자 양옆에는 무궁화를 새긴 금속제 단추를 붙이고 장군의 예모는 梨花章에다 그 주위에 무궁화잎과 은색의 꽃송이가 달린 가지를 교차시켜 디자인하였고 모자의 턱끈 양쪽에는 무궁화가 새겨진 금속 단추를 부착하였다.

〈사진 10〉 육군복장 규칙에 의한 軍帽와 常服



상술한 바와 같이 처음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한국은 자주적 의지에 따라 러시아의 복제와는 전혀 다른 프랑스형의 복제에다 한국을 상징하는 복식품들을 채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러시아에서 돌만(Dolman)식 군복을 채택한 예는 1670년 騎兵과 1740년 競技兵에서만 볼 수 있다.⁴⁸⁾

48) Herbert Knötel, JR. Herbertsieg, 「Uniforms of the World(1700~1937)」, 1980. London ; Melbourne, p. 371, 387.

당시 韓國에 와 있던 러시아인의 복장과 일러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복장을 보면 캡(Cap)형의 모자에 상의는 스탠드 업 칼라(Stand Up Collar)에 튜닉(Tunique)형이고 깃에는 병과 표시와 계급장이 있고 견장을 달았으며 긴 장화를 신었거나 상의가 더블 버튼(Double Botton)으로 되어 있으며 추울 때에는 그 위에 외투를 입고 털모자를 쓰고 허리띠를 하고 있다.⁴⁹⁾

사진을 통해 볼 때 러시아 교관에 의해 광화문 左側 訓練所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한국군인의 服制가 1895년 勅令 78호에 의해 선포되었던 일본의 軍帽를 쓰고 있다. 의복의 형태는 분명치 않지만 돌만식(Dolman式)은 아닌 것 같고 튜닉(Tunique)형 단추로 여민 것 같다. 들고 있는 총은 러시아제 베르당이다.⁵⁰⁾

러시아 敎官들이 초빙되면서 새로 조직 편성된 1898년 侍衛聯隊의 〈사진 9〉를 보면 무츠(Mütze)형의 군모를 쓰고 견장을 달고 앞중앙에서 여민 튜닉(Tunique)형이고 허리띠를 차고 각반을 찼다. 모표는 사진으로는 잘 파악할 수 없으나 무궁화라고 표기되어 있다.⁵¹⁾

1904년 프랑스의 종군기자였던 르 프티 파리지앙(Le Petit Parisien)은, 1900년을 전후하여 외국군대들은 공사관의 수비대란 이름으로 러시아 軍制·日本 軍制·프랑스 軍制·美國 軍制가 차례로 열지어 행진하고 있고 日本 軍制는 別技軍을 만들어 훈련시켰고 러시아군은 러시아식으로 훈련시켰다고⁵²⁾ 서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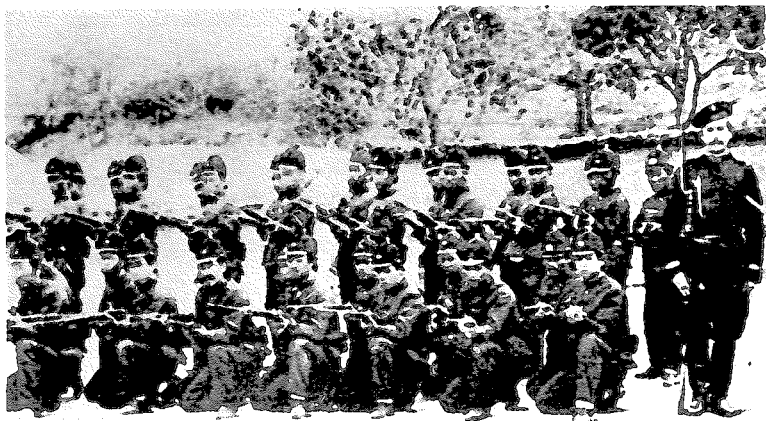
49) 김상기, 앞의 책. p. 106.

50) 이연환, 「사진으로 보는 구한말」, 1980. 매일관광문화사, p. 87.

51) 김수환, 앞의 책. p. 55.

52) 방우영, 앞의 책, p. 31.

〈사진 11〉 러시아 교관에 훈련받고 있는 군사훈련 광경



(출처 : 사진으로 본 백년 전의 한국, p. 51)

〈사진 12〉 아관파천 당시 한국에 와 있던 러시아 군인



(출처 : 사진으로 보는 한국 백년, p. 106)

이상으로 1897년에 제정된 陸軍服裝 規則과 러시아 군인들의 寫眞, 韓國 군인들의 사진들이 一致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러시아 軍制를 採擇했다고 하나 軍服에 있어서는 강압적이지 않아서 고유의 具軍服차림(사진 1 참조)·러시아 軍制下의 軍服(사진 8 참조) 등을 共存하며 입은 것으로 추측된다.

마. 미국 영향기(1946~1950)

러시아 軍制의 영향은 1897년부터 1898년으로 보며 러시아 軍制는 전면적으로 한국 군인에게 입혀지지 않았던 것 같다.

1866년 7월 미국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1871년 6월 미국의 아시아 함대가 朝鮮 遠征을 決行 勝利했으나 곧 撤收하였다. 미국은 처음부터 침략 야욕은 없이 通商貿易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는 정책을 추구하여 政治的 軍事的 問題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국간의 직접적인 군사관계를 찾아보기 어렵다.

朝鮮은 別技軍이 解體되자 軍隊의 필요성을 통감하여 1882년 서양식 親軍營을 설치하고 전국의 兵權을 統合하고 1883년 韓美 修交 이후 미국 정부의 軍事敎官 派遣을 교섭하여 1887년 4월 다이(William M Dye)를 軍事敎官으로 招聘해서 美國式 軍事訓練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들 軍隊는 大關을 수비하는 侍衛隊였다.⁵³⁾ 1888년에는 한국의 鍊式公園에 소수의 軍事敎官을 파견했지만 2차 대전이 끝때까지는 이렇다 할 군사관계는 없었다.⁵⁴⁾

53) 김수환, 앞의 책. p. 51

54) 구영록, 「한국과 미국(100년과 그 이후)」, 1983, p. 194.

1945년 9월 美占領軍이 한국에 들어왔고 주한 美軍事政府가 수립되었다. 이 군사정부는 1948년 大韓民國 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南韓內의 唯一한 統治機構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美國은 韓國의 군사문제에 있어 한국군의 組織·訓練·裝備 등 核心的인 역할을 담당했고 國防軍에 대한 指揮權을 이양하는 暫定軍事協定을 締結하여⁵⁵⁾ 1954년까지 公式的인 軍事援助 계획없이 韓國에 軍事裝備을 提供했다.⁵⁶⁾

1950년 韓國戰爭은 美國의 對韓安保政策을 적극적으로 轉換시켜 36만명 규모의 병력이 派兵되었다. 休戰 이후 군사관계는 완만하게 弱化되어 1973년대에 終結되었다.⁵⁷⁾ 1946년 1월 1일 南朝鮮 警備隊가 창설될 당시 敗戰 일본군복을 입거나 약간 개조한 군복을 입었으나 1946년 9월 1일부터는 警備隊 당시 무궁화 계급장만 달고 미군복을 대부분 공급받게 되어 外見上 미군과 비슷한 服制로 6·25를 맞았다.

이때의 군복은 國防色 綿織으로 上衣는 컨버티블 칼라(Convertible Collar ; 헤치거나 여미거나 모양을 갖춘 깃)에 앞중심에 단추를 5개 달고 左右 胸部에는 신축성있고 큰 뚜껑이 있는 겹주머니를 달고, 바지에도 허리 양측에 같은 주머니를 달았다. 모자는 국방색 면직으로 등근 원통형인데 앞쪽이 뒤쪽보다 약간 낮았다. 이때는 美式制度로 轉換시킬 時期도 되지 못하여 美軍敎範이 翻譯되지 못하여 韓國式 口令 아래 美式動作을 하는 初步敎育 段階였다.⁵⁸⁾

55) 위의 책, p. 187.

56) 위의 책, p. 197.

57) 위의 책, p. 197.

5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1967. p. 283.

1948년 建軍을契機로 軍의 면모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士兵의 正服과 正帽을 국산품으로 補給하기 시작하였으나 대부분 美軍援에 의존하였다. 國產品 군복은 紡織技術의 부족과 생산시설의 미비 등으로 일부 사병에만 지급되었으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이것마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勃發하자 美軍援의 不振과 國產 戰鬪服의 제한된 補給 등으로 충분한 資源이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갑작스런 兵員召集의 増加로 갖가지 형태의 복장을 입었다. 그러다 차츰 戰列이 整備되고 被服類가 圓滑하게 補給됨으로 전투복 一色으로 변모하였고 戰勢의 好轉으로 38선을 넘게 되고 겨울이 닥쳐와 防寒被服이 등장했는데 주로 미군원에 의한 국방색 野戰잠바나 유엔잠바·과카 등을 입었고 국산 피복으로는 국방색 면으로 된 반외투형 누빈 솜옷과 상하 따로 된 누빈 솜옷이었다.⁵⁹⁾ 1956년부터는 전투복 상의는 스텐칼라(Stain Collar)에 잠바형이다.

미군 制服의 服制나 着用 規制는 人事指示나 陸軍會報를 통하여 下達됨으로 무질서했으나 1954년 미군 전투복이 바뀌게 되고 暫定規定이나 陸軍規定으로 體系化됨에 따라 미군의 改正된 制服을 模倣하여 한국도 改正하였다.⁶⁰⁾ 改正된 군복은 전과 대체로 같은 형태로 주머니의 모양만 바꾸어 상의는 신축성있는 큰 주머니를 固着된 작은 주머니로 하고 바지 주머니도 사선으로 된 속주머니로 바꾸었으며 바지 뒤에는 뚜껑없는 속주머니를 추가했다.

그림에서 보이는 복장은 1950년 한국에서 입혀진 軍服裝으로

59) 육군복제사 편집위원회, 「육군복제사」, 1980. 육군본부. p.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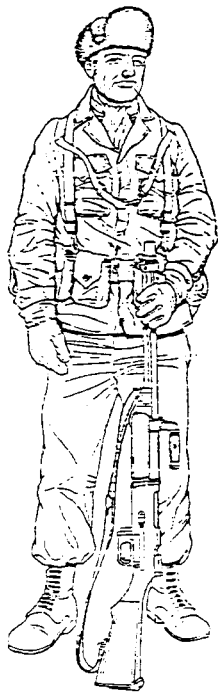
60) 위의 책, p. 131.

모자는 褐色 毛皮로 되었고 장갑과 목도리는 노란색이고 자켓과 바지는 암갈색이다. 부츠는 갈색 가죽이고 강철로 이루어진 브로잉(Browning) 자동소총을 잡고 있다.⁶¹⁾

대체로 군복은 戰時에는 機能的인 디자인이었다가 平和가 계속되면 簡素한 勤務服 형태로 外形을 重視하는 경향으로 변한다.

미군군복이 착용된 시기는 1946년 南朝鮮警備隊에게 공급하기 시작하여 전쟁기인 1953년까지는 援助에 의해 전적으로 입었고 1954년부터 1962년까지는 美軍服 제도에 따라 복지를 수입하여 점차 개발해 나가게 되었다.

〈사진 13〉 1950년 한국에서 입었던 美軍의 제1병 기병부대



(출처 : American Military Uniforms)

바. 韓國의 軍制

한국은 1898년 러시아 군제하에 러시아 군복을 입다가 1899년부터 軍隊가 解散될 때까지 한국에 있어서 외국의 어느 한 나라 세력이 절대적인 세력으로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傳統的 要素를 가미한 自主的 軍服을 착용하였다. 1898년 5월 러시아 교관

61) Peter F. copeland, 앞의 책.

및 재정고문관을 抽出한 후로 자주적인 여러 개혁이 한창일 때 武官學校의 관제도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것이 보이고 있어 이 당시 自主的 改革運動과 一致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어 外國敎官의 힘을 받지 않고 將校를 養成하였다.⁶²⁾ 1899년 6월 22일 원사부 설치는 군권을 皇帝에게 直屬시키기 위하여 창설되었고 軍令權을 總括함으로 自主的 改革의 試圖는 1903년까지 持續되었다.⁶³⁾

1904년 舊韓國軍의 軍事訓練과 銃劍術을 훈련하는 광경 등 1900년대의 사진을 보면 모두 1898년 侍衛隊의(사진 9) 군복과 같은 무츠(Mütze)형의 군모에 튜닉(Tunike)형이고 각반을 두르고 있다.

한국군은 1907년 군대해산을 당하면서 1945년 해방될 때까지 한국군은 완전 空白期를 맞게 되어 義兵과 合流함으로 獨立戰爭의 樣相을 띠어 地下運動으로 계속되어 오다가 1910년 경술국치 이후에는 국외로 亡命하여 獨立軍을 統合 조직하여 武裝 抗日鬭爭을 遂行하였다. 1938년 조선 義勇隊가 조직되어 중국과 提携하고 중국 상해에서 大韓民國 臨時政府를 樹立하면서 光復軍으로 發足하였다.

光復軍은 別動隊로 버마에 派遣되어 英國軍과 협동하여 抗日戰을 계속하였고 1945년에는 先頭로 國內로 進攻할 계획이었으나 日本의 早期 降伏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이 光復軍의 公式 入國을 拒否함에 따라 1946년 5월 16일 해체되었다. 光復軍은 일정한 制服이 없어 私服을 입었고 中國으로

62)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한국군제사근세조선후기편」, p. 402.

63) 위의 책, p. 393.

부터 보급받아 일부 착용하였고 別動隊는 英國 軍服을 착용하였다. 光復軍의 전투복 차림은 카키(Khaki)색 綿織으로 된 戰鬥帽과 스탠 칼라(Stain Collar)에 앞중심에서 단추 5개로 여민 튜닉(Tunique)형이고 뚜껑이 있는 겹주머니를 양가슴에 붙이고 허리에 는 뚜껑이 있는 속주머니를 붙였다. 어깨띠와 허리띠를 차고 각반을 두르고 목이 긴 編上靴를 착용하였다.⁶⁴⁾

1946년 1월 15일 警備隊를 創設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은 다시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함께 大韓民國 국군으로 改稱 發足되었다.⁶⁵⁾

國防警備隊 創設 당시 장교들은 制定된 군복이 없었기 때문에 日本軍 將校服裝에 표식장과 服飾品만 우리것으로 바꾸어 임시로 무궁화 階級章을 달고 長靴를 신고 日本刀·指揮刀를 찼다. 1946년 3월 30일 國防警備隊의 服制를 임시로 制定하였는데 上衣는 잠바형, 下衣는 乘馬服형으로 하고 脚絆을 차고 Y형 띠를 띠어 윗부분은 美國軍과 비슷하고 아래부분은 日本軍과 恰似하여 過渡期的인 服裝制度였다. 士兵도 將校와 같은 복제로 바뀌어 갔는데 군화는 編上靴를 신었다.⁶⁶⁾

1946년 9월 1일 지금까지의 服制를 廢止하고 美軍服을 공급받게 되었고 이 복제로 6·25를 맞았다. 1948년 美國式 武器體系와 戰術·戰略體系를 그대로 채택했기 때문에 美國의 軍服體系를 받

64) 김상기, 앞의 책, p. 240.

6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연구(대한민국 육군의 창군경위, 창간호)」, 1966, p. 45.

6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해방과 건군)」, 1967, pp. 386~387.

〈사진 14〉 영국식 카키색 군복을 입은 광복군



(출처 : 사진으로 보는 한국백년, p. 240)

〈사진 15〉 중국의 전투복을 입은 광복군



(출처 : 사진으로 보는 한국백년, p. 238)

아들었다. 士兵 正服과 正帽를 國產品으로 보급하기 시작하였으나 紡織技術의 不足과 生産施設의 未備로 일부 士兵에만 지급되고 1950년 韓國戰爭으로 이것마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때의 군복은 美國과 恰似하나 바지밑에 조임단추를 달았다.⁶⁷⁾ 53년 休戰 후 美軍 戰鬪服이 改正됨에 따라 韓國도 큰 伸縮性있는 주머니가 붙힘 주머니로 바뀌게 되었다. 1954년부터 完製品으로 導入하던 군복은 복지를 그대로 도입하여 우리 나라 나름대로의 制服으로 개발해 나가 전투복은 70년대부터 紡織을 하게 되고, 正服과 禮服은 76년쯤부터 방직하게 되었으며 전투복류와 계급장을 사우디아라비아로 輸出하기까지 하였다. 1960년대부터는 完全 國產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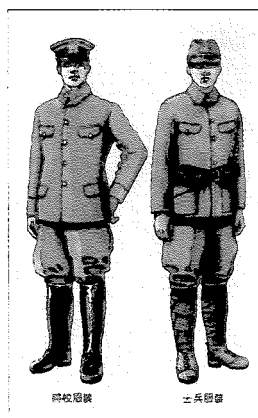
67) 육군복제사편집위원회, 앞의 책. p. 121.

로 보급하기 시작하였고 1961년 5·16혁명을 계기로 民族 主體性이 강조되고 자주적 군복시대를 지향하여 兵科 뺏지를 우리의 것으로 사용하고 62년부터는 閣令, 67년부터는 大統領令에 의한 軍人服制令이 내려졌다. 70년대 초부터는 순수한 韓國 服地와 모양으로 軍樂隊·憲兵·女軍·儀仗隊의 복장을 韓國傳統式으로 제작하였고 무기체계도 70년대부터는 美國 武器를 模倣, 開發段階에서 우리식으로 생산하고 88년에는 탱크를 제조하게 되었다. 1967년 1월 9일 大統領令 제2869호로 改正되면서 그 동안 作業服을 戰鬪服이라 改稱하고 작업모를 略帽로 개칭하게 되었다.

군복은 韓國人의 體型과 國家의 位相·經濟性·戰鬪狀況 등에 따라 개정되었는데 1965년부터는 컨버터블 칼라(Convertible Collar; 헤치거나 여미거나 깃의 형태를 갖춘 깃)로 하고 면직물이 쉽게 磨耗됨으로 어깨·팔꿈치·무릎·엉덩이에 덧붙임을 부착하여 지급

〈사진 16〉 일본식 국방경비대 복장

〈사진 17〉 미국식 국방경비대 복장



(출처: 육군복제사, p. 114)



(출처: 육군복제사, p. 115)

하였으나 品位가 格下된다는 이유로 廢止되었다. 1967년에 개정된 군복은 장교는 오브롱 칼라(Oblong Collar ; 스포츠칼라의 아래 깃을 없앤 모양)로 바꾸고 사병은 견장을 없애고 뒷주머니를 겹주머니로 바꾸었다. 그리고 略帽는 한국의 紗帽를 변형시킨 윗부분을 3分割 縫合하여 만들었다. 그러나 派越將兵에게는 한국전쟁 때支給한 군복과 비슷한 모양으로 신축성있는 큰 주머니를 달았고 요철이 있고 땀 發散을 위해 정글화를 신었다. 1971년 上衣를 바지 바깥으로 나오도록 하였고 칼라는 다시 컨버터블 칼라(Convertible Collar)로 하고 허리에는 조임끈을 부착했다. 그러나 키가 작은 韓國人에게 印象이 좋게 보이지 않아 다시 1973년에 改正하기에 이르렀다. 1980년대부터는 自由友邦軍服이 普遍化되면서 自體 生産을 하여 輸出까지 하게 되었다.

現代文明의 發達은 군복도 科學化되어 保護色 연구는 중요한 여건으로 각 나라마다 環境·氣候·土壤·植生 등 地質學的 연구가 先行되어 얼룩무늬 군복이 採擇되고 있다. 韓國은 山林이 약 75% 차지하고 나머지는 平野로 되어 있다. 林野面積의 比率은 針葉樹林 48.1%, 闊葉樹林 17.3%, 混合樹林 25.3%, 竹林 0.2%, 無林牧地 8.9%로 나타난다.⁶⁸⁾

전투복에 있어서 特殊機能은 결국 保護色의 문제이며 되도록 눈에 띄지 않게 하여 기능과 능률을 꾀하는 消極的 方法의 安全色을 찾는 것이다.⁶⁹⁾ 그리하여 낮에는 周圍色과의 境界色이 없도록 얼룩무늬로 채택하였고 夜間에는 赤外線 探知機로 사람의 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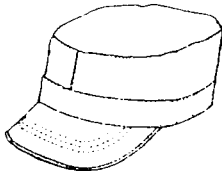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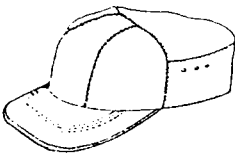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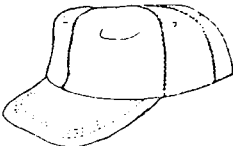
68) 손영숙, 「우리 나라 육군복에 대한 연구」, 1982.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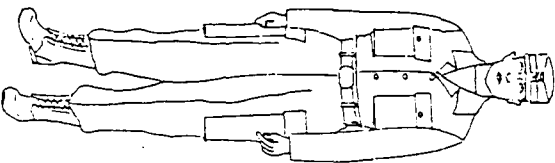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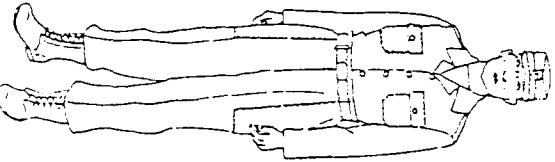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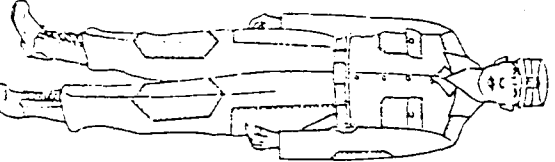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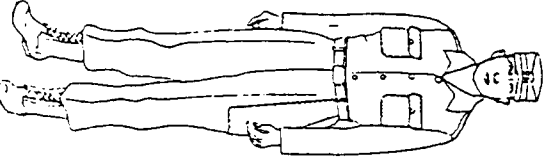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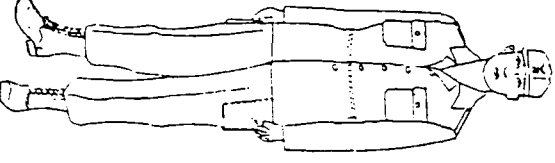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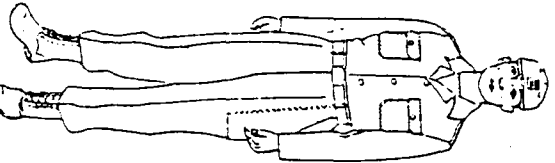
69) 박용훈, 「색채상징과 성격」, 1980.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3.

직임을 알지 못하도록 自然色에서 나오는 赤外線 反射率과 의복에서 나오는 反射率이 같도록 과학적으로 染色하여 敵軍으로부터 保護하도록 하였다. 世界的으로 公認된 얼룩무늬 군복은 사막지대용과 수풀지대용이 있다. 얼룩무늬 군복은 일부 特攻隊에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세계적인 趨勢로 先進國의 1/2 정도가 착용함에 따라 한국도 85년부터 계획하여 91년 11월 23일부터 戰鬪服·戰鬪帽·野戰上衣를 수풀지대용 얼룩무늬로 착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한국은 사계절의 환경을 고려하여 黑色 20%, 綠色 30%, 褐色 30%, 모래색 20%를 넣어 만든 복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1993년 소말리아(Somalia) 파병 시에는 사막지대용 얼룩무늬를 사용하였다.

얼룩무늬가 채택된 이유는 1) 品位를 維持시키고 韓國的인 특색을 浮刻시키며 2) 전술행동에 便宜性を 제공할 수 있고 3) 偽裝效果를 增大시키고 威嚴性を 兼備하며 4) 4계절 착용이 가능하

〈사진 18〉 전투복과 전투모의 변천과정

'46~'70	'71~'83	'84~現在
圓筒形	紗帽援用形	運動帽形
		
※ 56年 뺏뺏한 形態로 變更		

'46 ~ '54					신축성있는 큰 주머니
'54 ~ '65					고착된 작은 주머니
'65 ~ '67					덧댐 부착
'67 ~ '71					Oblong Collar
'71 ~ '73					하의에 큰 주머니 : 상의 를 하의 밖으로 착용
'73 ~ 1991					고착된 작은 주머니 1991 - 열록무 니 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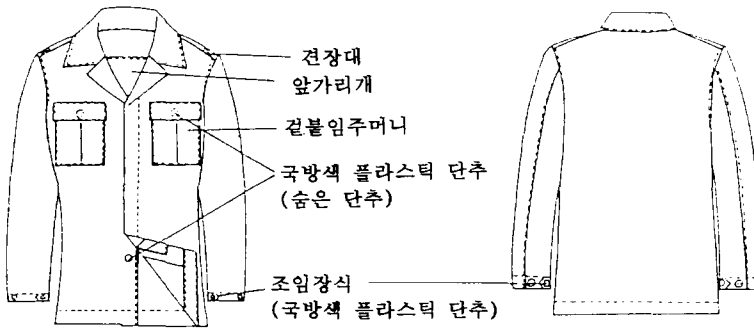
〈사진 19〉

얼룩무늬 전투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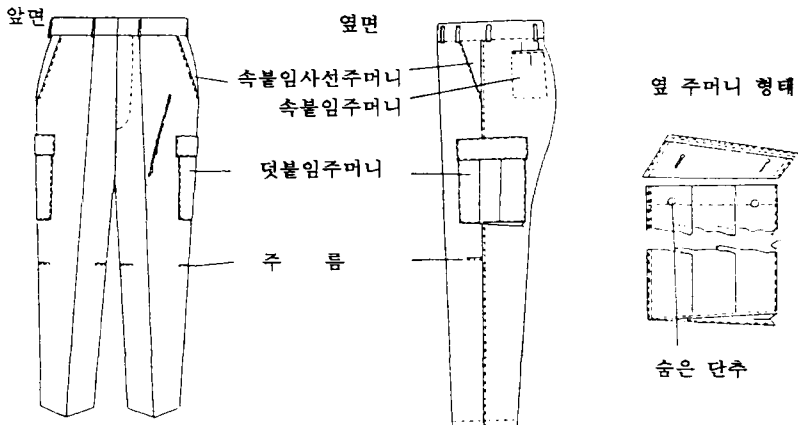
지질 : 면직 또는 화섬 혼방

색상 : 얼룩무늬(갈색, 카키색, 녹색, 흑색)

상 의



하 의



고 洗濯 및 經費가 容易하며 5) 威嚴과 敵에게 威壓感을 주기 때문이다.

현대 얼룩무늬 전투복의 디자인은 1) 목에 있는 단추와 소매조임 단추를 잠그면 화생방·가스에 대해 몸을 보호하고 2) 바지옆 주머니에 주름을 2개 넣어 크게 한 후 덧주머니를 달아서 비상식량을 넣게 하고 주름은 뒤쪽으로 향하게 하여 후퇴할 때 나무가지에 걸리지 않도록 하였다. 3) 무릎옆 술기에서 주름을 넣어 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고 군화를 신고 앉을 때 밖으로 단이 빠져 나오지 않도록 하였고 신발 속에 바지를 넣어 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하였다. 4) 바튼(Vat)染料과 還元染料로 赤外線 裝備로부터 구별하지 못하게 하였고 발수 발유 처리되었다.

4. 結 論

20세기는 戰爭의 時期라 일컬어지며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北韓은 核武器 開發에 注力하여 軍備增強을 계속하고 있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軍服은 防禦用 武器로서 武器의 발달과 戰術의 변화에 따라 계속 변천해 왔다. 화약의 發明은 군복을 輕捷하게 했고 銃器의 發達은 유니폼(Uniform)의 概念으로 바꾸었으며 색도 威容을 과시하는 原色에서 偽裝色인 카키(Khaki)색·국방색·얼룩무늬 등으로 변천하였다. 군복은 機能的인 면뿐만 아니라 象徵的인 면에서 중요한 약속으로 인식되어 개인뿐 아니라 國家的 位相과 國際的 優

位性を誇示하게 되었다.

19세기말 韓國은 傳統的인 具軍服을 입었는데 좁은 소매와 戰笠·戰帶 등이 戎服의 기능으로 적절했고 戰服의 色을 달리하여 部隊 所屬을 나타내는 유니폼(Uniform)으로서의 기능을 가졌었다.

연구결과 舊韓末 植民地 獲得에 狂奔한 歐美 列強들에 의해서 政治制度 軍事制度에 있어 外勢의 영향을 받으면서 淸→러시아→日本→美國의 軍服을 입었지만 군복의 標識章과 服飾品 등을 통하여 韓國的인 象徵을 나타내려는 自主的 意志와 努力을 엿볼 수 있었다.

淸의 影響期에 입었던 軍服 想像圖를 遺物과 淸兵들의 사진들을 考證하여 그려보았고 日本·러시아의 軍制下에서 韓國에서 勅令에 의해 頒布된 軍服을 日·露의 軍服과 많은 차이가 있었고 帽標나 단추나 袖章 모자 裝飾 등에 韓國의 自主性を 나타내려는 흔적을 볼 수 있었다. 그간 러시아 軍服을 입었던 時期를 1897년에서 1900년까지로 알았으나 본 논문을 통하여 1897년부터 1898년까지임을 알게 되었다.

해방을 맞고 政治 社會 經濟的인 安定 속에서 自強하려는 꾸준한 努力 끝에 韓國은 자체내에서 服地를 生産하여 韓國의 品位를 유지하고 機能的이고 僞裝에 좋고 韓國人의 체형에 맞는 자랑스런 軍服을 입게 되었다.

科學文明의 發達は 軍服에 있어서도 質的 向上을 가져와서 낮에는 僞裝目的으로 한국의 土質에 맞는 얼룩무늬를 만들어 입었고 夜間에는 赤外線 裝備로부터 구별하지 못하도록 染色하였으며, 發水·加工處理 외에 化生放作用劑의 汚染으로부터 防護하기 위한

保護衣와 保護裝備에 대한 各國의 研究動向 및 特徵에 대해 연구하였다.

軍服은 武器發達과 科學의 發達에 따라 계속 變遷 發展해 갈 것이며 外觀의 問題와 더불어 質의 問題가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韓半島 安保에 對備하여 量的減縮·質的增強을 骨幹으로 技術集約形式으로 연구개발하여 未來指向的인 國防政策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1世紀를 向한 軍事指導者의 戰略과 리더십

李 代 雄
(中央大 教授)

1. 序 論：21世紀의 戰略的 狀況
2. 指導者의 價値別 類型
3. 21世紀 軍事指導者의 리더십 戰略
4. 結 論

1. 序 論：21世紀의 戰略的 狀況

가. 21세기의 特徵

冷戰 이후 소련과의 核戰爭 위기에서 일단 벗어난 美國은 그것보다 중요도가 낮은 地域紛爭, 테러, 麻藥과 같은 문제에 강력히 대처함으로써 세계질서를 유지한다는 이른바 低強度 紛爭戰略을 써왔다. 여기서 美國이 지역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는 대상은, 종교적인 열정이나 지도자의 성격으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리비아, 이란, 북한, 쿠바 등이었다. 1990년 8월 이전까지만 해도 이라크는 親美國家로서 이 대상에서는 그 다음의 순위에 오를까 말까였다.

그러나 이라크는 어느 나라보다 앞서 팩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¹⁾에 도전했다. 그리고 무참히 패배했다. 이 엄연한 사실은 카다피, 라프 산자니, 카스트로, 김정일 등에게 교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걸프전 중재에 나섰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소련의 국제적 위상도 한 단계 더 격하되었다. 또한 미·소 兩極體制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 걸프전쟁을 계기로 세계는 美國一極體制로 전환되고 말았다. 그리고 소련은 마침내 붕괴되었다.

세계는 지금 유엔 安保理事會의 결의를 바탕으로 국제질서를 회복시킨 美國의 의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동시에 美國이 戰後 처리도 전쟁처럼 능률적이고 사려 깊게 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걸프전쟁 후 부시 미국 대통령은 新世界秩序에 대해 계속 언급해 왔다. 즉, 냉전 이후 새로운 국제적 행동규범이 마련되어야 하고, 세계 도처에 새로운 의미의 공동체가 창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新秩序는 침략자에겐 은신처가 없는 것을 말한다고 부시는 설명하면서 실제로 相互不可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질서의 기본개념을 喝破했다. 이 신세계질서는 유엔과 같은 좀더

1) Pax Americana는 미국의 주도하에 유지되는 세계평화를 의미, 19세기에 영국이 적대국에게 강제했던 평화, 혹은 영국의 지배하에 의한 세계평화에서 유래된 말.

강력한 국제기구의 존립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좀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新世界秩序의 핵심적 한계는 세계 각국들이 다양하고도 相衡되는 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최소한의 원칙에만 동의하리라는 데에 있다. 따라서 중요문제는 世界秩序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다. 美國과 EC 및 러시아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상황에서 석유공급의 안전확보라는 선진국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제3세계의 독재자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를 결집시키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다. 新世界秩序로서는 오히려 政治·經濟的 自由, 혹은 억압받는 국가들의 해방 같은 事案들을 통합한다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한계는 세계 각국이 그들의 침략문제를 국제기구에 떠넘기고자 했을 때 여실히 드러났었다. 1930년대의 國際聯盟은 1935~36년 이탈리아의 아비시니아 침공에 대한 대응에 실패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유럽의 많은 부분을 히틀러의 膨脹主義에 내어 준 것에 이르기까지 전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이었기에 국제적 결속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담 후세인과의 전쟁은 유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걸프전쟁 이전에는 40여 년 간의 冷戰으로 인해 탈진상태에 빠진 국제사회가 호전적인 제3세계의 침략자들에 대처해 나갈 힘이 있는지가 불분명했다. 이제는 국제사회의 힘이 판명되었고 그로 인해 김정일, 카스트로, 카다피 같은 潛在的 問題兒들도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 미래를 향한 도전은 新世界秩序의 視野가 이러한 明明白白한 문제를 넘어 관별

하기엔 다소 애매한 국가행위까지 넓혀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新世界秩序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新世界秩序의 핵심적 특징은 脫冷戰 질서라는 데 있다. 국제적 冒險主義는 이전처럼 이번에도 그랬지만 과거처럼 러시아의 지원을 받지는 않을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모험주의와 싸우는 일이 미·러시아 위기, 그리고 세계대전의 위험을 수반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날 걸프전에 있어서 구소련이 최소한 美國 友邦으로 있는 한 世界共同體는 침략에 대해 좀더 비타협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 국제행위의 본보기라면 無秩序였다. 국가들이 어떤 仲裁勢力없이 自國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들 상호간의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국제관계 이론가들은 지난 몇년 간 지적해 왔다. 국제정치라는 것은 다른 정치와 마찬가지로 권력을 위한 투쟁이라고 現實主義者들은 말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그 말은 옳다. 하지만 전 세계의 상호 의존이 더 많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창출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는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해관계에 대한 개별적 반대가 세계적 조류를 압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 이전보다 공통의 이해관계가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캐나다와 美國 양측은 미국의 産業公害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韓國과 美國은 모두 不可侵과 自由貿易의 원칙을 원하고 있다. 이처럼 공통 관심사의 증가와 그에 대한 국가들의 인식이 커짐에 따라 新世界秩序의 영향력도 증대될 것이다.

이제 이 세계는 바야흐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강력한 국제기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세계가 수백년에 걸쳐 政治·經濟的인 측면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하나의 세계공동체에 대한 꿈은 아직 요원하다. 그러나 제한적이거나 그것을 향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간 교역의 증대로 유럽공동체(EC), 그리고 北美 自由貿易協定(NAFTA), 아시아 태평양 經濟會議(APEC), 獨立國家聯合(CIS)과 같이 政治 블록화하는 것을 이러한 경향의 한 증거로 볼 수 있다.

美國은 이번의 新世界秩序가 실패하면 안 된다고 믿고 있다. 실패한다면 누적된 위협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제3세계에 널리 확산된 生物學, 化學, 核武器의 技術, 3만 개의 核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의 불안정, 그리고 北韓의 核武器 開發과 韓半島, 西南아시아와 유럽 등지에서의 무기경쟁을 볼 때 미래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충격은 과거에 일어났던 어느 전쟁보다도 심각하리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부시 미대통령의 新世界秩序는 환상이 아니고 지극히 현실적이다.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平和는 바로 이 新世界秩序의 구상에 달려 있다.

나. 韓半島 周邊情勢의 變化

걸프전쟁 이후 美國의 강력한 주도권행사에 대항하려는 외교적 노력이라는 평을 듣던 江澤民 中國 共產黨 總書記와 고르바초프 구소련 大統領간의 회담이 1991년 5월 중순에 있었다. 모두 18개 항에 걸친 중국과 구소련, 두 나라 지도자의 共同聲明은 예상대로

한반도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1989년 두 나라가 관계정상화에 합의한 이래 2년 만에 이루어진 江澤民 總書記의 모스크바 방문은 동유럽 공산권 붕괴 이후 아시아도 불가피하게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는 유동적 상황에 있기 때문에 특히 주목돼 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예상됐던 선을 크게 웃돌지도, 그렇다고 크게 밀돌지도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江澤民은 동년 5월 17일 구소련 외교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두 나라는 새로운 관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대항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 말은 앞으로 두 나라의 관계를 짐작하기에 적절한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다.

1994년 여름, 러시아와 中國은 모스크바에서 兩國 國防長官이 마침내 國境衝突 防止協定에 서명했고, 가을에는 상호 戰略武器 裁減 防止協定에도 양국의 정상이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러시아군 55만과 중국군 1백만이 맞서 있는 국경지대의 兵力減縮 協商과 核武器 減縮協商이 진행될 기초가 마련된 셈이다. 이것은 다시 양국간의 경제교류 확대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큰 관심은 두 나라가 東北亞의 새로운 平和와 安定을 위해 무엇을 주고 받았는가에 있다. 이와 관련해서 두 나라는 霸權主義 반대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開放·協力·繁榮에 목소리를 같이했다.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美國의 일방적인 主導權에 끌려 다니지만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고 하겠다. 이것은 또한 구소련이 일찍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集團安

保機構 구성에 끈질긴 집착을 보여 온 사실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들어 美國과 中國의 관계에 틈새를 예고할 수 있는 현안이 발생했다. 즉, 中國의 不公正 貿易慣行과 武器販賣, 人權問題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로 인해 美國의 부시 행정부에서부터 오늘의 클린턴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對中國 最惠國待遇 延長問題를 둘러싸고 議會 쪽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中國에 대한 最惠國待遇 延長問題가 거부될 경우, 중국은 對美수출에서 현행보다 10배의 높은 關稅를 물어야 하고 美國 역시 交易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결국 클린턴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것이 다시 연장되었다.

中國은 그 동안 對美 貿易黑字를 기록해 오면서 이제는 日本·臺灣에 이어 제3의 위협적인 존재로 발전했다. 한국이 6共으로 들어서면서 윤기있는 미국시장을 다 빼앗기고 있을 때 中國은 臺灣과 더불어 美國市場에 새로운 強者로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美國의 여론은 뒤늦게 비판적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시장에 내다 파는 값싼 상품이 죄수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지적, 그리고 파키스탄·시리아·알제리 등에 핵운반 수단인 미사일과 핵탄 제조원료를 비밀리에 팔아왔다는 비난, 여기에 天安門事件 이후의 人權問題까지 거론하면서 클린턴 대통령의 對中國 最惠國待遇의 延長方針에 쐈기를 박았던 것이다.

韓國의 입장으로 볼 때 美·中관계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다고 본다. 美·中의 좋은 관계유지야말로 한반도 문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노출되고

있는 중국의 實作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중국이 지역 강국에 대해 핵무기의 운반수단과 重水까지 포함한 핵무기 제조원료를 비밀리에 수출했다는 사실은 오직 놀라게 할 뿐이다.²⁾ 北韓의 核問題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당연한 관심이 아닐 수 없다.

동아시아의 평화는 물론 世界平和에 대해 中國은 책임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中國의 무기판매정책은 그것이 中國과 가장 가깝다는 北韓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 북한이 시리아에 판매한 스커드 미사일도 중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³⁾ 그리고 중국의 새로운 국제정치적 몸짓도 심상치 않다.

또 하나 韓半島의 장래를 불안케 하는 것은 日本의 軍事力 強化이다.

獨逸 서부지역에 위치한 軍事基地의 1/3이 1994년까지 폐쇄될 것이라고 한다. 舊 東獨軍 13만 명과 국경경비대 4만여 명은 이미 해체됐고 舊 西獨軍을 주축으로 한 獨逸의 總兵力은 44만 6천 명쯤 되는데, 그 중 9만 명이 감축되어 현재 獨逸의 總兵力은 34만 명 선이다.⁴⁾ 西部 獨逸에는 688개의 軍事基地가 있었는데 그 중 213개가 폐쇄됐다. 또 다른 176개의 기지의 운영도 50% 이상 축소될 예정이다.⁵⁾

그런데 같은 2次大戰 敗戰國으로서 함께 경제대국을 이룩한 日本은 軍事基地가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다.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2) 李代雄, 『指導者의 戰略과 리더십』, (서울: 혜진서관, 1992), pp. 199~200.

3) 상계서, pp. 201~202.

4) 상계서, pp. 202~203.

5) 상계서, p. 201.

日本 국내의 軍事基地는 390개였다. 최근 그 수는 450여 개로 늘어나 있다. 陸軍이 130개에서 176개로, 海軍이 124개에서 130개, 空軍이 138개에서 149개소로 착실히 늘어났다.⁶⁾ 거기에 따른 군사비도 자연히 늘어났다. 85년에 약 15조엔을 넘었고, 90년엔 약 20조원을 넘겼다. 미구에 日本 自衛隊의 예산은 30조원을 돌파할 것이다. 그 절반 이상이 인건비라고 일본의 위정자들은 엄살이다. 76년까지 그랬다. 당시의 인건비 對 군사장비 비율은 56 對 44였다. 그러나 이 비율은 이때를 피크로 逆轉, 무기 등 물건구입비와 인건비는 6 대 4쯤이 됐다. 일본 최대의 군수공장 밀집지대인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는 자리가 비좁아 인근 땅을 자주 사들일 정도다.⁷⁾ 일본은 이제 또다시 富國強兵策을 쓰고 있다.

다. 軍事指導者의 對應戰略

프로이센의 클라우제비츠(V. Clausewitz) 장군은 그의 풍부한 전쟁 경험, 다년간의 사색과 연구, 총명과 정열을 가지고 한 力著를 남겼다. 그의 말을 빌리면 “2년 내지 3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책을 만든다는 것은 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단 전쟁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한 번 이상 손에 들어도 후회하지 않는 책을 저술할 생각이다”고 집필 동기를 밝혔다. 원고를 쓰는 데만 12년 간이 소요되었으며, “生前에는 결코 출판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불행하게도 미완성으로 그치고 그의 부인에 의해

6) 상계서, p. 202.

7) 상계서, p. 204.

출판된 책이 바로 「戰爭論」(1832)이다.

이 著書로 인해 그는 近世 軍事理論의 元祖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저서가 출판된 지 16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軍人, 政治家, 外交官 및 實業人 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 의해 읽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저술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평가된다. 긍정적인 면에서나 부정적인 면에서나 軍事問題, 즉 戰爭이나 戰略의 문제를 다루는 저서치고 그의 저서의 내용이 인용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전략을 다루는 데 있어서 “調査와 觀察, 哲學과 經驗은 서로 輕視하거나 排擊할 것이 아니라 양자는 서로 補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韓半島의 核問題에 대해 지식인들이 주로 정치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이는 戰略을 모르는 無賴漢들의 道樂이다.

오늘날 韓國의 일부 政治學者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國際政治體制에 있어서 핵무기가 주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 안이하게 韓半島의 非核化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핵무기는 군사분야에 있어서 革命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世界秩序에도 나뉠대로의 흔적을 남겨 가고 있다. 이 核武器는 앞으로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지도 모른다. 核戰略의 기본원칙에 관한 지식은 이제 세계적인 史觀과 思考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 되어 있다. 따라서 세상에는 核戰略에 대해 무관심할 수 있거나 核武器가 함축하고 있는 意義를 도외시킬 수 있는 나라는 없게 되었다.

이것은 核武器를 보유하고 있건, 아니건 간에 크고 작은 나라들에 대해서 다 같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몇 안 되는 강대국에 의해서 시작된 핵무기에 관련된 토론은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에 필연적으로 전파된다.

軍事戰略은 항상 한 시대의 성격에 영향을 주며, 특히 그 시대의 국제관계의 본질에 영향을 미친다. 말하자면 전쟁이란 평화의 관습이 늘 그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이 전략과 그 시대 특성간의 밀착은 오늘날에 와서 더 강화되었는데 이는 전략의 특성과 그 기능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전략이 1차적으로 전시에 사용되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전략이 주로 평시에 사용되며, 그것의 주된 기능이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방지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들 시대에 있어서 전략이란 전쟁 뿐만 아니라 평화에 대해서도 뚜렷한 흔적을 남긴다.

戰略은 不戰術(art of non war) 즉, 戰爭防止의 기술로 轉換되었다. 그것은 종전에는 폭력의 技術的 使用(Skillful use of violence)으로 정의되었으나 지금은 軍事力の 技術的 不使用(Skillful none-use of force)이 되었다. 전쟁의 방지는 폭력의 위협, 즉 도발에 대응하는 보복 위협에 의하여 달성된다. 전략이란 그래서 폭력을 사용하는 기술로부터 폭력으로 위협을 하는 기술, 즉 抑制의 技術(art of deterrence)로 변화되었다. 抑制란 위협을 행사하지 않고 활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억제란 무기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무기의 存在, 그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다.

억제란 인간의 활동으로서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억제는 국가간의 관계에 限定해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이 국가 내에서의 관습적이고 정상적인 활동임을 보았고 친구들 간의 관계나 심지어 가족 간에도 나타나는 것을 본다. 국가는 징벌을 통해 나쁜 행동을 억제할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防止하기를 원하는 행동에 대해 벌금과 형벌을 부과한다.

한편 개인은 그의 식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가 방지하려고 하는 행동을 삼가하도록 조처한다. 報復과 制裁의 위협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인데, 그것은 종종 “우리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다”라든지 또는 “우리는 무관하게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식의 示威的인 뜻이 담긴 교묘한 언어로 표현된다. 이런 모든 것은 抑制目的을 위해서 고안된 것들이다.

억제는 오랫동안 전략과 국제관계에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군사력의 일차적 목적은 항상 가상적인 잠재적 침략자가 자국의 국토나 국가이익에 대한 공격을 못 하도록 억제하는 것이었다. 고대 라틴어 속담에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Civis pacem para bellum)는 표현은 억제에 근거를 둔 것이다. 즉 침략에 대응하기 위하여 준비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 침략을 억제할 것이라는 前提 또는 希望을 表示한 것이다. 억제가 실패하여 전쟁이 발발한 예를 찾아내기는 더 용이하지만, 확실히 역사를 통해서 많은 도발이 억제되어 왔다.

核時代가 출현하기 전에 무기의 사용은 억제를 하는 자나 억제당하는 자에게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심각한 손실의 가능성과 위협을 주지는 아니하였다. 무기를 사용할 준비와 결의면에서 구체화된 억제의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때에는 적대관계가 발생하여

무기는 자연적인 진행 과정에 따라 사용된다. 억제제는 종종 전쟁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중간 정거장이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군사력의 사용이나 開戰을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덜 주저하였었다. 核戰爭은 양측에 대해서 다 같이 파괴적이고 재앙에 가득찬 공포가 된 나머지 모든 당사국들은 전쟁발발을 방지하는 데 충분한 억제에 의지하려 한다.

그러므로 비록 억제제가 오랜 연륜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왜 그것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강조되지 아니하였으며 연구와 분석의 주체가 되지 못했나 하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들 시대에 있어서 억제제는 이제 전략의 중심개념이며, 초석인 동시에 정수이다. 그것은 신비스런 특성을 지닌 말로, 어디에나 나타나는 일종의 표어로서 공통적인 수사어적 경향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다. 아마도 오늘날 군사문제에 책임을 지닌 조직이나 기구가 수립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國防部(Defense Ministries)가 아니라 抑制部(Ministries of deterrence)로 불리어질 것이다.

과거에는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위협—즉, 다른 말로 하면 억제—이 전쟁으로 치달아가는 좁은 길목이었다면 오늘날은 억제 그 자체가 핵심요소이다. 이 현상은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다. 그것은 더이상 무기의 실제적인 사용이 아니고 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이며, 이 위협이야말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되었다. 억제는 무기의 실제적 사용에 부수되는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무기의 사용이 억제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전쟁을 치를 잠재력은 억제를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된다.

이 혁명은 사고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전쟁의 在來式 概

念—군대와 무기의 사용 개념—으로부터 核時代의 概念—억제의 개념으로의 전환은 결코 단순한 것은 아니다. 기억할 수 없는 오랜 옛날부터 인류는 “武器는 곧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 즉 전쟁을 치른다는 맥락에서 생각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군사적 관심과 참모계획은 무기의 실제적 사용과 현안 문제로 지향되어 왔다. 군대는 무기를 사용하는 것, 즉 전쟁을 치르는 훈련을 받아왔다. 억제는 곧 군대와 무기의 존재 그 자체로부터 생겨나온 것이지만 특히 군부의 흥미를 일으키지는 못하였고, 그것의 적절한 위치는 완전히 독립되고 군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정책결정 수준, 즉 국가 수뇌부의 배타적인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억제는 하나의 정치적 주제였다. 전략은 외교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핵무기는 전략을 정책의 수준, 즉 억제의 수준으로 승격시킴으로써 급격한 전환을 이룩하였다. 억제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더이상 사고의 군사적 수준에서 만족할 수 없고 정책수립가의 개념적 위치에까지 올라가야 했다. 더욱이 핵무기가 초강대국의 수중에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핵억제를 개념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계적 지도자들의 차원높은 시각에서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참으로 전략은 언제나 정책에 불사하여 왔다. 그러나 정책과 전략간의 결속이 핵시대에서처럼 두터웠던 때는 없었다. 외교와 전략은 상호 의존적 관계가 되었다.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 3월 28일, 그의 의회교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교와 방위는 더 이상 서로 분리된 대책, 즉 둘 중 하나가 실패한 곳에서 다른 하

나가 사용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주된 기본적 과업은 외교의 뒤에 서서 외교를 보완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전략은 오늘날 일차적으로 戰·平時의 외교의 한 도구이지 전쟁의 유일한 도구는 아니다. 군사력의 불사용은 그것이 주로 외교에서의 관심사임을 시사한다. 동시에 정책수립시 전략적 고려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국가안전보장의 관점에서는 국가이익이 제1차적이고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정책에 있어서 전략적 요소의 이러한 중요성은 국방부의 공식적인 지위 향상에 반영되어 있다. 외무부는 안전보장 사항에 대한 고려의 비중을 증가시키게 되었지만 國防部나 일반 참모부는 과거에 비하여 훨씬 더 군사적인 면과 아울러 정치적인 면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러한 戰略과 外交의 類似性은 또한 외교에 대한 戰爭手段의 빈번한 기술적 수단의 영향에 반영되어 있다. 무기의 기술적 수준, 파괴력, 사용방법과 이점에 있어서의 진보는 전략이 변경되고 있는 전략교리와 외교업무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기술적인 변화와 신발명은 항상 전략과 정책 및 외교의 필요에 의해 주도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술발전은 그 자신이 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는 기술변화에 보조를 맞추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 기술변화에 적응하고 외교의 일반적인 필요성과 기술, 그 자체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억제라는 맥락에서 생각의 실마리가 싹트게 된 변경된 사고방식은 추상적인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더 구체적인 표현, 예를 들면 억제를 위해서 소요되는 군사력 수준의 계산에 있어서

와 같은, 보다 구체적인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 계산은 재래식 전쟁에서 종전에 사용되던 어떠한 것과도 다르다. 在來式 戰爭에 사용될 所要軍事力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지침적인 요소는 敵의 力量에 기초했었다. 억제제를 위해서 소요되는 군사력의 수준은 적의 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다. 과거에는 이 계산이 敵의 軍事力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힘을 維持하는 대로 지향했다. 억제제의 계산에 있어서의 목표는 적의 침략적 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군사력 수준의 차원이 적을 좌절시키고 대결에서 앞설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의미한다. 이런 軍事力의 量과 質은 가능하다면 적이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잘못 평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過去에 한 國家의 計算은 敵을 패배시키거나 최소한 敵軍에 대해 성공적으로 抵抗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그 국가 자신의 평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抑制戰力의 所要를 계산함에 있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수준, 즉 상상력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所要戰力은 우리에게 충분한 수준이 얼마인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적 자신이 침략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게 될 수준에 의한다. 즉, 적 자신이 그가 현재 가진 군사력으로는 침략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군사력 수준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억제전력의 계산은 무엇이 적 자신을 억제시킬 것인가에 대한 적 자신의 평가에 대한 우리의 평가에 근거한다. 그래서 군사력 所要計算은 적 자신을 억제시킬 수 있는 힘의 크기에 대한 적 자신의 이미지를 看破하려는 우

리들의 노력에 의존한다.

軍事指導者가 이와 같은 戰略的 概念이 명확하게 서 있을 때 그는 政治指導者의 신임을 얻게 되며 부하들로부터 尊敬과 信賴를 얻게 됨으로써 리더십의 발휘에 큰 공헌을 하게 된다.

2. 指導者의 價値別 類型

가. 出世主義者型

가장 저급한 도덕 및 윤리의 수준에서 행동하는 出世主義者型(Careerist archetype)은 조직의 생활양식에 나타나는 人間本性을 예리하게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도자형이다.⁸⁾ 왜냐하면 출세주의자형은 自我·自己利益·기본적 정서와 같은 가치들로 특징지어지기 때문이다. 자기보존·자기향상·자기중심·자기관심을 특징으로 하는 가치수준에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 아니 모든 감각있는 생물들과 동일한 본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 수준에서 행동하는 인간의 가치계산(value calculus)은 매우 단순하다. 그것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라는 快樂主義(hedonism)에 기초하고 있다. 이를 프로이트(Sigmund Freud)⁹⁾의 용어들로 표현하면, 이 수준에서 행동하는 인간의 동기유발은 본질적으로 원초자아의 근원적 욕망

8) Christopher Hodgkinsom, The Philosophy of Leadership(N. Y. : St. Martin's) Press, 1983. p. 175.

9) Sigmund Freud(1856~1939), 오스트리아의 의사,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인 리비도의 충동(the libidinal impulse of the id)¹⁰⁾에 의한다. 만일 이 기본적 본능이 충족되지 않고 좌절되면 인간은 심한 스트레스, 격분, 분노를 발하게 된다. 그러나 이 본능적 충동이 적절히 사회적으로 통제받게 되면, 인간은 이것을 통해 성취·인정·성공을 향한 강한 욕구를 갖게 된다.

모든 인간은 이러한 본성을 보유하고 있다. 단지 사회적 고등동물로서의 인간은 이러한 기본적 정서를 적절히 억압·억제·승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인간의 심성 깊숙한 곳에는 언제나 인간의 근원적인 본능적 충동이 존재하고 있다.

아무튼 이 세상은 출세주의자를 만든다. 순수원형적 의미에서 출세주의자는 성공의 이상과 개인적 만족을 추구한다. 그러나 출세주의자의 자기만족과 자기향상에 대한 집착은 그의 성공에 대한 관심을 공공의 목표에 대한 관심과 일치시키지 못한다. 그 대신 그는 환경의 제약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탐색·검증하는 가운데 어떤 절대적인 도덕성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설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유용한 도덕성에 기초한 機會主義的 處世術을 익히게 된다.

이러한 생활양식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출세주의자라는 이름 말고도 기회주의자·쾌락주의자·자기도취주의자 등의 다

10) 프로이드는 퍼스낼리티를 기본적으로 쾌락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므로 퍼스낼리티의 기초는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극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에너지의 원천인데, 그는 이러한 동인을 原初我(id)라고 하였다. 이 원초아는 무의식의 핵이며 마음 깊숙이 자리잡고 있어 원시적 본능의 창고 역할을 하는데, 이는 이기적이고 규율이 안 서는 방식으로 욕망의 즉각적인 충족을 추구한다. 원초아 중 대표적인 것은 성적·공격적 본능이다.

른 이름들이 붙여져 왔다. 그러나 이들이 지닌 공통점은 이들의 행동이 적나라하며, 절제가 없고, 관례를 무시하면서 지나치게 자기관심과 자기이익에 집착한다는 것이다.¹¹⁾ 그렇다고 하여 이들이 모든 관습·법·예의범절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관습·법·예의범절을 빈틈없이 알고 있지만, 이것들을 단지 자신의 성공을 위한 게임규칙으로 이용한다. 이들에게 게임의 목적은 오로지 성공이며, 이들이 지키는 게임규칙에는 자기절제의 윤리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만일 처벌을 받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이들은 당장 게임규칙을 회피·왜곡, 피해갈 준비가 되어 있다. 출세주의자들은 타인의 이익추구를 방해하지 않는 한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게임규칙을 我田引水格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이 게임규칙을 그것이 정하는 한계 이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계속 고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종의 면허장으로 생각하려 든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게임규칙을 이처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려는 성향은 출세주의적 잔인성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양심의 가책은 유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나 도덕적으로 절제하는 사람들에게서나 발견될 뿐이다. 플라톤의 「國家論」에 등장하는 트라시마쿠스(Thrasymachus)는 “힘이 곧 정의”이며, 그 증거는 우리의 눈앞에서 부정한 사람들이 사회적 보상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함으로써 출세주의자를 옹호한 바 있다. 그 후계자라고 볼 수 있는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주장을 한층 더 강화하였

11) E. Durkheim, Professional Ethics and Civic Morals, (London, C. Broakfield 1987), pp. 136~137.

다. 이제 권력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이며 승배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권력은 쾌락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까지도 결정해 주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권력은 보상이 배분되는 게임 그 자체를 규정한다.

따라서 출세주의자들은 권력에 굶주리며, 권력의 증대에 부심한다. 권력의 추구는 야망을 내포한다. 야망이 공개적으로 노출되느냐, 또는 포기되느냐 하는 결정은 사회적 상황과 이러한 결정이 초래할 결과의 이해득실에 달려 있다.

출세주의자는 좌절할 경우에 물러서서 실패를 자인할 줄 알며, 시류에 따라 전략을 바꿀 줄도 안다. 출세주의자는 자신을 카리스마를 갖는 초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는 권력·권위·존경·지위·안락·부수입 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에만 많은 관심을 갖는다.

출세주의자는 성취지향적이다. 왜냐하면 그는 비록 덧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취에 따르는 공적 인정이 자신의 지위, 자신의 값어치에 대한 공인, 나아가 승진과 권력의 증대, 이상적 자아의 만족을 보장해 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출세주의자의 자존심(amour propre) 방어는 가히 절대적이다. 만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는 자신의 조직영토를 유지하고 자신의 권력기반을 방어하기 위하여 「성공의 비법서」가 가르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출세주의자의 이러한 자기방어 노력은 현대의 세련된 각본 연출기술을 통해 온후하고 평범하며 심지어 익살스런 외양으로 포장된다. 그러나 출세주의자는 자신의 자존심에 손상을 끼친 치욕의 경험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치욕을 준 사람에 대한 악

의를 키운다. 그러다가 일단 기회가 오면 그는 가차없이 복수의 화살을 당긴다.

출세주의자의 행동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행동에 가깝다. 그의 첫번째 임무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며 두번째 임무는 자신을 출세시키는 것이라는 논리이다.¹²⁾ 출세주의자는 그가 속해 있는 조직 속에서 출세의 사다리를 올라가야 한다고 느끼며, 또 다른 조직으로 옮기는 것이 자신의 출세에도 도움이 된다면 부득이 다른 조직으로 자리를 옮길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고 느낀다. 이러한 출세주의자와 함께 일하던 상관들, 동료들, 부하들은 그로 인하여 심리적 상처를 입게 되고, 전보다 더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출세주의자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출세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다. 그는 늘상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출세에 비추어 평가한다. 이 사람이 과연 나에게 무슨 쓸모가 있는가? 역으로, 이 사람이 나의 출세에 어떤 지장을 줄 것인가? 이 사람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인가,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또는 손해도 도움도 되지 않는 중립적인 사람인가? 그는 늘 이런 생각으로 사람을 대한다.

출세주의자는 자신의 출세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정서적 갈등을 피하면서 냉혈적으로 무자비하게 처세하는 방법을 익힌다. 출세주의자는 특히 경쟁적 사회 및 문화에서 양성되는 경향이 있다. 현대의 과학기술문화는 출세주의자들을 양성하기에 적합한 기름진 토양이다. 더욱이 이 과학기술문화가 물질주의적·결정론적·패락주의적 속성을 띠는 경우에 출세주의적 행정스타일은 크게

12) Hodgkinson, op. cit., pp. 231~232.

고무된다. 이러한 문화의 명시적·묵시적 보상체계는 성공을 서열 상승과 동일시하며, 성공을 유일한 삶의 의미로 간주하도록 학습시키는 경향이 있다. 쾌락주의적 만족이 서열상승과 연결되면서 애초에 일상적 非行政的 의미에 쏟았던 자기 탐닉의 정서적 충동(affective drives)은 출세하는 일에 대한 열성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하여 출세주의자는 흔히 어렵고 고된 일에 장시간 몰두하며 고전적인 작업윤리에 대한 과잉동조를 보인다. 이와 같이 출세주의자가 일에 몰두하는 것은 그것이 그의 도덕적 망설임을 완화시키며, 심지어 그에게 허위의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도록 유도함으로써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출세주의자의 특징은 그의 철저한 부도덕성(amorality)에 있다. 출세주의자의 이러한 부도덕성은 니체가 말하는 선과 악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병리적인 것도 아니다. 출세주의자는 도덕률로 작용하는 사회적 관례를 일단 인정하지만, 그것을 파기하는 것이 자신의 출세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전혀 양심의 거리낌없이 그것을 내동댕이 친다. 우리는 이러한 출세주의자의 적절한 경험적 사례를 워터게이트사건(The Water-gate Affair)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공익이 출세라는 사익으로 얼마나 순식간에 천연스럽게 둔갑하며, 일이 실패로 끝날 경우에 출세주의자에 의해 동료들과 부하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버림받게 되는지를 본다. 일단 일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사태는 과국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출세주의자들의 이러한 야비한 행동을 군이나 관료들의 사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괴링(Göring)이나 악명높은 캘리(Calley)와 아

이히만(Adolf Eichmann)의 경우가 그것이다. 이들은 복잡한 거대 조직에서 출세가도를 달렸다. 이들은 조직의 사악한 가치가 요구하는 대로 전력투구하였다. 이들의 높은 성과는 윤리나 도덕성으로 제약받지 않는 이들의 출세욕의 결과였다. 사태가 변하여 이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었을 때,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도덕적 책임을 거부한 채 모든 죄과를 비인격적인 조직과 제도, 세력의 탓으로 돌렸다.

나. 政治家型 指導者

政治는 行政의 다른 이름이다.¹³⁾ 정치의 가치논리는 집단선호들로 이루어진 구체적 현실 속에 존재한다. 정치가형은 그의 관심을 자기이익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집합체나 집단의 이익에까지 자연스럽게 확장시키는 행정가를 연상시킨다. 이러한 집단, 즉 전형적으로 그가 책임을 지고 있는 조직은 어느 정도 가치주도권(value hegemony)을 가지고 그의 가치구조와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므로 정치가형은 다른 사람들의 가치들을 개별적으로나 연대적으로 고려하는 지도자형을 의미한다. 이 지도자형은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는 상승작용원리(The Gestalt Principle)의 영향을 받는다. 政治家라는 말은 흔히 경멸적인 출세주의자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政體(a polity)의 의지와 복리를 추구하는 행정가라는 본래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정치가형은 현대의 신봉건적 조직사회에서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행정가가 자

13) Hodgkinson, op. cit., p. 196.

기 자신을 조직과 심리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을 단지 확대된 자아(extended ego) 현상으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정치가형은 집단선택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출세주의자형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지도자의 원형이다. 이 정치가형은 옳은 행동과 옳은 질서의 궁극적인 정당성을 개인이 아니라 집단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신념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이러한 신념은 동서양 어디에서나 민주주의 이념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민주주의 이념은 가장 거대한 조직인 국가를 포함한 모든 조직 수준에서 광범위하게 지나칠 정도로 수용되고 있다. 사실 민주주의 이념을 정당화하는 미사여구는 국가와 진영에 따라 다르며, 실제적 준거집단은 권력엘리트 집단으로부터 각 사회계층과 국민 대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원칙의 근본은 파시스트 국가이든, 공산주의 국가이든, 사회민주주의 국가이든, 혹은 과두독재 국가이든 상관없이 동일하다. 민주주의 원칙의 가치는 집합적 이익(collective interest)이다.

정치가형 지도자는 자기 자신을 구성원들로부터 정력과 도덕적 힘을 이끌어내는 집단의 대변자·지도자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정치가형 지도자는 자신이 대표하는 집단의 융통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정치가형 지도자의 출세주의적 자기도취주의가 이와 같이 자신을 집단가치 및 집단이익과 동일시함으로써 순화·초월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로써 정치가형 지도자는 바나드적 능률성(Barnadian efficiency), 즉 집단적 조화에 먼저 마음을 쏟게 되고, 나아가 합의의 형성과

그 유지에 집착하게 된다. 그는 타협을 통해서, 또 가치들의 거래와 이익의 조정을 통해서 갈등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므로 정치가형 지도자의 강점은 집단역학과 설득의 신비 속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세주의자형 지도자와 정치가형 지도자 사이에는 상당한 가치전환의 과정이 놓여 있다. 정치가형 지도자가 자신의 이익을 준거집단의 이익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그의 욕구와 가치지향을 재정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당화해야 한다. 정치가형 지도자는 집단적 승인에 따라 행동한다. 집단적 지지야말로 정치가형 지도자의 식량과 다름없다. 그는 자신에게 강렬한 출세주의적 사심이 있다는 것을 자인하지만 이러한 사심을 순화시켜 조직의 합법적 승인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집단합의를 확인하고 그것에 공감하며, 또 때로 그것을 흥정하는 데에는 다양한 정치적 수완이 요구된다. 합의가 분명할 경우에 정치가형 지도자의 임무는 간단하다. 그러나 합의가 불분명할 경우에 정치가형 지도자의 임무는 까다롭다. 더욱이 잠재적이거나 새롭게 형성되는 합의가 명시적 합의와 모순될 경우에 그의 임무는 대단히 어려워진다. 집단 합의를 관리할 때 정치가형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미지 형성의 문제다. 정치가는 자신의 인품이 집단구성원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부각되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도자로서의 그의 신뢰성과 권력의 정통성은 궁극적으로 구성원들에 의해 지각된 이미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가형 지도자에게는 고도의 각본 연출기술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는 각본이 요구하는 갖가지 역할들을 노련하게 연출해야 한다. 그는 각종 공식적·비공식적 모임에서 비밀스럽게 제의

되는 의혹을 받을 만한 의견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익을 제기함으로써 이것들을 단호히 거절할 것이다. 이 경우에 행정가형 지도자의 이러한 솔직함은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가식으로 꾸미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일 수도 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다른 이미지들—아버지의 이미지, 아저씨의 이미지, 동지의 이미지, 투사의 이미지, 점잖은 사람의 이미지—을 보여줄 것이다. 결국, 그는 언제 어디서나 유권자들의 비위를 맞추어 처신한다. 특히 그는 참여민주주의에서 최종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거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많은 구성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가형 지도자는 엄격하고 보수적인 결정 대신 유연하고 관대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치가형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의 승진이 한층 수월하고, 구성원들의 작업 및 임금에 대한 요구가 쉽게 수용되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선심용 정책들이 남발되고, 관료제의 팽창이 가속되는 경향이 있다.

정치가형 지도자는 수시로 화해와 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출세주의적 처세술, 즉 마키아벨리적 처신술과—현대의 완곡한 표현으로—고도의 외교술을 발휘하게 된다. 오늘날의 리더십 관련문헌의 심리학적 용어들로 말하면, 정치가형 지도자는 구성원들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그는 구성원들에게 개인적 호의를 베푸는 데 대단히 적극적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신의 견해와 행동을 구성원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상의하며, 그들을 지원해 주고, 결코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으며, 그

들을 자신과 동등한 사람으로 대우한다. 그는 친절하고 접근하기 쉬우며, 추종자들의 능력을 상회하는 일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고, 변화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다.

정치가형 지도자는 도덕적이며 합리적이다. 정치가형 지도자의 관심영역이 자기이익이나 확대된 자기이익을 능가한다는 점에서 그는 도덕적이다. 그는 집합적 이익과 자기이익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에 자기이익보다 집합적 이익을 우선시키며, 집합적 이익에 부합하도록 자기이익을 수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자기희생과 자기억제가 수반되며, 집단 상호작용의 가치계산에 입각한 합리적 고려가 내포된다.

정치가형 지도자는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언제나 도덕적·윤리적 부패에 빠지기 쉽다. 합의를 모색하는 일과 합의를 조작하는 일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은 때로 어렵다. 사실의 영역에서 집단의 가치합의를 통해 진리나 올바름을 증명할 수 없듯이 가치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흔히 집단들은 그릇되거나 억압적일 수 있다. 사소한 퇴행과정을 통해서 정치가형 지도자는 우리가 흔히 조직생활에서 만나는 각본 연출의 책략에 능란한 사기꾼, 협잡꾼, 책략꾼, 그리고 집단사고(group-think)를 대변하는 귀족으로 전락하기 쉽다. 집단을 설득하는 것과 집단을 압제하는 것 사이에는 단지 한 단계의 격차가 있을 뿐이며, 모든 정치가형의 지도자는 출세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정치가형의 더 큰 약점은 단기 지향성이다. 집단의 구성원들은 수시로 변화하고, 집단의 가치들은 단기적 합의를 형성한다. 출세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정치가는 미래의 약속보다는 당장의 이익을

더 선호하며, 장기적인 고려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집단과 그 지도자는 다른 방식으로나 다른 곳에서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루하루를 헤쳐나가는 실용주의 철학과 일치하며, 너무 먼 미래를 그린 시나리오로부터 도출된 가설적 상황을 넘보지 않으려는 선천적인 지혜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가치의 단기적 실현은 단지 쾌락주의적일 수 있으며, 장기적 편익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 技術者型 指導者

정치가형은 그 나름의 가치논리를 합의의 정치(the politics of consensus)에 두고 있는 반면, 기술자형은 그 나름의 가치논리를 행위상의 가치판단이 초래할 결과의 합리적 분석(the rational analysis of the consequences)에 두고 있다. 기술자형은 합리적·인지적·합리적·법적이다. 기술자형은 이성의 이념(the ideology of reason)에 깊이 뿌리박은 조직 및 제도적 틀로 이루어진 복잡한 과학기술문화에서 거의 종합적인 가치평가적 지도자형으로 작용한다. 이 기술자형 지도자를 기술자(technician)라고 부르는 것보다 기술관료(bureaucrat)라고 부를 수도 있다.¹⁴⁾ 그러나 기술관료·관료제·관료적이란 말들이 일상적으로 경멸적 의미를 내포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자형 지도자의 긍정적인 측면을 묘사하는 데는 부적합한 면이 있다. 베버가 묘사한 이상형적 관료제와 이 이상형에 접근하는 현실세계의 관료제들은 그에 대한 일반인들의

14) Ibid, p. 207.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이루어 낸 최고의 성취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베버(Max Weber)¹⁵⁾가 묘사한 이상향적 관료제가 내포한 가치들은 이 기술자형과 부합한다. 과학 및 학술기관들의 가치들도 역시 기술자형과 유사하다. 이러한 가치들은 모두 지성과 논리의 가치들이다. 이러한 가치들은 냉엄성, 불편부당성, 논리적 분석, 문제해결, 능률성, 효과성, 목적달성, 기획, 공리주의적 공동선의 극대화 등의 가치들을 내포한다. 여기서는 正義가 공정성(fairness)과 동일시되며, 경제적 분배의 정당성은 기회의 평등에서 발견된다. 여기에는 합리성이라는 궁극적 미덕에 대한 신념이 내포되어 있다. 즉 이 신념은 인간의 온갖 문제들이 진술될 수 있다면, 그 문제들은 원칙적으로 결국 해결될 것이며, 그 해결의 주요수단은 순수지식이든 응용지식이든 지식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또한 감정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으며, 질적·사실적인 것보다는 양적·개념적인 것을 선호하고, 개별사례적인 것보다는 일반법칙적인 것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적인 기술자형 지도자는 수학자일 뿐만 아니라 체제 이론가이다. 그는 건축술을 본떠 모형을 개발·적용하고 재설계체제(MARS), 기획예산제도(PPBS), 프로그램 평가관리법(PERT)¹⁶⁾등의 정치한 기법들을 조직의 운영에 적용하기를 좋아한다. 이러한 기법들의 유용성과 성과는 일정한 시점에 조직들로 구성된 사회구조에 존재하는 부정 엔트로피(negentropy)의 수

15) Max Weber(1864~1920), 독일의 경제학자, 사회학자.

16) MARS : Model Adaptation and Redesign System ; PPBS : Planning, Programming, Budget Systems ; PERT : Program Evaluation Review Technique.

준에 의해 평가된다.

우리는 참으로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태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도움을 받는 조직이 거의 모든 일을 해 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은 인간으로 하여금 은하계 사이의 우주공간을 날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로부터 인간의 삶 자체를 해치는 일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인간사를 이룩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기술자형 지도자의 도덕성은 광범한 차원을 포괄한다. 기술자형 지도자의 도덕성은 정치가형과 출세주의자형의 도덕성을 포괄한다. 그리고 그것은 체제이론, 운영연구(OR), 계량분석,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성분석, 컴퓨터과학, 총괄적 기획 등의 합리적 분석도구들에 의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기술자형 지도자는 출세주의자형과 정치가형의 가치들을 포함 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능가한다. 기술자형은 엘리트주의적이고 귀족주의적이다. 그것은 (다수에 의한 지배나 권력자들에 의한 지배와는 다른) 전문지식을 가진 유능한 사람들에 의해 지배될수록, 행정 또는 리더십이 더욱더 바람직하다는 관념을 반영한다. 기술자형 지도자는 권력과 정치의 현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전문 지식과 전문직업성이 지닌 궁극적인 장점을 철저히 신뢰한다. 그의 이러한 신뢰는 지식체계가 세분되어야 하며, 세분된 다양한 학문분야를 통해 다듬어져야 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과학의 모든 분야들은 협동적이고 상호의존적이지만, 동시에 점점 더 원자적으로 세분되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구조와 조직생활도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도 역시 독자적인 고유한 전문지식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행정은 아마추어들보다는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변모하고 있다.¹⁷⁾

기술자형 지도자는 정치가형 지도자와는 달리 개별사례적 차원보다 일반원칙적 차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기술자형 지도자는 행정과 조직의 궁극적 이상이 윤리적으로 정당한 목적들을 가 능한 한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라는 목적패러다임에 동의한다. 다시 말하면, 기술자형 지도자는 작업계획을 세우고, 명백한 업무표준을 유지하고, 작업의 기한을 강조하며, 통일성을 고무하고, 장래의 기대를 밝히며 문제해결을 도모한다. 그는 이러한 일들을 수행함으로써 복잡다단한 인간사 속에 질서를 세운다.

기술자형 지도자는 마치 유명무실한 장군의 배후에서 실력을 행사하는 영민한 참모장교처럼 막후의 실력자로 행사할 수 있다.

기술자형 지도자의 철학적 기반은 공리주의이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나 사회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잘 적응한다. 그는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능률적인 수단을 통해 사회적 선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테일러와 맥나마라와 슈메르를 한데 묶어서 기술자형 행정가들로 간주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다. 공리주의를 신봉하는 기술자형 행정가는 베버의 기능적 합리성(Zweckrationalitaet)에 따라 행동한다. 행정가에게 목적을 주고, 그에게 그것을 달성하도록 맡겨 두라. 그러면 그는 그것을 가장 능률적인 수단으로 달성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도자 형태들 중에서 기술자형 지도자가 가장 높은 가치 유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철학적으로 충분히 바람직한

17) Allison, Derek Weberian Bureaucracy and the Public School System, (University of Alberta 1980), pp. 118~121.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는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을 모면할 수 없다. 특히, 기술자형 지도자는 합리성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기술자형 지도자는 절대적 善(the Good)이 아니라, 단지 공리주의적 善(the Good)을 도모하는 오류를 범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기술자형 지도자는 더 낮은 수준의 지도자 형태를 포괄한다. 말하자면, 기술자형은 가치 및 윤리적 의미에서 더 낮은 수준의 지도자 형태를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자형도 다른 지도자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퇴행하거나 부패하기 쉽다. 기술자형이 경험세계에서 퇴행하거나 부패한 사례들은 적지 않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오늘날 노동자들의 저항과 인간관계 운동 등의 정치적 관심으로 퇴행하였으며, 베버의 극단적인 합리주의는 수많은 관료제의 병리현상들을 낳았다. 월남전에서 미군에 대한 맥나마라의 기술주의적 리더십은 거센 비판을 받았으며 합리주의의 정수로 칭송되던 캐나다軍의 통합군 조치는 이로 인한 사기의 저하와 단결심의 파괴에 대한 심한 비난을 받았다.¹⁸⁾ 전시 독일에서 발휘된 슈메르 교수의 기술적 정치리더십은 군사주의적 오류를 범했으며, 이 죄과로 20년의 감옥생활을 치러야 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들을 무수히 열거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은 기술자형 지도자가 우리 시대의 특징적인 指導者原型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현대는 기술자들의 시대이다.

18) 이 두 가지 군대사례들의 논의는 전통적·고전적 병력관리모형을 계량, 경제학적·민간적 병력관리모형으로 대체한 사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에도 역시 모든 조직구성원들에게 동일한 제복을 입힘으로써 비합리적 하부구조, 즉 상징제도를 파괴하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관료적·과학기술적·합리적-법적·복합적 사회이며, 동시에 신봉건적 사회이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기술자형을 신봉하는 행정가들은 자신의 의도가 동기의 결함이나 고의적인 악의가 아닌 최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기술자형 행정가들의 의도는 오로지 조직의 목적을 좀더 잘 달성하려는 것이며, 심지어 좀더 나은 조직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이 좀더 나은 조직목적을 원하는 것을 군사주의적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기술자형 지도자들의 이러한 바람을 그들의 관심이 그들이 속한 조직 속의 편협한 이익의 범주를 벗어나 더 큰 이익을 고려하는 데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물론, 최악의 경우에 기술자형 행정가는 인간본성의 복잡성과 초합리성, 그리고 직관적, 정신적 측면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철학적 근시안의 결함을 갖는다. 역설적으로, 또 반어적으로 우리는 기술자형 행정가는 인간의 얼굴을 상실한 기술관료나 당료(apparatchik), 또는 한가한 조직인으로 쉽게 퇴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자형 행정가는 매우 명예로운 이상형적 지도자이다. 기술자형 행정가는 정치가형 행정가와 더불어 행정적 가치논리에 있어서 이성의 요소를 가장 많이 나타낸다. 그는 행정적 가치논리에서의 이성의 극한에 접근하는 지도자라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들의 바람직한 이상형 모델로서의 21세기의 군사지도자는 기술자형 지도자로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위대한 지휘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전쟁

에서 최고 지휘를 맡아 성공하기 위해서 총사령관은 전력을 다해 주의 깊은 준비를 하는 무한의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 후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 그 순간이 왔을 때 분연히 전진하면서 既知의 세계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미지의 것을 붙잡으려는 지휘관의 리더십이야말로 시련을 맞보지만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3. 21世紀 軍事指導者의 리더십 戰略

21세기에 政治指導者는 억제력 발휘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평시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억제력이 실패에 도달했을 때 군사지도자는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현대 전쟁은 고도의 科學兵器와 管理技術을 사용하는 최첨단의 기술과 奇襲 및 欺瞞術을 기본으로 그 범위와 수행되는 양상이 너무나도 광범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현대의 군사지도자들은 군을 통솔하는 리더십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군사분야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해야 한다.

현대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가장 큰 원동력인 과학의 발달과 이와 병행하는 정치·사회·경제적 변혁은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와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초래한다. 그리하여 軍隊裝備과 武器를 비롯한 軍現代化를 위한 부단한 노력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戰力增強은 物的·人的·技術的·敎理的 향상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군사지도자들은 각 분야에 유능한 인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21

세기 將校像 정립은 將校團 전원이 同一方向으로 개인과 軍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때 軍 戰力은 증강된다고 보는 신념에서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가. 將校의 기본적 資質

미국의 군사교육학자인 라이언스(G. M. Lyons) 교수는 “장교는 군사지식뿐만 아니라 일반지식 또한 풍부해야 하고 자유민주체제 하에서 군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해야 하며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 발전에 민감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로서의 집행능력을 구비하고, 복잡한 사태를 분석하는 기술과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¹⁹⁾고 강조했으며 매스랜드(John W. Masland) 교수는 “장교는 일반업무수행 자질은 물론 더욱 전문화된 업무수행 자질을 구비해야 하며, 일반업무수행 자질로서는 대규모의 복잡한 정세를 파악하는 능력과 변화되는 환경에 창의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더욱 전문화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多才多能, 직업동기, 창의성이 요구된다.”²⁰⁾고 주장하고 있다.

政府와 軍은 장교단에 군사전문가를 요망하고 평시에는 전쟁준비, 전시에는 戰勝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2000年代에 요구되는 장교의 자질은

○ 고도의 군사기술과 전문능력

19) G. M. Lyons, Education and Military Leadership(Princeton University, 1979), p. 11.

20) J. W. Masland, Soldiers and Scholars(Princeton, 1981), pp. 30~35.

- 기민하고 신속한 판단, 결단, 임기응변능력과 지도력
- 강건하고 즉응력이 있는 체력
- 투철한 사명감, 충성심
- 정서적 안정·균형잡힌 인격을 통한 文武를 겸비한 사고하는 행동가·실천가가 되어야 한다.

또한 장교단의 思考方式은

- 고도의 통찰력에 의한 본질의 파악
- 관찰과 개혁에 의한 독창성
- 스케일(scale)의 선택에 따른 가변성
- 마음의 고속도로라 할 수 있는 사고의 기동성
- 스포츠의 규정과 교훈으로부터 얻은 합理性
- 緩과 急, 輕과 重을 구분할 수 있는 思料性
- 李舜臣 장군, 롬멜, 몽고메리 장군들이 보여 준 소신의 피력과 같은 정당성
- 제규정의 이행에 따른 성실성과 준법성 등은 사고방식에 융통성을 부여한다.

최초의 장교단을 창설한 프로이센은 1806년 예나(Jena)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직업장교단을 창립하기 시작했고 1846년 덴마크에 굴욕을 당한 뒤 더욱 직업화에 들어갔다. 프랑스에서는 1815년 이후와 1870년에, 영국의 경우에는 1856년 이후에 직업전문장교의 현저한 발달이 있었다.²¹⁾

21) Samuel P. Huntington, *The Soldier and the State*, (New York, 1957). pp. 8~18.

1870년 프로이센이 프랑스에 승리한 것은 프로이센 군대의 대중적 성격 못지않게 일반참모부를 비롯한 프로이센 장교단의 우수한 전문적 능력에 기인했다.

군사전문직업(Military profession)이란 군대의 직업집단 중에서도 가장 직업화된 집단, 즉 장교단을 의미하며 군사전문직업의 관계와 본질적인 내용은

- 전문성, 사회적 책임성 및 단체성²²⁾
- 관료적이며 권위주의적이고 경험주의적²³⁾이다.
- 합법적이고 권위적으로 규정된 구조와 질서를 갖춘 관료집단²⁴⁾이며
-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무제한의 봉사를 약속하며, 이러한 헌신적 업무수행을 위한 강건한 훈련을 실시하는 유일한 공공직업²⁵⁾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의 장교단은 사회적인 전통, 신분 및 지위보다는 교육과 기술에 근거하여 선발되며, 단체의식은 사회적 신분의 유사성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교육과 직업적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게 된다.

22) Ibid, pp. 23~24.

23) Sam C. Sarkesidn, An Empri Reassessment of Military Proffessionalism, (Military Review Aug, 1992), p. 6.

24) Huntington, op. cit., p. 16.

25) Morris Janowitz, The Emergent Military, (Calif. 1991), p. 258.

나. 未來戰의 樣相과 將校의 役割

2000年代의 社會는 思考나 行動을 함에 合理性에 기초를 두고 行해질 것이며, 科學文明의 발달과 社會의 복잡성은 必然적으로 차밀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과학의 발달로 우리의 생활환경은 과학지식의 기초 없인 곤란해감에 따라 과학화된 社會가 될 것이며, 경제정책의 발전에 따른 富의 均형분배가 이뤄질 것이고, 인간에 부여된 機會의 均등화는 수평사회를 이루게 되어 閉鎖的인 不是 開放社會가 되어 民主主義와 正義·福祉를 구현하는 社會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장차 발생가능한 전쟁양상은 武器體系의 발달에 따라 核戰爭, 非核戰爭, 局地戰爭, 全面戰爭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에 따라 未來戰의 양상을 좀더 구체화한다면 短期戰, 速戰速決戰이요, 大量消耗戰으로

- Tempo가 빠른 전쟁이 될 것이며
- 기계화, 자동화된 양상을 띠 것이고
- 기동력과 화력의 획기적 발전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 誘導武器의 일반화
- 電子戰
- 헬리콥터의 대량 등장
- 정밀유도무기(P. G. M)의 일반화
- 지휘통제 수단의 획기적 발전이 이뤄지는 전쟁이 될 것이다.

현재와 미래를 통하여 장교는 자기가 속한 軍뿐만 아니라 국가

의 생사에 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업무에 정통해야 할 전문성과 함께 오늘날 군의 업무가 광범위하고 복잡한 만큼 장교는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을 소유하는 한편 업무와 관련된 광범위한 지식을 가진 다재다능한 제너럴리스트(Generalist)가 되는 것이 요망된다.

차는 중령(James B. Channon)의 견해에 의하면 장교는 변화를 지향하는 실무자로서 모든 수준의 부대지휘, 새로운 체계와 접근 방법의 수용, 이를 제도화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다양한 대량의 전투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하는 작업을 맡게 됨에 따라 정보학과 외국어 교육이 필요하다. 지휘관에게 장기 판단 및 계획을 수립, 조언하고 기획, 예산편성 검토, 유지, 조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따라서 체계공학과 기획 및 관리과학 분야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미래를 위한 교리발전에 적용해야 되며 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게 된다.²⁶⁾

지적인 면에서 볼 때 냉철하고 비판적인 사고의 장교가 요망된다. 구소련의 로모프(N. A. Lomov) 중장은 미래의 장교단에 요구되는 전투기량을 “다양한 종류의 현대과학무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현대전에 있어서는 전투에 있어 수학적 방법과 전산기의 이용이 가장 중요하다. 수학적 분석방법의 습득은 전투력의 양적인 균형뿐 아니라 수학적 중요성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능케 한다. 또한 상황의 신속 정확한 판단과 대응을 위하여 군

26) James B. Channon, preparing the officer corps for the 1990s, (Military Review, Jun, 1989), p. 19.

사훈련 및 전투 모의연습이 실전에 가장 유사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통제에 관한 지식과 가장 현대적인 기술장비의 사용은 현대전의 조건하에서 과학적인 부대지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건전한 결정은 미지의 상황을 예측하는 지휘관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²⁷⁾라고 하였다.

통찰력없이 전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통찰력은 천재적인 두뇌의 산물이 아니라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얻어진다. 예측의 능력은 가장 중요한 지휘관의 사고능력이다. 현대의 전투는 지휘관의 최대의 자제, 분명한 사고력, 상황의 객관적 평가, 불굴의 의지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자질없이 지휘관은 전투와 일상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고도의 군사기술과 전문성이 필수 요소가 된다.

장교는 훌륭한 인품과 덕성이 요망된다. 勇將보다는 智將이, 智將보다는 德將이 더 낫다는 말과 같이 德性은 중요시되고 있다.

孟子는 일찍이 保國安民之道에서 “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라 했다. 이처럼 부하 통솔의 기본은 人和에 있다. 상급자는 부하를 친동생처럼 사랑하고 부하는 마음으로부터 상급자를 존경하고 복종하여 人和로써 뭉친 부대가 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무시한 폭력, 또는 압력에 의한 지휘는 금물이며 이는 전투시 최악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영속될 수가 없으며, 부대의 인화 또는 단결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27) N. A. Lomov, Scientific Technical Progress and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e, (Washington D. C., Government Office, 1987), pp. 229~235.

결과를 초래한다.

장교는 強靱한 체력을 지녀야 한다.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평시를 막론하고 강건한 체력이 필요하다. 전투 상황이란 예측이 곤란하며, 최악의 조건하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선 강건한 투지력·극기력·체력이 요망되기 때문에 항상 건전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結 論

군사지도자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근시안적인 태도를 탈피하여 대국적인 입장에서 매사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장교는 미래를 향한 리더십의 발휘에 경주해야 한다. 지휘관 자신을 전문적으로 발전시키고 같은 업무분야의 동료들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지도자는 부하들의 재능을 효과적으로 계발시키기 위해 더 훌륭한 인간 상호간의 관리기술을 지녀야 한다. 리더십은 부하들로 하여금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知的 역량을 효과적으로 계발시킬 수 있도록 자극하고 장려하는 지적 통찰력과 기민성이 필요하다. 훌륭한 리더십은 고립보다는 참여를 하도록 부하들을 장려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미래의 장교는 탁월한 지식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부하와 상관을 설득시킴으로써 부하·동료·상관으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군사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가져야 한다.

- 장교는 모든 분야에서 지휘자임과 동시에 교육자이다. 장교는 인간애가 넘치고 정의롭게 행동해야 함은 물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自我를 다스리는 능력과 신념있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
- 장교들과 지휘관들의 행동과 행위는 부대에 큰 영향력을 준다. 敵 앞에서 신념, 냉정함, 용기와 결단력을 보이는 장교는 부대를 그가 願하는 방향으로 지휘할 수 있다. 그는 부하들과 상호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하들의 신상과 악을 철저히 하여 어려운 점을 보살펴 줌으로써 부하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상호신뢰는 곤경에서 최고의 전우애로 나타날 것이다.
- 모든 군사지도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가 진 책임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책임감이 왕성한 것은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이다. 임무수행에 있어 항상 상대방의 위치를 생각하고 맹종하지 않으며, 정의로운 일에 복종하여야 하고 專制的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한계를 갖는 자기활동은 성공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군사지도자는 반드시 부대원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해야 한다. 그러면 부하는 믿고 따를 것이며, 전투력은 강해진다. 지휘관은 자신에 대해서는 물론 부하에 대한 책임이 있다. 능력있고 강한 자는 약하고 無知한 전우를 항상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한 상태에서만 상관과 부하, 병사들 사이에 전우애가 싹튼다.
- 전투지휘는 하나의 예술이며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토대로 한 자유롭고 獨創인 행위이다. 그것은 인간의 극한상황의

극복을 요구한다. 전투행위는 부단히 변화하는 상황에 適用해야 한다. 새로운 병기와 전투물자는 항상 상황을 변화시킨다. 그들의 등장은 정확히 예견되어 그의 전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신속히 파악하여야 한다.

- 전쟁은 각 개인에게 의지력과 체력의 극한상황까지를 요구한다. 그런 緣由로 전쟁에서는 그 사람의 이성보다 성격이 더 중요시된다. 그러므로 평시에 무능한 듯이 보였던 사람이 전시에 우수한 자질을 발휘한 예가 많다.
- 부대를 지휘하기 위해서 군사지도자는 정확한 판단능력과 날카로운 豫感 등을 가지고 결단은 냉정하고 강직하게, 실시는 融通性和 強韌함을 발휘해야 하고, 결코 전장에서 一時的인 幸運을 바라거나 責任을 회피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장교는 모든 분야에서 지도자임과 동시에 교육자이다. 장교는 인간애가 넘치고 정의롭게 행동해야 함은 물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自我를 다스리는 능력과 신념있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
- 차논(James B. Channon)은 의사전달능력과 기술의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미래의 군사지도자에 대해 “① 보고서를 一見하자마자 무엇인지를 즉시 인식해야 하고 ② 한 시간 이내의 시간에 한 권 이상의 책을 읽고,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며 ③ 브리핑을 듣자마자 한 마디의 질문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꿰뚫을 수 있는 洞察力을 가져야 하며 ④ 자신의 경험에 입각하여 그의 부하들에게 처음부터 문제를 명백히 해 줄 수 있어야 하고 ⑤ 항상 유능하고 유망한 부하들에게 둘

러싸여 아침이슬을 머금고 갓 피어난 장미꽃처럼 자신에 넘치고 여유 있는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장군이 참장군이다.”²⁸⁾ 라고 하였다. 이처럼 미래의 군사지도자는 업무수행 중에 집중하는 능력과 복잡다양한 대량의 자료로부터 문제해결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과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모형이나 시나리오로 정리할 수 있는 풍부한 知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軍이 국민의 교육도장이란 사실을 항상 의식하고 부대를 지휘하여야 하며, 또한 군이 전·평시를 막론하고 수행해야 될 막중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현재와 미래의 정치·경제·사회와 미래전의 양상 및 기타 유동적인 제상황 변수를 고려한 사건처리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위에서 열거한 7가지 요소를 골고루 갖춘 장교가 되어야 하며, 자기발전이 군과 국가발전의 기본임을 깨닫고 항상 연구노력하고 정진하는 자세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실천가”가 되어 바람직한 군사지도자가 될 때 우리 국가의 장래는 평시에는 전쟁억제가, 전시에는 필승이 약속된다고 믿는다.

28) Channon, op. cit., p. 11.

新 刊 紹 介

구 분	내 용
國防部史(第3輯) • 4×6배판 • 100부 • 비매품 • 1994. 11. 30. 발행	'89~'91년간의 國防부와 合同參謀本部 및 隸下 直轄機關의 業務實績을 정리하여 편찬한 部隊史 개념의 國防部 歷史資料이다. 주요내용은 國防目標 및 基本方向, 安保環境, 主要政策 推進內容이 수록되어 있음.
韓民族戰爭通史 —古代篇— • 4×6배판 • 1,000부 • 비매품 • 1994. 12. 10. 발행	古朝鮮 때 燕의 침공으로부터 高句麗와 異民族과의 鬭爭, 그리고 新羅가 三國統一 후 唐軍을 축출하기까지의 對異民族 鬭爭史를 軍事的인 측면에서 分析, 整理하여 총괄 서술하였음.
韓國武器發達史 • 4×6배판 • 1,000부 • 일부 시판 • 1994. 10. 20. 발행	古代로부터 近代(光復)까지의 시대별 각종 武器類의 發達史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叢論書로 發刊, 각 시대의 軍事史 研究와 戰爭敎訓의 基本資料로 활용하며 紀念館 展示品에 대한 考證 및 展示 補完資料 發掘에 寄與

구 분	내 용
戰跡紀念物 便覽集 • 4×6배판 • 1,000부 • 일부 시판 • 1994. 12. 20. 발행	光復 이후부터 現在까지 건립된 戰跡紀念物들을 各道, 市, 郡別로 체계적으로 編輯, 發刊하여 國難克服의 歷史的 敎訓을 傳播하고 先烈들의 愛國愛族精神과 숭고한 業이 담긴 遺跡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총괄 서술한 것임.
軍事參考 -1950년 韓國戰爭 中國資料- • 신국판 • 3,000부 • 일부 시판 • 1994. 12. 20. 발행	韓國戰爭時 參戰했던 中共軍의 位置, 役割, 活動에 관련된 資料編纂 翻譯書. 韓國戰爭 期間中 中共軍의 戰略·戰術 및 그 經過를 간략히 서술하였으며, 中共軍 研究에 도움을 주고자 軍事年表를 추가하였음.

『軍史』誌 投稿案内

1. 論題의 範圍

- 가. 韓國의 歷代 軍事政策·制度·戰史에 관한 내용.
- 나. 韓國의 安保와 有關한 政治·外交·軍事分野에 관한 내용.
- 다. 世界各國의 軍事問題에 관한 것으로 우리의 國防政策 및 戰略·戰術研究에 寄與할 수 있는 내용.

2. 原稿作成 要領

- 가. 原稿는 200字 用紙 100~200枚 이내(註 포함)로 함.
- 나. 原稿는 가급적 한글을 사용하되 꼭 필요한 한문은 쓸 수 있으며, 고유명사 또는 外國語는 原語를 ()안에 밝힘.
- 다. 註는 本文의 末尾에 일괄하여 첨부함.
- 라. 註의 번호는 아라비아 數字로 함. 예 : (18)

3. 投稿要領

- 가. 提出하는 原稿는 완전한 것이어야 함.
- 나. 原稿表紙에 住所, 姓名, 職場, 職位, 電話番號를 明記하여야 함.
- 다. 提出하는 곳은 아래와 같음.
140-600 서울 체신청 직영우체국 사서함 113호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8번지
국방군사연구소 군사재 관리부

4. 原稿採擇 및 稿料

- 가. 原稿掲載 與否는 當 研究所에서 결정함.
- 나. 接受된 原稿는 掲載與否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치 않음.
- 다. 稿料는 政府 基準單價로 支給함.

5. 기타 事項

- 가. 『軍史』는 年間 2回 발행하고 있음(前半期는 6月 1日, 後半期는 12月 1日). 따라서 3月 1日까지 접수된 原稿는 前半期에, 9月 1日까지 접수된 原稿는 後半期에 게재함.
- 나.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로 할 것.

국방군사연구소 군사재 관리부
전 화 : 709-3181

軍 史 (第 29 號)

1994年 12月 15日 印刷

1994年 12月 20日 發行

發行處	戰 爭 紀 念 事 業 會 附 設
發行人	國 防 軍 史 研 究 所
印刷人	具 本 重
	軍 人 共 濟 會
	第 1 印 刷 事 業 所

정간위 심의필(94-13-7-27)

<非賣品>

本誌에 실린 論文內容은 當 研究所의 公式
見解가 아님.